

10조의 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련된 내용과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의 회의록 공개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19. 8. 8.(목)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고연석, 김문식, 권오영,  
김창준, 박은경,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혜은, 장경희, 정은우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 반출>		
1	보물 제1358-1호 ‘동여도’ 등 2건 국외 반출	공 개

**【검토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2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3	김육 초상 일괄	공 개
4	경주부사선생안	공 개
5	경상도영주제명기	공 개
6	제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공 개
7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공 개
8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좌상 및 권속 일괄	공 개
9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말머리 가리개	공 개
10	부산 북천동 86호분 출토 철제갑옷	공 개
11	산청 하촌리 출토 도기 ‘이득지’ 명 양손잡이 완	공 개

**【보고사항】 2건**

12	‘근대동산’ 국가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추진 자문회의 결과 보고	공 개
13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국외 반출

안건번호 동산 2019-05-001

### 1. 보물 제1358-1호 ‘동여도(東輿圖)’ 등 2건 국외 반출

#### 가. 심의사항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국외반출 허가 신청한 ‘보물 제1358-1호 동여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2건에 대한 국외반출 안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역사박물관장으로부터 일본 에도도쿄박물관에서 개최되는 「1784, 유만주의 한양」 특별전 전시출품을 위해 ‘보물 제1358-1호 동여도’ 및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 고금총람도’ 2건에 대한 국외 반출 신청이 있어(’19.5.14) 상태점검(’19.7.11)을 실시하였음.
- 이에, 동 사안에 대해 국외반출 허가 여부를 심의에 부의하는 것임.

\*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국보, 보물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으나,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함.

#### 다. 주요현황

- 신청기관 : 서울역사박물관장
- 반출대상 : 보물 제1358-1호 동여도(전체 23첩 중 5첩),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 고금총람도 등 2건 6점
- 반출국가(장소) : 일본(에도도쿄박물관 5층 기획전시실)
- 반출목적 : 서울역사박물관과 에도도쿄박물관의 교류전인 ‘1784 유만주의 한양’ 전시의 주요 전시품으로 반출
  - \* 도쿄올림픽 기간에 맞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스미다강 개최예정(’20. 9월~10월)
- 반출기간 : 2019. 10. 14. ~ 2019. 12. 9.(기 반출 이력 없음)
- 전기기간 : 2019. 10. 22. ~ 2019. 12. 1.

## 라. 우리 청 의견

- 해당 반출 건은 서울역사박물관과 에도도쿄박물관의 교류전인 ‘1784 유만주의 한양’ 전시 출품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시 시 일본에 18세기 한양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동여도 등 2건 모두 지정 이후 국외 반출 사례가 없으며 전시계획서, 전시협약서, 시설개요서 등을 통해 반·출입 및 전시 등 전 기간 동안 문화재 안전에 대한 확인 결과 반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기 전이므로 반출 전 보험가입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함.

## 마. 상태점검 조사 결과

- 점검자 : 문화재전문위원
- 점검대상 : 보물 제1358-1호 동여도(전체 23첩 중 5첩),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 등 2건 6점
- 점검기간 : 2019. 7. 11.
- 점검장소 : 서울역사박물관 본관 수장고, 은평 수장고
- 점검내용 : 국외전시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전시품 상태 및 취급 시 유의사항 점검
- 점검결과 : 반출 허가 가능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조사보고서



### ○ 반출 문화재 현황

<조선팔도고금총람도>(보물 제1602호)는 1673년에 제작된 목판본 전국지도로 지리정보와 더불어 인물과 역사 정보까지 포함시켰다. 특히 서울을 축적과 상관없이 크게 강조하여 표현했다. 원래는 책 형태였으며 다소 손상되었으나 근래에 다시 족자로 표장되었고 현재 상

태는 양호하다.

<동여도>(보물 제1358-1호)는 1850년대에 제작된 필사본 지도로 모두 23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출 대상은 제9-13권의 5첩이다. 표지는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테두리 부분이 닳았고 모서리 부분의 비단이 살짝 들뜬 곳이 있다. 전체적으로 상태는 양호하다.

### ○ 종합의견

두 작품은 2016-7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있었던 특별전 <1784 유만주의 한양>을 2019년 10월부터 일본 도쿄 독립(都立)의 에도도쿄박물관(江戸東京博物館)에서 다시 개최하는 전시를 위한 반출 대상품이다.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서울 전시에는 출품되지 않았으나 한양의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위상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본 관람객을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이 작품과 같은 판본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여도>는 유만주가 해주를 거쳐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다. 이 작품 역시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등에도 소장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한국 지도의 특징과 우수성을 잘 보여주며, 이번 전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 전시와의 교환전으로 2020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특별전 <스미다강(隅田川)>이 개최될 예정인데, 양국의 긴밀한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도 국가지정문화재인 두 작품을 이 전시에 선보이는 것은 의미가 크다. 따라서 반출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 반출 문화재 현황

보물 제1358-1호 동여도는 바탕재와 색료 모두 안정적인 상황으로 판단됨. 다만 상황은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오랜 시간 노출된 표지 부분의 비단이 들뜨거나 마모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함. 향후 검토를 통해 들뜬 부분의 안착과 말려있는 부분을 반듯이 펴주는 처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내지의 경우 벌레의 분비물로 보이는 오염물이 확인되므로 원형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근년 수리가 되어 바탕재와 색료 모두 안정적인 상황이며 상황의 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다만 지도 제작연대(조선중기)의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금구(고리)와 다회(끈)가 모두 일본식으로 되어있어 유물과 격이 맞지 않으므로 향후 검토를 통해 교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하 축의 후면 축 경계면에 까맣게 오염된 부분에 클리닝 처치도 같이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

보물 제1358-1호 동여도는 표지 가장자리의 비단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나 내지 등 유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여 약45일 전시기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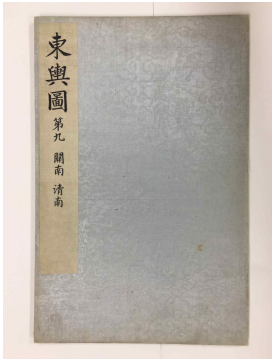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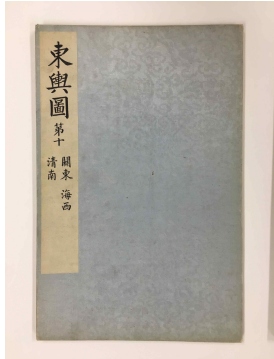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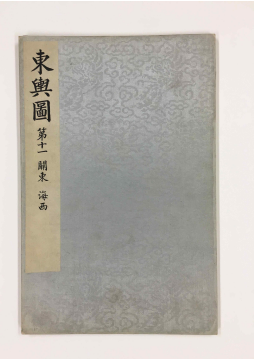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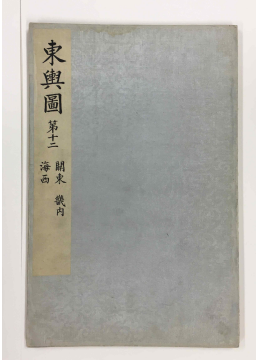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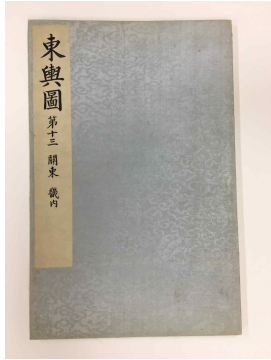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유물의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며 약45일 전시기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국외 반출 허가신청 문화재 목록 1부.



**붙임 1****국외 반출 허가신청 문화재 목록****1. 보물 제1358-1호 동여도**

- 지정일 : 2002. 12. 7.
- 수 량 : 1건, 23첩 중 5첩 반출 신청
- 형 태 : 분첩절첩식
- 규 격(mm)
  - 제9첩 : 307×1,570
  - 제10첩 : 307×2,350
  - 제11첩 : 307×2,343
  - 제12첩 : 307×2,335
  - 제13첩 : 307×2,350
- 소유자(관리자) : 공유(서울역사박물관)
- 반출이력 : 지정 이후 없음.
- 문화재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lt;5첩 전체&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9첩&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0첩&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1첩&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2첩&gt;</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13첩&gt;</p>

## 2. 보물 제1602호 조선팔도고금총람도

- 지정일 : 2008. 12. 22.
- 수 량 : 1건 1점
- 형 태 : 족자
- 규 격 : 화면 141.1×107.0cm / 전체 181.1×114.0cm
- 소유자(관리자) : 공유(서울역사박물관)
- 반출이력 : 지정 이후 없음.
- 문화재사진



## I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5-002

### 2.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 가. 검토사항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이 있어(18.8.31) 관계 전문가 조사(19.5.3) 및 과학조사(19.5.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561호(1971.12.21. 지정)
- 명 칭 :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
- 소유자(관리자) : 국유(기상청)
- 소재지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 수 량 : 1건 3점
- 규 격 : 높이 31.86cm, 직경 15.3cm
- 재 질 : 청동
- 형 식 : 3개 원통으로 구성된 측우기
- 조성연대 : 1837년(헌종 3)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이 측우기에 대한 연구는 일제 강점기 이후 계속되어 왔다. 이 측우기 본체는 보물로서만 지정되어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다. 실물을 2019년 3월 22일 금영측우기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보물보다 단계를 높여 국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 세종시대인 1442년 세계 최초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강우량을 측정한 측우기를 처음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 외에 여러 사서에 나와 있다. 그러나 세종시대 만들었다는 측우기의 실물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영조대에 이르러 세종시대의 측우기의 전통적인 형태와 측정 방법을 바탕으로 조직적으로 다시 제조하여 사용했다. 이것 또한 실물을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1837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하던 측우기 중 하나인 금영측우기가 발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순히 측우기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전국을 지역적으로 나누어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한 국가적 주도하에 측정했던 자료의 상당량이 남아 있다. 이는 세종시대 이후 비의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금영측우기는 단순히 남아있는 유물로서만 그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측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측에 이어 이를 농사에 활용하여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했다. 물론 지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량을 강우량과 비교하여 생산량 통계 작성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여러 사항을 보면 금영측우기가 갖는 유형·무형의 가치가 그 어느 것보다도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물 제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영측우기’를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될 만한 충분한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측우기는 국보로 지정함이 충분하다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2019년 3월 22일 금영측우기 실물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금영측우기는 1441년 세종대 세계 최초로 강우량 측정기가 우리 조선에서 발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현존하는 유일한 유물이다. 다른 세종대 측우기는 현존하지 않으나, 세종대의 측우기 제도와 강우량 측정 제도는 18세기 영조대와 정조대에 완벽하게 부활했고, 금영측우기는 부활된 측우기 제도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귀중한 역사 유물이다.

둘째, 측우기가 세계 학계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하던 1910년대만 해도 측우기는 5개가 남아있었던 것을 당시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현존하는 보물 측우대들에 설치했던 측우기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1세기가 지난 지금 오직 하나 밖에 남아있지 않다. 국보로 지정하여 소중하게 보존하고, 학술 연구를 수행하여, 측우기의 역사적 가치를 더욱 밝혀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오래전부터 세계 과학사학계에서 측우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처음 창제했고, 황제가 조선에 준 것이라는 이해가 정설로 되어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근래 들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 차원에서 우리 역사의 중요한 유산이 중국사에 포함되는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현존하는 유일한 과학 유물인 ‘금영측우기’를 국보로 지정함으로써 세종대 측우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제되었음을 정부가 공식 선언하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물 제561호로 지정되어 있는 ‘금영측우기’는 국보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학술적, 역사적, 당위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측우기(測雨器)는 세종 23년(1441)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후 1907년까지 조선의 강우량 측정에 사용된 세계적인 발명품이다. 금영(錦營) 측우기는 국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강우 측량기로서 역사적, 과학사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고 중요한 유물이다.

이 측우기는 하단과 중단 상단의 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세 단 모두 완벽한 상태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측우기는 돌로 만든 측우대(測雨臺) 위에 놓고 측정하였는데 국내에 남아 있는 측우기 관련 유물은 측우대 2점과 금영 측우기 1점이 있다. 측우대와 달리 측우기는 실제 강우 측정을 위한 장치로서 과학사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선 15세기에 발명된 측우기는 이탈리아인 Benedetto Castelli의 우량계(1639)보다 약 200년 앞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과학적 강우 측정기이다. 조선의 측우기는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를 측정하던 이전의 비과학적 강수 측정방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강수량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케 한 발명품이다.

조선은 이러한 측우기를 관상감(觀象監)과 각 도의 감영과 지방에 설치해 강수량을 측정하였으며 한때 전국에 약 350개의 관측망을 가지고 있었다. 강수량을 기록한 조선의 관측 기록은 세계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같은 시기, 강우 시각만을 기록한 중국 기록과 비교했을 때 조선의 측우기는 자연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획기적인 과학 발명품이었다. 그리고 1837년 금영에 설치되어 강수량 관측을 맡아온 역사적 유물이 바로 금영 측우기인 것이다.

금영 측우기를 살펴보면 세 단이 분리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확한 계측과 강우량의 정밀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 단의 연결 부위는 홈의 두께나 모양이 약간씩 달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잘 맞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매우 정밀한 제작 기술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밀 제작 기술과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는 국보로 지정할 역사적·학술적·과학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 보완조사 필요

### 조사보고서



#### ○ 형 식

서로 분리된 3개의 원통으로 구성, 이 3개의 원통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큰 원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조성연대

물받이 통 하단에 음각된 “도광(道光) 정유제(丁酉製)”의 내용으로 보면 그 제작 연대가 1837년(조선 헌종 3년)임을 확인할 수 있음. 측우기는 세종대 1442년 최초로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영조대에 새로이 다시 제작하여 사용했음. 현존하고 있는 측우기인 금영측우기 제작은 조선 초 세종시대 발명하여 사용하던 측우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제작하여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음.

#### ○ 현 상

공주 감영인 금영에 설치된 측우기는 높이 10cm 정도의 같은 크기의 분리된 원통 3개로 구성. 이 3개의 원통은 서로 연결이 되도록 홈이 파져있음. 이 3개의 원통은 서로 끼워 맞추어 하나의 큰 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 연결한 접합부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밀랍과 같은 물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전체 연결했을 때의 높이는 31cm 가량으로 오는 비의 양에 따라 연결하여 사용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측우기를 설치하던 측우대와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던 측정자는 망실된 것으로 보임.

### ○ 내용 및 특징

긴 원통형 측우기를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측우대에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세종시대 처음에는 비가 온 후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로 측정했음. 그러나 이 방법은 토질에 따라, 지면의 경사도에 따라, 비가 온 기간에 따라 같은 양의 비가 내렸어도 측정치가 일정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평한 지면에 물통을 지지대인 측우대에 놓고 비가 온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게 되었음. 이렇게 비가 내린 양을 규격화된 방법과 용기에 비가 온 양을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측정한다는 생각을 거의 시도한 나라가 없었음. 비가 내린 양을 객관화된 방법으로 정량화 시키려는 과학적 사고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음.

### ○ 기 타

위의 금영측우기는 1837년 충청도 관찰사가 근무하던 공주 감영에 설치했던 것임. 이 곳 외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측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모두 망실되어 없어지고 오직 유일하게 이것만이 현존하고 있음.

### □

### ○ 조성연대

1837년 (조선 헌종 3년). 가장 하단의 원통 밑면에 새겨진 “도광(道光) 정유제(丁酉製)”의 기록으로 조선시대 헌종 3년 1837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조대 이후 측우기 제도를 부활하면서 제작된 조선 후기의 측우기들이 모두 세종대의 측우기를 모델로 그대로 계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금영측우기의 조성은 세종대 1442년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 ○ 현 상

본래 공주 감영인 금영에 설치되어 강우량을 측정하던 때에는 높이 10cm 남짓의 원통 3개를 상하로 연결하고 납땜으로 고정해 빗물이 새지 않도록 한 높이 31cm의 긴 원통형 그릇이었는데, 현재는 연결 부분이 떨어져 분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또한 당시에는 측우기를 세웠던 측우대와 빗물을 측정하던 주척(周尺)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측우기가 남아있고, 측우대와 주척은 없다.

## ○ 내용 및 특징

긴 원통형 그릇에 고인 빗물을 주척으로 채는 방식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과학 기구이다. 측정 원리는 매우 간단하나, 그 과학적 아이디어는 심오하다. 측우기 이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린 비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연 현상의 정량적 측정은 근대과학을 전근대의 비과학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이다.

## ○ 기 타

이 금영측우기는 1837년 충청도 관찰사 청사였던 공주 감영에 설치했던 것으로 이후 역사의 혼란기에 사라졌다가, 1971년 한국문화재 반환운동의 결과 일본에서 돌려받아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 ○ 문헌자료

측우기 관련 사료는 연대기 사료에 매우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료만 제시해 본다.

### 『세종실록』 92권 23년 (1441년) 4월 29일(을미)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 간 분수[分數]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적확하게 비가 온 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宮中)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분수를 실험하였는데

### 『세종실록』 93권 23년 (1441년) 8월 18일(임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각도 감사(監司)가 우량(雨量)을 전보(轉報)하도록 이미 성법(成法)이 있사오니, 토성(土性)의 조습(燥濕)이 같지 아니하고, 흙속으로 스며 든 천심(淺深)도 역시 알기 어렵사오니, 청하읍건대,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짓고 쇠로 그릇을 부어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하여, 대(臺) 뒤에 올려 놓고 비를 받아, 본관(本觀) 관원으로 하여금 천심(淺深)을 척량(尺量)하여 보고하게 하고, 또 마전교(馬前橋) 서쪽 수중(水中)에다 박석(薄石)을 놓고, 돌 위를 파고서 부석(趺石) 둘을 세워 가운데에 방목주(方木柱)를 세우고, 쇠갈구리[鐵鉤]로 부석을 고정시켜 척(尺)·촌(寸)·분수(分數)를 기둥 위에 새기고, 본조(本曹) 낭청(郎廳)이 우수(雨水)의 천심 분수(分數)를 살펴서 보고하게 하고, 또 한강변(漢江邊)의 암석(巖石) 위에 표(標)를 세우고 척·촌·분수를 새겨, 도승(渡丞)이 이것으로 물의 천심을 측량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여 아뢰게 하며, 또 외방(外方) 각 고을에도 경중(京中)의 주기례(鑄器例)에 의하여, 혹은 자기(磁器)를 사용하던가, 혹은 와기(瓦器)를 사용하여 관청 뜰 가운데에 놓고, 수령이 역시 물의 천심을 재어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게 하고, 감사가 전문(傳聞)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95권 24년 (1442년) 5월 8일(정묘)

호조에서 아뢰기를,

“우량(雨量)을 측정(測定)하는 일에 대하여는 일찍이 벌써 명령을 받았사오나, 그러나, 아직 다하지 못한 곳이 있으므로 다시 갖추어 조목별로 열기(列記)합니다.

1. 서울에서는 쇠를 주조(鑄造)하여 기구(器具)를 만들어 명칭을 측우기(測雨器)라 하니, 길이가 1척(尺) 5촌(寸)이고 직경(直徑)이 7촌입니다.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서운관(書雲觀)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고 매양 비가 온 후에는 본관(本觀)의 관원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얇은 것을 측량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즉시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둘 것이며,

1. 외방(外方)에서는 쇠로써 주조(鑄造)한 측우기(測雨器)와 주척(周尺) 매 1건(件)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한결같이 상항(上項)의 측우기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자기(磁器)든지 혹은 와기(瓦器)든지 적당한 데에 따라 구워 만들고, 객사(客舍)의 뜰 가운데에 대(臺)를 만들어 측우기를 대(臺) 위에 두도록 하며, 주척(周尺)도 또한 상항(上項)의 체제(體制)에 의거하여 혹은 대나무로 하든지 혹은 나무로 하든지 미리 먼저 만들어 두었다가, 매양 비가 온 후에는 수령(守令)이 친히 비가 내린 상황을 살펴보고는 주척(周尺)으로써 물의 깊고 얇은 것을 측량(測量)하여 비가 내린 것과 비오고 갠 일시(日時)와 물 깊이의 척·촌·분(尺寸分)의 수(數)를 상세히 써서 뒤따라 계문(啓聞)하고 기록해 두어서, 후일의 참고에 전거(典據)로 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증보문헌비고』 권3 의상2 (1770년)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에 따라 측우기(測雨器)를 만들도록 명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실록(實錄)》 가운데에 측우기에 대한 조항(條項)을 들을 때면 나도 모르게 일어나 앉게 된다. 요즈음은 비록 비를 비는 시기는 아니나 수표(水標)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여 그 얇고 깊음을 알고자 하는데, 이 기구에는 지극한 이치가 있으며, 또 힘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에 따라서 서운관(書雲觀)으로 하여금 이를 만들어 팔도(八道)에 놓게 하고 양도(兩都 개성과 강화)에도 만들어 놓게 하라. 이것이 일리우(一犁雨 발갈기에 알맞게 내린 비)·일서우(一鋤雨 김매기에 알맞게 내린 비)를 보고하는 데에 비하면 매우 정밀하다. 무릇 비가 오는 것과 물이 고이는 것을 장문(狀聞)할 때에는 영하(營下)에서 본 측우기(測雨器)의 양(量)을 측정한 기록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보고하게 하라. 그리고 탁지로 하여금 두 벌을 만들어 들이게 하여, 하나는 창덕궁(昌德宮)에 놓고, 하나는 경희궁(慶熙宮)에 놓게 하라. 또 대궐 가운데에는 풍기(風旗)가 있는데 이는 곧 옛부터 바람을 점치려는 뜻으로서, 창덕궁의 통제문(通濟門) 안과 경희궁의 서화문(西華門) 안에 둘을 설치하고, 거기에 풍기대[風旗竹]를 꽂아 놓았었다. 지금도 그 예(例)를 따라 경희궁과 창덕궁에 모두 측우기를 설치하라. 옛날에 바람 불고 비 올 때마다 명하여 자세히 살피게 한 선성(先聖)의 뜻을 체념(體念)해 볼 때, 어찌 감히 소홀히 할 수 있겠

는가? 바람과 비가 순조로운·것은 나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지금의 이 명령 또한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또 (영조가)** 하교하기를, “다시 들으니, 《실록》에서 측우기는 돌을 설치하고 그 위에 놓았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하늘을 공경하는 성왕(聖王)의 뜻이다. 이번에 만들어 들여올 때에는 두 대궐과 두 서운관의 측우기도 모두 돌로 대(台)를 만들게 하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 너비는 8로하고, 대 위에 둥근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안치하는데, 구멍의 깊이는 1촌으로 한다. 그리고 척도(尺度)는 경신년(庚申年 1740년 영조 16년)에 만든 새 자[新尺]를 사용하라.” 하였다. [영조(英祖) 경신년(庚申年 1740년 영조 16년)에 관중추(判中樞) 유척기(兪拓基)가 강원도(江原道) 삼척부(三陟府)에 있는 세종조(世宗朝) 때에 만든 포백척(布帛尺)을 가지고,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도형법(度衡法)을 참고하여 황중척(黃鍾尺)·주척(周尺)·영조척(營造尺)의 여러 격식을 정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자세한 것은 악고(樂考)에 보인다.]

#### 『영조실록』 46년 (1770년) 5월 1일(정축)

(팔도와 양도에 측우기를 만들어 우수의 다소를 살필 것 등을 명하다)

세종조(世宗朝)의 옛 제도를 모방하여 측우기(測雨器)를 만들어 창덕궁(昌德宮)과 경희궁(慶熙宮)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도 모두 만들어 설치하여 우수(雨水)의 다소를 살피도록 하고, 측우기의 척촌(尺寸)이 얼마인가를 치계(馳啓)하여 알리도록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이는 곧 옛날에 일풍 일우(一風一雨)를 살피라고 명하신 성의(聖意)를 본뜬 것이니, 어찌 감히 소홀히 하겠는가? 듣건대,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측우기는 석대(石臺)를 만들어 안치(安置)하였다고 하였다. 금번 두 궁궐(宮闕)과 두 서운관(書雲觀)에 모두 석대를 만들되 높이는 포백척(布帛尺)으로 1척이요, 넓이는 8촌이며, 석대(石臺) 위에 둥그런 구멍을 만들어 <측우기를> 얹히는데, 구멍의 깊이는 1촌이니, 경신년(영조 16, 1740년)의 신제척(新製尺)을 사용하라.”

하였다.

#### 창덕궁측우대 측우기명(測雨器銘) (1782년)

“구리로 주조(鑄造)한 높이 1척 5촌, 원의 직경 7촌 되는 측우기로 우량(雨量)을 재는 것은 세종 24년(1442) 시작되었습니다. 서운관(書雲觀)과 각도(各道)의 군현(郡縣)에서 비가 올 때 마다 우량을 재어서 보고(報告)하였습니다. 선대왕(先大王, 영조) 46년(1770)에 옛 제도를 따라 창덕궁, 경희궁의 두 궁궐과 팔도(八道) 양도(兩都; 松都(개성), 江都(강화))에서 측우기로 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기기는 작으나 두 성조(聖祖; 세종, 영조)께서 물난리와 가뭄을 다스리는데 크게 힘쓰신 뜻이 거기에 있으니 어찌 소중하지 아니합니까?

성상 6년(정조6년, 1782) 여름 경기전역이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효험

이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성상께서는 자신을 책(責)하고 언로(言路)를 터놓으며, 친히 기우 제단에 나와 제사를 올리고, 밤새도록 머물러 있다가 날이 샌 뒤 옥문(獄門)으로 가서 사형수를 제외한 죄수들을 석방하여 비가 오기를 빌었습니다. 도성(都城)에 있는 백성들이 이를 우러러 보고 감격하며, 우는 사람까지 있었으며,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이처럼 애쓰시니 비가 꼭 올 것이고, 비록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비 온 것이나 같이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해가 지기도 전에 큰 비가 밤까지 내려 우량(雨量)이 1촌 2분이나 되었으니, 이는 실로 성상께서 지성하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그래도 비가 미흡한 것을 걱정하시고 내각에 분부하여 측우기를 이문원 정원에 설치하고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비가 흠족히 내리자 신(臣) 염조와 신(臣) 지검에게 글을 쓰라 하시니, 이 기쁨을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臣)들은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라,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먼저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감히 그 걱정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비가 온 다음에는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감히 그 기쁨을 함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측우기에는 임금과 백성들의 걱정과 기쁨이 얽혀있으니, 신(臣) 등이 공순하게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글을 새깁니다. 여기 있는 측우기의 1촌 1치를 보고도, 멀리 떨어진 곳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적으면 가물까 염려되고, 많으면 홍수 날까 상심하게 되니 언제나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분부를 받들어 직제학 신 심염조가 글을 짓고, 직제학 신 정지검이 글을 씁니다.”

### 『정조실록』 32권, 15년 (1791년) 4월 23일(정묘)

측우기의 수심 수치를 측량하는 법식을 정하다

전교하기를,

“측우기의 수심 수치를 써서 올릴 때 그 깊이가 매번 서로 다르고 시한도 역시 일정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른 새벽부터 오시(午時) 초삼각(初三刻)까지, 오정(午正) 초각부터 인정(人定)까지, 인정부터 다음날 이른 새벽 이전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써서 올리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잡기(雜技)에서 공로가 있는 자를 실직에 의망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뜻이 나름대로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의사(醫司)·역원(譯院)·화사(畵寫)·누국(漏局)·율관(律官) 등은 모두 명칭에 따라 실지 성과를 책임지우는 뜻이 있지만 무엇보다 관상감의 관원들은 가만이 누워서 출사 일수만 채우고 있으니, 무의미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비를 고대한 끝에 비가 왔는데도 수심의 수치를 성의껏 측량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두 제조가 검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제조를 추고하라. 앞으로 다시 소홀히 할 경우에는 본 관상감의 겸교수(敎授)를 전임시키는 규정을 없애고 삼력관(三曆官)과 수술관(修述官) 등의 봉록을 모두 임시로 줄일 것이며, 행수 관원(首官員)은 관상감의 대장에서 이름을 삭제하겠다. 이 전교를 그들이 숙직하는 곳에 써보내 명심하게 하라.”

하였다.

**『일성록』 정조17년 계축(1793년) 7월 17일(무신)**

수원부(水原府)에 측우기 및 주척(周尺)을 내려보냈다.

○ 수원 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본부에는 이달 13일에 먼지젼이 내린 뒤 14, 5일 이틀 동안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내의 방리(坊里)가 50개 면(面)인데 탄강(呑江) 아래쪽 바닷가에 위치한 30여 개 면은 13일에 비가 골고루 흡족하게 내려 과연 부족하다는 탄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수원부 근처와 탄강 위쪽의 여러 면은 그날 내린 비가 겨우 먼지젼에 불과했으므로 논외 작물에까지 손상이 가지는 않았지만 밭에 심은 여러 곡물 중 모래땅이나 메마른 고지대의 것은 더러 혹 병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원하게 비가 한번 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가 내린 곳에는 조도(早稻 올벼)가 한창 익어가고 중도(中稻 중벼)는 이삭이 패었고 만도(晩稻 늦벼)는 싹이 터서 각종 밭작물과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바다 근처 30개 면에는 비가 고르게 내렸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후에 농사 형편을 보고할 때에는, 수원부 이내 및 원근 각 면에 혹 이번처럼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차이가 날 경우 날날이 구별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여러 도(道)와 양도(兩都)에서는 비가 내린 상황을 모두 측우기 수심이 몇 치 몇 분이었다고 장계로 보고하니, 본부에서도 이에 따라 하라. 측우기와 주척은, 경의 아들이 해당 방에 있으니 호조에서 가져오게 해서 이 유지(有旨)까지 함께 내려보낼 것이니 경은 잘 수령하라.’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정조실록』 51권, 23년(1799년) 5월 22일(기묘)**

가뭄을 당하여 반성하고 풍속 교화에 힘쓰도록 전교하다 차대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참으로 덕이 부족하여 이런 가뭄을 당한 것이다. 주자(朱子)는 해, 달, 별이 온전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조화롭고 산은 벌거숭이가 되지 않고 못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만물이 제 자리를 잡고 잘 생육되는 공효를 삼았다. 만물이 자리를 잡고 생육되게 하는 일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

신해년 이후로 내린 비의 많고 적음을 반드시 기록해 두었는데 1년치를 통계해 보았더니, 신해년에는 8척 5촌 9푼이었고 임자년에는 7척 1촌 9푼이었고 계축년에는 4척 4촌 9푼이었고 갑인년에는 5척 8촌이었고 을묘년에는 4척 2촌 2푼이었고 병진년에는 6척 8촌 5푼이었고 정사년에는 4척 5촌 6푼이었고 무오년에는 5척 5촌 6푼이었다. 지난해와 올해의 이번 달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지난해 이달에는 측우기의 물깊이가 거의 1척 남짓이나 되었는데 올해 이 달에는 내린 비가 겨우 2촌이었다. 가을 추수가 어떨지는 미리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백성들의 실정은 참으로 매우 딱하다.

□

### ○ 조성연대

측우기의 가운데 단의 바깥에 새겨진 ‘도광(道光) 정유제(丁酉製)’라는 기록으로부터 도광 연호의 정유년에 해당하는 조선 헌종 3년(1837)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 현 상

원형의 청동 주물로 제작되어 있으며 하단과 중단 3단의 세 단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측우기(測雨器)이다. 하단의 아래쪽은 바닥이 막혀 있어 물을 담아 강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중단과 상단은 끼워 맞추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 1). 각 단의 연결 부위와 위쪽은 대나무처럼 도드라진 마디가 있다.



그림 1. 금영 측우기 하단(좌), 중단(중), 상단(우)의 모습(좌측)과 연결 부분 모습(우측)

세 단의 연결 부위는 홈의 두께나 모양이 약간씩 달라서 특정한 위치에서 잘 맞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세 단을 연결했을 때 각 단 사이에서 물이 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각 단의 원통 높이는 둘레를 따라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높이는 비슷해 보인다. 3차원 정밀 측정을 통한 정밀한 계측과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 내용 및 특징

측우기 중단의 외면과 하단의 아래에는 제작 당시 새긴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남아 있어 이름과 크기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중단에는 ‘금영 측우기(錦營 測雨器)’라는 이름과 함께 측우기의 높이, 직경, 제작 시기가 새겨져 있으며 하단의 바닥에는 측우기를 담당하던 통인(通引), 급창(及唱), 사령(使令)이라는 하급관리의 직책이 쓰여 있다(그림 2).

본 측우기의 제작 시기는 명문을 통해 1837년(헌종 3)에 충청도 공주 감영에서 설치해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측우기는 높이 31.86cm, 바깥지름 15.3cm의

원통형 모양으로 명문에 새겨진 높이 1척 5촌, 두께 7촌과 비교해보면 주척(周尺)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우기에 담긴 강수량을 측정하던 막대는 남아 있지 않다. 하단의 바닥에는 후대에 쓴 것으로 보이는 한자가 얇고 희미하게 보인다.

측우기의 세 단을 맞추면 안쪽 내경은 아래쪽과 위쪽이 같아지게 되는데 이는 강수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 적합한 모양이다. 측우기를 세 단으로 분리해서 만든 이유는 중단과 상단을 두어 측우기 안쪽의 물이 바깥으로 튀어 나가거나 바깥쪽의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강수량 측정시 중단과 상단을 분리해서 측정의 정밀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금영 측우기의 중단(좌) 바깥과 하단(우) 아래에 새겨진 명문

### ○ 문헌자료

현재 남아 있는 최초의 측우기 기록은 1441년(세종 23)에 찾아볼 수 있다.

**『세종실록』 92권 23년 (1441년) 4월 29일(을미)**

근년 이래로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젖어 들어 간 분수[分數]를 땅을 파고 보았었다. 그러나 적확하게 비가 온 분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는 궁중(宮中)에 두어 빗물이 그릇에 괴인 분수를 실험하였는데 ...(하략)

이후, 측우기와 측우기를 이용해 관측한 강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다수의 사서에 남아 있으며 측우기에 대한 현대 연구 자료와 사료도 많이 남아 있다.

### ○ 기 타

이 측우기는 충청도 공주 감영이 설치되었던 것인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71년 문화재 반환운동의 일환으로 중앙관상대가 다시 돌려받았고

현재 기상청이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대관 ‘금영 측우기’에서 발췌)  
금영 측우기가 제작 된 이후, 현재까지의 이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837년 충청도 공주에 제작 설치
- 1913년 충청도 도지사가 인천측후소장 와다유지(和田雄治)에게 전달
- 1915년 와다유지(和田雄治)가 개인적으로 일본으로 가져감
- 1918-1971년 와다유지(和田雄治) 사망 이후 일본 기상청에 보관, 전시
- 1969년 중앙관상대장(양인기)이 일본 기상청 장관(吉武素二)과 반환 협의
- 1971년 일본 기상청 장관(高橋浩一郎)이 중앙관상대에 금영 측우기 반환
- 1971년 금영측우기를 보물 제561호로 지정



그림 13. 보물 제561호 금영 측우기

### Ⅲ.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9-05-003

#### 3. 김육 초상 일괄(金堉 肖像 一括)

##### 가. 검토사항

‘김육 초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기도지사부터 ‘김육 초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7.20) 관계 전문가 조사(’18.9.20) 및 과학조사(’19.1.15~1.1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육 초상 일괄(金堉 肖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경기도(실학박물관)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 길 16 실학박물관
- 수 량 : 초상화 3점(전신좌상본 1, 와룡관본 2, 화첩본 3)
- 규 격 : ①전신좌상본: 화면 174.1×99.8cm, 전체 269.2×128.8cm,  
②와룡관본: 화면 118.6×50.0cm, 전체 171.7×65.4cm  
③화첩본: 화면 26.3×17.4cm, 전체 34.5×23.1cm
- 재 질 : 비단에 채색
- 형 식 : ①전신좌상본: 족자, ②와룡관본: 족자, ③화첩본 : 첩
- 조성연대 : ①전신좌상본: 1650년경, ②와룡관본: 1636년경, ③화첩본: 17세기 전반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육 초상화 일괄 유물은 역사적, 회화적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유물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1. 김육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조선 실학의 선구자로서 평가받고 있고, 대동법의 시행과 새로운 역법의 실현 등 사회적, 과학적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다. 또한 숙종의 외증조부로 왕실의 존경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본 유물에도 숙종, 영조, 정조의 화상찬이 수록되는 등 역사적, 문화사적으로 주목되는 인물이고 유물이다.
2. 김육 초상화 3점은 모두 중국인 화가에 의한 작품이고, 제작 동기와 시기, 화가가 여러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중국 명대의 화가 호병 및 청대의 화가 맹영광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 이를 통해서 한중 회화 교류의 상황을 밝힐 수 있고, 조선 초상화에 미친 중국 초상화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유물이다.
3. 전신교의좌상본과 화첩본은 모두 정면상으로 그려졌고, 교의에 표피가 나타나며, 의복을 표현하는데 서양화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수법인 사실적인 입체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 18세기 조선 초상화에 수용되어 조선 초상화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소들로서 회화사적 의의가 주목된다. 또한 '와룡관본(학창의본)'은 야외에서 거니는 모습의 소상으로서 조선 초상화에서는 없었던 형식으로 최근 전시된 바 있는 18세기에 제작된 <조문명 초상>과 같은 야외 초상화의 등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지정 가치 있음)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과 보관상자 등 일괄유물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첫째 김육 초상화 3점은 모두 중국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로서 明, 淸 교체기 한중 문화교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들임. 이들 초상화는 당시 조선의 문화계에 새로운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正面像이나 野外 燕居服 초상화가 제작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이들 초상화는 제작과 그 이후 감상과 관련한 많은 문헌자료가 있어 초상화와 관련한 문화적 맥락의 이해에 아주 중요하며, 추후의 연구도 필요함.

둘째, 김육은 우리나라 실학의 원조라 불리는 인물로, 대동법 시행 등 民生과 관련해 많은 업적은 남겼음. 또한 왕실과 인척을 맺어 숙종에게는 외증조부가 됨으로써, 숙종은 물론 영조, 정조의 畫像讚이 수차 작성되어 일부는 작품에 직접 적혀

있음. 왕실과 조선후기 문화사상으로도 중요한 자료임.

셋째, 김육 초상화 3점은 한 인물에 대한 다양한 초상화의 제작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존상태도 비교적 양호함. 중국 초상화의 구체적 제작 사례로서 조선시대 초상화와 비교연구, 장황의 방식에 대한 이해, 보관상자 제작방식 등 장래 연구가 필요함.

### ○(지정 가치 있음)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과 일괄유물은 다음 3가지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김육 초상화는 17세기 한중 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김육 초상화 3점은 모두 김육이 사행을 가서 중국화가들에게 주문한 초상화이다. 이 3점은 모두 중국 화가에 의해 그려졌지만 각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 관복본으로 그려진 것은 당시 조상 숭배를 위한 조종화의 양식을 띠고 있고, 와룡관본으로 그려진 것은 야외초상화 혹은 문인 행락도 양식을 취하였다. 화첩본은 작은 소본이지만 작가 맹영광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우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이다.

둘째, 김육 초상화는 초상화를 통한 군신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김육 초상화는 숙종, 영조, 정조의 어제찬을 받았는데, 이처럼 세 왕의 어제를 모두 받은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이는 국왕이 사대부의 초상을 어떻게 관람하고 반응하였는지 알 수 있는 사례로서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김육 초상화는 한 가문에서 초상화를 통해 조상에 대한 존숭과 가문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김육 초상화는 사후 18세기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었는데, 김육의 초상화와 어제를 포함한 관련 기록을 하나의 화첩으로 장첩함으로써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것이 현재까지 한 가문에서 관련 유물을 보관함까지 일괄 보존한 것은 매우 특기할만한 일이다. 한 가문에서 초상화를 통해 어떻게 선조를 기억하고 가문의 전통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 보완조사 필요

## 조사보고서



### ○ 현 상

金堉(1580-1658)의 초상화 3점 일괄유물로 족자 2점과 목제 보관상자, 화첩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족자 ①은 전신교의좌상본이다. 사모를 쓰고 흉배를 찬 관복 차림으로 공수를 하고 교의에 앉은 정면상이다. 도상과 화풍의 특징상 중국화가가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화면의 우상단에는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숙종의 어제시가 적혀있다. 견본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안면과 표피의 일부에 黑變된 부분이 있고, 화면에도 일부 손상이 있다. 유소가 있지만 가늘고 드리개도 작아서 원래의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원통형의 보관함은 2017년에 실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된 상태이다. 보존처리할 때 별도의 보관함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족자 ②는 전신입상본으로 와룡관을 쓰고 있어 와룡관본으로 지칭한다. 김육은 臥龍冠을 쓴 평상복 차림으로 야외의 소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이다. 화면 좌상단에 ‘胡炳之印’이 찍혀있어 중국 명대의 화가 호병의 작품임을 시사한다. 화면 우상단에는 1751년에 지은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화면의 비단과 채색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만 옷과 안면에 일부 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와룡관본의 보관함으로 추정되는 방형의 보관함은 실학박물관에서 보존처리하지 않았지만 양호한 상태이다. 화첩 ③은 청나라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김육의 초상화와 숙종, 영조, 정조의 어제 등을 비롯하여 여러 기록들이 수록된 본이다. 화면의 비단과 채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얼굴 부분의 피부 일부와 수염, 동정 부분에 흑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潛谷 金堉(1580-1658)은 大同法 시행에 크게 기여한 實學의 원조라 평가되는 인물이다. 그는 중국의 明, 淸 교체기인 1636년(인조14), 1640년대, 1646년, 1650년(효종1) 등 여러 차례 중국에 사신으로 파견된 중국통이었다. 대중외교와 신문물 수입, 그리고 조선의 民生을 위한 대동법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김육의 아들 金佑明(1619-1675)의 딸이 현종과 결혼하여 왕실의 인척이 되어 이후 등극한 숙종의 외증조부가 되었다. 숙종은 김육을 존경하였고, 그의 초상화에 직접 찬문을 짓기도 하였다. 김육에 대한 존숭은 영조와 정조, 예제로

이어져 두 국왕도 김육의 초상화에 찬을 지었다. 김육 초상화 일괄은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어제 찬문과 함께 전해지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김육 초상화 세 점이 모두 중국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점도 주목된다. 김육의 초상화 일괄은 명과 청이 교체하는 격동기라는 시대적 배경 중에도 중국화가가 제작한 초상화가 조선에 전래되어 전승되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육 초상화 중 전신교의좌상본은 구성과 표현에서 중국 초상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 화가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모를 쓰고 녹색 단령에 단학홍배를 착용한 채 공수자세를 하고 있으며, 표피가 깔린 검은 교의에 앉아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 작품은 좌안칠분면의 초상화가 주류이던 조선에서 정면 초상이 그려지는데 영향을 주었고, 교의에 표피를 깔은 것도 이후 조선 초상화에 영향을 준 요소로서 한중 초상화 교류를 시사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안면의 묘사 방식과 다소 굵고 둔탁한 윤곽선의 구사, 윤곽선 주변에 음영을 강조하여 입체감을 내는 기법 등은 동시대 조선 초상화와 차이가 있다. 이 작품의 오른쪽 위에는 1713년에 지은 숙종의 어제찬문이 적혀있다.

김육 초상화 중 와룡관본은 화면 오른쪽 위에 ‘潛谷金文貞公小像’이라고 표제되었고, 이어 1751년(영조27)에 영조가 지은 어제찬이 기록되어 있다. 화면 왼쪽 위에 ‘胡炳之印’과 ‘鶴鶴行人’이라는 인장이 있어서 중국화가 胡炳이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큰 소나무 아래 평상복인 두루마기, 野服을 입고 거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김육과 신의성의 기록 중 두루마기는 鶴氅衣라고 하였고, 관은 綸巾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을 익숙하지 않은 와룡관이나 윤건이라는 용어보다는 조선에서 자주 사용하였던 용어인 학창의와 관련시켜 ‘학창의본’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구성과 묘사는 중국에서 유행한 양식으로 이후 조선에서도 야복차림의 야외 초상화가 그려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김육이 지은 『朝京日錄』에는 1637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중국화가 호병이 크고 작은 초상화 두 점을 그렸다는 기록이 있다. 전신교의좌상의 홍배는 단학홍배로 당시 김육의 품계와도 일치하여 전신교의좌상과 와룡관본 소상이 모두 호병의 작품일 가능성도 있다.

화첩본 초상화는 중국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반신상이다. 맹영광은 1645년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3년 후인 1648년 귀국하였는데, 조선에 체재하는 동안 많은 작품을 제작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화면의 왼쪽 위에 ‘孟永光寫眞讚’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화가를 알 수 있다. 화첩본의 초상화는 호병의 초상화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표현으로 예술성이 높다. 이 화첩에는 초상화 이외에도 김육의 5대손 金時默(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金持默(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申翊聖(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姜碩期的 「附序」, 계회의 座目, 계원의 詩 일부 등이 합쳐되어 있다. 따라서 맹영광이 그린 반신상이 포함된 화첩은 내용상 가장 늦은 정조연간 집안에서 함께 모아 成帖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좌상본과 와룡관본의 초상화에는 각기 원통형, 사각통형 보관함이 달려 있는데, 이 보관함들과 관련하여서는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육 초상화와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

##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본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한국미술사연구소, 1999.3)

### \*와룡관본 관련 기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題寫眞小軸」

獨立長松下。烏巾鶴髦翁。風塵多少恨。不與畫相同

申翊聖, 樂全堂集 卷八 「潛谷小像贊」

以爲伯厚也, 則綸巾鶴髦,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川(화첩에는 潛谷)草廬之先生。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 \* 화첩본 관련 기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別寫眞孟永光」

神妙南京孟畫師 寫眞毫髮細無遺, 東歸何敢忘君惠 吾面看時子面思

### \*계회 관련 기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九 「甲會契帖序」

契會之作。非古也。世道已降。人心日趨於薄。相愛之情。有所不足。於是乎託契以求親。是猶膠多而不連。契可無作也。雖然。人之相愛者。竝世而生。亦難矣。而況於同歲乎。四海之廣。同歲者固多。而同一國難矣。同一國固難。而同仕乎朝。爲尤難矣。夫以相愛之情。有此三同之難。而非契會則無以團欒一席。接殷勤之歡。契亦不可以無作也。嗚呼。作契之初。李監司汝復(이경용)實主張是。而完豐府院君李公(이서)贊成之。二公今皆爲泉下之人。而權舍人公潤(권심), 金都憲士逸。又相繼而逝。十餘年來。零落已多。生同而死不同。是固脩短之不齊。而相愛之既切。則相痛之亦深。每作會而少四人。未嘗不泫然而涕洟也。吾庚皆已六十

矣。以百年之壽槩之。則後死者不過數十年之遲耳。餘存而獨悲者與不悲之無窮期者。果孰優哉。吾契中得人最多。相乎將乎。功業赫然。而其明揚展布。登擢於上列者。亦且不少。不佞濫廁於其間。常竊自愧。而亦自幸其附驥也。茲敢作爲一帖。題其名姓。序以月日之先後。而不以爵者。亦鄉黨尚齒之義也。如有聞風而追入者。將竝許之。人多則會亦頻。數十年間。頻會而娛餘生。以慰相痛獨悲之懷者。不亦善乎。諸公屬余爲序。以記其事。故不敢以不文辭。崇禎紀元辛巳(1641)仲春。清風金堦。序

## ○ 기 타

본 유물 일괄은 김육의 후손가에서 보관되다가 2007년과 2008년에 두 번에 걸쳐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일괄 유물 중 일부이다.



## ○ 현 상

金堦(1580-1658)의 초상화 3점 일괄유물로 족자 2점과 목제 보관상자, 화첩 1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족자 ①은 관복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향해 교의에 앉은坐像으로 1650년경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중국화가가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의좌상의 우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시가 적혀있는데, 김육은 숙종에게 외증조부가 된다. 안면부에 일부 黑變이 있고, 화면에도 조금씩 손상이 발견되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원래 조선시대 초상화는 좌안칠분면이나 중국의 正面像이 조선에 소개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작품 중 하나이다. 족자 ②는 臥龍冠을 쓰고 야외의 소나무 아래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초상화이다. 이 작품은 목제상자의 내부에 후손이 써 놓은 쪽지에 의하면 1636년 청나라 화가 胡炳이 그린 것이라 한다. 이점은 관련 문헌에도 나오며, 또 화면 좌상단에 ‘胡炳之印’이 찍혀있어 사실임이 확인된다. 화면 우상단에는 1751년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이 작품 역시 안면부의 흰색 수염, 흰색 의복 등에 변색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화첩 ③에는 청나라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상반신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화첩에는 초상화 이외에도 김육의 5대손 金時默(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金持默(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申翊聖(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姜碩期的 「附序」, 계회의 座目, 계원의 詩 일부 등이 합첩되어 있다. 따라서 맹영광이 그린 반신상이 포함된 화첩은 내용상 가장 늦은 정조연간 집안에서 함께 모아 成帖한 것으로 보인다.

## ○ 내용 및 특징

潛谷 金堉(1580-1658)은 大同法 시행에 크게 기여한 實學의 원조라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중국의 明, 淸 교체기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다녀오며 외교와 신문물 수입, 그리고 조선의 民生을 위한 여러 사업에 큰 역할을 하였다. 김육의 아들 金佑明(1619-1675)의 딸이 현종과 결혼하여 왕실과 인척관계를 이루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호란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역할을 한 숙종은 외증조부 되는 김육을 존경하였으며, 초상화에 찬문을 짓기도 하였다. 김육에 대한 존숭은 숙종의 아들 영조, 영조의 손자 정조에게로 이어져 이들의 초상화찬도 전한다. 김육 초상화 일괄은 바로 이런 김육에 대한 조선시대 역대왕들의 어제 찬문과 함께 전해지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한편 김육 초상화 일괄은 모두 중국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점도 주목된다. 明, 淸 교체기에는 혼란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은 인적, 물적 교류가 이어져 조선후기 문화의 풍성함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시기이다. 김육의 초상화 일괄은 이런 시대적 배경 하에서 중국 초상화가 조선에 전래되어 감상 내지 전승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김육 초상화 중 전신좌상본은 1650년 연행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조선에서는 본래 좌안칠분면 초상화를 그렸으나, 김육의 이 작품을 선구로 중국식 정면상 초상화가 조선에 수입되어 이후 정면상이 그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중 초상화 교류사에 중요한 작품이다. 이 작품 우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찬문이 적혀있다.

김육 초상화 중 원유관본은 좌상단에 찍힌 인장으로 중국화가 胡炳에 의해 그려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큰 소나무 아래 野服을 입고 자유롭게 산보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초상화이다. 이 역시 중국에서 성행한 양식으로 이후 조선에서도 이런 야복 차림의 야외 배경의 초상화가 그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 작품의 우상단에는 1751년(영조27) 지은 영조의 어제가 적혀있다.

김육 초상화 중 화첩본은 중국 화가 孟永光(17세기)이 그린 반신상 소품이다. 맹영광은 1645년 소현세자를 따라 조선에 왔다가 3년 후인 1648년 귀국하였는데, 조선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좌상단에 ‘孟永光寫眞讚’이 적혀 있어 작자를 확실히 알 수 있다. 김육 초상화 반신상이 들어있는 화첩에는 이밖에 영조와 정조의 초상화찬, 김육의 벗 신익성의 화상찬이 포함되어 있다. 또 김육과 1680년생 동갑계의 서문과 좌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반신상 초상화와는 무관하나 정조 연간 함께 成帖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좌상본과 원유관본 초상화에는 각기 원통형, 사각통형 보관함이 달려있는데, 이들도 관련 자료로 보존, 연구할 가치가 있다.

## ○ 문헌자료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본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한국미술사 연구소, 1999.3)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題寫眞小軸」

獨立長松下。烏巾鶴鬢翁。風塵多少恨。不與畫相同

申翊聖, 樂全堂集 卷八 「潛谷小像贊」

以爲伯厚也, 則綸巾鶴鬢,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川(화첩에는 潛谷)草廬之先生。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別寫眞孟永光」

神妙南京孟畫師 寫眞毫髮細無遺, 東歸何敢忘君惠 吾面看時子面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九 「甲會契帖序」

契會之作。非古也。世道已降。人心日趨於薄。相愛之情。有所不足。於是乎託契以求親。是猶膠多而不連。契可無作也。雖然。人之相愛者。竝世而生。亦難矣。而況於同歲乎。四海之廣。同歲者固多。而同一國難矣。同一國固難。而同仕乎朝。爲尤難矣。夫以相愛之情。有此三同之難。而非契會則無以團爨一席。接殷勤之歡。契亦不可以無作也。嗚呼。作契之初。李監司汝復(이경용)實主張是。而完豐府院君李公(이서)贊成之。二公今皆爲泉下之人。而權舍人公潤(권심), 金都憲士逸。又相繼而逝。十餘年來。零落已多。生同而死不同。是固脩短之不齊。而相愛之既切。則相痛之亦深。每作會而少四人。未嘗不泫然而涕洟也。吾庚皆已六十矣。以百年之壽槩之。則後死者不過數十年之遲耳。餘存而獨悲者與不悲之無窮期者。果孰優哉。吾契中得人最多。相乎將乎。功業赫然。而其明揚展布。登擢於上列者。亦且不少。不佞濫廁於其間。常竊自愧。而亦自幸其附驥也。茲敢作爲一帖。題其名姓。序以月日之先後。而不以爵者。亦鄉黨尚齒之義也。如有聞風而追入者。將竝許之。人多則會亦頻。數十年間。頻會而娛餘生。以慰相痛獨悲之懷者。不亦善乎。諸公屬余爲序。以記其事。故不敢以不文辭。崇禎紀元辛巳(1641)仲春。清風金堉。序

○ 기 타

잠곡 김육의 후손가에서 2007년, 2008년 두차례 나누어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일괄 유물 중 포함됨.

□



## ○ 현 상

김육(金堉, 1580-1658)의 초상화3점(족자 2, 화첩 1)으로 이루어진 일괄유물이다.

①<전신좌상본>은 관복정장 차림으로 정면을 향해 호피를 덮은 交椅에 앉은 좌상이다. 안면부에 일부 흑변(黑變)이 있고, 화면에도 조금씩 손상이 발견되나 전체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이다. 얼굴은 천연두 앓은 흔적까지 자세하고, 가슴의 흉배와 호피무늬도 정교하다. 의복 주름마다 음영이 깊게 들어가 있다. 우측 상단에는 숙종의 어제찬(御製贊)이 적혀있다. 숙종의 어제찬은 다음과 같다.

蒼顏鶴髮 望如仙風  
厥像伊誰 潛谷相公  
大賢之後 傳家孝忠  
正色廊廟 盡瘁鞠躬  
一心體國 神明可通  
於乎先正 小子欽崇<sup>1)</sup>

②<와룡관본>은 와룡관(臥龍冠)을 쓰고, 학창의(鶴擎衣)를 입고 야외의 소나무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산수를 배경으로 삼았으며 우측 상단에는 “潛谷金文貞公小像”라는 표제(標題)와 영조(英祖)의 어제찬이 적혀있다. 그림의 왼쪽 위에는 “胡炳之印”과 “蘇鶴行人”의 인장이 찍혀 있다. 이 작품 역시 안면부의 흰색 수염, 흰색 의복 등에 변색이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보존이 양호하다. 영조의 어제찬은 다음과 같다.

綸巾鶴擎 倚立松風  
是誰之像 潛谷金公  
昔之股肱 爲國丹忠  
效古人義 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辛未二月<sup>2)</sup>

③<화첩본>에는 김육의 상반신 초상화가 포함되어 있다. 검은색의 사모(紗帽)와 푸른색 도포를 입은 김육의 정면상이다. 배경은 없으며 위쪽 오른쪽에 “領議政潛谷

1) 『列聖御製』 권16 「潛谷金相國畫像贊」 및 실학박물관(2014), 22면.

2) 실학박물관(2014), 17면.

金文正公小眞”이라는 제목이, 원편에는 맹영광(孟永光)이 지은 讚文이 적혀있다. 안면과 작품 일부에 흑변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좋으며, 얼굴과 의복의 주름에 음영이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다. 맹영광의 찬문은 다음과 같다.

雪髮霞儀 外形內德  
君子觀之 是無不識  
右孟永光寫眞讚.<sup>3)</sup>

이 화첩에는 초상화 이외에도 김육의 5대손 김시묵(金時默, 1722-1772)이 쓴 영조의 어제, 김시묵의 동생 김지묵(金持默, 1725-1799)이 쓴 정조의 어제,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이 짓고 쓴 「潛谷先生小像讚」, 김육이 1641년 쓴 「同甲契會序」와 강석기(姜碩期)의 「附序」, 계획의 좌목(座目), 계원의 시 일부 등이 합침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김육은 명청 교체기에 4번에 걸쳐 사행을 다녀왔다. 1636년에는 명나라 동지사(冬至使)로, 청 왕조가 세워진 이후인 1643년에는 심양(瀋陽)에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1645년에 사은부사로 연경(燕京)에, 1650년에 진향사(進香使)로 연경에 다녀왔다. 중국 방문 과정에서 현전하는 김육 초상화 전신좌상본, 와룡관본, 화첩본 3본이 제작되었지만 세 본의 초상화 제작 시기가 초상화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 구분은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 한다.

### ①<전신좌상본>

김육 초상화, <전신좌상본>은 1637년 여행시 제작되었다는 견해와 1650년 여행시 제작되었을 것이란 견해가 있다. 두 견해 모두 중국 초상화가가 그렸을 것란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sup>4)</sup> 정면상으로 당시 유행하던 중국 조종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손은 소매 속에 넣은 공수자세로서 조선의 초상화 형식을 따랐다. 숙종의 어제찬이 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1713년 숙종의 어제 제작시 사대부의

3) 실학박물관(2014), 18면. 이 글씨를 누가 언제 적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후대에 成海應(1760-1839)이 쓴 기록에 근거하여 이 초상화가 孟永光의 작품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持杖獨立”이라는 구절이 <소상>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 成海應도 이이명처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 이성훈(2019), 746-747면.

4) <와룡관본> 제작 연도는 보통 1637년으로 추정되는 반면, <전신좌상본> 제작시기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다. 조선미는 『잡곡유고』에서 1637년 호병이 소진을 그렸다는 기록을 근거로 <와룡관본>을 1637년 작품으로, <전신좌상본>을 작자 미상의 1650년 작품으로 추정했다. 조선미, 『초상화연구: 초상화와 초상화론』(문예출판사, 2007), p. 245; 260. 정은주, 이경화, 이성훈, 조인수는 1637년 <와룡관본>과 함께 제작되어 가져왔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정은주, 「중국사행에서 제작된 조선사신의 초상」, 『명청사연구』 33(2010), pp. 23-28; 이경화, 「이광정 초상: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美術史學』 36(2018); 이성훈, 「조선 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 304-308; 742-750; 조인수, 「잡곡 김육의 초상화 세 점에 대하여 -제작과 전승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37(한국실학학회, 2019), pp.137-168.

초상화를 열람하고 찬문을 내린 정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 숙종과 이이명과 나눈 대화가 자세하다.<sup>5)</sup>

## ② <와룡관본>

김육 초상화, <와룡관본>은 1637년 중국화가 胡炳에 의해 그려진 작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637년 김육이 초상화를 그려올 때의 상황은 『朝京日錄』에 자세하다. 1637년 3월 13일에 胡炳이 초상을 그려 갔으며(胡炳 寫眞而去), 4월 11일에 초상을 그려서 왔다(胡炳寫眞來). 그리고 4월 15일에는 작은 초상을 그려왔기에 양한 마리, 거위 한 마리, 인삼 석 냥, 부채 세 자루를 주었다(胡炳寫小眞來 贈羊一鵝一 參三兩 扇三柄).<sup>6)</sup>

이 <와룡관본>에 대해서는 김육 자신의 자찬문<sup>7)</sup>과 김육의 사돈이었던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찬문이 있다.<sup>8)</sup> 신익성의 몰년이 1644년이기 때문에 <와룡관본>의 하한선이 1644년이라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영조의 어제찬이 있는데, 당시 영조가 김육의 초상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은행(濫行)을 다녀오는 길에 대동비를 보고 대동법을 시행했던 김육을 떠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sup>9)</sup> 1751년(영조 27) 영조는 김시묵(金時默)에게 조부 김육의 화상 및 <甲會帖>을 가져올 것을 명하여 직접 살펴보고 숙종의 어제찬과 <갑회첩>에 있는 김육의 칠언시에서 차운하여 찬을 지었다.<sup>10)</sup> 영조의 어제찬 중 숙종의 어제찬에 차운한 것은 <와룡관본> 위와 <화첩본> 안에 모두 쓰여 있고, 김육의 칠언시에 차운한 것은 <화첩본>에만 포함되어 있다.

당시 중국에서 그려온 초상화가 대부분 祖宗畫 양식을 띠었던 것과 달리 당시 중국 문인들의 자의식을 그리던 야외초상화, 혹은 行樂圖 양식을 띠고 있다. 소나무 아래에 와룡관과 학창의 도상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조선에서 은일의 모델로 추종되던 도연명(陶淵明)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11)</sup>

## ③ <화첩본>

김육 초상화 중 화첩본은 반신상은 작가의 찬문과 함께 초상에 대한 기록이 『잠곡유고』에 남아있어 1644년 중국 방문 당시 맹영광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2)</sup> 김육은 1643년 12월부터 1644년 9월까지 9개월간 소현세자(昭顯世子,

5) 『承政院日記』 477책, 숙종 39년 5월 6일(임오).

6) 『朝京日錄』, 『국역 연행록선집 2권』, pp. 350-358; 조인수, 위의 논문, 재인용.

7) 『潛谷遺稿』 卷二, <題寫眞小軸>.

8) 『樂全堂集』 卷八, 書後「潛谷小像贊」.

9) 『承政院日記』 1063책, 영조 26년 12월 5일(갑술). 이성훈(2019), 306면 및 639면에서 재인용.

10) 『영조실록』 73권, 27년 2월 3일(신미). 조인수(2019) 재인용.

11) 조인수(2019), pp. 137-168.

12) 김육, 『潛谷遺稿』 卷二, 時 七言絶句 一百十日首, 「別寫眞孟永光」

1612-1645)의 원자보양관으로 심양에 머물렀다. 맹영광은 그 시기 연을 맺은 한족 화가로, 김육이 1644년 조선으로 돌아갈 때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초상화를 그려준 것으로 보인다.<sup>13)</sup> 좌상단에 ‘孟永光寫眞讚’이 적혀 있고, 맹영광의 찬문이 오른쪽에 적혀있다. 다만 맹영광의 찬문에 대해서는 누가 적었는지, 맹영광의 작품인지 의심하는 견해가 있다.<sup>14)</sup>

김육 초상 화첩본은 후대에 《김육화상첩》으로 장첩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김육 초상(화첩본)>이 제작된 시기는 1644년이지만 화상첩에는 숙종, 영조, 정조에게 내려 받은 어제찬이 각각 김육의 후손 김성하(金聖廈, ?~?) 김시묵(金時默, 1722~1772) 김지묵(金持默, 1725~1799)에 의해 이서되어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청풍김씨 가문 후손들에 의해 장첩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첩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김육화상첩》은 총 20면으로, 제 2면에는 맹영광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김육 초상(화첩본)>이 장황되어 있다.<sup>15)</sup> 이어 제 3면과 4면에는 <김육 초상(와룡관본)>에 대해 신익성의 찬문이 남아있다. 제 5면에서 16면까지는 1641년에 김육이 동갑 인사들과 계획을 가진 후 작성한 <계획서(契會序)>와 계획 참석자 중 한 사람인 강석기(姜碩期, 1580-1643) 등이 작성한 7언 율시가 적혀 있다. 제 17에서 20면까지는 숙종, 영조, 정조가 내린 어제찬이 후손에 의해 이서되어 있다. 숙종과 영조의 어제는 앞서 언급한 것이며, 정조의 어제는 『홍제전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6)</sup> 정조가 어떤 계기로 김육의 초상을 보게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정조 어제찬은 숙종, 영조 어제찬을 차운하였으며, 영조의 어제찬과 마찬가지로 ‘대동법’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김육화상첩》은 <김육 초상(화첩본)>, 신익성의 찬문과 후손들에 의해 이서된 세 국왕의 어제찬, 그리고 1641년 김육이 참여한 갑회계에 대한 기록 등 3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듯 《김육화상첩》에 포함된 내용은 김육 관련 기록 중 후대 국왕들에 의해 언급되거나 어람된 것들을 묶어 보여줌으로써 청풍김씨 가문을 일으켰던 김육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17세기 말 정치적 몰락을 겪은 청풍 김씨 가문이 18세기에 들어 다시 정계에 진출하면서 가문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왕의 충애를 얻었던 김육을 중심으로 화상첩을 재제작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13) 기존의 연구는 『權域書畫徵』의 기록에 따라 맹영광의 조선 입국이 소현세자의 1645년 입국과 함께 이뤄졌다고 했지만, 『仁祖實錄』에 따르면 맹영광은 인평대군과 함께 1647년 조선에 입국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육과 맹영광은 1644년 심양에서 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김일환, 「漢族화가 孟永光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의 기억들」, 『동아시아문화연구』 60(2015), pp. 107-131.

14) 이성훈(2019), 746-747면.

15) 화첩 구성에 대한 설명은 이성훈, 앞의 논문, p. 304.

16) 『弘齋全書』 卷4, 「敬次肅廟大朝御製韻 題文貞公金堉小眞」. 清高遺像 彷彿儀風/大同經綸 一心奉公/濟世之才 肝膈之忠/存心愛物 謹厚飭躬/民賴于今 至誠所通/允矣君子 千載欽崇.

○ 문헌자료

참고 문헌 (가나다순)

- 김일환(2015), 「漢族 화가 孟永光에 대한 조선 후기 지식인의 기억들: 명청교체기 명나라 포로와 조선 지식인의 만남」, 『동아시아문화연구』 60  
실학박물관, 『칭풍김씨 김육가문 기증자료 보고서』, 2014, pp. 22-29.
- 안휘준(1979), 「來朝 中國人畫家 孟永光에 對하여」, 『全海宗博士 華甲紀念私學論叢』, 一潮閣
- 이경화(2018), “이광정 초상: 중국과 조선에서 그린 조선 문인의 초상화,” 『美術史學』 36
- 이성훈, 「조선후기 사대부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2019), pp. 744-745.
- 정은주, 「부경사행에서 제작된 조선 사신의 초상」, 『명청사연구』33(명청사학회, 2010).
- 조선미, 「조선후기 중국초상화의 유입과 한국적 변용-부경사신래지본을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14(2002.9).
- 조인수, 「잠곡 김육의 초상화 세 점에 대하여 -제작과 전승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37(한국실학학회, 2019).
- 진준현, 「인조-숙종 연간의 대중국 회화교섭」, 『강좌미술사』 12호(한국미술사연구소, 1999.3).

○ 원전문헌

金堉, 『朝京日錄』 (『潛谷遺稿』 卷十四 및 『국역연행록선집 2권』)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題寫眞小軸」

獨立長松下。烏巾鶴髦翁。風塵多少恨。不與畫相同

申翊聖, 樂全堂集 卷八 「潛谷小像贊」

以爲伯厚也, 則綸巾鶴髦, 非丁丑以後之衣冠; 以爲非伯厚也, 則紅顏白髮, 卽牛川(화첩에는 潛谷)草廬之先生。撫孤松而盤桓, 蓋欲追栗里之淵明者耶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二, 「別寫眞孟永光」

神妙南京孟畫師 寫眞毫髮細無遺, 東歸何敢忘君惠 吾面看時子面思

金堉, 潛谷先生遺稿卷之九 「甲會契帖序」

契會之作。非古也。世道已降。人心日趨於薄。相愛之情。有所不足。於是乎託契以求親。是猶膠多而不連。契可無作也。雖然。人之相愛者。竝世而生。亦難矣。而況於同歲乎。四海之廣。同歲者固多。而同一國難矣。同一國固難。而同仕乎朝。爲尤難矣。夫以相愛之情。有此三同之難。而非契會則無以團爨一席。接殷勤之歡。契亦不可以無作也。嗚呼。作契之初。李監司汝復(이경용)實主張是。而完豐府院君李公(이서)贊成之。二公今皆爲泉下之人。而權舍人公潤(권심), 金都憲士逸。又相繼而逝。十餘年來。零落已多。生同而死不同。是固脩短之不齊。而相愛之既切。則相痛之亦深。每作會而少四人。未嘗不泫然而涕洟也。吾庚皆已六十矣。以百年之壽槩之。則後死者不過數十年之遲耳。餘存而獨悲者與不悲之無窮期者。果孰優哉。吾契中得人最多。相乎將乎。功業赫然。而其明揚展布。登擢於上列者。亦且不少。不佞濫廁於其間。常竊自愧。而亦自幸其附驥也。茲敢作爲一帖。題其名姓。序以月日之先後。而不以爵者。亦鄉黨尚齒之義也。如有聞風而追入者。將竝許之。人多則會亦頻。數十年間。頻會而娛餘生。以慰相痛獨悲之懷者。不亦善乎。諸公屬余爲序。以記其事。故不敢以不文辭。崇禎紀元辛巳(1641)仲春。清風金堦。序

肅宗 御製, 『列聖御製』 권16 「潛谷金相國畫像贊」

蒼顏鶴髮 望如仙風  
厥像伊誰 潛谷相公  
大賢之後 傳家孝忠  
正色廊廟 盡瘁鞠躬  
一心體國 神明可通  
於乎先正 小子欽崇

英祖 御製 1

綸巾鶴氅 倚立松風  
是誰之像 潛谷金公  
昔之股肱 爲國丹忠  
效古人義 竭心鞠躬  
大同謀畫 可謂神通,  
吁嗟小子 百載欽崇.  
辛未二月

英祖 御製 2

當宁御製 英宗大王  
吁嗟此日追思公  
白髮蒼顏已暮翁  
六十五旬豈曰異  
今來古往亦云同  
綸巾鶴氅卽常服  
烏紗綠袍屬畫工  
何意得看潛谷像  
題詩聊次數篇中  
五世孫時默奉教書

正祖 御製, 『弘齋全書』 卷四 春邸錄四 <敬次肅廟大朝御製韻 題文貞公金堉小眞>

清高遺像 彷彿儀風  
大同經綸 一心奉公  
濟世之才 肝膈之忠  
存心愛物 謹厚飭躬  
民賴于今 至誠所通  
允矣君子 千載新崇

## ○ 기 타

잠곡 김육의 후손가에서 2007년, 2008년 실학박물관에 기증한 일괄 유물 중 포함됨.



그림14. 김육 초상(전신좌상본), 1650년 경



그림15. 김육 초상(전신좌상본 세부)



그림 16. 김육 초상(와룡관본), 1636년 경



그림17. 김육 초상(화첩본), 17세기 전반



#### 4.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 가. 검토사항

‘경주부사선생안’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경주부사선생안’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6.1) 관계 전문가 조사(‘17.3.18) 및 보완조사(‘19.4.18), 경주시립도서관 소장 관련 문화재에 대한 비교조사(‘19.4.1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경주부사선생안(慶州府司先生案)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 2종 2책(舊案: 불분권 1책, 新案: 불분권 1책)
- 규 격 : 舊案: 75.0×40.0cm, 新案: 75.0×40.0cm
- 판 종 : 필사본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철장(鐵裝)
- 조성연대 : 舊案: 1523년(중종 18), 新案: 1741년(영조 17)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일반적으로 『先生案』은 당해 官府의 古今 首吏의 姓名과 그들의 四祖를 기록한 名案으로 특히 首吏로 부임한 연도와 印信을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當該 官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慶州府司先生案』도 慶州府의 歷代 各種 戶長의 名案과 그들에 관련된 記錄으로 慶州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과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原資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속되는 累加·追錄 本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府司先生案』(舊案, 新案)은 고려시대의 원본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작성된 기록으로서 ‘책이 오래되어 종이가 낡고 글자에 오탈이 있는 것’을 새롭게 종이를 구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예법에 맞추어 累加·追錄하였던 원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 과학조사를 통하여 『府司先生案』(舊案, 新案)의 장황 형태는 조선시대 어람용 의례에 사용되었던 비단 冊衣를 사용하였으나, 변철과 내지 종이는 분상용에 사용되는 저주지와 철제 변철을 사용하였다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이는 舊案이 新案에 비하여 좀더 두껍고 좋은 上質의 종이를 사용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종이의 제작과 사용에 있어서도 임진난을 전후한 시대적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 외에 조선시대의 기록문화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府司先生案』(舊案, 新案)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까지 慶州府를 중심으로 한 중요 기록이라는 점, 시대를 달리하며 累加·追錄하여 그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연속된 자료라는 점에서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주의 『[慶州]府司先生案』은 단순한 호장의 명부라기보다 수호장의 명단이며, 호장층의 世系와 구안과 신안의 전승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는 중종 18(1523)년 안일호장 金多慶이 당시에는 전래되고 있던 공민왕 10(1361)년 호

장정조 李弼 등이 편찬한 ‘慶州司首戶長行案’을 저본으로 충렬왕 7(1281)년까지 거의 250년을 소급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고려시대까지의 사정까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慶州]府司先生案』의 구안(경주43638)은 중종 18(1523)년에 제작해 숙종 39(1713)년까지 추록되었고, 신안(경주43639)은 영조 17(1741)년에 성책해서 한일 합방까지 추록된 것이다. 이 두 선생안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 원본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추록하여 조선 말기까지 추록되었고, 최초의 서문을 추가하여 그 경위가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전래되고 있는 대부분의 선생안은 조선시대의 인물이 중심인데 비해, 본서는 고려시대부터 수록된 선생안으로서 가장 이른 시기의 향리 명단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내용상 시작은 구안은 충렬왕 7(1281)년 호장 金成庇부터 수록되었고, 신안은 융희 원(1907)년 嚴守旻에 이어 崔炳教까지 한일합방(1910)까지 추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서 장장 630년간 경주 호장의 명단을 망라할 수 있다. 국립경주 박물관 수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本)은 原本에 가까운 자료라는 점에서, 『[慶州]府司先生案』(新本)은 『[慶州]府司先生案』(舊本)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속되는 追錄本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두 자료는 연속적인 원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慶州]府司先生案』은 慶州府의 역대 호장의 名案이며, 호장마다 직함과 성명 아래에 소자로 四祖·掌印年月日·詣闕肅拜·紅鞵下賜 등이 부기되어 있다. 사조를 밝힌 것은 자신들은 전통적인 가문출신임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首吏로서 印信을 맡은 날짜를 기록한 것은 그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 예가 세조 6(1461)년 5월11일 차정되어 19일 開印行公했으나, 정처를 돌보지 않고 천첩만 돌봐 인신을 인계받지 못한 호장 鄭自良을 기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경주부의 行政·人事·人物史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지방에서의 호장의 권위는 대단했던 까닭인지 구안·신안을 막론하고, 『[慶州]府司先生案』의 지질·규격·장황·수록내용의 수준에 있어 중앙에서 파견된 관찰사의 명단인 『慶尙道營主題名記』와 비견될 정도로 손색이 없다. 따라서 관찰사, 부사, 향리와 의 관계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과 같이 국립경주박물관의 『[慶州]府司先生案』 2책은 『慶尙道營主題名記』와 함께 경주 최고의 전적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입하기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 듯,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의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각종 『先生案』에 관해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細部調査書

당초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문화재는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案)이었다. 그러나 국가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과정에서 지정신청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문화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추가로 제1차(2019.04.18.)와 제2차(2019.05.23.)에 걸쳐 再調査 및 追加調査가 실시되었다.

제1차의 추가 조사된 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①『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 ②『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案), ③『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新案)의 3책과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①『道先生案』, ②『府尹先生案』, ③『戶長先生案』, ④『上詔文先生案』, ⑤『講武堂先生案』의 5책 등 도합 9책이다. 제2차로 추가 조사된 문화재는 상주향교 소장의 ①『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1책이다.

제1차와 제2차의 再調査 및 追加調査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①『慶尙道營主題名記』, ②『府尹先生案』, ③『戶長先生案』의 3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으나, 이들은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과 大同小異하여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의 조사로 대체되었다.

<表 1> 調査對象의 各種『先生案』과 所藏處 및 그 內容

番號	書名	一名	所藏處	內容	備考
01	『慶尙道營主題名記』	『棠下題名記』 『道先生案』 『道先生案』 『營先生案』	國立慶州博物館 尙州鄉校 慶州市立圖書館 서울大圖書館 서울大奎章閣	慶尙道の 歷代 觀察使의 姓名 및 赴任과 交替 등에 관한 각종 관련 記錄	慶尙道營主題名記 奎25020
02	『府尹先生案』	『府先生案』 『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	慶州市立圖書館 서울大圖書館 서울大奎章閣	慶州府의  역대 府尹의 名單 및 각종 관련 記錄	慶州先生案 奎 25019
03	『戶長先生案』	『府司先生案』 舊案 『府司先生案』 新案 『戶長先生案』 『戶長先生案』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市立圖書館 서울大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각종 戶長의 名單 및 關聯 記錄	
04	『上詔文先生案』	『上詔文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上詔文과 副詔文 및 담당 處의 座目과 각종 관련 記錄	
05	『講武堂先生案』	『講武堂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主將과 行首, 兵房과 掌 務의 名單 및 각종 관련 記錄	

한편, 이들 각종 『先生案』에 수록된 序文과 跋文 등에 나타나는 각종 『先生案』의 編纂의 來歷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表 2> 調査 對象의 각종 『先生案』의 序文과 跋文에 나타나는 編纂의 來歷

番號	撰者	撰述時期	『書名』·『題名』	所藏處(收錄版本)	內容	備考
01	河 演	1425 世宗 07年 閏7月 29日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尙道營主題名記序』	國慶博(慶州本) 商鄕校(尙州本) 慶市圖 서大圖	·公私의 前賢 通籍을  찾아왔으나 泯滅되어 前注簿 孫熙의 家藏 錄本을 底本하여 通籍을  만들다. ·위에는 中朝와 本朝의 年譜를  기록하고  아래에는  각 연도에  부임한 使臣의  성명을  써서 ‘營主題名’이라  하다. ·2部를  작성하여 本營과 行營에  각 1부씩 備置하여 後日의 考覽에 便宜하도록  하다. ·前任者의 是非를 參考하여 後任者의 善治에 一助될  것을  목적으로  하다.	
02	金正男	1622 光海君 14 年 6月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尙道營主題名記序』	商鄕校(尙州本) 慶市圖	·河演 公이 公私 典籍을  참고하여 『營主記』를  편찬하여 高麗 文宗 戊午(1078)부터  조선 世宗 甲辰(1424)까지  기록하다. ·壬亂으로 舊書과 遺器가 兵火를  당하였으나 慶州 鄕吏 崔洛 公이 先生案을  수호하여 30여년  동안 傳來되다. ·天啓 원(1621)년에 到任한  뒤  이듬해(1622) 營吏 吳一燮이 本 先生案을  마쳐  널리 追錄하여  후세에  전하려  하다. ·유능한 書吏에게 舊錄에  의거하여 4帙을 繕寫하도록  하여 新·舊의  도합 5帙이  되다. ·5帙을 達城(新·舊)·鷄林(新)·商山(新)·花山(新)에 分藏하여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다.	
03	南至熏	1711 肅宗 37年 夏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尙道營主題名記序』	慶市圖	·分藏되던 觀風案(道先生案)이 慶州에도 守藏되어  오다. ·監營이 大丘로  옮겨지고  수차의  전란을  겪었으나 舊案은 府(先生)案과  함께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다. ·舊案은  세월이  오래되어 紙質이  해지고 字劃이  많이 脫落되어 前制에  따라 新案을  작성하다. ·舊案(舊藏)은  버리지  않고  두 書櫃(兩櫃)에 藏置하여  후세에  考評하도록  하다.	
04	梁順石	1475 成宗 06年 5月	『府尹先生案』 『府尹先生案序』	慶市圖 서大圖	·三國이  통일된  이후로 平壤을 西京이라  하고 鷄林을 東都라  하여 府尹을  두어 2천년  동안  지속되다. ·名籍(先生案)이 散漫하여 識者들이  유감으로  여기다. ·上舍 李存仁에게 鷄林의 前賢名籍(先生案)을 撰集하여  이를 後賢에게  전하도록  하다.	
05	李 弼	1361 恭愍王 10 年 正月	『戶長先生案』 『慶州司首戶長行案』	國慶博(慶州舊案本) 慶市圖 서大圖	·辰韓地에  예로부터 中興·南山·長福·通仙·加德·臨川 등 六部가  있다. ·五鳳 원(BC. 57)년에 國家를  세우고 國號를 徐羅·斯羅·雞林·新羅라  하여 後唐閔帝 淸泰 2(935)년까지 56王이다. ·고려 太祖가 三韓을  통합한  뒤 京號는  변경되지  않고 東京留守官을  두고 州號를 慶州라  하여 堂祭를 10名으로  하다. ·고려 光宗朝에 堂祭를 戶長이라  하고  수는 8명이었으며 首戶長의 姓名을  순서대로  정하여  후세에  전하다. ·이들 先生案을  찾지  못하여  근래에 上戶長의 姓名을  조목마다 推考하고 公務執行의  절차를  모두  기록하다. ·차후에 上戶長의 姓諱와 四祖 및 掌印年月 등의  시행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다.	
06	金多慶	1523 中宗 18年	『戶長先生案』 『戶長先生案舊序』	國慶博(慶州舊案本) 慶市圖 서大圖	·先生案은 古今의 首吏의 姓諱와 四祖를  기록한 通籍으로 李弼 公이  처음으로  작성하다. ·首吏로 到任한 年度와 印信을 管掌한 日字 등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세월이  오래되어 字劃이 殘缺되고 紙質이  해진  채로 本司의 儀軌와  함께 几案에  숨겨져  오다. ·이를  애석히  여겨 重新改藏하여 萬世에 流久토록  하려고  하다. ·練紙 58張으로 編冊하고 善寫·改書하여 東樓庫間에 新舊兩案과 儀軌數冊을 寶藏시켜 後任者에게  전하도록  하다. ·後任者는 先生의 命이  있더라도  함부로 開閉하지  말고  반드시 城上과  논의하여  꺼내  보도록  하다. ·本 案은 至正 辛丑(1361)년에 編成되어  지금(1523)에  이르다. ·後任者들은 勉勵하라.	

07	李廷臣	1741 英祖 17年 4月	『戶長先生案』 「新案序」	國慶博(慶州新案本) 慶市圖 서大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至正 辛丑(1361)년에 李弼 공이 遺聞을 哀集하고 篇幅을 완성하여 世系와 系譜를 밝힌 것이 본 先生案이다.</li> <li>·그 후에 대대로 삼가 守護하고 記錄을 補充하여 오래도록 전하여 오다.</li> <li>·嘉靖 2(1523)년에 金多慶 공이 세월이 오래되어 紙質가 해지고 字劃이 脫誤되어 마침내 다시금 新本을 만든다.</li> <li>·龍蛇兵燹(1592)에 崔洛 공이 本編과 營主案 및 歷世簿錄(歷世諸子記)를 鑿莊僧舍에 秘藏하여 兵火를 면하다.</li> <li>·崇禎 庚子(1660)년에 나의 先君이 舊案이 泯沒될까 걱정하여 練紙를 구입하고 新編하려 하였으나 끝내 성취하지 못하다.</li> <li>·舊案은 紙質이 腐敗하고 禮法대로 행해지지 않아 先君이 쌓아둔 練紙 50張을 장정하여 新案을 편성하다.</li> <li>·堂參 先進들이 舊案에 未錄된 것을 참고하여 壬辰(1592)년부터 追錄하였으나, 亂前은 簿籍(先生案)이 없어 闕漏되다.</li> <li>·諸君子는 본 錄(先生案)의 작성을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여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각자 특별히 조심하라.</li> <li>·後任者들은 往牒(舊案)을 상고하여 前代의 體制로 이어가면 본 案이 重新된 것이 後來의 君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li> </ul>	
08	金士龍	1787 正祖 11年 正月 上旬	『戶長先生案』 「[跋文]」	國慶博(慶州舊案本) 慶市圖 서大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案은 至正 辛丑(1361)년에 처음 작성되고 嘉靖 2(1523)년에 秀祖(金多慶)가 印信을 管掌하면서 다시 작성되다.</li> <li>·島夷亂에 당시의 戶長 崔洛 공이 兵火 中에 是案과 道·府伯의 兩先案을 鑿莊山의 石室에 秘藏하였다가 亂後에 還安하다.</li> <li>·8년 동안 石室에서 바람을 맞아 습기가 차서 卷帙이 殘缺되어 道·府의 舊案을 改新하다.</li> <li>·本 戶長案은 堂參行禮로 戶長이 印信을 管掌한 이후에야 參與되다.</li> <li>·是案(戶長案)은 改修되지 못하고 次第에 따라 계속 追錄하였으나 先君과 崔公에 이르러 禮와 案이 모두 廢止되다.</li> <li>·몇 後進들이 舊案이 폐지된 것을 아쉬워하여 一案을 새로 작성하고 未錄事를 기록하여 그 體制가 서로 연결되다.</li> <li>·本 案을 전하여 古禮를 행하는 자는 後人들이 함부로 훼손하지 말도록 하라.</li> <li>·(舊案은 壬亂 전의 文蹟이라 字劃과 年代에 脫誤된 곳이 있는 듯하나, 增損하지 않고 舊本대로 따랐다.)</li> </ul>	
09	金士龍	1787 正祖 11年 正月 24日	『戶長先生案』 「[跋文]」	國慶博(慶州舊案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壬辰亂에 戶長 崔洛 공이 道·府伯兩先案과 府戶長先案을 深山의 石室에 秘藏하다.</li> <li>·亂後에 還安하여 오늘날까지 傳來되니 東京의 府物은 이들 3가지이다.</li> <li>·實蹟을 史冊에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여 泯沒되지 않게 하고 後進들에게 물려주라.</li> <li>·本 券(戶長案)을 守護하는 일은 중요하므로 그 勞苦를 尊重하고 보상하라.</li> <li>·每年 秋夕節 卯時(6시)에 先生 分封의 예에 따라 單子를 作成하고 그 子孫을 敘述하여 祭祀를 돕도록 하라.</li> </ul>	
10	孫永謨	1859 哲宗 10年 7月 下旬	『戶長先生案』 「慶州府戶長先生案 序」	慶市圖 서大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鷄林府司에 營先生案과 府先生案 및 戶長案이 있다.</li> <li>·고려 초부터 이들의 姓諱와 資級 및 差遞年月이 차례대로 備錄된지 1千餘年이 되다.</li> <li>·戶長案에는 이와 아울러 四祖가 수록되어 私家昭穆의 譜牒 중에 未詳한 것을 考證하여 質正하다.</li> <li>·戶長案은 一府(慶州府)의 완벽한 史書이며 全省에서도 稀有한 예이다.</li> <li>·壬辰亂에 崔洛 공이 이들 三案을 山寺에 秘藏하여 兵禍를 면하다.</li> <li>·금(1859)년 여름에 舊案을 그대로 謄書하고 별도의 新案을 작성하여 祇林寺 龕室에 봉안하다.</li> <li>·逐年 修錄하고 守護하는 것은 司僚와 寺僧의 노력에 달려있다.</li> </ul>	

11	崔永漢	1859 哲宗 10年 7月 下旬	『上詔文先生案』 「椽房上詔文先生案 序」	慶市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高麗 이후로 戶長案을 作成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나의 傍祖 戶長 崔洛 공이 山寺에 移奉하였던 공이다.</li> <li>·上詔文先生案은 壬亂 이후에 처음으로 次第와 題名이 만들어지다.</li> <li>·영구한 留傳計畫이 公議로 일어나 營主先生案·府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을 한 체제로 新贍하다.</li> <li>·이들을 각각 櫃에 담아 자물쇠로 잠가서 祇林寺에 奉安하고 後考에 대비하다.</li> <li>·이후로 수시로 追錄하되 守護하는 節次는 本廳과 祇林寺에 있을 뿐이다.</li> <li>·廳僚가 바뀌고 寺僧이 聚散하여 戒愼하지 못하고 소홀하거나 태만하면 時任 執事者에게 奉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li> <li>·정성껏 遵行하여 영구히 폐지되지 않도록 하라.</li> </ul>	
12	李師鵬	1776 正祖 卽位 年 8月 상순	『講武堂先生案』 「講武堂先生舊案序」	慶市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節度都護府가 있는 지역의 幕府는 節度營과 다를 바 없어 兵曹의 裨將 3명 배정과 衣凜의 支給에는 節目이 있다.</li> <li>·幕府先生案의 작성은 堂廳을 설립한 초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나 兵火로 燒失되고 남은 것이 없다.</li> <li>·崇禎 丙寅(1868)년에 前萬戶 吳必寬 공이 首幕일 때 본 先生案이 成冊되다.</li> <li>·亂後로 主將의 到任年月을 기록하고 그 아래 行任의 人員을 年條와 任次에 따라 기록하다.</li> <li>·前代의 主將의 序次의 기록은 지금의 府先生案의 序次와 비교하면 전후에 어긋나고 闕漏된 부분이 많다.</li> <li>·新案은 上段에 主將의 姓諱, 중단에 首幕과 左右幕, 하단에 掌務 등을 기록하여 首·副를 구분하다.</li> <li>·丙寅(1868)년에 成案된 후 壬申(1692)년에 廳任 徐再泰 등이 改修하다.</li> <li>·戊子(1708)년에 이르러 廳任 全希天 등이 主將의 身喪과 先進四喪의 致賻의 일을 비로소 節目으로 작성하다.</li> <li>·또한, 앞서 堂廳의 論駁을 받았던 重罰人들이 先生案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事案도 아울러 附錄하다.</li> <li>·丙申(1716)년에 廳任 金昌道 등이 先生案을 改修한 뒤로 지금(1776) 다시 개수하다.</li> </ul>	
13	崔南崑	1859 철종 10 7월 下旬	『講武堂先生案』 「講武堂先生案序」	慶市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慶州의 幕府인 講武堂에 奉安된 先生案이 처음으로 작성된 것은 崇禎 丙寅(1868)년이다.</li> <li>·丙寅(1868)년 以前의 先生案은 龍蛇丙丁亂(1592·1636)으로 모두 燒失된 듯하다.</li> <li>·先生案의 所藏을 넓혀 後世에 傳하고자 하다.</li> <li>·慶州府에서 營主先生案·府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등을 祇林寺에 分藏하려 하자 본 案도 함께 分藏할 것을 公議하다.</li> <li>·그 결과 舊案을 藤本하여 별도로 新本을 만들어 祇林寺 龕室에 奉置하다.</li> <li>·逐條添載하여 漏落이 없도록 하는 것은 本堂의 僚友에게 있으며 守護하는 일은 祇林寺의 승려들에게 있다.</li> <li>·魔鬼와 水火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여 영원히 保傳하라.</li> <li>·先生案은 丙寅(1686)년과 丙申(1716)년 및 丙申(1776)년에 걸쳐 3차로 개수되다.</li> </ul>	



<表 3> 各種『先生案』관련의 調査 目錄 및 意見書 作成 對象 目錄

番號	書名 (卷冊數)·(異稱)	所藏處	版本	製作年代 (序文推定)	載錄人物	版本系統	影印書誌	意見書作成 對象 與否	指定 對象	備考
01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題簽: 棠下題名記)	國立慶州博物館	筆寫本 (慶州本)	世宗 07(1425)	李齊元 … 李 堧	最初本(1425)의 慶州 累加追錄本	影印 事實 없음	○	○	河濱 印文
02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尙州鄉校	筆寫本 (尙州本)	世宗 07(1425) 光海 14(1622)	李齊元 … 李 堧 吳命恒 … 李鎬俊	番號 01의 尙州 累加追錄本	① 『道先生案』 (國立國會圖書館, 1970)	○	○	金正男 印文
03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慶市本)	世宗 07(1425) 光海 14(1622) 肅宗 37(1711)	李齊元 … 李 堧 吳命恒 … 南一祐 金明鎮 … 李允用	番號 01의 近代 累加追錄本	② 『國譯慶州先生案』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番號 04와 大同小異함)	○	×	
04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表題: 道先生案)	서울大圖書館	筆寫本 (서울大本)	世宗 07(1425) 光海 14(1622) 肅宗 37(1711)	李齊元 … 李 堧 吳命恒 … 南一祐 金明鎮 … 李允用	番號 03의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③ 『慶州先生案 五種』 (亞細亞文化社, 1982) (番號 03과 大同小異함)	○	×	
05	『戶長先生案』(1卷1冊) (『府司先生案』舊案)	國立慶州博物館	筆寫本 (慶博本)	恭愍 10(1361) 中宗 18(1523) 正祖 11(1787)	金成庇 … 崔俊渭	最初本(1361)의 累加追錄本	④ 『府司先生案』 (國立慶州博物博, 2017)	○ (1件)	○ (1件)	合本 1件
06	『戶長先生案』(1卷1冊) (『府司先生案』新案)	國立慶州博物館	筆寫本 (慶博本)	英祖 17(1741)	李 仁 … 崔炳教	番號 05의 累加追錄本	④			
07	『府尹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서울大本) (慶市本)	成宗 06(1475)	安 院 … 崔俊渭 李 仁 … 崔炳教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	×	
08	『戶長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서울大本) (慶市本)	中宗 18(1523) 哲宗 10(1859)	金成庇 … 朴炳翌	番號 04-05 合本の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⑤ 『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 (震檀學報, 1980)	×	×	
09	『上詔文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慶市本)	哲宗 10(1859)	李景祿 … 崔渭祥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⑤	×	×	
10	『講武堂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慶市本)	英祖 52(1776) 哲宗 10(1859)	尹仁涵 … 朴炳翌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⑤	×	×	

또한, 현지 조사의 각종 『先生案』 중에서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道先生案』·『府尹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등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府尹先生案』·『戶長先生案』 등은 모두 近代에 轉寫된 筆寫本이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의 가치가 미흡한 듯하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의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1책)과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의 舊案(1책)·新案(1책) 및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등 4책으로 판단된다.

제1·2차의 재조사 및 추가조사의 각종 『先生案』의 目錄과 意見書作成 대상의 目錄을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이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案)과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新案) 및 경주시립도서관과 서울대학교 소장의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新案) 등의 현지 조사평가에 관한 記述은 다음과 같다.

이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案)과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新案) 및 경주시립도서관 소장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戶長先生案』 등의 현지 조사평가의 세부적 記述은 다음과 같다.

## ○ 『慶州府司先生案』의 書誌記述 및 現狀

### ① 『慶州府司先生案』(舊案) (舊案本: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戶長先生案 / [李弼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恭愍王 10(1361) ~ 肅宗 46(1720) 多數人 逐年累加追錄 推定].

不分卷1冊 : 四周雙邊, 70.6(6.6+64.0)×33.7cm, 有界, 2段10行 字數不定, 無魚尾 ; 75.0×40.0cm. 韓紙. 鐵邊線裝(五針眼訂). 慶州 43638.

表 題: 府司先生案

張 數: 本文(22張), 空紙(11張).

紙 質: 4裱接壯紙.

裝 訂: 鐵邊(75×1.9cm)五針眼訂裝.

裝訂記: 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傳臚新案奉安于祇林寺.

備置處: 祇林寺.

序 文: (1) [戶長先生案舊序] 先生案者古今首吏姓名四祖所錄之籍也昔李先生弼始構思成之至於爲首之年掌印之日俱昭昭盡記至今因仍不廢焉第以歲累字殘紙盡且卑與本司儀軌並藏在坐下几案余忝在首任見而惜之思欲重新改藏以表萬世流久矣事鉅力微不果爲圖焉常慨然自以爲見古今流來顯蹟廢失而因循不改則何以爲人亦大一恥也肆余亘○○○○懷矻焉僅得練紙五十八張編冊又得善寫者改○○○○東樓上庫間並新舊兩案儀軌數冊寶藏鎖鑰以貽後來繼繼者使後來繼繼者雖先生之命毋自擅開閉須與城上共議出之且於追記時毋妄自拙書須令善手者筆之噫一時之成者爲萬/世之傳萬世之傳者爲一朝之毀蓋此案之成始於至正辛丑(1361, 공민왕 10)而迄于今赫赫若前日事李先生之慮可謂遠矣若後來爲首者不體李先生之意使此案毀於一朝則先生知爲誰後進亦知爲誰也況一披此案歷歷然明知其某也某人爲首某某宗而皆一州吏族之巨者則後人豈欲冒爲首

者乎盖非而」欲爲首者爲首哉其爲繼繼者勉施嘉靖二年(1523, **중종 18**)○○○○」月日安逸戶長金多慶誌。

序 文: (2) 至正二十一年辛丑(1361, **공민왕 10**)正月日慶州司首戶長行案」州叱段三國遺事內開關已來辰韓之地古有六部一曰中興二」曰南山三曰長福四曰通仙五曰加德六曰臨川等叱六部祖前」漢宣帝地節元年壬子(BC.69)三月朔各率子弟俱會闕川岸上議」曰我輩上無君主民皆放逸盍覓有德人爲君主建邦設都」時有一紫卵從天垂地剖其卵得童男形儀端正卵如瓢故」姓朴卵生之時日月清明故因名赫居世年至十三以五鳳元年」甲子(BC.57)立國爲王國號徐羅或斯羅或雞林或新羅繼繼相承」九百九十二年是臥后唐閔帝清泰二年乙未(935, **고려 태조 18**)良中第五十六」王教是/太祖統合三韓教是時率領百官郊迎順命始終輔佐教等用良新」羅乙良京號不動東京留守官州號乙良慶州爲等如設排」教是於千丁已上乙束給教是遣堂祭十乙爻定教是良」光宗朝良中堂祭乙段號戶長爻八乙制定教事是置○○○○」首戶長姓名乙順音可施行流傳爲臥乎等○○○○」審難便爲置有良尔一任爲乎所不喻是於年遠爲○○爲去乃」近來上戶長姓名乙科科以推考行公次第乙用良具錄于后爲臥乎」事是等今後乙良上戶長姓名及四祖掌印年月并以施行傳於」后生幸甚」慶州司/戶長正朝**李弼**」戶長正朝金學」戶長正朝崔益」戶長正朝金光淑」攝戶長金鍊」攝戶長金」攝戶長李逢雨」攝戶長朴」副戶長孫」副戶長崔」/副戶長崔」副戶長金」戶正」戶正」副戶正」副戶正」詔文州史孫。

跋 文: (1) 案之成始在於至正辛丑(1361, **공민왕 10**)而嘉靖二(1523, **중종 18**, **계미**)年旁祖掌印時改成有誌則世代之遠推而可知而」粵在烏夷之亂公私簿牒盡入灰燼維時戶長崔洛甫於兵火中拔是案與道府伯兩先」案移藏于釜莊山石室中亂靖後還安而八年石坎風透濕卷帙殘缺道府舊案改而新之唯」此戶長案以堂參行禮中爲戶長掌印而後許參是案故仍以不改次次繼錄以至於吾先君暨崔先」生而止於是乎禮廢於存羊筆絕於獲麟而案之事畢矣嗚呼以幾百年傳行之禮而先君後有一人」而無有復行以幾先生繼錄之案而先君後一人外無復隨錄先君參錄後七十餘年禮與案俱廢每於奉」覽是卷也不覺於悒而涕下矣二三後進悼舊案之已廢歎戶長之梯斷新成一案錄其未錄戶長階梯之相連幸」則幸矣而累百載傳來舊案自此愈遠束諸高閣而已爲後生孰不爲興感而悼惜也哉謹按是案上頭第」四行所錄姓諱卽先君二十四代祖也人家二十四世相繼一案亦所罕有而今無有繼之者子孫之不肖而然耶時世之」漸降而然耶抑又思先君下世倏今五十九年而小子又八十五歲奉是案撫古蹟者有幾日而傳是案行古禮」/者又有其人耶感古傷今和淚謹書輒後人之哀而勿毀也」崇禎後三**丁未(1787, 정조 11)**孟春上浣後生金士龍謹識並序。

跋 文: (2) 嘗聞壬辰烏夷之亂人民蒼黃轉倒父子兄弟相保云伊時景象言之」端矣兵戈蔽天肝腦塗地人各鄙生他不暇顧而戶長崔洛甫發出道府伯兩先」案及府戶長先案於兵火之中移藏于深山石窞亂靖後還安于今傳來則」東京府物此三舟而已豈不爲貴且美乎頌說播於人口實蹟登諸史冊足」可爲傳世不泯之地而屬後進守是券者在一事崇其切酬其勞而以寓其不忘之懷者不無爲吾齋之欠事而有識者祈惜乎自今以後每年秋夕節封」倚一卯時在先生分封例時係成單子傳敍其子孫以助其享則此與忌祀」/之助祭自別雖是代盡之後其墓則行其祀矣傳不失則與逸性而同終始矣可」不休哉可不勉哉」丁未(1787, **정조 11**)孟春二十四日後生金士龍」崔廷湜」崔廷洽」崔昌遠謹書。

亂 記: (1) 洪武十二年己未(1379, **우왕 05**)閏五月十四日倭賊船五百餘隻亦蔚州浦下陸爲去乙州」叱婦人小兒家財入城爲有臥同月二十九日同賊兵亦旦驛以入來次元帥兼」府尹河教是領軍龍宮院坪隔川接戰次前護軍堅思濟中郎」將鄭熙崔得儒李智等戰亡勝戰不得元帥教是過城安康退走」賊兵亦一衙南北路以入來市邊永興寺至圍把爲去乙城頭放火桶接」戰不得過西川下上峴以到阿火驛倉庫米糶偷攬六月初一日義谷驛」倉庫米糶偷攬彥陽以還歸載船後府叱東南面斷石山等處累日入」/侵同月初八日登山東山以下來城四面圍把都軍南城

隅接戰次城內」軍人亦出城衆生敏藏兩寺付火賊兵退歸東禪院坪屯住留宿次記官崔江僧崔純令同正白漢林等叱二十餘人亦出城犯夜吹螺放聲賊兵驚」惑還走爲乎事是齊同日元帥教是以婦人小兒出城爲於爲行下催促」教是去乙前判書李善前判事金南貴前金海府使李光實京山」府使金精美前副正李自椿李麟角首戶長李裕安逸戶長金君」子等叱內外兩班亦白活出城不冬無事避亂是齊庚申八月十日賊船五百」餘隻全羅道鎮浦到泊爲去乙京軍船亦同浦准到船隻盡奪燒」破逃漏賊兵亦過嶺當道沃州尙州善州居昌咸陽沙近驛城等處」圍把合浦元帥朴修慶京元帥金用暉府尹裴諸兵馬使一同接戰次元」帥朴修慶府尹裴教是及州本鄉前中郎將李乙明鄭臣富記官金越崔良金憲營記官吉夫將校李太等戰亡後京元帥李諸」元帥下界雲峯八螺峴接戰盡殺次同賊亦除智異山以騎山逃漏後」諸元帥還京。

亂 記：(2) 正德五年庚午(1510, **중종 05**)四月初四日倭變三浦恒居倭人始來之初」蔚山地鹽浦二十戶東萊地釜山浦三十戶熊川地薺浦三」十戶許居以來生齒日繁歲加無減戶數甚多人數男女」不可量計富居者亦多人丁之數薺浦尤多釜山浦之次」鹽浦又之次也正德二年丁卯(1507, **중종 02**)正月日薺浦恒居倭人不知」發憤之由其閭故爲放火燒盡妄托熊川倭料次知分給」/書員金福尙乘夜潛入倭閭放火云白晝羣聚吹螺同」縣城底就到民家放火焚蕩後倭人凡事每有悖心之至」釜山浦僉節制使李友曾自到之初小之事皆依法度倭」里嚴立禁亂使倭人不得輿販且有營繕倭人使喚水」軍一例採葛土木之役無所不爲如有遲晚事朝人一例依法」決罰三浦居倭皆以作嫌謀諸對馬島之人一時大舉庚」午(1510, **중종 05**)四月初四日曉釜山浦薺浦永登浦三處一時竊發圍城攻」之巨濟東面熊川縣內東面東萊縣內南面東平縣民戶縱」火其變大熾將卒蒼皇失措不能對戰東西奔竄水」軍被殺者蓋多永登浦萬戶梁智孫釜山浦僉節制使」/李友曾與其兄友顏欲訪其弟到浦並被鋒刃而死薺浦僉」節制使金世鈞被虜東萊熊川兩縣圍擊之時東萊」縣令尹仁復率其鎮兵守城能敵倭寇中箭而死退去」熊川縣監韓倫勢不能自保棄城北走倭寇奪入城內右」三浦與熊川錢穀兵機糧餉盡輸載船本島入送永登釜」山兩處倭寇並聚熊川掠庫衝火陳兵相戰云不退右道」兵馬節度使金錫哲金海都護府使成秀才率鎮兵馳」到熊川北嶺倭寇相望處結陣進退接戰報變相繼于」朝左議政柳順汀爲都元帥知中樞府事安閔德爲副元帥」左道防禦使知中樞府事黃衡右道防禦使同知中樞府」/事柳聘年各率從事官二員武才特異軍官三十下來」道內閑散在喪猛士皆聚慶州安東金海石戰人亦皆聚」率各官守令親率軍士或交付或從征都元帥在京副元帥」率從事官四員軍官二十在密陽左道防禦使與兵馬節度」使柳繼宗金海地赤項驛前結陣右道防禦使與兵馬節度」使昌原地安民驛前結陣倭寇薺浦近地分三屯處右道防禦」使因受教韓倫斬首遍示軍中副元帥左右將帥處分遣」軍官或遣從事官督戰同四月十九日左右挾攻放矢勢如」雨脚石戰人投石之勢如雨倭賊所遮防牌中石折落倭寇大敗」中箭陸地仆屍者甚多中箭投海溺死者不可勝數不中箭」/賊徒北走扶船乘騎之時船在倭賊畏於重載用槍劔去」却溺死者亦不可勝數專船覆沒者三四隻沈屍滿泊浦回」海水血流盡赤在船賊徒續續逃去朝兵無一人被害而大勝薺」浦東望德旨軍讎戲退兵倭寇斬首三百三十餘級馮馬一匹」上送金世鈞與梁智孫妾載船捉去終乃不還都元帥率從事」官虞侯與軍官堂上堂下勿論多率下來右道邊鎮巡審」宣醞使都承旨宋千喜下來都元帥副元帥防禦使從事官虞侯軍」官觀察使都事兵水使從征守令得功軍士鄉吏公私賤昌原金」海兩官分聚」賜宴防禦使加資東萊縣令與從事官軍官諸將內資窮人員軍功」/一等軍士內資窮人軍功一等陞堂上餘皆得功人加資鄉」吏軍功一等永世免鄉二等已身免役公私賤賞布熊川縣」陞爲都護府其時倭屍浮流四海海族聚食以此海錯物膳」進上限數朔不封進且同年(1510)六月二十五日倭寇復來安骨浦圍城萬」戶率其軍卒禦敵矢盡竭力幾於不勝之時熊川都護」府使蘇起坡率其鎮兵登旗高峰用磨大小角並吹逞威」揚兵馳到倭寇望見其威且聞角聲所資防牌棄置北走」府使萬戶率軍追及海邊射獲五人亦奪倭船數隻溺死」者甚衆府使陞嘉善萬戶陞堂上壬申年日本國王」使臣弼中出來對馬島之人請和不」/允還入歸同年弼中復來請和對馬島歲遣船五十隻內減二十」五隻每年例賜米太各百石內各減五十

石諸酋使送船」亦量減許和三浦居倭懷土願還不許舊其而不得還居」熊川還降爲縣」

列名：金成庇(高麗 忠烈王 07, 1281) ~ 崔俊渭(朝鮮 肅宗 39, 1713)

載錄人：金成庇·李松桂·李唐勳·金明賴·金永超·金時印·李暉·鄭甫·李椿·金景·崔琨·孫桂·崔祿莊·李良·李蘭·金石堅·金珪·金大莊·金臣伯·金彥·金溫·金卓·金亮·金利·崔淳·金安碩·崔長連·李弼·鄭宜·李大年·金南老·李弼·金學·崔益·李弼·金雲·金光叔·李光茂·金雲·崔益·金君子·崔桓·崔忠·鄭之閔·李逢雨·金君子·崔桓·孫邈·李逢雨·金堅·金君子·李裕·李逢雨·孫邈·李裕·金成吉·金厚·金祐·李逢雨·李龍·金厚·金衡·金漢良·金乙珍·金具·金迪·金漢良·崔圭·李宣·李俊·金迪·金乙珍·崔圭·金漢良·崔圭·李宣·崔圭·金敏·李宣·金珍·崔雲·金恪·金敏·李乙成·鄭胥·金漢哲·李東·金敏·金恪·李宣·金敏·金恪·鄭胥·金益·崔公·李乙成·金益·崔公·金桴·金貴·崔貴·李堅·金長善·鄭忠·金四知·金長善·金三雨·金桴·崔祥·鄭忠·鄭達·金四知·金處·孫可忠·金三雨·孫可忠·李佳祥·崔祥·孫達·金四知·金瑩·金三重·金濟·金瑩·崔瀟·金瑩·金三重·孫達·朴霖·金繼孫·金三重·金瑩·李伊·崔祥·金精·崔祥·金瑩·金謹·金精·金濟·金石柱·金濟·李秀民·金濟·崔涇·金濟·鄭自良·金閔孫·李佶·金三重·李專·金重·金通·金繼壽·崔溪達·金濟·崔澗·金濟·崔澗·金孟熙·崔敬霖·金濟·金錕·李叔達·金錕·金叔祖·崔溪達·金孟熙·金命孫·金叔祖·金成孫·金孟熙·金叔祖·金順圭·金孟熙·崔溪達·金叔祖·金在中·李長恭·金珪·李信·金涸·李信·崔永漣·金漢順·崔延年·金順圭·朴釜·李信·鄭富·李信·李枝衍·金萬鈞·鄭富·金克精·崔岱·金克精·崔延年·崔濕·金滑·金彥釘·崔濕·金彥釘·長李憲·金多慶·崔浦海·金濯·崔浦海·李宗亨·李堯·李石柱·崔岱·李宗亨·金漢智·李堯·金鏞·朴敬庭·金鏞·朴敬庭·金克仁·金欽·金厲定·鄭麟·金麟壽·鄭麟·金麟壽·李景福·崔洛·崔湜·金麟壽·崔湜·崔春英·崔洛·李景祿·崔洛·李景祿·鄭公綽·鄭公綽·鄭公綽·金元吉·孫應老·李悌男·崔大智·李伯·崔瑩中·孫重敏·孫允敏·金灝·崔汝崑·李澤龍·李仲業·李仲業·李汝芳·金廷翊·金世鳴·崔俊渭。

現狀：국립경주박물관이 購得하기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 듯, 磨滅·水痕·汚染·酸化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에 의한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② 『慶州府司先生案』(新案) (新案本：國立慶州博物館 所藏)

戶長先生案 / [李廷臣 編；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仁祖 06(1628) ~ 純宗 (隆熙 01, 1907) 多數人 逐年累加追錄 推定].

不分卷1冊：四周雙邊, 67.7(7.5+7.1+53.1)×30.8cm, 有界, 3段9行 字數不定, 無魚尾；75.0×40.0cm. 韓紙. 鐵邊線裝(五針眼訂). 慶州 43639.

題簽題：府司先生案.

張數：本文(14張), 空紙(19張).

紙質：3裱接壯紙.

裝訂：鐵邊(75.0×1.9cm)五針眼訂裝.

裝訂記：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贍成」新案奉安于祇林寺.

新置處：祇林寺

序文：謹按麗史長民者謂之戶長則我東方州縣之有戶長蓋古也本州繫自高麗式至今日掌印莅任長乎本州者凡幾許人也而其履歷之日姓名之錄泯泯如也粵在至正辛丑(1361, 공민 10)李」先生弼甫超思遠慮始爲傳遠計摺摺遺聞哀成編帙」世係年譜昭載詳悉卽所謂先生案也自是厥後世世祇」守廣其錄而壽其傳矣逮至嘉靖二(1523, 중종 18, 계미)年金先生多慶甫憫」其歲久紙弊字畫脫誤遂取而重新之及至龍蛇兵燹(1592, 선조 25, 임진)之餘」群書衆簿蕩失無餘况此錄帙豈能獨全時則有若崔先」生洛甫袖得是編及營主案莊[藏]之於鑿藏[莊]僧舍至使歷世簿錄」獲全於燔空之虐焰則其所謹護之功當如何哉噫是案也權」輿於勝國之初潤色於腐爛之餘保護於搶攘之中者繫我」三先生是賴而其慮事之密好古之篤真可謂前後一關振也



「噫微斯人也累百年相承之徽軌無一影響而必將磨滅而不傳也久矣自壬辰(1592, 선조 25)迄今(1741, 영조 17, 신유)二百年之間踐歷是任者前後相繼而獨是案之錄與不錄專由乎禮之行不行也由是而無一人仍襲遺蹟克廣其傳者斯豈非我逸房尋常慨歎者歟及夫崇禎紀元後庚子(1660, 현종 01)惟我先君子慨然有志於斯適追前哲之洪規深惜舊案之將泯畧取練紙謀所以新之者勤且摯矣事與心違竟未就焉則亦豈非後輩之所深痛惜者哉噫是案參錄固其嚴且截矣堂參戶長古有其禮遵而守之莫敢違越循序而陞始錄于案雖經其任禮或不行則不可廁名於編次之末者其來久矣歷考前古昭昭可證則是案參錄顧不嚴且截歟近因禁令此禮久廢只存免新一禮若以此膠守久例終不修是案則將使先輩所編之帙一朝而廢棄也顧此後繼者姓名之泯沒有足可惜而古先生傳後之誠意至此而不翹若弁髦則豈但辜負於先輩抑亦貽歎於後進者必無窮也然則率意忝錄固有愧於法規而既革之禮今難更復則亦豈無」推移於經權之間者歟因革隨時斟酌得宜則吾儕今日之舉蓋出於不獲已也知我罪我其不在於斯乎噫一披遺編往事如昨隔世年譜昭在耳目則爲我先進之雲仍者其可不興感於羹牆之慕而亦豈無惕念於趾美之意也耶舊案則不但餘紙腐敗未行其禮而并錄其中似有所歉然於心者故今以先君子所儲練紙五十張粧成新案於是乎博考堂參先進之未錄於舊案者始自壬辰(1592, 선조 25)而列錄焉亂以前則簿籍無考姑闕焉可慨也已幸望諸君子勿以今日之錄爲僭越而澡雪其心恪謹其事稽諸往牒克紹前體則是案重新未必無補於後來之君子云爾」/乾隆六年辛酉(1741, 영조 17)四月日前戶長折衝李廷臣謹誌前戶長崔岐瑞。

亂記: 萬曆壬辰(1592, 선조 25)亂前無可考文蹟始自癸巳(1593, 선조 26)廣考公私日記中「差改年月日而准行四等禮則已錄於舊案故今不疊床於新案而堂參先進之行戶長而拘於安逸一禮之未行見阻於舊案之中此誠後進之所共慨然者故茲錄於右以記之。

列名: 李仁(朝鮮 仁祖 06, 1628) ~ 崔炳教(朝鮮 純宗 隆熙 01, 1907)

載錄人: 李仁·李震勳·金繼榮·金之輔·金之弼·孫光敏·孫友奭·崔有澄·金廷偉·李尙元·李澤立·孫誠弼·崔德弼·李雲桂·孫俊弼·李富成·孫尙武·孫是武·崔爾泰·崔世甲·金瑞玉·崔德壽·鄭後周·李秀泰·崔世謙·崔鶴齡·崔泰齊·崔德膺·李廷玉·金世豪·孫命來·孫良佐·崔泰岡·崔嵩齊·崔德恒·崔岐瑞·崔廷浩·崔德齡·金士龍·金遇兌·崔象岳·李廷說·孫顯杰·崔鳳齡·孫希杰·崔廷湜·孫會杰·李爾震·李爾靖·李光奎·崔錫翰·崔錫祺·李重仁·崔廷洽·崔廷彥·孫彥杰·金德潤·崔宗立·李光馥·金得壽·孫厚杰·孫學健·金來泰·崔宗元·崔宗石·崔宗佑·孫學仁·李重默·孫守億·崔宗殷·李漢逸·崔九範·崔宗震·金象九·崔奎鎮·崔東鎮·孫益起·孫守亨·金鼎九·孫益浩·金應九·崔恒鎮·孫德奎·孫守一·崔鼎鎮·孫宗復·崔基鎮·崔永源·崔宅鎮·金宅圭·崔柱鎮·崔永漢·孫陽復·孫永謨·金宅鎬·崔學範·孫逸復·金宅鉉·崔永錫·孫致復·崔永僖·孫養復·崔永觀·崔在根·李相魯·崔永純·孫在復·金周成·金星洙·崔南秀·金秉漢·金志成·崔炳德·崔永健·孫永彥·崔有根·崔南植·孫永昊·崔翼根·李錫瑩·孫永韶·金潤宗·李錫範·金震明·孫喆柱·金斗永·金萬衡·金晉淵·崔炳浩·金鍾憲·金魯明·孫永訓·李錫教·崔厚根·崔炳觀·金時憲·李錫榮·崔渭祥·金泰明·崔溥根·崔亨根·崔縉奎·李賢洙·崔景根·孫赫柱·崔炳權·崔澤根·孫之柱·金佐淵·金洪宇·崔翔燁·崔炳禧·崔權協·崔炳彥·嚴守旻·崔正根·崔翊奎·崔炳洙·崔炳崑·崔有吉·崔炳教。

現狀: 국립경주박물관이 購得하기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 듯, 磨滅·水痕·汚染·酸化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에 의한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 ③ 『慶州府司先生案』(新本: 慶州市立圖書館·서울大圖書館 所藏)

戶長先生案 / [李弼 編; 李廷臣 編;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筆寫處不明], [恭愍王 10(1361) ~ 肅宗 46(1720) ~ 仁祖 06(1628) ~ 純宗 (隆熙 01, 1907) ~ 哲宗 10(1859) 多數人 逐年累加追錄 推定].

不分卷1冊：四周雙邊，44.3(5.5+38.8)×30.0cm，有界，2段10行 字數不定，無魚尾；54.4×34.3cm. 韓紙. 線裝(四針眼訂).

題簽題：戶長先生案.

張數：本文(36張)

紙質：2梢接壯紙.

序文：(1) 慶州府戶長先生案序「書契以前固不可言自有鳥跡蝌蚪之文上而國代」沿革下而人物源流無不托此壽傳而其所以能傳亦在乎藏之固守之謹以故孔壁之漆簡古文西陽之石室諸編竟得免狂秦劫火而竹書紀年又出於汲冢之中以言乎國朝則分藏史牒於四境名山置官」掌守皆此意也繫我鷄林府司有營府先生及戶長案昉自**五代之末**而姓諱資級與差適年月靡不鱗次備錄迄今(1859, **철종 10, 기미**)千餘歲瞭然如日擊至於戶長案則並載其四祖私家昭穆之譜牒所未詳者亦」或考据而質疑實為一府之惇史而全省所罕有」也粵在龍蛇島夷之亂(1592, **선조 25, 임진**)故戶長崔公洛移奉三案藏弃山寺兵燹槍攘之餘公私遺籍割地蕩然而」惟此獲全然則崔公之誠心偉績見稱於士君子而」編入輿志者詎不宜乎伊後數百年本司典守非」敢曰少懈但恐世故之變嬗人事之勤慢有不可逆」料且株守一件準擬無窮頗欠乎慮患周悉肆自」僚友中齊發分藏之論而事係難慎積久未遑始於**今(1859, 철종 10, 기미)**夏翻瞻舊案別成新本奉置于祇林寺龕室之中寺以羅代古刹山深境僻殆可謂藏之」固矣然若夫逐旋修錄而謹其守護則惟在司僚」與寺僧願後來僉君子各自以崔公之心為心而悠」久無替則庶不負今日分藏之意耳永謨忝在班」末實戶是役敢忘僭越畧叙其顛尾云爾」崇禎紀元後四己未(1859, **철종 10**)孟秋下澣前戶長孫永謨謹識」前戶長崔永源」金宅圭」崔永漢」孫勉復」崔永錫」孫致復」崔永僖」孫養復」崔永觀」崔在根」李相魯.

序文：(2) 戶長先生案舊序「先生案者古今首吏姓名四祖所錄之籍也昔李先生」弼始構思成之至於為首之年掌印之日俱昭昭盡」記至今因仍不廢焉第以歲累字殘紙盡且卑與本」司儀軌並藏在坐下几案余忝在首任見而惜之思」欲重新改藏以表萬世流久矣事鉅力微不果為圖焉」常慨然自以為見古今流來顯蹟廢失而因循不改則」何以為人亦大一恥也肆余亘○○○○○懷矻矻焉僅得練」紙五十八張編冊又得善寫者改○○○○○東樓上庫間並」新舊兩案儀軌數冊寶藏鎖鑰以貽後來繼繼者使」後來繼繼者雖先生之命毋自擅開閉須與城上共議」出之且於追記時毋妄自拙書須令善手者筆之噫」一時之成者為萬世之傳萬世之傳者為一朝之毀蓋此」案之成始於至正辛丑(1361, **공민왕 10**)而迄于今赫赫若前日事李先生之慮可謂遠矣若後來為首者不體李先生之意」使此案毀於一朝則先生知為誰後進亦知為誰也況」一披此案歷歷然明知其某也某人為首某某宗而皆一」州吏族之巨者則後人豈欲冒為首者乎蓋非而欲」為首者為首哉其為繼繼者勉旃」嘉靖二年(1523, **중종 18, 계미**)月日安逸戶長金多慶誌.

序文：(3) 至正二十一年辛丑(1361, **공민왕 10**)正月日慶州司首戶長行案「州叱段三國遺事內開關已來辰韓之地古有六部一」曰中興二曰南山三曰長福四曰通仙五曰加德六曰臨川」等叱六部祖前漢宣帝地節元年壬子(BC.69)三月朔各率子弟俱會闕川岸上議曰我輩上無君主民皆放逸盍」覓有德人為君主建邦設都時有一紫卵從天垂地剖」其卵得童男形儀端正卵如瓢故姓朴卵生之時日月」清明故因名赫居世年至十三以五鳳元年甲子(BC.57)立國為」王國號徐羅或斯羅或雞林或新羅繼繼相承九百」九十二年是臥后唐閔帝清泰二年乙未(935, **고려 태조 18**)良中第五」/十六王」[教是]/太祖統合三韓教是時率領百官郊迎順命始終輔佐」教等用良新羅乙良京號不動東京留守官州號」乙良慶州為等如設排教是於千丁已上乙束給教」是遣祭祭十乙爻定教是良」光宗朝良中堂祭乙段號戶長爻八乙制定教是置」○○○○○首戶長姓名乙順音可施行流傳為臥乎等」○○○○○審難便為置有良尔一任為乎所不喻是於」年遠為○○為去乃近來上戶長姓名乙科科以推」考行公次第乙用良具錄于后為臥乎事是等今」後乙良上戶長姓名及四祖掌印年月并以施行傳於」后生幸甚」慶州司」戶長正朝李弼」戶長正朝金學」戶長正朝崔益」戶長正朝金光淑」攝戶長金鍊」攝戶長金」攝戶長李」[逢雨]

「攝戶長朴」副戶長孫」副戶長崔」/副戶長崔」副戶長金」戶正」戶正」副戶正」副戶正」詔文州史孫。

後 識：(1) 案之成始在於至正辛丑(1361, **공민왕 10**)而嘉靖二年(1523, **중종 18, 계미**)旁祖掌印時改」成有誌則世代之遠推而可知而粵在島夷之亂公」私簿牒盡入灰燼維時戶長崔洛甫於兵火中拔是」案與道府伯兩先案移藏于鑿莊山石室中亂靖後」還安而八年石坎風透露濕卷帙殘缺道府舊案改」而新之唯此戶長案以堂參行禮中爲戶長掌印而」後許參是案故仍以不改次次繼錄以至於吾先君暨」崔先生而止於是乎禮廢於存羊筆絕於獲麟而」/案之事畢矣嗚呼以幾百年傳行之禮而先君後有一」人而無有復行以幾先生繼錄之案而先君後一人外」無復隨錄先君參錄後七十餘年禮與案俱廢每」於奉覽是卷也不覺於悒而涕下矣二三後進悼舊案」之已廢歎戶長之梯斷新成一案錄其未錄戶長階梯」之相連幸則幸矣而累百載傳來舊案自此愈遠東」諸高閣而已爲後生孰不爲興感而悼惜也哉謹按」是案上頭第四行所錄姓諱卽先君二十四代祖也人」家廿四世相繼一案亦所罕有而今無有繼之者子」孫之不肖而然耶時世之漸降而然耶抑又思先」/君下世俟今五十九年而小子又八十五歲奉是案」撫古蹟者有幾日而傳是案行古禮者又有其人」耶感古傷今和淚謹書卹後人之哀而勿毀也」崇禎後三丁未(1787, **경조 11**)孟春上浣後生金士龍謹識」(舊案則壬亂前文蹟也字畫與年條似或有脫誤處而不敢增損姑從舊本)。

亂 記：(1) 洪武十二年己未(1379, **우왕 05**)閏五月十四日倭賊船五百餘隻亦蔚州」浦下陸爲去乙州叱婦人小兒家財入城爲有臥同月二」十九日同賊兵亦旦驛以入來次元帥兼府尹河教是領」軍龍宮院坪隔川接戰次前護軍堅思濟中郎將鄭」熙崔得儒李智等戰亡勝戰不得元帥教是過城安」康退走賊兵亦一衙南北路以入來市邊永興寺至圍」/把爲去乙城頭放火桶接戰不得過西川下上峴以到阿火」驛倉庫米糶偷攬六月初一日義谷驛倉庫米糶偷」攬彥陽以還歸載船後府叱東南面斷石山等處累」日入侵同月初八日登山東山以下來城四面圍把都軍南」城隅接戰次城內軍人亦出城衆生敏藏兩寺付火賊兵」退歸東禪院坪屯住留宿次記官崔江僧崔純令同正」白漢林等叱二十餘人亦出城犯夜吹螺放聲賊兵驚」惑還走爲乎事是齊同日元帥教是以婦人小兒出」城爲於爲行下催促教是去乙前判書李善前判事」金南貴前金海府使李光實京山府使金精美前」/副正李自椿李麟角首戶長李裕安逸戶長金君子」等叱內外兩班亦白活出城不冬無事避亂是齊庚申八」月十日賊船五百餘隻全羅道鎮浦到泊爲去乙京軍」船亦同浦准到船隻盡奪燒破逃漏賊兵亦過嶺當」道沃州尚州善州居昌咸陽沙近驛城等處圍把合浦」元帥朴修慶京元帥金用暉府尹裴諸兵馬使一同接」戰次元帥朴修慶府尹裴教是及州本鄉前中郎將」李乙明鄭臣富記官金越崔良金憲營記官吉夫」將校李太等戰亡後京元帥李諸元帥下界雲」峯八螺峴接戰盡殺次同賊亦除智異山以騎山逃漏」/後諸元帥還京。

亂 記：(2) 正德五年庚午(1510, **중종 05**)四月初四日倭變三浦恒居倭人始來之初」蔚山地鹽浦二十戶東萊地釜山浦三十戶熊川地薺浦」三十戶許居以來生齒日繁歲加無減戶數甚多人數男」女不可量計富居者亦多人丁之數薺浦尤多釜山浦之次」鹽浦又之次也正德二年丁卯正月日薺浦恒居倭人不知發」憤之由其間故爲放火燒盡妄托熊川倭料次知分給」/書員金福尚乘夜潛入倭閭放火云云白晝羣聚吹螺」同縣城底就到民家放火焚蕩後倭人凡事每有悖」心之至釜山浦僉節制使李友曾自到之初小之事皆」/依法度倭里嚴立禁亂使倭人不得興販且有營繕」倭人使喚水軍一例採葛土木之役無所不爲如有」遲晚事朝人一例依法決罰三浦居倭皆以作嫌謀」諸對馬島之人一時大舉庚」午(1510, **중종 05**)四月初四日曉釜山浦薺浦」永登浦三處一時竊發圍城攻之巨濟東面」熊川縣內東面東萊縣內南面東平縣民戶縱火其」變大熾將卒蒼皇失措不能對戰東西奔竄水軍」被殺者蓋多永登浦萬戶梁智孫釜山浦僉節制使李友曾與其兄友顏欲訪其弟到浦並被鋒刃而」死薺浦僉節制使金世鈞被虜東萊熊川兩縣圍」/擊之時東萊縣令尹仁復率其鎮兵守城能敵倭寇」中箭而死退去熊



川縣監韓倫勢不能自保棄城」北走倭寇奪入城內右三浦與熊川錢穀兵機糧餉」盡輸載船本島入送永登釜山兩處倭寇並聚熊川掠庫衝火陳兵相戰云不退右道兵馬節度使」金錫哲金海都護府使成秀才率鎮兵馳到熊川」北嶺倭寇相望處結陣進退接戰報變相繼于朝」左議政柳順汀爲都元帥知中樞府事安閔德爲副」元帥左道防禦使知中樞府事黃衡右道防禦使」同知中樞府事柳聘年各率從事官二員武才特」異軍官三十下來道內閑散在喪猛士皆聚慶州安東」金海石戰人亦皆聚率各官守令親率軍士或交付」或從征都元帥在京副元帥率從事官四員軍官」二十在密陽左道防禦使與兵馬節度使柳繼宗」金海地赤項驛前結陣右道防禦使與兵馬節度使」昌原地安民驛前結陣倭寇齊浦近地分三屯處」右道防禦使因受教韓倫斬首遍示軍中副元帥左右將帥處分遣軍官或遣從事官督戰同」四月十九日左右挾攻放矢勢如雨脚石戰人投石之勢」如雨倭賊所遮防牌中石折落倭寇大敗中箭陸地仆」屍者甚多中箭投海溺死者不可勝數不中箭賊」徒北走扶船乘騎之時船在倭賊畏於重載用槍劔」去却溺死者亦不可勝數專船覆沒者三四隻沉屍」滿泊浦回海水血流盡赤在船賊徒續續去朝兵無一」人被害而大勝齊浦東望德旨軍讎戲退兵倭寇斬」首三百三十餘級倭馬一匹上送金世鈞與梁智孫妾」載船捉去終乃不還都元帥率從事官虞侯與軍」官堂上堂下勿論多率下來右道邊鎮巡審」宣醞使都承旨宋千喜下來都元帥副元帥防禦使」從事官虞侯軍官觀察使都事兵水使從征守令得」功軍士鄉吏公私賤昌原金海兩官分聚」賜宴防禦使加資東萊縣令與從事官軍官諸將內」資窮人員軍功一等軍士內資窮人軍功一等陸堂上」餘皆得功人加資鄉吏軍功一等永世免鄉二等已」身免役公私賤賞布熊川縣陞爲都護府其時倭」屍浮流四海海族聚食以此海錯物膳」進上限數朔不封進且同年(1510)六月二十五日倭寇復來安」骨浦圍城萬戶率其軍卒禦敵矢盡竭力幾於」不勝之時熊川都護府使蘇起坡率其鎮兵登」旗高峰用麾大小角並吹逞威揚兵馳到倭寇望」見其威且聞角聲所資防牌棄置北走府使萬戶率」軍追及海邊射獲五人亦奪倭船數隻溺死者甚衆」府使陞嘉善萬戶陸堂上壬申年日本國王使臣彌」中出來對馬島之人請和不」允還入歸同年彌中復來請和對馬島歲遣船五十隻」內減二十五隻每年例賜米太各百石內各減五十石諸」酋使送船亦量減許和三浦居倭懷土願還不許舊」其而不得還居熊川還降爲縣。

列名：金成庇(高麗 忠烈王 07, 1281) ~ 崔俊渭(朝鮮 肅宗 39, 1713)

載錄人：金成庇·李松桂·李唐勳·金明賴·金永超·金時印·李暉·鄭甫·李椿·金景·崔琨·孫桂·崔祿莊·李良·李蘭·金石堅·金珪·金大莊·金臣伯·金彥·金溫·金卓·金亮·金利·崔淳·金安碩·崔長連·李弼·鄭宜·李大年·金南老·李弼·金學·崔益·李弼·金雲·金光叔·李光茂·金雲·崔益·金君子·崔桓·崔忠·鄭之閔·李逢雨·金君子·崔桓·孫邈·李逢雨·金堅·金君子·李裕·李逢雨·孫邈·李裕·金成吉·金厚·金祐·李逢雨·李龍·金厚·金衡·金漢良·金乙珍·金具·金迪·金漢良·崔圭·李宣·李俊·金迪·金乙珍·崔圭·金漢良·崔圭·李宣·崔圭·金敏·李宣·金珍·崔雲·金恪·金敏·李乙成·鄭胥·金漢哲·李東·金敏·金恪·李宣·金敏·金恪·鄭胥·金益·崔公·李乙成·金益·崔公·金杵·金貴·崔貴·李堅·金長善·鄭忠·金四知·金長善·金三雨·金杵·崔祥·鄭忠·鄭達·金四知·金處·孫可忠·金三雨·孫可忠·李佳祥·崔祥·孫達·金四知·金瑩·金三重·金濟·金瑩·崔瀟·金瑩·金三重·孫達·朴霖·金繼孫·金三重·金瑩·李伊·崔祥·金精·崔祥·金瑩·金謹·金精·金濟·金石柱·金濟·李秀民·金濟·崔涇·金濟·鄭自良·金閔孫·李佶·金三重·李專·金重·金通·金繼壽·崔溪達·金濟·崔澗·金濟·崔澗·金孟熙·崔敬霖·金濟·金錕·李叔達·金錕·金叔祖·崔溪達·金孟熙·金命孫·金叔祖·金成孫·金孟熙·金叔祖·金順圭·金孟熙·崔溪達·金叔祖·金在中·李長恭·金珪·李信·金涸·李信·崔永漣·金漢順·崔延年·金順圭·朴筌·李信·鄭富·李信·李枝衍·金萬鈞·鄭富·金克精·崔岱·金克精·崔延年·崔濕·金滑·金彥釘·崔濕·金彥釘·長李憲·金多慶·崔浦海·金濯·崔浦海·李宗亨·李堉·李石柱·崔岱·李宗亨·金漢智·李堉·金鏗·朴敬庭·金鏗·朴敬庭·金克仁·金欽·金厲定·鄭麒·金麒壽·鄭麟·金麒壽·李景福·崔洛·崔湜·金麟壽·崔湜·崔春英·崔洛·李景祿·崔洛·李景祿·鄭公綽·鄭公綽·鄭公綽·金元吉·孫應老·李悌男·崔大智·李伯·崔瑩中·孫重

敏·孫允敏·金灝·崔汝崑·李澤龍·李仲業·李仲業·李汝芳·金廷翊·金世鳴·崔俊渭。

序 文：新案序「謹按麗史長民者謂之戶長則我東方州縣之有戶長」蓋古也本州繫自高麗式至今日掌印莅任長乎本州」者凡幾許人也而其履歷之日姓名之錄泯泯如也粵在「至正辛丑(1361, 공민왕 10)李先生弼甫超思遠慮始為傳遠計拊撫」遺聞哀成編帙世係年譜昭載詳悉即所謂先生案也自是厥後世世祇守廣其錄而壽其傳矣逮至嘉靖二年(1523, 중종 18, 계미)金先生多慶甫憫其歲久紙弊字畫脫誤遂取而重新之及至龍蛇兵燹(1592, 선조 25, 임진)之餘群書衆簿蕩失無餘況此錄帙豈能獨全時則有若崔先生洛甫袖得是」編及營主案莊之於鑿藏僧舍至使歷世簿錄獲全」於燔空之虐焰則其所謹護之功當如何哉噫是案也」權輿於勝國之初潤色於腐爛之餘保護於搶攘之中者繫我三先生是賴而其慮事之密好古之篤真」可謂前後一關捩也噫微斯人也累百年相承之微軌無一影響而必將磨滅而不傳也久矣自壬辰迄今二百」年之間踐歷是任者前後相繼而獨是案之錄與不」錄專由乎禮之行不行也由是而無一人仍襲遺蹟克廣其傳者斯豈非我逸房尋常慨歎者歟及夫崇禎」紀元後庚子(1660, 현종 01)惟我先君子慨然有志於斯適迫前哲」之洪規深惜舊案之將泯畧取練紙謀所以新之者」勤且摯矣事與心違竟未就焉則亦豈非後輩之所」深痛惜者哉噫是案參錄固其嚴且截矣堂參戶長」古有其禮遵而守之莫敢違越循序而陞始錄於案」雖經其任禮或不行則不可廁名於編次之末者其來久矣歷考前古昭昭可證則是案參錄顧不嚴且截歟近」因禁令此禮久廢只存免新一禮若以此膠守久例終」不修是案則將使先輩所編之帙一朝而廢棄也顧」此後繼者姓名之泯沒有足可惜而古先生傳後之」誠意至此而不翅若弁髦則豈但辜負於先輩抑亦」貽歎於後進者必無窮也然則率意忝錄固有愧於述」規而既革之禮今難更復則亦豈無推移於經權之」間者歟因革隨時斟酌得宜則吾儕今日之舉蓋」出於不獲已也知我罪我其不在於斯乎噫一披遺編往述」事如昨隔世年譜昭在耳目則為我先進之雲仍者」其可不興感於羹牆之慕而亦豈無惕念於趾美之」意也耶舊案則不但餘紙腐敗未行其禮而并錄其」中似有所歉然於心者故今以先君子所儲練紙五十」張粧成新案於是乎博考堂參先進之未錄於舊案」者始自壬辰而列錄焉亂以前則簿籍無考姑闕焉可」/慨也已幸望諸君子勿以今日之錄為僭越而澡雪其」心恪謹其事稽諸往牒克紹前體則是案重新未必」無補於後來之君子云爾」乾隆六年辛酉(1741, 영조 17)四月日前戶長折衝李廷臣謹誌」前戶長崔岐瑞。

亂 記：萬曆壬辰亂(1592, 선조 25)前無可考文蹟始自癸巳廣考公私」日記中差改年月日而准行四等體則已錄於舊」案故今不疊床於新案而堂參先進之行戶長」而拘於安逸一禮之未行見阻於舊案之中此」誠後進之所共慨然者故茲錄於右以記之。

列 名：李仁(朝鮮 仁祖 06, 1628) ~ 崔炳教(朝鮮 純宗 隆熙 01, 1907)

載錄人：李仁·李震勳·金繼榮·金之輔·金之弼·孫光敏·孫友奭·崔有澄·金廷偉·李尚元·李澤立·孫誠弼·崔德弼·李雲桂·孫俊弼·李富成·孫尙武·孫是武·崔爾泰·崔世甲·金瑞玉·崔德壽·鄭後周·李秀泰·崔世謙·崔鶴齡·崔泰齊·崔德膺·李廷玉·金世豪·孫命來·孫良佐·崔泰岡·崔嵩齊·崔德恒·崔岐瑞·崔廷浩·崔德齡·金士龍·金遇兌·崔象岳·李廷說·孫顯杰·崔鳳齡·孫希杰·崔廷湜·孫會杰·李爾震·李爾靖·李光奎·崔錫翰·崔錫祺·李重仁·崔廷洽·崔廷彥·孫彥杰·金德潤·崔宗立·李光馥·金得壽·孫厚杰·孫學健·金來泰·崔宗元·崔宗石·崔宗佑·孫學仁·李重默·孫守億·崔宗股·李漢逸·崔九範·崔宗震·金象九·崔奎鎮·崔東鎮·孫益起·孫守亨·金鼎九·孫益浩·金應九·崔恒鎮·孫德奎·孫守一·崔鼎鎮·孫宗復·崔基鎮·崔永源·崔宅鎮·金宅圭·崔柱鎮·崔永漢·孫陽復·孫永謨·金宅鎬·崔學範·孫逸復·金宅鉉·崔永錫·孫致復·崔永僖·孫養復·崔永觀·崔在根·李相魯·崔永純·孫在復·金周成·金星洙·崔南秀·金秉漢·金志成·崔炳德·崔永健·孫永彥·崔有根·崔南植·孫永昊·崔翼根·李錫瑩·孫永韶·金潤宗·李錫範·金震明·孫喆柱·金斗永·金萬衡·金晉淵·崔炳浩·金鍾憲·金魯明·孫永訓·李錫教·崔厚根·崔炳觀·金時憲·李錫榮·崔渭祥·金泰明·崔溥根·崔亨根·崔縉奎·李賢洙·崔景根·孫赫柱·崔炳權·崔澤根·孫之柱·金佐淵·金洪宇·崔翔輝·崔炳禧·崔瓏協·崔炳彥·嚴守旻·崔正根·崔翊奎·崔炳洙·崔炳崑·崔

有吉·崔炳教.

現 狀: 近代에 제작된 版本이라 비교적 良好함.

○ 『慶州府司先生案』의 內容과 版本의 傳來 및 價値

일반적으로 先生案은 당해 官府의 古今 首吏의 姓名과 그들의 四祖를 기록한 名案으로 특히 首吏로 부임한 연도와 印信을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官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慶州府司先生案』도 慶州府의 歷代 各種 戶長의 名案과 그들에 관련된 記錄인 만큼, 慶州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①)과 『慶州府司先生案』(新案)(②) 및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③)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④) 등 4종 『慶州府司先生案』의 內容과 性格을 비교·종합하여 정리하면 <表 4>와 같다.

<表 4> 『慶州府司先生案』 4種의 內容과 性格

番號	名稱(書名)	所藏處	編者(製作年代)	載錄人物	版本系統	指定對象
①	慶州府司先生案 (『府司先生案』舊案)	國立慶州博物館	李 弼 等 (恭愍王 10, 1361) 金多慶 (中宗 18, 1523) 金士龍 等 (正祖 11, 1787)	金成庇 … 崔俊渭 (430餘年 256人)	最初本(1523)의 累 加追錄本	合部 1件
②	慶州府司先生案 (『府司先生案』新案)	國立慶州博物館	李廷臣 (英祖 17, 1741)	李 仁 … 崔炳教 (280餘年 161人)	①의 累加追錄本	
③	慶州府司先生案 (『戶長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	孫永謨 等 (철종10, 1859) ① + ②	金成庇 … 朴炳翌 (710餘年 417人)	①·②合本の 近代 (1935年頃) 轉寫本	×
④	慶州府司先生案 (『戶長先生案』)	서울大學校圖書館	孫永謨 等 (철종10, 1859) ① + ②	金成庇 … 朴炳翌 (710餘年 417人)	①·②合本の 近代 (1935年頃) 轉寫本	×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은 고려 공민왕 10(1361)년에 慶州府의 安逸戶長 李弼를 비롯한 金學·崔益·金光淑·金鍊 등이 당시로부터 소급이 가능한 上戶長의 條目을 推考하여 記錄하면서 시작되었다.[李弼本]

그 뒤로 세월이 오래되어 舊本의 글자가 낡고 종이가 해진 채로 机案에 방치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긴 安逸戶長 金多慶이 중종 18(1523)년에 李弼本을 底本으로 2차로 累加·追錄하였다. 이때 舊本과 新本은 함께 보물처럼 여겨 자물쇠를 걸어 秘藏된 채 後任者에게 계승되었으며, 동시에 비록 先生의 명령이 있더라도 함부로 開閉하지 말고 반드시 城主와 함께 논의하여 閱覽할 뿐만 아니라 『先生案』을 追記할 때는 拙書로 쓰지 말고 반드시 善手로 하여금 書寫토록 하였다. 그 뒤로 임진왜란으로公私의 모든 書類와 典籍들이 잿더미가 될 때, 당시의 戶長이던 崔洛이 兵禍 중에도 『道先生案』과 『府先生案』 및 『戶長先生案』 등을 鑿莊寺의 石

室에 秘藏하였다가 전란이 끝나고 다시 官府에 奉安하였으나 흐지부지해지고 말았다. 이에 金士龍·崔廷湜·崔廷洽·崔昌遠 등이 정조 11(1787)년에 3차로 累加·追錄하고 함부로 훼손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이렇듯 『慶州府司先生案』(舊案)은 李弼 - 金多慶 - 金士龍 등으로 이어져 가면서 累加·追錄된 慶州府의 戶長先生案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慶州府司先生案』(舊案)을 이어서 영조 17(1741)년에 前戶長 李廷臣과 前戶長 崔岐瑞가 後任者들이 追錄하지 않은 결과로 舊案이 인멸될 것을 염려하여 壬辰(1592)년부터 당시(1741)까지의 『先生案』을 追錄하여 舊案을 계승하면서 [李廷臣本], 後任者들이 先生案을 追錄하는 일을 분수에 넘치는 일로 여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각자 임무에 충실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렇듯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慶州府司先生案』(舊案)을 계승하여 累加·追錄된 慶州府의 戶長先生案이다.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은 철종 10(1859)년 무렵에 前戶長 孫永謨와 前戶長 崔永源을 비롯한 金宅圭·崔永漢·孫勉復·崔永錫·孫致復·崔永僖·孫養復·崔永觀·崔在根·李相魯 등이 慶州의 『慶尙道營主題名記』·『府尹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등 각종 先生案들이 잘 수호되고 영원히 전해질 것을 염원하며 舊案들을 그대로 轉寫한 뒤 별도의 新案을 작성하여 祇林寺의 龕室에 奉安할 때에 함께 轉寫된 轉寫本이다. 또한,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은 경주시립도서관 소장 『慶州府司先生案』의 轉寫本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과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연속적인 原資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경주시립도서관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은 후대에 轉寫된 판본인 만큼 原資料의 성격은 배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은 原本에 가까운 資料라는 점에서,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慶州府司先生案』(舊案)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속되는 累加·追錄本이라는 점에서 2종 모두를 『慶州府司先生案』이라는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文獻資料

- 慶州府 編, 國立慶州博物館 譯, 『(慶州 戶長의 記錄) 府司先生案』. 慶州 : 國立慶州博物館, 2017.
- 慶州市·慶州文化院 編譯, 『國譯慶州先生案』. 慶州 :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 國立國會圖書館, 1970.
- 亞細亞文化社 編, 『慶州先生案 五種』.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2.

- 震檀學會 編, 『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서울 : 震檀學會, 1980. <震檀學報 所收本>.
- 河演 編, 多數人 累加追錄 編, 『慶尙道營主題名記』, 寫眞本. 國立慶州博物館 所藏本.
- 河演 編, 多數人 累加追錄 編, 『慶尙道營主題名記』, 寫眞本. 尙州鄉校 所藏本.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其 他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과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으로 186의 국립경주박물관이 購入을 통하여 취득한 문화재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관리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案)과 『慶州府司先生案』(新案)은 購得 이전의 보관상태가 최적이 아니었던 듯, 磨滅·水痕·汚染·酸化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에 의한 보존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慶州府司先生案』(舊案)과 『慶州府司先生案』(新案)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版種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向後 問題

향후 각종 『先生案』에 관한 전국적인 일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검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書誌事項

『府司先生案』(舊案)

府司先生案 / [李弼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恭愍王 10(1361) ~ 肅宗 46(1720)]

不分卷1冊 : 四周雙邊, 70.6(6.6+64.0)×33.7cm, 有界, 2段10行 字數不定, 無魚尾 ; 75.0×40.0cm. 韓紙. 鐵裝(五針眼訂). 慶州 43638.

表 題: 府司先生案

張 數: 本文(22張), 空紙(11張).

紙 質: 4摺接壯紙.

裝 訂: 鐵邊(75×1.9cm)五針眼訂裝.

裝訂記: 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傳贍」新案奉安于祇林寺.

備置處: 祇林寺.

序 文: (1) [戶長先生案舊序], 嘉靖二年(1523, **중종 18**)○○○○, 月日安逸戶長金多慶誌.

序 文: (2) 至正二十一年辛丑(1361, **공민왕 10**)正月日慶州司首戶長行案,

跋 文: (1) 丁未(1787, **정조 11**)孟春二十四日後生金士龍, 崔廷湜, 崔廷洽, 崔昌遠謹書.

『府司先生案』(新案)

府司先生案 / [李廷臣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仁祖 06(1628) ~ 純宗 (隆熙 01, 1907)].

不分卷1冊 : 四周雙邊, 67.7(7.5+7.1+53.1)×30.8cm, 有界, 3段9行 字數不定, 無魚尾 ; 75.0×40.0cm. 韓紙. 鐵邊線裝(五針眼訂). 慶州 43639.

題簽題: 府司先生案.

張 數: 本文(14張), 空紙(19張).

紙 質: 3摺接壯紙.

裝 訂: 鐵邊(75.0×1.9cm)五針眼訂裝.

裝訂記: 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膾成, 新案奉安于祇林寺.

新置處: 祇林寺

序 文: 乾隆六年辛酉(1741, **영조 17**)四月日前戶長折衝李廷臣謹誌, 前戶長崔岐瑞.

## ○ 현 상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府司先生案』(舊案/新案)은 5개의 침안을 내어 무문변철을 앞뒤에 놓고 박을정으로 장식한 철장 형식이다. 표지는 비단으로 문양이 있는 紋緞으로 확인되나 손상이 많아 문양을 확인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많이 보이는 상태이나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보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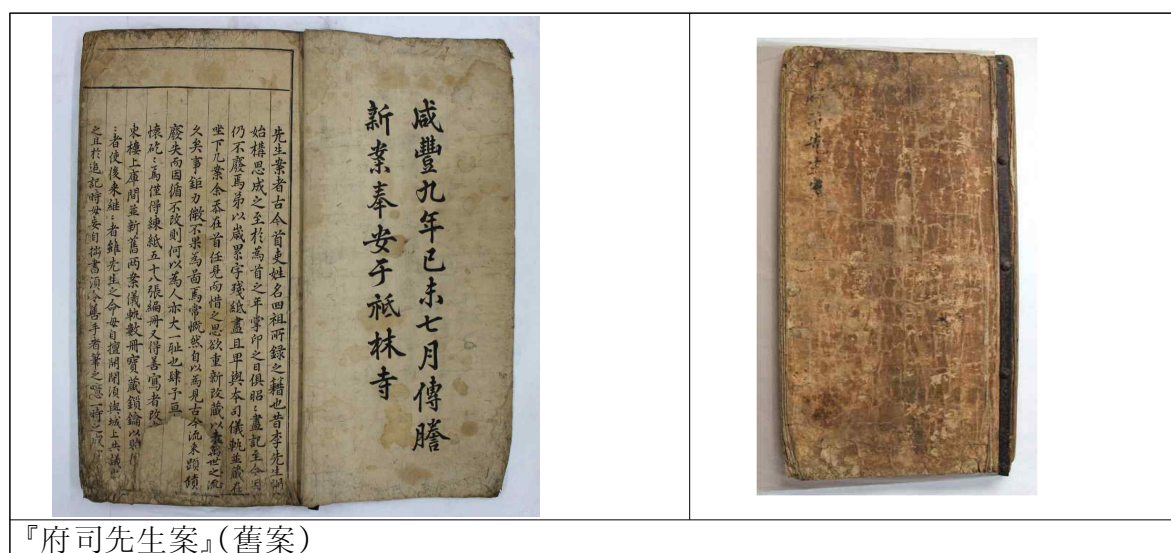
## ○ 내용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府司先生案』(舊案/新案)은 경주부의 ‘戶長先生案’에 해당한다. ‘先生案’은 특정 관직을 역임한 사람들의 성명을 비롯하여 관직명, 생년, 본관 등을 기록한 서적으로서, 내용에 따라서는 부임한 연도와 印信을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해당 官府의 행정과 인사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 자료라 평가된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府司先生案』은 舊案과 新案의 두 종이 있는데 수록된 인물은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에 이른다. 우선 이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書名	所藏處	序文 및 跋文	收錄人物	特徵	비고
『府司先生案』	國立慶州博物館	李 弼 등 (恭愍王 10, 1361) 金多慶 (中宗 18, 1523) 金士龍 등 (正祖 11, 1787)	金成庇 … 崔俊渭 (430餘年 256人)	最初本(1523)의 累加追錄本	舊案
『府司先生案』	國立慶州博物館	李廷臣 (英祖 17, 1741)	李 仁 … 崔炳教 (280餘年 161人)	累加追錄本	新案

『府司先生案』 舊案은 不分卷 1冊으로 사방을 굽고 가는 두 개의 선을 그려넣고, 2단으로 구획을 나누어 10행 22자 내외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변란은 가늘고 굵은 두 개의 선으로 그린 후에 내부를 2단으로 구획하였다. 세로의 길이는 전체 70.6cm로서 상단은 6.6cm, 하단은 64.0cm이며, 가로 폭은 33.7cm이다. 본문은 표지를 제외한 전체 33장 가운데 22장까지 기록하였고, 11장은 空紙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府司先生案』(舊案)

『府司先生案』(舊案)의 제작 목적 및 제작 시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선생 안 속에 수록되어 전하는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 및 ‘嘉靖二年’ 序文, ‘至正二十一年 辛丑’ 慶州司首戶長行案, ‘崇禎後三丁未’ 後誌竝序 등을 통하여 추정 가능하다. 우선 관련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  
咸豐九年己未七月傳騰新案奉安于祇林寺

나) ‘嘉靖二年’ 序文  
선생안은 고금 수리(首吏)의 성명과 그들의 사조(四祖)를 기록한 책으로, 옛날 이필(李弼)선생이 처음으로 고안하여 만들었다. 즉 首吏가 되는 해와 인신(印信)을 맡은 날짜를 모두 상세히 기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폐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낡고 종이가 헤졌으며, 또한 이를 함부로 부사(府司)의 의궤(儀軌)와 함께 구석진 케안(几案)에 숨겨져 있었다. 내가 외람스럽게 수임(首任) 자리에 있으면서 이를 보고 애석하게 여겨 다시 새 책으로 만들고 만세도록 유구히 전하러 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크고 힘은 미약하여 가벼이 도모하지 못하고 항상 한탄했었다. 가만히 고금의 유래를 살펴 볼 때, 선현의 큰 자취가 사라지고 있지만 인순(因循)에 빠져 고칠 줄 모른다면 어찌 사람 노릇을 한다 할 것이며, 또한 일대 수치가 아니겠는가. 나는 마음을 태우다가 이제 근근히 연지(練紙) 58장을 구하여 책을 엮고, 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다시 썼다. 그리고 동루(東樓) 위 공간에 신·구안의 두 선생안과 의궤 몇 책을 상자에 넣어 보물처럼 감추고 자물쇠로 걸어 후세 계승자에 물려주었다. 후세 계승자는 비록 先生의 명령이 있더라도 이를 함부로 開閉하지 말고, 반드시 城主와 더불어 함께 논의하여 꺼내보도록 하여라. 또한 선생안을 追記할 때 망녕되게 拙書로 쓰지 말고, 반드시 善手(善手)로 하여금 필기하도록 하라. 슬프다. 한 때 이루어 놓은 것이 만세에 전하고, 만세 전해오던 것이 일조에 사라질 수 있다. 대개 이 선생안을 작성한 것은 지정 신축년(1361)에 비롯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눈 앞의 일을 훤히 보듯 하니, 이필선생의 사려가 참으로 심원한 것이다. 만약 후세 首吏되는 사람은 이필선생의 뜻을 본받지 않고 이 선생안을 하루아침에 훼손시켰다면, 선생은 그가 누구인지 알 것이고 후진들도 또한 그가 누구인지 알 것이다. 하물며 이 선생안을 살펴 보면 뚜렷하게 그 아무개를 분명 아는데 있었으랴. 아무개가 수리 아무개로 높임을 받게 되면 모두 한 고을 이족(吏族)의 거두가 되는데, 후인은 어찌 맘대로 수리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대개 그 사람이 아닌데 수리가 되자고 한다고 수리가 되겠는가. 후세를 계승한 사람은 스스로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 2년(1523)에 安逸戶長 金多慶이 쓰다.

다) ‘至正二十一年 辛丑’ 慶州司首戶長行案  
州는 경주는 『三國遺事』에, 개벽한 이래 진한 땅에는 옛부터 6부가 있었다. 첫째는 中興部, 둘째는 南山部, 셋째는 長福部, 넷째는 通仙部, 다섯째는 加德部, 여



셋째는 臨川部 등이다. 6부 촌장은 前漢 宣帝 地節 元年 임자(B.C, 69) 3월 초하루에 각각 자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알천 언덕 위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는 위에 군주가 없어서 백성들이 모두 放逸하다. 어찌 덕 이 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로 삼아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이때 한 개의 붉은 알이 하늘에서 땅에 드리워졌다. 그 알을 깨어서 남자 아이를 얻으니, 용모가 단정하였다. 알이 표주박과 같았으므로 성을 ‘朴’으로 삼고, 알이 깨어날 때 일월이 청명했으므로 이름을 ‘赫居世’라 지었다. 나이 13세가 되던 五鳳 元年 갑자년(B.C,57)에 이르러 나라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고, 국호를 徐伐·斯伐·雞林·新羅라 하였다. 나라는 서로 992년간 이어져 後唐 閔帝 淸泰 2년 을미 (935)에 이르니, 모두 56왕이었다.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합하였다. 이 때 신라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교외에 나가 맞아 천명에 순응하여 始終 그를 도왔으므로, 신라의 京號는 변동하지 않고 東京 留守官을 두었다. 고을 이름은 慶州라 정하고 千丁 이상 고을이었으므로 堂祭 10명을 정하였다. 고려 광종 때 堂祭를 戶長으로 호칭하고 수는 8명이었으며 수호장의 성명을 순서대로 정하여 후세 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명안을 모두 찾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다. 근래에 와서 上戶長 성명을 조목마다 추고하였고, 行公의 차례를 모두 뒤에 시행한 대로 수록하였다. 이후 상호장 성명과 四祖, 인신을 맡은 연월 등 시행한 것을 후세 전하게 되면 매우 다행일 것이다.

慶州司

戶長正朝 李弼 / 戶長正朝 金學 / 戶長正朝 崔益

戶長正朝 金光淑 / 攝戶長 金鍊 / 攝戶長 金○

攝戶長 李逢雨 / 攝戶長 朴 / 副戶長 孫

副戶長 崔 / 副戶長 崔 / 副戶長 金

戶正 / 戶正 / 副戶正 / 副戶正

詔文州史 孫

라) ‘崇禎後三丁未’ 後誌竝序

호장안을 만든 것은 至正 辛丑年(1361)이고, 嘉靖 2年(1523) 에 나의 旁祖가 印信을 관리했을 때 다시 작성하였다. 기록이 있으면 세대가 멀어도 유추하여 알 수 있다. 지난 임란 때 公私의 서류와 책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그때 호장 崔洛이 병화 중에서 이 호장안과 道·府案을 챙겨 鑿莊寺 석실 속에 숨겨 두었다가 전란 후 도로 가지고 와서 봉안하였다. 8년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석실에 바람이 새고 습기가 차서 卷帙이 낡고 상하여 옛 도·부안은 다시 만들어 새롭게 하였다. 다만 본 안은 堂參 行禮로서 호장이 인신을 관리한 후 이 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새로 改修하지 못하고 次第에 따라 계속 추록하여 나의 先君과 최 선생에 이르러 폐지되었다. 예는 存羊에서 폐하였고 붓은 獲麟에서 끊어졌다고 하듯, 호장안이 여기에서 다하였다. 아, 수백 년 동안 전승되어온 예가 나의 선군 이후 한 사람도 다시 행하는 이가 없고, 여러 선생을 추록했던 이 안은 나의 선군 이후에 한 사람도 다시 수록한 이가 없단 말인가. 선군이 추록한 후 70여 년 동안 예와 안이 모두 폐하였다. 항상 이 책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지체할 수 없었다. 몇 몇 후진들은 舊案이 이미 폐지된 것을 슬퍼하고 호장이 단절된 것을 통탄하였다. 이에 한 안을 새로 작성하여 미처 수록하지 못했던 사실을 기록하

고 호장의 체계를 서로 연결시켰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수백 년 간 전해져 온 구안은 이로써 더욱 영구히 멀어져 높은 다락에 묶어 두었듯 알 수 없게 되었으니, 후생이면 누구나 흥감을 일으켜 애석하지 아니하겠는가. 삼가 본 안을 살펴보면, 상단 넷째 줄에 수록한 성과 이름은 곧 선군의 24대 할아버지다. 가문 가운데 24세가 한 명안에 등재 되어 전승해 온다는 것은 또한 드문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 자손이 불초해서 그런 것인가, 時世가 점차 멀어지면서 쇠미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 생각해 보니 선군 돌아가신 지 59년이 흘렀고, 소자 또한 85세다. 이 호장안을 봉안하여 옛 사적을 더듬어 보는 것이 그 얼마의 날이 남았으며, 이 안을 전하여 古禮를 행할 사람 또한 그 누군인가. 고금을 感傷하며 눈물로 삼가 이 글을 쓰니, 후인들도 또한 슬퍼하며 이 안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미년(1787) 정월 상순에 후생 金士龍이 삼가 쓰다. 아울러 서문

이들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자료의 성격과 내용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로 다음 몇 가지를 판단할 수 있다.

첫째,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에 나오는 ‘傳騰新案奉安于祇林寺’라는 내용을 통하여 1859년(咸豐9年, 己未, 철종10년)에 선생안이 새롭게 謄寫되어 기림사에 봉안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嘉靖二年’ 序文을 작성한 安逸戶長 金多慶은 1523년(중종18)에 당시 전하던 ‘先生案’이 세월이 오래되어 글자가 낡고 종이가 헤졌으며, 府司의 儀軌와 함께 구석진 几案에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練紙 58장을 구하여 책을 엮고, 또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다시 기록한 이후에 신·구안의 두 선생안과 의례 몇 책을 상자에 넣어 보물처럼 감추고 자물쇠로 걸어 후세 계승자에 물려주었다. 또한 선생안을 追記할 때 망녕되게 拙書로 쓰지 말고, 반드시 善手로 하여금 필기하도록 하라는 당부를 전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통하여 『府司先生案』(舊案)은 1523년에 지금은 전하지 않는 原本 資料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후 계속적으로 추기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府司先生案』의 내용을 보면 金多慶의 부친은 안일호장 金在中, 조부는 정조호장 金諱, 증조부는 金貴, 외조부는 수호장 李佳祥이었으며, 1522년(嘉靖元年, 壬午) 4월 14일에 正朝戶長으로 임명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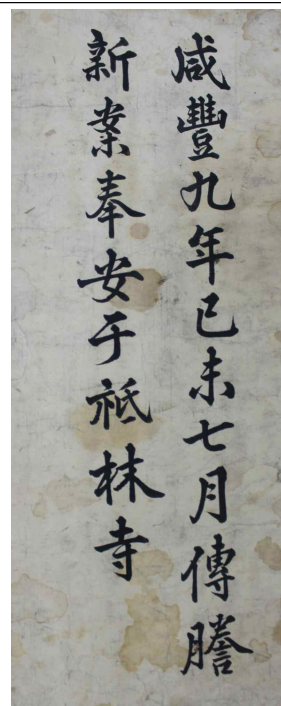
셋째, ‘至正二十一年 辛丑’ 慶州司首戶長行案은 1361년(至正21, 辛丑, 공민왕 10)에 慶州司의 戶長正朝이었던 李弼, 戶長正朝 金學, 戶長正朝 崔益, 戶長正朝 金光淑 등과 攝戶長, 副戶長, 戶正, 副戶正, 詔文州史 등이 고을 이름인 ‘慶州’라는 지명의 변천과정과 고을의 首戶長을 지냈던 인물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府司先生案』의 내용을 보면 호장정조인 李弼은 그 부친이 李芮이며, 조부는 호장 李暉, 증조부는 李幹, 외조부는 兵正 李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至正 15年(1355) 7월에 인신을 관리한 이래 지정 19년(1359)과 지정 22년(1362)에 다시 선임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崇禎後三丁未’ 後誌竝序를 통하여 安逸戶長 金多慶에 의하여 만들어진 ‘先生案’이 임진왜란의 기간 중에 鑿莊寺 석실 속에 봉안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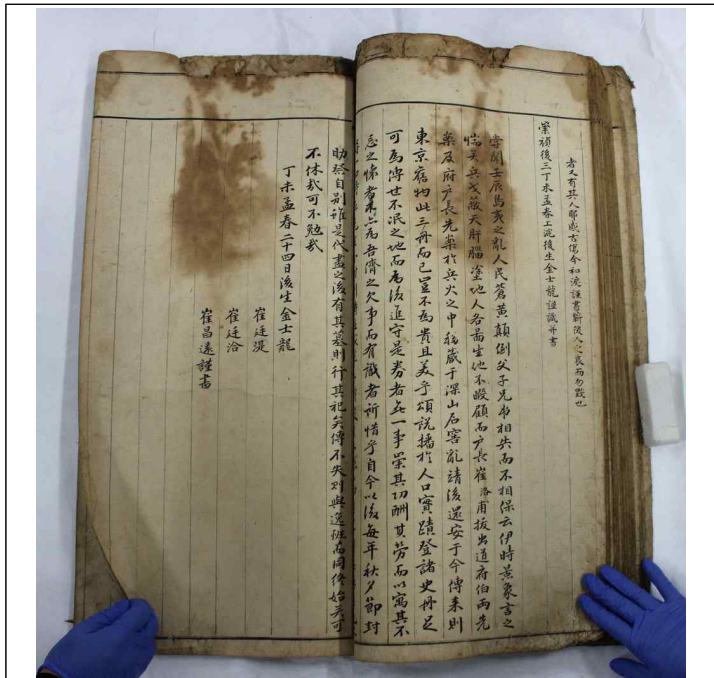
있다. 이 글을 쓴 시기는 1787년(崇禎後三丁未, 정조11)이다. 金士龍은 ‘先生案’의 전래가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하며 호장층의 의례와 제도가 변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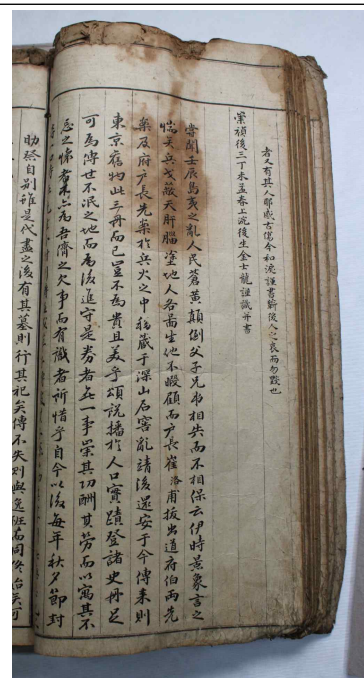
‘嘉靖二年’ 序文  
 ‘至正二十一年 辛丑’ 慶州司首戶長行案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



‘崇禎後三丁未’ 後誌竝序 (孟春上浣/孟春二十四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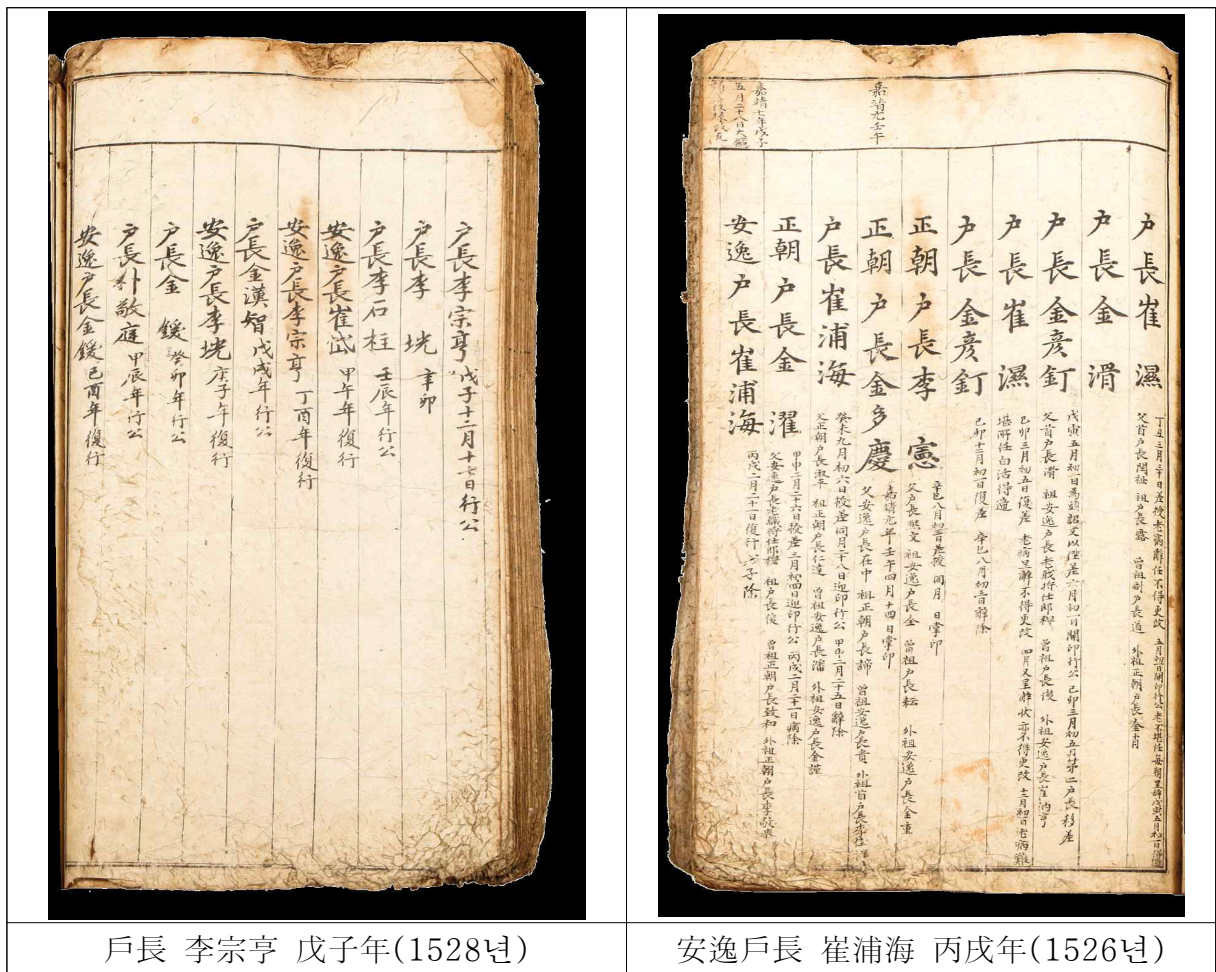




이같이 『府司先生案』 舊案은 1361년 正朝戶長이었던 李弼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원본을 바탕으로 하여 1523년 正朝戶長인 金多慶에 의하여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고, 이후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에도 1787년까지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1859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등사되어 기림사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곧 조사본 경주박물관의 『府司先生案』(舊案)은 1523년 이후 만들어진 이후 원본을 바탕으로 하여 累加·追錄된 慶州府의 戶長先生案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이같은 사실은 필적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곧 1523년 金多慶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 1526년(중종21) 安逸戶長 崔浦海까지의 글씨는 동일한 필적으로 판단되나, 1528년(중종23) 戶長 李宗亨부터는 필적이 다르다. 이후 1713년까지 글씨는 여러 사람의 필적으로 累加·追錄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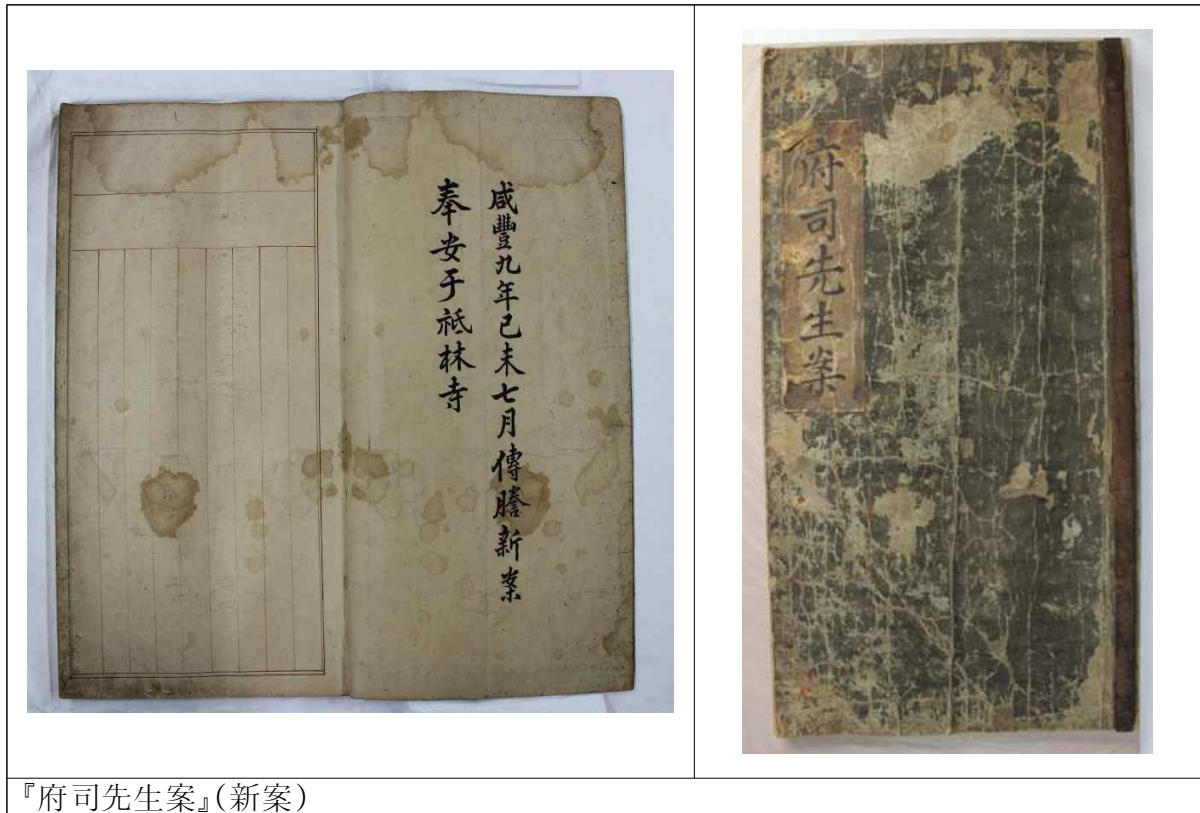
『府司先生案』(舊案)에 수록된 인물은 고려 왕조에 해당하는 1281년(至元十八年, 辛巳, 충렬왕 7)에 임명된 戶長 金成庇로부터 조선왕조에 해당하는 1713년(癸巳, 숙종 39)에 임명된 崔俊渭에 이르기까지 256인이다.



戶長 李宗亨 戊子年(1528년)

安逸戶長 崔浦海 丙戌年(1526년)

한편, 『府司先生案』新案은 不分卷 1冊으로 사방을 굵고 가는 두 개의 선을 그려 넣었는데 외선은 墨線으로 내선은 朱線으로 그려 넣어 차별하고 있다. 본문 부분은 3단으로 구획을 나누어 9행 23자 내외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변란의 세로 길이는 전체 67.7cm로서 상단은 7.5cm, 중단은 7.1cm 그리고 하단은 53.1cm이며, 가로 폭은 30.8cm이다. 3단의 가장 상단에는 年號와 刊記를 기록하였다. 본문은 표지를 제외한 전체 33장 가운데 14장까지 기록하였고, 19장은 空紙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府司先生案』(新案)

『府司先生案』(新案)에는 舊案에 전하는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 외에도 ‘乾隆六年 辛酉’에 前戶長이었던 李廷臣과 崔岐瑞가 작성한 서문이 있어 그 연원을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관련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를 살펴보면 백성의 長을 戶長이라 불렀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州縣 호장을 두었던 것은 오래되었다. 경주에서 고려 이후 지금까지 인신을 관리하고 부임하여 이 지방에서 호장을 지낸 사람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그러나 이들이 履歷한 날짜와 성명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지정 신축년(1361)에 李弼 선생이 깊고 멀리 생각하여 처음으로 먼 후손에게 전할 계책을 세웠다. 따라서 전해들은 것을 채집하고 책자를 만드니, 세계와 연보가 모두 소상히 밝혀졌는데 이것이 이른바 先生案이다. 이후 대대로 삼가 수호하고 그 기록을 보충하여 오래도록 전하여 왔다. 가정 2년(1523)에 金多慶 선생은 그

책이 오래되어 종이가 낡고 글자에 오탈이 있는 것을 민망히 여겨 마침내 수집하여 다시 새롭게 책을 만들었다.

임진왜란 때 병화로 인하여 모든 책과 문서가 불에 타 남은 것이 거의 없는데, 하물며 이 서책만이 홀로 온전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최락 선생이 이 책과 營主案을 몰래 숨겨 鑿藏寺 승방에 감춰 두었다. 『歷世諸子記』도 이와 함께 불덩이 속에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최락 선생이 삼가 수호하였던 그 공헌을 무엇으로 다 말하겠는가. 아, 이 호장안은 고려 초 세상이 어지러울 때 작성하여 여러 병란 속에 보존되었던 것은 李弼·金多慶·崔洛 등 세 선생의 공로에 힘입은 것인데, 이들의 깊은 사려와 옛 기록을 존중하는 태도는 전후 모두가 한결 같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수백 년 간 내려온 귀중한 책들이 하나의 영향도 남기지 못하고 소멸하여 먼 후세에 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임진년(1591)에서 오늘까지 2백 년 간 首任으로 맡아온 사람이 전후로 이어졌지만, 다만 이 안을 계속 수록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禮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어느 한 사람이 그 遺蹟을 답습하여 널리 전수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찌 우리 安逸戶房으로서 심상히 개탄할 바가 아니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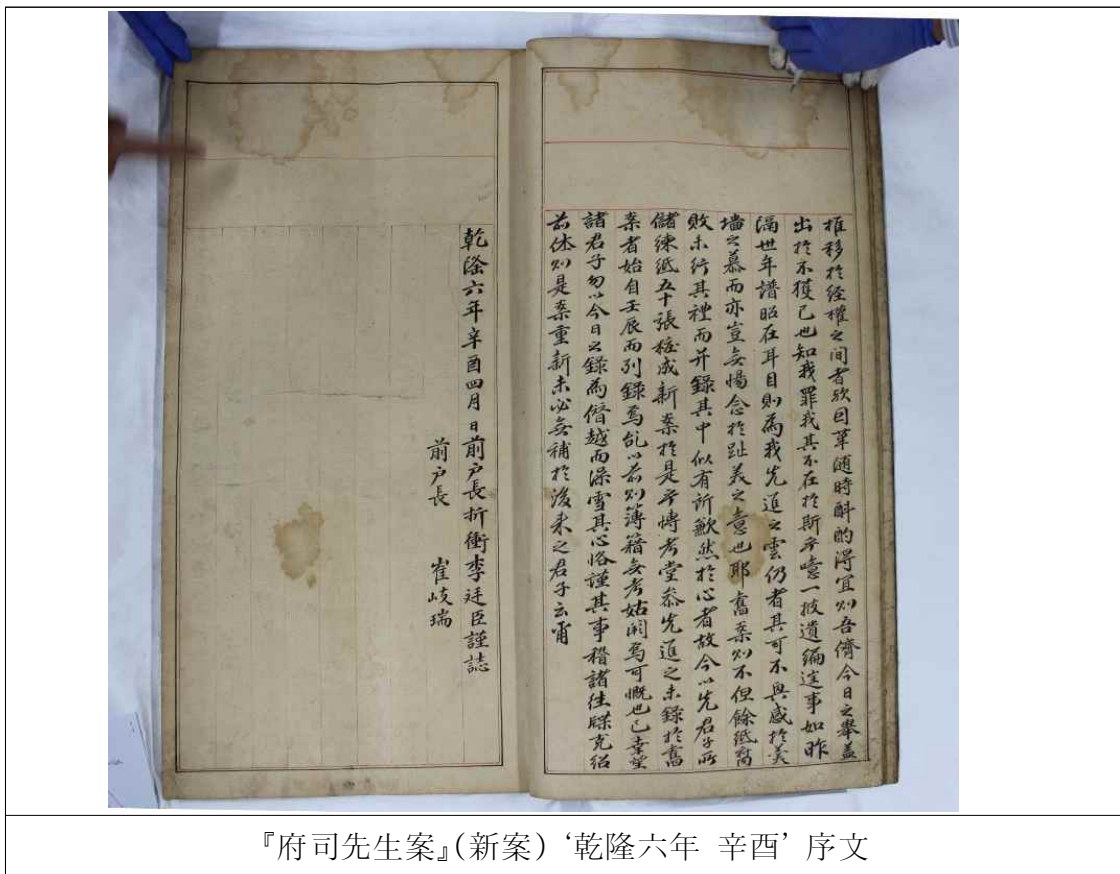
송정 기원 후 경자년(1650)에 이르러 나의 선군께서 개연히 이 책에 뜻을 두시고 前哲들의 큰 규범을 수집하면서, 구안이 장차 인멸될까 매우 애석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몇 장의 練紙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새롭게 작성하려 했으니, 그 뜻은 부지런하고 진지하였다. 그러나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끝내 성취를 보지 못했으니, 어찌 또한 후배들이 깊이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 호장안의 參錄은 진실로 그 법규가 엄격하고 절제가 있었다. 堂參戶長도 옛부터 그 예가 있어서 준수하고 감히 어기지 못했으며, 순서에 따라 승급하였다. 처음 이 안을 수록할 때 비록 수임을 지냈어도 혹 예를 행하지 않으면 編次의 말미에도 이름이 오를 수 없었는데, 이러한 유래는 참으로 오래되었다. 전고의 예를 상고해 보면 소상히 고증할 수 있는데, 이 안의 참록을 돌아보면 어찌 엄격하고 절제가 없다할 것인가. 근래 금령으로 인하여 이 예가 폐한 지 오래되었고, 다만 免新의 한 예만 존속하고 있다. 그런데 옛날 예법만 굳게 고집하여 끝내 이 안을 닦지 않았다면 장차 선배들이 힘써 편찬한 이 책은 하루아침에 폐기되고 말았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후세 이를 이어온 사람들은 선배의 성명이 인멸된 것도 애석해야 할 것 이며, 또한 옛 선생들이 후세에 전하려는 성의는 이에 이르러 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쓸모없다면 어찌 다만 그 잘못을 선배에게만 탓할 수 있겠는가. 또한 후진에게 물려주려는 선배들의 여한은 반드시 끝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여 함부로 이 안을 더럽혀 지난 규약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고 이미 바뀐 예를 오늘에 다시 행하기 어렵다 한다면, 이것 역시 權度의 간격을 推移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므로 革廢에 인하여 時宜를 적절히 하고 편의에 의해 짐작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일이 대개 부득이 한 데서 나온 것이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나 비방하는 사람도 이 책 속에 그 뜻이 나타나고 있다. 한 번 이 책을 펼쳐 보면 지난 일을 어제와 같이 알 수 있고, 세대와 연보가 자세히 耳目에 있는 듯하다. 우리 前進의 후손들은 어찌 선조를 흠모하는데 대한 흥감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이며, 후진들이 이어갈 뜻에 대하여 또한 두렵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구안은 종이가 낡아 부패되었을 뿐 아니라 그 예법대로 행하지 않으며, 이 책에



오늘의 예를 나란히 기록하는 것도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선군이 쌓아둔 연지 50장을 장정하여 신안을 만들었다. 이에 널리 堂參 신진들이 구안에 수록하지 못했던 것을 참고하여, 임진년(1628)부터 두루 수록하였다. 임란 이전은 名籍을 고증할 수 없어서 짐짓 빠뜨려 놓았으니 한스러울 뿐이다. 다행히 바라건대, 여러 군자는 오늘의 이 명안 만든 것을 분수에 넘친 일이라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각자 일에 특별히 조심하여라. 그리고 지난 여러 책을 상고하여 前代의 체제대로 이어 간다면, 이 안을 새로 작성한 것이 또한 받드시 후 세 군자들에게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乾隆 6년 신유(1741) 4월에 前戶長 折衝 李廷臣 · 前戶長 崔岐瑞 삼가 짓다



1741년에 지은 이 서문을 통하여 1523년 金多慶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후 1713년까지 累加·追錄되었던 『府司先生案』(舊案)이 새롭게 다시 만들어졌고, 당시 이 두 책을 구별하여 舊案과 新案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府司先生案』(新案)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1628년(崇禎元年, 戊辰)에 공무를 맡았던 戶長 李仁으로서 그의 부친은 호장 李希福, 조부는 호장 李世老, 증조부는 監營吏 李垣, 외조부는 호장 李漣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907년(丁未, 순종 1)에 임명되는 崔炳教에 이르기까지 161인이다.

## ○ 文獻資料

- 國立慶州博物館 編, 『(慶州 戶長의 記錄) 府司先生案』. 慶州 : 國立慶州博物館, 2017.
- 慶州市·慶州文化院 編譯, 『國譯慶州先生案』. 慶州 :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 國立國會圖書館, 1970.
- 亞細亞文化社 編, 『慶州先生案 五種』.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2.
- 震檀學會 編, 『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서울 : 震檀學會, 1980.

## □

『[慶州]府司先生案』은 고려부터 조선까지 경주부 역대 호장의 성명, 임체년월일, 사조를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관원명부이다. 당해 서적에는 권두서명이 없고, 어디에도 ‘戶長先生案’이란 서명이 없다. 다만 표지에 ‘府司先生案’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껏 내용상 호장의 명목이라 하여 ‘戶長先生案’이라 칭해왔다. 『[慶州]府司先生案』은 단순한 호장의 명부라기보다 호장층의 世系는 물론 구안과 신안의 전승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지정 대상으로 조사한 서적은 2종이다. 구안(경주43638)은 중종 18(1523)년 안일호장 金多慶이 당시에는 전래되고 있던 공민왕 10(1361)년 호장정조 李弼 등이 편찬한 慶州司首戶長行案을 저본으로 충렬왕 7(1281)년까지 거의 250년을 소급하여 작성한 책이다. 신안(경주43639)은 영조 17(1741)년에 추록된 것이다. 이 2책을 이어 철종 10(1859)년 孫永謨 등이 추록한 명단이 기림사본과 규장각본이다.

## ○ 내용 및 특징

당초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문화재는 『府司先生案(戶長先生案)』(舊本)이었다. 그러나 국가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과정에서 지정신청 문화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결과로 『慶尙道營主題名記』는 국립경주박물관 수장본과 상주향교 수장의 2종, 『府司先生案』은 국립경주박물관 수장본 2책만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규장각 수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2종과 『戶長先生案』, 경주시립도서관 수장의 『道先生案』, 『府尹先生案』, 『府司先生案(戶長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의 5책은 조선말의 전사본으로 추정되어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본보고서에는 국립경주박물관 수장의 『[慶州]府司先生案』 2책만 다루기로 한다.

『[慶州]府司先生案』은 역대 경주의 향리인 호장의 명목이다. 조선시대에는 지방



관청의 吏職으로 吏曹에서 직첩을 받는 攝戶長, 正朝戶長, 安逸戶長을 두었다. 호장의 칭호는 다양하다. 정조호장은 戶長正朝라고도 하는데, 首戶長으로 해당 고을을 대표해 매년 정월 초하루 또는 국가적 경조사에 궁궐에 가서 숙배의례에 참석했다는 뜻이다. 상호장 上戶長, 頭戶長이라고도 하며 읍의 印信을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는 현임호장 가운데 수석호장이다. 섭호장은 權知戶長이라고도 하는데, 제반사무를 섭행한다는 뜻이다. 안일호장은 호장이 70세에 이르러 퇴직한 호장을 말한다.

慶尙道營主題名記의 傳來本						
異稱	表題	作成年	最終年	序文	收藏處	備考
河濱本	棠下題名記	1720	1425-1718	河濱	경주박물관	最古本
尙州本	道先生案	1886	1425-1886	河濱, 金正男	상주향교	金正男本
鷄林本	營先生案	1818	1425-1818	河濱, 金正男, 南至熏	규장각	金正男本
南至熏本	慶尙道營先生案	1859	1425-1818	河濱, 金正男, 南至熏	규장각	
祇林寺本	道先生案	1903	1425-1903	河濱, 金正男, 南至熏	경주도서관	祇林寺印
[慶州]府司先生案의 傳來本						
異稱	書名	作成年	收錄範圍	序文	收藏處	備考
舊本	府司先生案	1787	1281-1713	李弼, 金多慶, 金士龍	경주박물관	
新本	府司先生案	1907	1652-1907	李廷臣, 崔岐瑞	경주박물관	
祇林寺本	戶長先生案	1935	1281-1907	孫永謨 등	경주도서관	
	戶長先生案	1935	1281-1907	孫永謨 등	규장각	
上記 2種을 除外한 慶州市立圖書館 收藏의 先生案						
書名	對象	作成年	序文	藏書印	備考	
府尹先生案	慶州府尹	1475	梁順石	祇林寺印	1935年頃 轉寫	
上詔文先生案	上詔文 作成 鄉吏	1859	李景祿-崔渭祥	祇林寺印	1935年頃 轉寫	
講武堂先生案	慶州 戍衛武官	1859	尹仁涵-朴炳翌		1981年頃 轉寫	

호장은 지방관청의 吏職으로 국가적으로는 그 서열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지방에서 세습적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한 전문행정가였다. 이들은 대민 창구의 역할을 하는 戶口帳籍의 관장, 田租와 貢賦의 징수와 상납, 力役 동원, 군사임무를 띤 장교로서 주현군을 통솔하였으므로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은 대단했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는 양상이 달라져 중인계층이 되었으며, 특히 지방제도를 정비한 15세기 이후는 향리의 지위가 더욱 격하되었다. 호장의 권한도 축소되어 행정의 하부조직을 맡으며, 향리의 수반으로 실무를 수행하는데 불과하였다. 그렇지만 한 고을에는 한 顆만 있는 印信을 관리한 수호장은 공무를 집행했고, 수령의 부재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권위는 대단하였다.

전래되는 지방 향리의 명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흔한 것도 아니다. 경주에는 몇 종의 선생안이 전래되고 있다. 경주가 경상도 감영이었던 까닭으로 『慶尙道營主題名記』가 전래되고, 여기에 더해 『府司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이 전래되고 있다. 그러나 경주부윤의 명록인 『府尹先生案』은 철종 10(1859)년 필사한 기림사본만 전래될 뿐이다.

『[慶州]府司先生案』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기준으로 삼는 권두서명이 수록되지 않았으므로, 표지서명으로 불리겠지만 이도 아니다. 그러나 서문을 통해서는 『慶州司首戶長行案』이 최초의 명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에 金多慶이 다시 편성하면서 권두서명을 기입하지 않고, 또 동일 서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표지서명에 분명한 ‘戶長’이란 직책을 내세우지 않고 ‘府司’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府司’란 경주부의 官司 자체 또는 그 담당관이란 의미이다.

경주의 『[慶州]府司先生案』은 단순한 호장의 명부라기보다 수호장의 명단으로 호장층의 世系와 구안과 신안의 전승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는 중종 18(1523)년 안일호장 金多慶이 당시에는 전래되고 있던 공민왕 10(1361)년 호장정조 李弼 등이 편찬한 慶州司首戶長行案을 저본으로 충렬왕 7(1281)년까지 거의 250년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후대에 추록하여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다.

『[慶州]府司先生案』은 4종이 전래되고 있다. 구안(경주43638)은 중종 18(1523)년에 제작되었고, 신안(경주43639)은 영조 17(1741)년에 추록된 것이다. 기림사본과 규장각본은 구안을 저본으로 철종 10(1859)년 孫永謨 등이 제작한 명단이다. 이 두 책은 1935년경의 전사본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 2책은 4종 가운데 古本으로 추정된다.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해 경주박물관으로 이관한 서적이다. 호장의 지역에서의 권위는 대단했던 까닭인지 『[慶州]府司先生案』의 지질, 규격, 장황, 수록내용의 수준에 있어 중앙에서 파견한 관찰사의 명단인 『慶尙道營主題名記』와 비견될 정도로 손색이 없다. 2책 다 앞 면지에는 ‘咸豐九年己未七月傳謄新案奉安于祇林寺’ 즉 ‘철종 10(1859)년 7월 신안을 성책하여 기림사에 봉안한다’란 기록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본인 국립경주박물관 수장의 『[慶州]府司先生案』(舊本)과 (新本) 2종만 다루기로 한다.

#### 1) 서지사항(국립경주박물관본-구안)(경주43638)

[慶州]府司先生案 / [慶州府(朝鮮) 撰]

寫本. [正祖 11(1787)]

1冊(33張). 四周雙邊. 半郭 70.6 × 33.7cm. 有界, 2段10行, 字數不同. 無魚尾; 75 × 40 × cm.

表紙書名: 府司先生案.

序: 嘉靖二(1523)年○○○○月日安逸戶長金多慶誌.

跋: 崇禎後三丁未(1787)孟春上浣後生金士龍謹識並序.

丁未(1787)孟春二十四日後生金士龍崔廷湜崔廷洽崔昌遠謹書.

面紙筆寫年紀: 咸豐九年己未(1859)七月傳謄新案奉安于祇林寺.

裝訂: 鐵裝.

책1은 구안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호장안으로 국내 현존 최고본 경주의 호장안이다. 전래과정에 전란도 겪었고, 누습되어 얼룩이 있고, 훼손된 부분을 배접해 보수한 흔적도 있다. 글자가 마멸된 부분에는 보입한 곳도 있다. 외관은 황색 명주 표지에 무문의 철제 변철을 대고 박을못 5으로 고정시킨 鐵裝이다. 원환은 보이지 않는다. 서명 ‘府司先生案’을 표지에 직접 필사했으므로 제침은 없다. 책지는 空紙를 포함하여 33장이다. 권두에 성책 경위인 중종 18(1523)년 안일호장 金多慶이 지은 戶長先生案舊序와 공민왕 10(1361)년 호장정조 李弼 등 호장의 명단이 열록된 慶州司首戶長行案의 서문이 있다.

慶州司首戶長行案의 서문을 통해 공민왕 10(1361)년 慶州府의 安逸戶長 李弼를 비롯한 金學·崔益·金光淑·金鍊 등이 당시로부터 소급이 가능한 명단을 推考하여 기록한 명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소급한 명단은 충렬왕 7(1281)년 호장 金成庇부터이다. 이후 세월이 오래되어 舊本의 글자가 낡고 종이가 해진 채로 机案에 방치되고 있음을 안타까이 여긴 安逸戶長 金多慶이 중종 18(1523)년에 李弼本을 底本으로 2차로 추록하였다.

이후 전래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의 전쟁을 당해 다급한 상황이 되자 당시 戶長 崔洛은 『營主先生案』·『府尹判官先生案』·『慶尙道地理志』·『慶尙道續纂地理志』·『新羅始祖世系族譜』 등의 서책을 관아 뒤뜰에 파묻었다가, 다급한 상황이 지난 후 경주 암곡리 鑿藏寺 석실에 숨겨두었다. 7년의 왜란이 끝난 후 보니 석실에 습기가 차서 부식된 책도 있어 道案과 府案은 새로 작성했다고 한다. 崔洛의 언급에 『府司先生案』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아마도 기록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정조 11(1787)년에 金士龍·崔廷湜·崔廷洽·崔昌遠 등이 3차로 추록하고 함부로 훼손하지 말도록 당부하였다. 이렇듯 舊本은 李弼·金多慶·金士龍 등이 추록한 慶州府의 戶長先生案이다.

본문의 前部는 金多慶이 편찬한 당시의 기록이며, 그 뒤에는 필체가 달라져 후에 그때마다 추록한 것으로 보인다. 중종 18(1523)년부터 수록된 명단은 직책과 성명 아래에 쌍행의 부·조·증조·외조·임면시기가 수록되어 있다. 중간에는 울산·안강·부산포 등 인접지역에 침입한 왜구를 퇴격한 기록 2편이 있다. 본문의 말미는 숙종 39(1713)년 안일호장 崔俊渭까지 기록되고 마감된 상태이다. 권말에 정조 11(1787)년 정월 상순에 쓴 金士龍의 後識가 수록되고, 이어 동년 정월 하순에 쓴 金士龍 외 4인의 後識가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구안에 수록된 범위는 충렬왕 7(1281)년 호장 金成庇부터 숙종 39(1713)년 안일호장 崔俊渭까지 수록되어 있다. 최후 성책시기는 정조 11(1787)년으로 추정된다.

2) 서지사항(국립경주박물관본-신안)(경주43639)

[慶州]府司先生案 / [慶州府(朝鮮) 撰]

寫本. [隆熙 4(1910)]

1冊(31張). 四周雙邊. 半郭 67.7 × 30.8cm. 有界, 3段9行, 字數不同. 無魚尾; 75 × 40cm.

表紙書名 : 府司先生案.

序 : 乾隆六年辛酉(1741)四月 日前戶長折衝李廷臣 前戶長崔岐瑞謹識.

面紙筆寫年紀 : 咸豐九年己未(1859)七月傳謄新案奉安于祇林寺.

裝訂 : 鐵裝.

책2는 신안으로 규격은 구안과 같은 체제인데, 군청색 지표지에 ‘府司先生案’이라 필사된 종이 제침이 첨부되어 있다. 내용이 필사된 책지는 14장인데, 많은 空紙가 있다. 권두에는 영조 17(1741)년 李廷臣과 崔岐瑞가 연명으로 쓴 서문에 임진왜란부터 당시까지 선생안 구안을 저본으로 수록해 신안을 제작한 이유가 기술되어 있다. 영조 17(1741)년 처음으로 성책해 본문 첫머리는 효종 3(1652)년 직전의 李仁부터 수록되었고, 일정한 기간을 거치면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수록된 것은 융희 원(1907)년 嚴守旻까지이다. 이어 崔正根부터 崔炳教까지 최씨 6인이 더 수록되어 있으나 임면연기는 누락되어 있다. 이 부분은 한일합방까지 수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안을 제작한 동기는 구안 김사룡의 후지와 신안 최기서의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영조 4(1728)년 호장 李雲桂까지는 堂參行禮를 행하지 않으면 수호장을 역임해도 선생안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다. 영조 4(1728)년 암행어사의 청에 따라 조정에서 당참행례를 혁파하고, 기강이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免新禮만은 존속시켰었다. 이에 영조 5(1729)년부터는 당참행례를 행한 호장과 면신례만 거친 호장을 구분하고 신안을 만들어 구안과 구별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영조 17(1741)년 신안을 제작한 후 구안과 함께 목재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 『道先生案』 · 『府尹先生案』과 함께 府司 東樓에 수장하였다. 매년 추석에 한번 개봉하면서 수록할 필요가 있으면 수록하였다.

인명마다 먼저 직함과 성명 아래에 소자로 四祖, 掌印年月日, 詣闕肅拜, 紅鞵下賜 등이 부기되어 있다. 사조를 밝힌 것은 자신들은 전통적인 가문출신임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재임용된 경우에는 임용연월 다음에 ‘復行’이라 기록되었는데, 재임용된 경우가 1/3 정도이며, 안일호장 金濟는 7회나 선임되었다. 호장이 체임될 때마다 수록하여 융희 원(1907)년까지 수록되었다.

철종 10(1859)년 前戶長 孫永謨 등 10여명이 영원히 전승될 것을 염원해 『道先生案』 · 『府尹先生案』 · 『戶長先生案』 · 『上詔文先生案』 · 『講武堂先生案』 등을 수록해 신안을 제작해 기림사 감실에 봉안하였다. 이때 새로 작성한 것이 기

림사본이다. 기림사본은 저본과 같은 체제로 장지에 정서한 것이다. 책마다 [祇林寺印]이 날인되어 있다. 1978년경 기림사에서 5종 선생안은 기림사의 서책이 아니고 경주시의 서책이라고 경주시에 인계하였고, 경주시는 이를 경주중앙도서관에 기탁하였다. 경주중앙도서관은 경주시립도서관으로 개칭되었다.

경주도서관에 이관된 이후 서고에 빗물이 스며들어 이들 서책이 손상을 입게 되었다. 그 가운데 『講武堂先生案』이 가장 많은 손상을 입어 영인본을 저본으로 동일하게 전사하였다. 손상입은 구안의 행방은 알기 어렵다. 나머지 4종은 표지만 개장하였으므로 본문에는 얼룩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 ○ 문헌자료

부사선생안 ; 경주 호장의 기록.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2017)

慶州市·慶州文化院 編譯, 『國譯慶州先生案』. (경주: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慶州先生案 五種. 影印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 ○ 기 타

국립경주박물관 수장의 『[慶州]戶長先生案』(舊案)과 『[慶州]戶長先生案』(新案)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 이관한 자료이다.

### ○ 지정사례

현재 『[慶州]府司先生案』 新·舊案과 동일 또는 유사한 版種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5.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 가. 검토사항

‘경상도영주제명기’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된 ‘경주부사선생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보완조사(19.4.18) 실시 중 ‘경상도영주제명기’에 대한 지정가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조사자들의 의견이 있어 상주박물관에 위탁된 관련 문화재에 대해 추가 비교조사(19.5.2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명칭 및 수량 : 경상도영주제명기(慶尙道營主題名記)/ 2종 2책

표제	棠下題名記	道先生案
지정 현황	비지정	비지정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박물관)	상주향교(상주박물관)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일성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 상주박물관
수량	불분권 1책	불분권 1책
규격	84.0×40.0cm	82.5×38.8cm
재질	저지(楮紙)	저지(楮紙)
판종	필사본	필사본
형식	철장(鐵裝)	선장(線裝)
시대	1426년(세종 8)	1622년(광해군 14)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指定 價値>

일반적으로 『先生案』은 당해 官府의 古今 首吏의 姓名과 그들의 四祖를 기록한 名案으로 특히 首吏로 부임한 연도와 印信을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해 官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慶尙道營主題名記』도 慶尙道の 歷代 觀察使의 名案과 그들에 관련된 記錄인 만큼, 歷代 慶尙道の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와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는 原資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연속되는 累加·追錄本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당하제명기)와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도선생안)는 原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기록으로서 ‘책이 오래되어 종이가 낡고 글자에 오탈이 있는 것’을 새롭게 종이를 구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예법에 맞추어 累加·追錄하였던 원천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先生案』은 당해 官府의 古今 首吏의 姓名과 그들의 四祖를 기록한 名案으로 특히 首吏로 부임한 연도와 印信을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당해 官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慶尙道の 歷代 觀察使의 名案과 그들에 관련된 記錄을 전하는 『慶尙道營主題名記』 두 책은 시대를 달리하며 累加·追錄하여 그 역사상을 상세히 보여주고 연속된 자료라는 점에서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광해군 13(1621)년 김지남이 관찰사로 부임한 후 慶州戶長 崔洛의 보관본을 저본으로 4부를 더 필사해 원본과 합쳐 5부를 분장하였었다. 5부 가운데 신안 1부와 구안은 본영인 達城에 보관하고, 나머지 신안 3부는 鷄林, 尙州, 安東에 수장하게 하였다. 구안 하연본을 대구본영에 수장했다고 하는데, 경주에 전래된 연유가 있을 것이다. 숙종 37(1711)년 경주부윤 南至熏은 종이가 낡아 다시 작성해 구안 2

본은 나무궤 2에 나누어 보관했다고 하였다. 남지훈의 서문에 구안 2종을 궤에 넣어 보관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는 하연본도 경주관아에 그대로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박물관 소장본 앞 면지에 필사된 ‘咸豐九年己未(1859)七月膾成新案奉安于祇林寺’는 철종 10(1859)년에 본서를 저본으로 신안을 필사해서 기림사에 봉안했다는 기록으로 후에 가필(加筆)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림사본은 철종 10(1859)년 본서를 저본으로 제작한 전사본으로 추정된다.

경주박물관 소장본이 가장 먼저 제작된 사본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4가지이다.

첫째, 고려시대부터 수록된 선생안이 극소수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의 관원이 수록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생안은 조선시대의 인물이 중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필체에 있어 장1 고려 문종 32(1078)년 李齊元부터 세종 5(1423)년 李叔畝까지 같은 필치이며, 하연이 도입한 세종 6(1424)년부터 달라지는데, 세종 9(1427)년 李繩直까지 또 다른 서체이다. 이는 관찰사가 바뀔 때마다 추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주박물관본에는 하연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고, 하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인장은 三足鼎形의 ‘敬齋’, 방형의 ‘晉陽世家’, ‘河濱’, ‘淵亮’이란 하연의 인장이 서문 말미에 날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주향교본에는 김지남의 서문도 수록되었으며, 규장각의 2종과 기림사본에는 南至熏의 서문까지 3종이 수록되어 있다.

넷째, 서문에 이어 2행으로 방형 광곽 안에 기록된 수장처 표기인 ‘本營慶州府置’란 기록을 통해 경주부에 수장되었던 책이며, 하연 당시는 경상도 감영이 경주부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경주박물관본은 하연이 고려시대부터 세종 5(1423)년까지의 경상도 영주의 명단을 정리해 수록한 것이며, 이후 추록되어 숙종 44(1718)년 4월28일 도입하고 이듬해 2월 호조참의로 전임된 李堉까지 수록된 최초본이다. 640년간 동일직명의 명단을 추록한 선생안이 전래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하연이 최초로 작성한 초고란 점에서는 경주박물관본은 매우 중요하다.

상주향교 소장본이 중요한 근거도 4가지이다.

첫째, 내용상 시작은 고려 문종 32(1078)년 李齊元부터 시작된다. 상주향교본에는 조선 고종 23(1886)년 李鎬俊의 부임까지 추록되었으므로, 800년 넘는 기간 동일직명의 명단을 추록한 명단이 전래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희귀서라 하겠다.

둘째, 원본의 내용에 지속적으로 추록하여 조선말기에 필사되었지만, 최초의 서



문을 추가하여 그 경위가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 책에는 하연의 서문에 이어 광해군 14(1622)년에 쓴 金止男의 서문과 그의 인장인 龍溪와 金氏止男이 날인되어 있다. 이를 통해 김지남 당시에 제작한 필사본에 수록된 책이란 점이다.

넷째, 하연의 서문에 이어 2행으로 방형 광곽 안에 기록된 수장처 표기인 ‘尙州牧置’란 기록을 통해 상주목에 수장했던 책이었음을 의미한다.

상주본에는 조선 전체 기간의 관찰사 명단을 수록되어 있어서 역대 경상도 관찰사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란 점이다.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관찰사를 다른 서적에서 찾은 경우, 『高麗史』와는 다르게 기록되거나 오기된 경우, 『高麗史』에는 보이지만 본서에는 수록되지 않은 경우, 『高麗史』에는 개명 후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본서에는 초명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 일부 오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경상도 관찰사와 관찰영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따라서 2종의 도선생안은 각각의 장점이 있으므로 모두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오염과 훼손 등이 적지 않아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전문가의 보존처리가 필요하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 細部調査書

당초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문화재는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案)이었다. 그러나 국가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과정에서 지정신청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문화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추가로 제1차(2019.04.18.)와 제2차(2019.05.23.)에 걸쳐 再調査 및 追加調査가 실시되었다.

제1차의 추가 조사된 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①『慶尙道營主題名記(棠

下題名記』, ②『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舊案), ③『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新案)의 3책과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①『道先生案』, ②『府尹先生案』, ③『戶長先生案』, ④『上詔文先生案』, ⑤『講武堂先生案』의 5책 등 도합 9책이다. 제2차로 추가 조사된 문화재는 상주향교 소장의 ①『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1책이다.

제1차와 제2차의 再調査 및 追加調査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①『慶尙道營主題名記』, ②『府尹先生案』, ③『戶長先生案』의 3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으나, 이들은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과 大同小異하여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의 조사로 대체되었다.

<表 1> 調査 對象의 各種 『先生案』과 所藏處 및 그 內容

番號	書名	一名	所藏處	內容	備考
01	『慶尙道營主題名記』	『棠下題名記』 『道先生案』 『道先生案』 『營先生案』	國立慶州博物館 尙州鄉校 慶州市立圖書館 서울大圖書館	慶尙道の 歷代 觀察使의 姓名 및 赴任과 交替 등에 관한 각종  관련 記錄	慶尙道營主題名記 奎25020
02	『府尹先生案』	『府先生案』 『慶州先生案』 『東都歷世諸子記』	慶州市立圖書館 서울大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府尹의 名單 및 各種  관련 記錄	慶州先生案 奎 25019
03	『戶長先生案』	『府司先生案』舊案 『府司先生案』新案 『戶長先生案』 『戶長先生案』	國立慶州博物館 國立慶州博物館 慶州市立圖書館 서울大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各種 戶長의 名單 및 關聯 記錄	
04	『上詔文先生案』	『上詔文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上詔文과 副詔文 및 當堂 侍의 座目과 各種  관련 記錄	
05	『講武堂先生案』	『講武堂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	慶州府의  역대 主將과 行首, 兵房과 掌務의 名單 및 各種  관련 記錄	

한편, 이들 각종 『先生案』에 수록된 序文과 跋文 등에 나타나는 각종 『先生案』의 編纂의 來歷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表 2> 調査 對象의 각종 『先生案』의 序文과 跋文에 나타나는 編纂의 來歷

番號	撰者	撰述時期	『書名』·『題名』	所藏處(收錄版本)	內容	備考
01	河 演	1425 世宗 07年 閏7月 19 日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尙道營主題名記 序』	國慶博(慶州本) 商鄉校(尙州本) 慶市圖 서대圖	·公私의 前賢 通籍을  찾아으나 泯滅되어 前注簿 孫熙의 家藏 錄本을 底本하여 通籍을  만들다. ·위에는 中朝와 本朝의 年譜를  기록하고  아래에는  각 연도에  부인한  使臣의  성명을  써서  '營主題名'이라  하다. ·2部를  작성하여  本營과  行營에  각  1부씩  備置하여  後日의  考覽에  便宜하도록  하다. ·前任者의  是非를  參考하여  後任者의  善治에  一助될  것을   목적으로  하다.	
02	金正男	1622 光海君 14 年 6月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尙道營主題名記 序』	商鄉校(尙州本) 慶市圖	·河演 公이 公私 典籍을  참고하여  『營主記』를  편찬하여  高麗 文宗 戊午(1078)부터  朝鮮 世宗 甲辰(1424)까지   기록하다. ·壬亂으로  舊書과  遺器가  兵火를  당하였으나  慶州  鄉吏  崔洛  公이  先生案을   수호하여  30여년   동안  傳來되다. ·天啓  元(1621)년에  到任한  뒤   이듬해(1622)  營吏  吳一燮이  本  先生案을   바쳐   널리  追錄하여   후세에   전하려   하다. ·유능한  書吏에게  舊錄에   의거하여  4帙을  繕寫하도록  하여  新·舊의  도합  5帙이  되다. ·5帙을  達城(新·舊)·鷄林(新)·商山(新)·花山(新)에  分藏하여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다.	
03	南至熏	1711 肅宗 37年 夏	『慶尙道營主題名記』 『慶尙道營主題名記 序』	慶市圖	·分藏되던  觀風案(道先生案)이  慶州에도  守藏되어   오다. ·監營이  大丘로   옮겨지고   수차의   전란을   겪었으나  舊案은  府(先生)案과   함께   그대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다. ·舊案은  세월이  오래되어  紙質이  해지고  字劃이  많이  脫落되어  前制에  따라  新案을   작성하다. ·舊案(舊藏)은  버리지  않고  두  書櫃(兩櫃)에  藏置하여   후세에  考評하도록   하다.	
04	梁順石	1475 成宗 06年 5月	『府尹先生案』 『府尹先生案序』	慶市圖 서대圖	·三國이  통일된  이후로  平壤을  西京이라  하고  鷄林을  東都라  하여  府尹을   두어  2천년   동안   지속되다. ·名籍(先生案)이  散漫하여  識者들이   유감으로  여기다. ·上舍  李存仁에게  鷄林의  前賢名籍(先生案)을  撰集하여   이를  後賢에게   전하도록   하다.	
05	李 弼	1361 恭愍王 10 年 正月	『戶長先生案』 『慶州司首戶長行案』	國慶博(慶州舊案本) 慶市圖 서대圖	·辰韓地에  예로부터  中興·南山·長福·通仙·加德·臨川  등  六部가   있다. ·五鳳  元(BC. 57)년에  國家를  세우고  國號를  徐羅·斯羅·雞林·新羅라  하여  後唐閔帝  淸泰  2(935)년까지  56王이다. ·고려  太祖가  三韓을  통합한  뒤  京號는  변동되지  않고  東京留守官을  두고  州號를  慶州라  하여  堂祭를  10名으로  하다. ·고려  光宗朝에  堂祭를  戶長이라  하고  수는  8명이었으며  首戶長의  姓名을   순서대로  정하여   후세에   전하다. ·이들  先生案을   찾지  못하여  근래에  上戶長의  姓名을   조목마다  推考하고  公務執行의   절차를  모두  기록하다. ·차후에  上戶長의  姓諱와  四祖  및  掌印年月  등의  시행을   후세에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다.	
06	金多慶	1523 中宗 18年	『戶長先生案』 『戶長先生案舊序』	國慶博(慶州舊案本) 慶市圖 서대圖	·先生案은  古今의  首吏의  姓諱와  四祖를   기록한  通籍으로  李弼  公이  처음으로   작성하다. ·首吏로  到任한  年度와  印信을  管掌한  日字  등을  기록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세월이  오래되어  字劃이  殘缺되고  紙質이  해진  채로  本司의  儀軌와  함께  几案에   숨겨져   오다. ·이를  애석히  여겨  重新改藏하여  萬世에  流久토록  하려고  하다. ·練紙  58張으로  編冊하고  善寫·改書하여  東樓庫間에  新舊兩案과  儀軌數冊을  寶藏시켜  後任者에게   전하도록   하다. ·後任者는  先生의  命이  있더라도  함부로  開閉하지  말고  반드시  城上과  논의하여   꺼내  보도록   하다. ·本  案은  至正  辛丑(1361)년에  編成되어   지금(1523)에  이른다. ·後任者들은  勉勵하라.	

07	李廷臣	1741 英祖 17年 4月	『戶長先生案』 「新案序」	國慶博(慶州新案本) 慶市圖 서大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至正 辛丑(1361)년에 李弼 공이 遺聞을 哀集하고 篇幅을 완성하여 世系와 系譜를 밝힌 것이 본 先生案이다.</li> <li>·그 후에 대대로 삼가 守護하고 記錄을 補充하여 오래도록 전하여 오다.</li> <li>·嘉靖 2(1523)년에 金多慶 공이 세월이 오래되어 紙質가 해지고 字劃이 脫誤되어 마침내 다시금 新本을 만든다.</li> <li>·龍蛇兵燹(1592)에 崔洛 공이 本編과 營主案 및 歷世簿錄(歷世諸子記)를 鑿莊僧舍에 秘藏하여 兵火를 면하다.</li> <li>·崇禎 庚子(1660)년에 나의 先君이 舊案이 泯沒될까 걱정하여 練紙를 구입하고 新編하려 하였으나 끝내 성취하지 못하다.</li> <li>·舊案은 紙質이 腐敗하고 禮法대로 행해지지 않아 先君이 쌓아둔 練紙 50張을 장정하여 新案을 편성하다.</li> <li>·堂參 先進들이 舊案에 未錄된 것을 참고하여 壬辰(1592)년부터 追錄하였으나, 亂前은 簿籍(先生案)이 없어 闕漏되다.</li> <li>·諸君子는 본 錄(先生案)의 작성을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여기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각자 특별히 조심하라.</li> <li>·後任者들은 往牒(舊案)을 상고하여 前代의 體制로 이어가면 본 案이 重新된 것이 後來의 君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li> </ul>	
08	金士龍	1787 正祖 11年 正月 上旬	『戶長先生案』 「[跋文]」	國慶博(慶州舊案本) 慶市圖 서大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案은 至正 辛丑(1361)년에 처음 작성되고 嘉靖 2(1523)년에 秀祖(金多慶)가 印信을 管掌하면서 다시 작성되다.</li> <li>·島夷亂에 당시의 戶長 崔洛 공이 兵火 中에 是案과 道·府伯의 兩先案을 鑿莊山의 石室에 秘藏하였다가 亂後에 還安하다.</li> <li>·8년 동안 石室에서 바람을 맞아 습기가 차서 卷帙이 殘缺되어 道·府의 舊案을 改新하다.</li> <li>·本 戶長案은 堂參行禮로 戶長이 印信을 管掌한 이후에야 參與되다.</li> <li>·是案(戶長案)은 改修되지 못하고 次第에 따라 계속 追錄하였으나 先君과 崔公에 이르러 禮와 案이 모두 廢止되다.</li> <li>·몇 後進들이 舊案이 폐지된 것을 아쉬워하여 一案을 새로 작성하고 未錄事를 기록하여 그 體制가 서로 연결되다.</li> <li>·本 案을 전하여 古禮를 행하는 자는 後人들이 함부로 훼손하지 말도록 하라.</li> <li>·(舊案은 壬亂 전의 文蹟이라 字劃과 年代에 脫誤된 곳이 있는 듯하나, 增損하지 않고 舊本대로 따랐다.)</li> </ul>	
09	金士龍	1787 正祖 11年 正月 24日	『戶長先生案』 「[跋文]」	國慶博(慶州舊案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壬辰亂에 戶長 崔洛 공이 道·府伯兩先案과 府戶長先案을 深山의 石室에 秘藏하다.</li> <li>·亂後에 還安하여 오늘날까지 傳來되니 東京의 府物은 이들 3가지이다.</li> <li>·實蹟을 史冊에 기록하여 세상에 전하여 泯沒되지 않게 하고 後進들에게 물려주라.</li> <li>·本 券(戶長案)을 守護하는 일은 중요하므로 그 勞苦를 尊重하고 보상하라.</li> <li>·每年 秋夕節 卯時(6시)에 先生 分封의 예에 따라 單子를 作成하고 그 子孫을 敘述하여 祭祀를 돕도록 하라.</li> </ul>	
10	孫永謨	1859 哲宗 10年 7月 下旬	『戶長先生案』 「慶州府戶長先生案 序」	慶市圖 서大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鷄林府司에 營先生案과 府先生案 및 戶長案이 있다.</li> <li>·고려 초부터 이들의 姓諱와 資級 및 差遞年月이 차례대로 備錄된지 1千餘年이 되다.</li> <li>·戶長案에는 이와 아울러 四祖가 수록되어 私家昭穆의 譜牒 中에 未詳한 것을 考證하여 質正하다.</li> <li>·戶長案은 一府(慶州府)의 완벽한 史書이며 全省에서도 稀有한 예이다.</li> <li>·壬辰亂에 崔洛 공이 이들 三案을 山寺에 秘藏하여 兵禍를 면하다.</li> <li>·금(1859)년 여름에 舊案을 그대로 謄書하고 별도의 新案을 작성하여 祇林寺 龕室에 봉안하다.</li> <li>·逐年 修錄하고 守護하는 것은 司僚와 寺僧의 노력에 달려있다.</li> </ul>	

11	崔永漢	1859 哲宗 10年 7月 下旬	『上詔文先生案』 「椽房上詔文先生案 序」	慶市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高麗 이후로 戶長案을 作成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은 나의 傍祖 戶長 崔洛 공이 山寺에 移奉하였던 공이다.</li> <li>·上詔文先生案은 壬亂 이후에 처음으로 次第와 題名이 만들어지다.</li> <li>·영구한 留傳計畫이 公議로 일어나 營主先生案·府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을 한 체제로 新贍하다.</li> <li>·이들을 각각 櫃에 담아 자물쇠로 잠가서 祇林寺에 奉安하고 後考에 대비하다.</li> <li>·이후로 수시로 追錄하되 守護하는 節次는 本廳과 祇林寺에 있을 뿐이다.</li> <li>·廳僚가 바뀌고 寺僧이 聚散하여 戒愼하지 못하고 소홀하거나 태만하면 時任 執事者에게 奉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li> <li>·정성껏 遵行하여 영구히 폐지되지 않도록 하라.</li> </ul>	
12	李師鵬	1776 正祖 卽位 年 8月 상순	『講武堂先生案』 「講武堂先生舊案序」	慶市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節度都護府가 있는 지역의 幕府는 節度營과 다를 바 없어 兵曹의 裨將 3명 배정과 衣凜의 支給에는 節目이 있다.</li> <li>·幕府先生案의 작성은 堂廳을 설립한 초기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나 兵火로 燒失되고 남은 것이 없다.</li> <li>·崇禎 丙寅(1868)년에 前萬戶 吳必寬 공이 首幕일 때 본 先生案이 成冊되다.</li> <li>·亂後로 主將의 到任年月을 기록하고 그 아래 行任의 人員을 年條와 任次에 따라 기록하다.</li> <li>·前代의 主將의 序次의 기록은 지금의 府先生案의 序次와 비교하면 전후에 어긋나고 闕漏된 부분이 많다.</li> <li>·新案은 上段에 主將의 姓諱, 중단에 首幕과 左右幕, 하단에 掌務 등을 기록하여 首·副를 구분하다.</li> <li>·丙寅(1868)년에 成案된 후 壬申(1692)년에 廳任 徐再泰 등이 改修하다.</li> <li>·戊子(1708)년에 이르러 廳任 全希天 등이 主將의 身喪과 先進四喪의 致賻의 일을 비로소 節目으로 작성하다.</li> <li>·또한, 앞서 堂廳의 論駁을 받았던 重罰人들이 先生案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事案도 아울러 附錄하다.</li> <li>·丙申(1716)년에 廳任 金昌道 등이 先生案을 改修한 뒤로 지금(1776) 다시 개수하다.</li> </ul>	
13	崔南崑	1859 철종 10 7월 下旬	『講武堂先生案』 「講武堂先生案序」	慶市圖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慶州의 幕府인 講武堂에 奉安된 先生案이 처음으로 작성된 것은 崇禎 丙寅(1868)년이다.</li> <li>·丙寅(1868)년 以前의 先生案은 龍蛇丙丁亂(1592·1626)으로 모두 燒失된 듯하다.</li> <li>·先生案의 所藏을 넓혀 後世에 傳하고자 하다.</li> <li>·慶州府에서 營主先生案·府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등을 祇林寺에 分藏하려 하자 본 案도 함께 分藏할 것을 公議하다.</li> <li>·그 결과 舊案을 藤本하여 별도로 新本을 만들어 祇林寺 龕室에 奉置하다.</li> <li>·逐條添載하여 漏落이 없도록 하는 것은 本堂의 僚友에게 있으며 守護하는 일은 祇林寺의 승려들에게 있다.</li> <li>·魔鬼와 水火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여 영원히 保傳하라.</li> <li>·先生案은 丙寅(1686)년과 丙申(1716)년 및 丙申(1776)년에 걸쳐 3차로 개수되다.</li> </ul>	

<表 3> 各種『先生案』관련의 調査 目錄 및 意見書 作成 對象 目錄

番號	書名 (卷冊數)·(異稱)	所藏處	版本	製作年代 (序文推定)	載錄人物	版本系統	影印書誌	意見書作成 對象 與否	指定 對象	備考
01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題簽: 棠下題名記)	國立慶州博物館	筆寫本 (慶州本)	世宗 07(1425)	李齊元 … 李 堧	最初本(1425)의 慶州 累加追錄本	影印 事實 없음	○	○	河濱 印文
02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尙州鄉校	筆寫本 (尙州本)	世宗 07(1425) 光海 14(1622)	李齊元 … 李 堧 吳命恒 … 李鎬俊	番號 01의 尙州 累加追錄本	① 『道先生案』 (國立國會圖書館, 1970)	○	○	金正男 印文
03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慶市本)	世宗 07(1425) 光海 14(1622) 肅宗 37(1711)	李齊元 … 李 堧 吳命恒 … 南一祐 金明鎭 … 李允用	番號 01의 近代 累加追錄本	② 『國譯慶州先生案』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番號 04와 大同小異함)	○	×	
04	『慶尙道營主題名記』(1卷1冊) (表題: 道先生案)	서울大圖書館	筆寫本 (서울大本)	世宗 07(1425) 光海 14(1622) 肅宗 37(1711)	李齊元 … 李 堧 吳命恒 … 南一祐 金明鎭 … 李允用	番號 03의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③ 『慶州先生案 五種』 (亞細亞文化社, 1982) (番號 03과 大同小異함)	○	×	
05	『戶長先生案』(1卷1冊) (『府司先生案』舊案)	國立慶州博物館	筆寫本 (慶博本)	恭愍 10(1361) 中宗 18(1523) 正祖 11(1787)	金成庇 … 崔俊渭	最初本(1361)의 累加追錄本	④ 『府司先生案』 (國立慶州博物博, 2017)	○ (1件)	○ (1件)	合本 1件
06	『戶長先生案』(1卷1冊) (『府司先生案』新案)	國立慶州博物館	筆寫本 (慶博本)	英祖 17(1741)	李 仁 … 崔炳教	番號 05의 累加追錄本	④			
07	『府尹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서울大本) (慶市本)	成宗 06(1475)	安 院 … 崔俊渭 李 仁 … 崔炳教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	×	
08	『戶長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서울大本) (慶市本)	中宗 18(1523) 哲宗 10(1859)	金成庇 … 朴炳翌	番號 04-05 合本の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⑤ 『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 (震檀學報, 1980)	×	×	
09	『上詔文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慶市本)	哲宗 10(1859)	李景祿 … 崔渭祥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⑤	×	×	
10	『講武堂先生案』(1卷1冊)	慶州市立圖書館	筆寫本 (慶市本)	英祖 52(1776) 哲宗 10(1859)	尹仁涵 … 朴炳翌	近代(1935年頃) 轉寫本	② ③ ⑤	×	×	

또한, 현지 조사의 각종 『先生案』 중에서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道先生案』·『府尹先生案』·『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등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府尹先生案』·『戶長先生案』 등은 모두 近代에 轉寫된 筆寫本이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의 가치가 미흡한 듯하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지정의 가치를 지닌 문화재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1책)과 『戶長先生案(府司先生案)』의 舊案(1책)·新案(1책) 및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등 4책으로 판단된다.

제1·2차의 재조사 및 추가조사의 각종 『先生案』의 目錄과 意見書作成 대상의 目錄을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이를 중심으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와 尙州 鄉校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및 경주시립도서관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 『慶尙道營主題名記』 등의 현지 조사평가의 세부적 記述은 다음과 같다.

## ○ 『慶尙道營主題名記』의 書誌記述 및 現狀

### ①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 (慶州本: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慶尙道營主題名記 / [河演(1376-1453)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筆寫處不明], [世宗 7(1425) ~ 肅宗 46(1720) 多數人 逐年累加追錄 推定].

不分卷1冊 : 四周雙邊, 68.3(6.5+7.6+54.2)×31.2cm, 有界, 3段8行 字數不定, 無魚尾 ; 84.0×40.0×9.0cm. 韓紙. 鐵邊線裝(五針眼訂).

題簽題: 棠下題名記(題簽紙: 55.8×11.0cm)

紙 質: 4摺接壯紙.

表 紙: 綠絹

面 紙: 每張 上段 8.4cm 連接

張 數: 本文(87張), 空紙(1張)

序 文: 慶尙道營主題名記序... 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日於「敬齋晉陽 河演淵亮題. '敬齋'·'晉陽世家'·'河演'·'淵亮'.

印 文: 敬齋, 晉陽世家, 河演, 淵亮.

裝 訂: 鐵裝(鐵邊 91.0×1.9cm, 五針眼訂裝)

舊置處: 本營慶州府置.

裝訂記: 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膾成」新案奉安于祇林寺.

新置處: 祇林寺.

保管函: 91.0(13.2+77.8)×49.0×16.4cm. 松木. 肅宗 37(1711)年 南至熏 製作)

序 文: 『慶尙道營主題名記序』竊謂自古帝王分憂宣化必托使臣三代所命往欽汝諧周之風」化謳吟 諷誦漢分直指繡衣使威振州郡唐遣節度使復授」行臺之命宋置觀察使且有出入均勞之旨 稽之本國高麗」之初分遣宰相爲諸道節度使專制方面以行黜陟其後」改以三品以下官爲都 部署使按察使按廉使之任糾察庶務其」任最重及其末流也朝廷之紀綱頽廢自元帥以至方鎮 牧府視」[按廉不以王人大體爲念反以秩卑小節之爲嫌無所畏憚奉]」/職不謹爲按廉者徒區 區於簿書錢穀之間不能行其黜陟陵夷靡」然濫觴滔天至我」聖祖戊辰舉義之後欲新弊政以 兩府以上爲都觀察黜陟使擇朝官爲經歷都」事俾之統察軍民之務以明殿最之法二品以上監

囚」申請三品以下依律直斷又爲按廉使更相迭遣之制振起頹綱以致」今日雍熙之治何其盛哉吾以庸資叨承」重寄欲謬前賢之通籍問其傳久之書皆因倭寇而泯滅令本營慶州搜得公私之籍但有吏係前注簿孫熙者納以家藏之錄今幸」/得此成爲通籍上書」中朝與本」朝之年譜下書各年使臣之姓名稱爲營主題名記繕寫二部」一置本營一置行營以便後考嗚呼宰相之職代天理物使」命之任承」流布」德時政之得失生民之休戚係焉歷代治亂職此之由不可不謹也」稽諸前轍之是非施諸事業之懿美則吾今採摭以題」/名豈不有補於後來之君子哉吾亦登名必居一於是非之中」赧然有愧敢爲之序」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敬齋晉陽河淵亮題」‘敬齋’‘晉陽’世家’‘河濱’‘淵亮’本營慶州府置。

列名：李齊元(高麗 文宗 33, 1078) ~ 李堧(朝鮮 肅宗 44, 1718)

載錄人：[文宗朝]李齊元·○○○·盧師像·金壽·金義仲·白居易·任延邵·王承命·康白之·金忠訥。[順宗朝]梁榮冲·趙蘭冲。[宣宗朝]朴收向·崔駟·李順元·南宮蘭·金禹廷·洪錫民·崔惟謹·柳莊·宋德先·金鼎雲·崔楊訓·文景臣·崔公翊·李繼應·宋公甫·權暢·柳莊·崔方俊。[憲宗朝]尹繼衡·○○○·朴尙夫·崔守臣·石崇現·李繼應。[肅宗朝]宋德先·崔公翊·楊儒間·高令臣·李堅守·文冠·楊顯·李載·許景·安子公·李善英·朴現元·金子廷·韓相·○○○·崔福儒·朴尙夫·李琦。[睿宗朝]韓俊·崔福儒·尹禹相·徐祐·智祿延·尹諧·李晉卿·高晉明·朴申現·李寵隣·李惟駟·許之奇·崔儒·尹諧·韓仲·崔資成·李惟駟·崔儒·閔世隣·李晉卿·劉楊現·梁永·金輔臣·宋琰·鄭應文·金輔臣·白易宗·李像·梁永·陳叔·白易宗·崔弘略·李偃陽·鄭俊候·安稷崇。[仁宗朝]林存·朴景麟·李頤·梁齊寶·徐南永·崔弘略·盧元崇·康英俊·皇南讓·鄭漸·任元順·李仲·安軾·崔弘元·尹彥頤·金擇·李之著·河器·皇甫許·鄭俊宜·鄭知常·皇甫讓·崔允叔·李仁實·文公允·安軾·金永錫·王廷燮·元俊·李元美·李仁實·金咸·金靖·尹誼·劉逢·金咸·崔述中·李仲齊·崔子英·郭東珣·李陽升·崔稱·金龜夫·高瑩夫·崔思永·安正脩·曹晉若·林仲。[毅宗朝]林敬·金諡·李元長·趙可仁·崔思永·申叔·李光升·申叔·高瑩夫·閔角·許純·金陽·崔守全·尹麟瞻·金仁兪·徐公·李知深·崔婁伯·李陽伸·金黃文·金思孝·崔婁伯·徐恭·吳中正·金存夫·金光中·朴育和·吳中正·朴懷俊·金遇明·尹麟瞻·李文著·李敦·金存夫·鄭仁壽·高陳俊·許勢脩·韓經·韓賴弼·○○○·趙華·金光鉉·張思祐·朴庭堯·金必端·蘇良遇·李文著·李子先。[明宗朝]梁文瑩·徐諷·朴晉·李蕤·李景伯·金義麟·金臣礪·崔光世·金柱·田臣永·玄利候·李璋·孫應時·李益·林正植·宋正厚·吳世功·李俊善·邵光賓·于英弼·趙閻卿·陳士龍·李成·皇甫卓·李章·崔信卿·崔文清·李世康·尹光甫·崔基厚·柳擇升·崔孝著·崔迪完·蔡甫文·吳敦信·李桂長·崔忠獻·朴仲·崔敦禮·蘇良美·李居正·李仲利·金平·周惟底·玄德秀·鄭得光·庾元義·金迪候·宋偉·金光齊·宋弘迪·徐英守·崔光宰·李克甫·播就正·金儒·金鳳毛。[神宗朝]崔光著·崔孝思·金晉·張允文·俠利弼·李侑·孫公禮·田乙均·康純義·崔輔淳·鄭良臣·池資深·盧軾·白汝舟。[熙宗朝]朴仁碩·金光麗·趙晉公·孔永弼·蔡靖·朴敦美·李侑·李積·李儀·全千存·白守貞·玄君悌·李延壽·金仲龜。[康宗朝]安現·林光柱·宋安國·宋安國·丁公壽。[高宗朝]李大明·李陽升·金公亮·安石貞·金周鼎·黃龍弼·金蘊珠·金叔龍·金叔龍·金君綏·李勳·李勳·崔宗蕃·金克脩·李公老·李公老·俞升旦·李○○·李邈·雜甫龜·庾誕玄·李○○·宋恂·金光叙·權應經·崔崇操·沈文濬·鮮大有·白敦賓·白敦賓·李希父·崔林壽·韓令仁·趙○○·田○○·李方茂·康保·李世華·金就成·閔仁均·尹復珪·孫襲聊·孫襲聊·孫襲聊·孫襲聊·安永延·洪鈞·庾碩·金孝印·薛模·薛模·申宣·申宣·崔椿命·崔椿命·盧○○·王諧·朴○○·朴○○·朴○○·朴○○·朴○○·朴○○·朴○○·朴景弼·崔○○·李陽俊·李繼孝·李堯瞻·李堯瞻·金之岱·金之岱·金光宰·金光宰·權靉·李凝·李凝·李禧·崔允愷·孫蒼·田○○·韓竣·韓竣·任緬·任緬·朴隨·朴隨·洪熙·洪熙·金祇錫·宋彥庠·宋彥庠·李○○·李○○·金○○。[元宗朝]金○○·朴堅·王○○·洪敏·○○○·○○○·金祇錫·韓千顏·張○○·張○○·李○○·李○○·閔冕·郭○○·朱悅·朱悅·洪子潘·金○○·朴恒·朴恒·崔沼·金之卿·崔儒·李叔貞·金之卿·崔有候·盧○○·崔有浮·呂○○·嚴○○。[忠烈朝]朴誠·琴熏·潘阜·金○○·尹衡·權坦·崔堯·崔諤·金應立·李德孫·權宜·崔瑞·○○○·閔萱·閔萱·閔萱·



閔萱·閔萱·宋惜·任澍·鄭崇·崔東吉·崔崇·崔崇·薛○○·薛○○·鞠成允·鞠成允·陳調·朴璘·朴璘·劉顥·○○○·○○○·○○○·○○○·劉顥·○○○·柳○○·黃瓊·朴洪秀·黃守卿·金台玟·趙簡·黃瓊·崔遠·吳藏·朴至公·朴至公·沈逢吉·鄭珩·宣宗桂·蔡希仲·宋克連·宋克連·朱印遠·曹英烈·金堅·李堅幹·李堅幹·李伯兼·李○○·尹宋弘·李元儒·奉君節·金教山·金瑞之·崔白倫·崔白倫·**[忠宣朝]**鄭肅文·鄭肅文·陸希瑣·陸希瑣·姜瓊·姜瓊·李訥·李訥·吳方祐·吳方祐·**[忠肅朝]**琴淑·蔡推吉·朴理·韓冲熙·韓冲熙·朴孝修·朴孝修·鄭安俊·李呢·李呢·李呢·朴叔貞·朴叔貞·崔咸一·崔咸一·許頻·許頻·安庇·安庇·安庇·安庇·薛文遇·薛文遇·薛文遇·薛文遇·尹堯瞻·尹堯瞻·李景安·李景安·李景安·趙邦珣·**[忠惠朝]**趙邦珣·趙邦珣·金永煦·李元幹·李元幹·金朱暉·**[肅復朝]**朴松生·金罔·金罔·金罔·金罔·金罔·金罔·○○○·趙忠佐·閔祥伯·閔祥伯·張耳·張耳·全啓·全啓·**[惠復朝]**朴良桂·尹登·林元儒·朴忠佐·沈文湜·沈文湜·趙岭晦·金子敦·李餘慶·**[忠穆朝]**○○○·辛引裾·白文寶·金玆·朴允文·宋構·李萬榮·安輯·李培中·趙文衡·**[忠定朝]**崔宰·崔宰·李蒙正·李偉·金有謙·宋光彥·**[恭愍朝]**河允源·洪仲亢·金漢龍·崔漢龍·崔漢龍·郭忠守·郭忠守·安宗源·鄭光道·鄭光道·朴珽·金達祥·金達祥·李由信·金成甲·尹閔璿·金承矩·郭忠實·安克仁·朴中美·尹蔭·李綱·成元揆·李寶林·李寶林·吳中陸·崔安穎·卓光茂·朴純·李資·禹玄寶·安承履·鄭寓·申系令·宋明誼·陳枰仲·金龜壽·李頤·郭儀·李傑生·郭狷龍·崔元濡·金湊·朴東貴·朴東貴·**[禪王朝]**柳珣·鄭夢周·尹邦彥·安翊·崔濂·姜隱·白君瑛·李吉祚·康得和·朴可興·河忠國·河忠國·李復始·全五倫·朴德祥·朴德祥·呂克湮·呂克湮·孫慶生·曹益修·李文和·鄭洪·○○○·○○○·○○○·○○○·李龜·**[恭讓朝]**安希德·崔兢·張夏·金湊·安翊·李居仁·**[太祖朝]**崔云嗣·沈孝生·閔開·崔有慶·沈孝生·韓尙質·李至·**[定宗朝]**林敬·趙璞·**[太宗朝]**全伯英·安魯生·許周·李文和·鄭符·南在·安瑗·朴子安·金希善·咸傳霖·安省·權軫·李原·安純·安騰·韓雍·李貴山·安騰·李股·李之剛·朴習·禹均·**[世宗朝]**申商·李潑·崔迤·徐選·崔士康·金謙·李叔畝·**河演**·申槩·崔府·李繩直·洪汝方·沈道源·曹致·李孟畛·辛引孫·金孝貞·朴葵·閔義生·趙瑞康·李宣·南智·趙克寬·權孟孫·成念祖·李嘻·成奉祖·柳守剛·李季嶙·金銚·閔恭·**[文宗朝]**李仁孫·**[端宗朝]**李崇之·金淳·黃孝身·**[世祖朝]**元孝然·曹孝門·李克培·金淳·金連枝·金淳·盧叔全·權愷·李孝長·李誠長·尹欽·鄭文炯·咸禹治·姜允範·金碩·**[睿宗朝]**金謙光·**[成宗朝]**金從舜·尹慈·李恕長·吳伯昌·尹弼商·鄭孝常·金永濡·尹壕·柳輕·尹孝孫·朴槿·安寬厚·尹繼謙·金自行·李鐵堅·金自貞·韓憫·李陸·李克基·孫舜孝·李世佐·成倣·金礪石·鄭恬·鄭崇祖·李克墩·李季男·李克均·**[燕山朝]**金悌臣·李誼·安處良·**金諶**·許琛·金壽童·金應箕·安潤德·**李拾**·權柱·洪自阿·任由謙·**[中宗朝]****金勛**·張順孫·尹珣·**姜渾**·尹金孫·宋千喜·安瑄·韓亨允·曹繼商·洪淑·孫仲噉·金安國·韓世桓·文瑾·金克成·申公濟·韓效元·金砮·方有寧·成世昌·金璫·金希壽·申鑑·成雲·朴壕·李芑·崔世節·任樞·金麟孫·尹仁鏡·尹殷弼·南孝義·**李思鈞**·權輓·李賢輔·宋璵·權機·姜顯·金正國·沈連源·宋純·李清·林百齡·李彥迪·**[仁宗朝]**權應昌·**[明宗朝]**尙震·安玟·**任虎臣**·鄭萬種·沈通源·趙士秀·**李夢亮**·丁應斗·鄭彥愨·**權轍**·曹光遠·俞絳·金光軫·吳謙·李戡·洪曇·南宮忱·鄭宗榮·沈守慶·吳祥·李友閔·李澤·宋贊·姜士尙·柳昌門·**[宣祖朝]**朴啓賢·鄭惟吉·姜暹·李陽元·朴大立·宋贊·任說·盧禎·金繼輝·尹根壽·朴護元·朴素立·李遴·俞泓·崔顯·鄭芝衍·許曄·鄭彥智·洪聖民·尹卓然·柳埴·柳成龍·權克禮·李山甫·柳永立·權克智·金晬·洪聖民·金晬·韓孝純·金誠一·金功·洪履祥·徐渚·李用淳·尹承勳·鄭經世·柳永慶·韓浚謙·金信元·李時發·李時彥·柳永詢·鄭眼湖·**[光海朝]**李尙信·崔瓘·辛慶晉·姜籤·李廷臣·尹昉·宋英壽·尹暉·權盼·張晚·沈惇·成晉善·尹暄·朴慶新·鄭造·**金止男**·**[仁祖朝]**閔聖徵·李敏求·金緻·元鐸·鄭蘊·金時讓·洪霧·李溟·趙希逸·吳翻·鄭世矩·洪命壽·李基祚·俞伯曾·沈演·李敬與·李景曾·李命雄·具鳳瑞·鄭太和·林墀·元斗杓·林墀·俞楸·許積·睦性善·趙壽益·**[孝宗朝]****李昉**·閔應協·南銑·柳滄·趙啓遠·權堦·南翎·洪處厚·徐元履·任義伯·**[顯宗朝]**洪葦·洪處厚·閔熙·鄭萬和·李尙眞·任義伯·金徽·閔點·李泰淵·南龍翼·沈梓·閔著重·李翻·**[肅宗朝]**李觀徵·鄭重徽·金德遠·鄭樸·李端錫·朴信

圭·尹趾完·李翊·李秀彥·權是經·徐文重·尹趾完·李奎齡·朴泰遜·李世華·李玄錫·吳始大·李聘命·閔昌道·李玄紀·李瑞雨·李寅煥·李善溥·李彥紀·金世翊·李世載·崔錫恒·趙泰東·朴權·金演·李璽·洪萬朝·李師尙·俞命弘·李宜顯·李坦·洪禹寧·權懔·李堞.

現 狀: 長久한 세월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汚染과 毀損 등이 적지 않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の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②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尙州本: 尙州鄉校·尙州博物館 所藏)

慶尙道營主題名記 / [河演(1376-1453)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筆寫處不明], [世宗 7(1425) ~ 光海君 14(1622) ~ 高宗 23(1886) 多數人 逐年累加追錄 推定].

不分卷1冊 : 四周雙邊, 68.4(6.2+7.3+54.9)×28.0cm, 有界, 3段8行 字數不定, 無魚尾 ; 82.5×38.8cm. 韓紙. 線裝(五針眼訂).

表 題: 道先生案.

紙 質: 4襜接壯紙.

表 紙: 綠絹.

序 文: ① 慶尙道營主題名記序... 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日於/敬齋晉陽河演淵亮題.

② 慶尙道營主題名記序... 天啓二年壬戌(1622, 광해군 14)六月日光山後人龍溪金正男書于宣化堂. '龍溪'·'正男'

裝訂記: 丙辰(1856?)仲秋改莊.

裝 訂: 線裝(土紅綴絲五針眼訂)

舊置處: 本營慶州府置.

張 數: 本文(117張), 空紙(2張)

序 文: (1) 慶尙道營主題名記序」竊謂自古帝王分憂宣化必托使臣三代所命往」欽汝諧周之風化謳吟諷誦漢分直指綉衣使威」振州郡唐遣節度使復授行臺之命宋置觀察使」且有出入均勞之旨稽之本國高麗之初分遣宰相爲」諸道節度使專制方面以行黜陟其後改以三品以」下官爲都部署使按察使按廉使之任糾察庶務其」任最重及其末流也朝廷之紀綱頽廢自元帥以至方」/鎮牧府視按廉不以王人大體爲念反以秩卑小節之爲」嫌無所畏憚奉職不謹爲按廉者徒區區於簿書錢穀」之間不能行其黜陟陵夷靡然濫觴滔天至我」聖祖戊辰舉義之後欲新弊政以兩府以上爲都觀察黜陟使」擇朝官爲經歷都事俾之統察軍民之務以明殿最之法」二品以上監囚申請三品以下依律直斷又爲按廉使更相」迭遣之制振起頽綱以致今日雍熙之治何其盛哉吾以庸資」叨承重寄欲謬前賢之通籍問其傳舊之書皆因○○而泯滅」/令本營慶州搜得公私之籍但有吏係前注簿孫熙者納以」家藏之錄今幸得此成爲通籍上書」中朝與本朝之年譜下書各年使臣之姓名稱爲營主題名記繕寫二部一置本」營一置行營以便後考嗚呼宰相之職代天理物使命之任承」流布德時政之得失生民之休戚係焉歷代治亂職此之由不可」不謹也稽諸前轍之是非施諸事業之懿美則吾今採摭以題名」豈不有補於後來之君子哉吾亦登名必居一於是非之中輒」然有愧敢爲之序」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敬齋晉陽河演淵亮題尙州」牧置.

序 文: (2) 嶺南古新羅國也土廣民殷務劇而繁其旬宣之任比」他道最重代有沿革而官秩各異人有賢否而政治」不同其蹟之不可沒而其人不可泯如是則題名傳後」所不可已者也余觀河敬齋演搜得公私籍作爲營主錄」上載年代中書方伯亞官下至營吏靡不悉錄如」於宋元豐之戊午(1078, 문종 32)成於」皇明永樂之甲辰(1424, 세종 06)自是之後世錄而不替及至萬曆壬辰(1592, 선조 25)本」道以路要衝酷被兵火舊書遺器蕩殘銷沈無」/復存者況此錄秩豈能獨全賴有慶之吏崔洛抽得一」編于風雨中身護而力守之傳之至今三十年矣天啓元」年(1621, 광해

군 13, 신유)冬余承命守此邦越明年(1622, 광해군 14, 임술)春有營中老吏吳一變捧是編俯伏以進其意蓋欲廣其錄而壽其傳也遂鳩紙筆招集能書吏一依舊錄而繕寫四帙並其舊而爲五古以鷄林爲本營此舊編即本營之舊藏也今則達城爲本營故藏其新舊各一分藏其三于三大邑鷄林商山花山是也脫或他日有變四處之藏未必盡失庶幾傳及永世而不至淪滅也噫自高麗至我朝首尾五百十五年所錄凡幾人其賢而能於職者幾人其不賢而不能職者幾人其在賢不賢之間而無毀無譽者又幾人耶如余之驚劣亦當忝錄其中未知後人指以爲賢耶不賢耶抑亦無毀譽之可稱耶余爲是懼因以序之‘龍溪’‘止男’天啓二年壬戌(1622, 광해군 14)六月日光山後人龍溪金止男書于宣化堂。

列名: 李齊元(高麗 文宗 33, 1078) ~ 李堦(朝鮮 肅宗 44, 1718) ~ 吳命恒(朝鮮 肅宗 45, 1719) ~ 李鎬俊(朝鮮 高宗 27, 1890 頃)

載錄人: [文宗朝]李齊元·○○○·盧師像·金壽·金義仲·白居易·任延邵·王承命·康白之·金忠訥.[順宗朝]梁榮冲·趙蘭冲.[宣宗朝]朴收向·崔駟·李順元·南宮蘭·金禹廷·洪錫民·崔惟謹·柳莊·宋德先·金鼎雲·崔楊訓·文景臣·崔公翊·李繼應·宋公甫·權暢·柳莊·崔方俊.[憲宗朝]尹繼衡·○○○·朴尙夫·崔守臣·石崇現·李繼應.[肅宗朝]宋德先·崔公翊·楊儒問·高令臣·李堅守·文冠·楊顯·李載·許景·安子公·李善英·朴現元·金子廷·韓相·○○○·崔福儒·朴尙夫·李琦.[睿宗朝]韓俊·崔福儒·尹禹相·徐祐·智祿延·尹諧·李晉卿·高晉明·朴申現·李寵隣·李惟駟·許之奇·崔儒·尹諧·韓仲·崔資成·李惟駟·崔儒·閔世隣·李晉卿·劉楊現·梁永·金輔臣·宋琰·鄭應文·金輔臣·白易宗·李像·梁永·陳叔·白易宗·崔弘略·李佺陽·鄭俊候·安稷崇.[仁宗朝]林存·朴景麟·李頤·梁齊寶·徐南永·崔弘略·盧元崇·康英俊·皇甫讓·鄭漸·任元順·李仲·安軾·崔弘元·尹彥頤·金擇·李之著·河器·皇甫許·鄭俊宜·鄭知常·皇甫讓·崔允叔·李仁實·文公允·安軾·金永錫·王廷燮·元俊·李元美·李仁實·金咸·金靖·尹誼·劉逢·金咸·崔述中·李仲齊·崔子英·郭東珣·李陽升·崔稱·金龜夫·高瑩夫·崔思永·安正脩·曹晉若·林仲.[毅宗朝]林敬·金諱·李元長·趙可仁·崔思永·申叔·李光升·申叔·高瑩夫·閔角·許純·金陽·崔守全·尹麟瞻·金仁俞·徐公·李知深·崔婁伯·李陽伸·金黃文·金思孝·崔婁伯·徐恭·吳中正·金存夫·金光中·朴育和·吳中正·朴懷俊·金遇明·尹麟瞻·李文著·李敦·金存夫·鄭仁壽·高陳俊·許勢脩·韓經·韓賴弼·○○○·趙華·金光敍·張思祐·朴庭堯·金必端·蘇良遇·李文著·李子先.[明宗朝]梁文瑩·徐諷·朴晉·李璉·李景伯·金義麟·金臣礪·崔光世·金柱·田臣永·玄利候·李璋·孫應時·李益·林正植·宋正厚·吳世功·李俊善·邵光賓·于英弼·趙閔卿·陳士龍·李成·皇甫卓·李章·崔信卿·崔文清·李世康·尹光甫·崔基厚·柳擇升·崔孝著·崔迪完·蔡甫文·吳敦信·李桂長·崔忠獻·朴仲·崔敦禮·蘇良美·李居正·李仲利·金平·周惟底·玄德秀·鄭得光·庾元義·金迪候·宋偉·金光齊·宋弘迪·徐英守·崔光宰·李克甫·播就正·金儒·金鳳毛.[神宗朝]崔光著·崔孝思·金晉·張允文·俠利弼·李侑·孫公禮·田乙均·康純義·崔輔淳·鄭良臣·池資深·盧軾·白汝舟.[熙宗朝]朴仁碩·金光麗·趙晉公·孔永弼·蔡靖·朴敦美·李侑·李積·李儀·全千存·白守貞·玄君悌·李延壽·金仲龜.[康宗朝]安現·林光柱·宋安國·宋安國·丁公壽.[高宗朝]李大明·李陽升·金公亮·安石貞·金周鼎·黃龍弼·金溫珠·金叔龍·金叔龍·金君綏·李勣·李勣·崔宗蕃·金克脩·李公老·李公老·俞升旦·李○○·李邈·雜甫龜·庾誕玄·李○○·宋恂·金光叙·權應經·崔崇操·沈文濬·鮮大有·白敦實·白敦實·李希父·崔林壽·韓令仁·趙○○·田○○·李方茂·康保·李世華·金就成·閔仁均·尹復珪·孫襲聊·孫襲聊·孫襲聊·孫襲聊·安永延·洪鈞·庾碩·金孝印·薛模·薛模·申宣·申宣·崔椿命·崔椿命·盧○○·王諧·朴○○·朴○○·朴○○·朴○○·朴○○·朴○○·朴○○·朴景弼·崔○○·李陽俊·李繼孝·李堯瞻·李堯瞻·金之岱·金之岱·金光宰·金光宰·權靄·李凝·李凝·李禧·崔允愷·孫蒼·田○○·韓墟·韓墟·任細·任細·朴隨·朴隨·洪熙·洪熙·金祇錫·宋彥庠·宋彥庠·李○○·李○○·金○○.[元宗朝]金○○·朴堅·王○○·洪敏·○○○·○○○·金祇錫·韓千顏·張○○·張○○·李○○·李○○·閔冕·郭○○·朱悅·朱悅·洪子潘·金○○·朴恒·朴恒·崔沼·金之卿·崔儒·李叔貞·金之卿·崔有候·盧○○·崔有浮·呂○○·嚴○○.[忠烈朝]朴誠·琴

熏·潘阜·金○○·尹衡·權咄·崔堯·崔諺·金應立·李德孫·權宜·崔瑞·○○○·閔萱·閔萱·閔萱·閔萱·宋惜·任澍·鄭崇·崔東吉·崔崇·崔崇·薛○○·薛○○·鞠成允·鞠成允·陳調·朴璘·朴璘·劉顥·○○○·○○○·○○○·○○○·劉顥·○○○·柳○○·黃瓊·朴洪秀·黃守卿·金台玟·趙簡·黃瓊·崔遠·吳藏·朴至公·朴至公·沈逢吉·鄭珩·宣宗桂·蔡希仲·宋克連·宋克連·朱印遠·曹英烈·金堅·李堅幹·李堅幹·李伯兼·李○○·尹宋弘·李元儒·奉君節·金教山·金瑞之·崔白倫·崔白倫·**[忠宣朝]**鄭肅文·鄭肅文·陸希瓚·陸希瓚·姜瓊·姜瓊·李訥·李訥·吳方祐·吳方祐·**[忠肅朝]**琴淑·蔡推吉·朴理·韓沖熙·韓沖熙·朴孝修·朴孝修·鄭安俊·李岷·李岷·李岷·朴叔貞·朴叔貞·崔咸一·崔咸一·許頻·許頻·安庇·安庇·安庇·安庇·薛文遇·薛文遇·薛文遇·薛文遇·尹堯瞻·尹堯瞻·李景安·李景安·李景安·趙邦珣·**[忠惠朝]**趙邦珣·趙邦珣·金永熙·李元幹·李元幹·金朱暉·**[肅復朝]**朴松生·金罔·金罔·金罔·金罔·金罔·金罔·○○○·趙忠佐·閔祥伯·閔祥伯·張耳·張耳·全啓·全啓·**[惠復朝]**朴良桂·尹登·林元儒·朴忠佐·沈文湜·沈文湜·趙岭晦·金子敦·李餘慶·**[忠穆朝]**○○○·辛引裾·白文寶·金玠·朴允文·宋構·李萬榮·安輯·李培中·趙文衡·**[忠定朝]**崔宰·崔宰·李蒙正·李偉·金有謙·宋光彥·**[恭愍朝]**河允源·洪仲亢·金漢龍·崔漢龍·崔漢龍·郭忠守·郭忠守·安宗源·鄭光道·鄭光道·朴珽·金達祥·金達祥·李由信·金成甲·尹閔瑤·金承矩·郭忠實·安克仁·朴中美·尹廕·李綱·成元揆·李寶林·李寶林·吳中陸·崔安穎·卓光茂·朴純·李資·禹玄寶·安承履·鄭寓·申系令·宋明誼·陳枰仲·金龜壽·李頤·郭儀·李傑生·郭狃龍·崔元濡·金湊·朴東貴·朴東貴·**[禪王朝]**柳珣·鄭夢周·尹邦彥·安翊·崔謙·姜隱·白君瑛·李吉祚·康得和·朴可興·河忠國·河忠國·李復始·全五倫·朴德祥·朴德祥·呂克湮·呂克湮·孫慶生·曹益修·李文和·鄭洪·○○○·○○○·○○○·○○○·李龜·**[恭讓朝]**安希德·崔兢·張夏·金湊·安翊·李居仁·**[太祖朝]**崔云嗣·沈孝生·閔開·崔有慶·沈孝生·韓尚質·李至·**[定宗朝]**林敬·趙璞·**[太宗朝]**全伯英·安魯生·許周·李文和·鄭符·南在·安瑗·朴子安·金希善·咸傳霖·安省·權軫·李原·安純·安騰·韓雍·李貴山·安騰·李殷·李之剛·朴習·禹均·**[世宗朝]**申商·李潑·崔迤·徐選·崔士康·金謙·李叔畝·河演·申槩·崔府·李繩直·洪汝方·沈道源·曹致·李孟畛·辛引孫·金孝貞·朴葵·閔義生·趙瑞康·李宣·南智·趙克寬·權孟孫·成念祖·李嘻·成奉祖·柳守剛·李季隣·金銚·閔恭·**[文宗朝]**李仁孫·**[端宗朝]**李崇之·金淳·黃孝身·**[世祖朝]**元孝然·曹孝門·李克培·金淳·金連枝·金淳·盧叔仝·權愷·李孝長·李誠長·尹欽·鄭文炯·咸禹治·姜允範·金嘖·**[睿宗朝]**金謙光·**[成宗朝]**金從舜·尹慈·李恕長·吳伯昌·尹弼商·鄭孝常·金永濡·尹壕·柳輕·尹孝孫·朴榘·安寬厚·尹繼謙·金自行·李鐵堅·金自貞·韓憫·李陸·李克基·孫舜孝·李世佐·成俶·金礪石·鄭佶·鄭崇祖·李克墩·李季男·李克均·**[燕山朝]**金悌臣·李誼·安處良·**金誥**·許琛·金壽童·金應箕·安潤德·李垰·權柱·洪自阿·任由謙·**[中宗朝]****金勘**·張順孫·尹珣·**姜渾**·尹金孫·宋千喜·安瑒·韓亨允·曹繼商·洪淑·孫仲噉·金安國·韓世桓·文瑾·金克成·申公濟·韓效元·金磁·方有寧·成世昌·金璫·金希壽·申錫·成雲·朴壕·李芑·崔世節·任樞·金麟孫·尹仁鏡·尹殷弼·南孝義·**李思鈞**·權輓·李賢輔·宋璵·權機·姜顯·金正國·沈連源·宋純·李清·林百齡·李彥迪·**[仁宗朝]**權應昌·**[明宗朝]**尙震·安玟·任虎臣·鄭萬種·沈通源·趙士秀·李夢亮·丁應斗·鄭彥慤·權轍·曹光遠·俞絳·金光軫·吳謙·李戡·洪曇·南宮忱·鄭宗榮·沈守慶·吳祥·李友閔·李澤·宋贊·姜士尙·柳昌門·**[宣祖朝]**朴啓賢·鄭惟吉·姜暹·李陽元·朴大立·宋贊·任說·盧禎·金繼輝·尹根壽·朴護元·朴素立·李遴·俞泓·崔顥·鄭芝衍·許曄·鄭彥智·洪聖民·尹卓然·柳埴·柳成龍·權克禮·李山甫·柳永立·權克智·金晬·洪聖民·金晬·韓孝純·金誠一·金功·洪履祥·徐渚·李用淳·尹承勳·鄭經世·柳永慶·韓浚謙·金信元·李時發·李時彥·柳永詢·鄭眼湖·**[光海朝]**李尙信·崔瓘·辛慶晉·姜籤·李廷臣·尹昉·宋英耆·尹暉·權盼·張晚·沈惇·成晉善·尹暄·朴慶新·鄭造·**金止男**·**[仁祖朝]**閔聖微·李敏求·金綴·元鐸·鄭蘊·金時讓·洪霧·李溟·趙希逸·吳翻·鄭世矩·洪命耆·李基祚·俞伯曾·沈演·李敬與·李景曾·李命雄·具鳳瑞·鄭太和·林潭·元斗杓·林潭·俞徹·許積·睦性善·趙壽益·**[孝宗朝]**李昇·閔應協·南銑·柳滄·趙啓遠·權堦·南翎·洪處厚·徐元履·任義伯·**[顯宗朝]**洪葦·洪處厚·閔熙·鄭萬和·李尙眞·任義伯·金



徽·閔點·李泰淵·南龍翼·沈梓·閔著重·李翻. **[肅宗朝]**李觀徽·鄭重徽·金德遠·鄭樸·李端錫·朴信圭·尹趾完·李翊·李秀彥·權是經·徐文重·尹趾完·李奎齡·朴泰遜·李世華·李玄錫·吳始大·李聘命·閔昌道·李玄紀·李瑞雨·李寅煥·李善溥·李彥紀·金世翊·李世載·崔錫恒·趙泰東·朴權·金演·李埜·洪萬朝·**李師尙**·俞命弘·李宜顯·李坦·洪禹寧·權懔·**李堦**. **[景宗朝]**吳命恒·趙泰憶·洪禹傳·俞命凝·李廷濟·李世瑾·金東弼. **[英祖朝]**權以鎮·趙榮福·俞拓基·黃璿·朴文秀·趙顯命·金始炯·金在魯·閔應洙·俞拓基·尹陽來·李箕鎮·趙明謙·鄭益河·沈聖希·金尙星·金尙魯·權懔·南泰良·閔百祥·趙載浩·尹東度·李彝章·李益輔·李成中·趙雲達·趙暉·黃仁儉·金尙喆·鄭存謙·金應淳·趙噉·李潑·金漢著·李瀾·李命植·李潭·金華鎮·閔弘烈·尹養厚. **[正祖朝]**金載順·李衍祥·李性源·李在簡·洪樂彬·趙時俊·李文源·趙時俊·李秉模·鄭昌順·金尙集·金光默·洪憶·李祖源·鄭大容·趙鎮宅·李泰永·李亨元·李義鋼. **[純祖朝]**申蒼·金履永·南公轍·金義淳·尹光顏·鄭東觀·鄭晚錫·金會淵·金魯應·李存秀·金魯敬·金履載·李在秀·金相休·李止淵·趙寅永·李鶴秀·鄭基善·李勉昇·朴岐壽·金陽淳·徐熹淳. **[憲宗朝]**趙秉鉉·尹聲大·權敦仁·金道喜·洪在喆·李景在·洪鍾英·李啓朝·金公鉉. **[哲宗朝]**金大根·徐箕淳·李鼎臣·李紀淵·洪說謨·趙錫雨·金學性·申錫愚·趙秉駿·沈敬澤·洪祐吉·金世均·李教榮. **[高宗朝]**徐憲淳·李參鉉·吳取善·金世鎬·俞致善·洪坑·朴齊寅·李根弼·尹滋承·趙康夏·南一祐·**李鎬俊**(서울大學校本·慶州市立圖書館本 無).

現 狀: 長久한 세월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汚染과 毀損 등이 적지 않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の 保存處理가 요망된다.

### ③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本·서울大學校圖書館本)

慶尙道營主題名記 / [河演(1376-1453)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世宗 7(1425) ~ 光海君 14(1622) ~ 肅宗 37(1711) ~ 高宗 23(1886) 逐年累加追錄 推定].

不分卷1冊 : 四周雙邊, 44.3(5.5+5.8+33.0)×30.0cm, 有界, 3段10行 字數不定, 無魚尾 ; 54.4×34.3cm. 韓紙. 線裝(四針眼訂).

表 題: 道先生案.

紙 質: 3梢接壯紙.

序 文: ① 慶尙道營主題名記序...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日於敬齋晉陽河演淵亮題.  
 ② 慶尙道營主題名記序...天啓二年壬戌(1622, 광해군 14)六月日光山後人龍溪金正男書于宣化堂.  
 ③ 慶尙道營主題名記序...上之三十八[七]年辛卯(1711, 숙종 37)夏宜寧南至熏謹識.

裝訂記: 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贍成]新案奉安于祇林寺(서울大本 有). (慶州市立圖書館本 無)

裝 訂: 線裝(五針眼訂裝)

序 文: (1) 慶尙道營主題名記序」竊謂自古帝王分憂宣化必托使臣三代所命往」欽汝諧周之風化謳吟諷誦漢分直指綉衣使威」振州郡唐遣節度使復授行臺之命宋置觀察使」且有出入均勞之旨稽之本國高麗之初分遣宰相」爲諸道節度使專制方面以行黜陟其後改以三品」以下官爲都部署使按察使按廉使之任糾察庶務」其任最重及其末流也朝廷之紀綱頽廢自元帥以至」方鎮牧府視按廉不以王人大體爲念反以秩卑小節」之爲嫌無不畏憚奉職不謹爲按廉者徒區區於簿」/書錢穀之間不能行其黜陟陵夷靡然濫觴滔」天至我」聖祖戊辰舉義之後欲新弊政以兩府以上爲都觀察黜陟」使擇朝官爲經歷都事俾之統察軍民之務以明」殿最之法二品以上監囚申請三品以下依律直斷又」爲按廉使更相迭遣之制振起頽綱以致今日雍熙之」治何其盛哉吾以庸資叨承重寄欲探前賢之通」籍問其傳舊之書皆因倭寇而泯滅令本營慶州」

搜得公私之籍但有吏係前注簿孫熙者納以家藏」之錄今幸得此成爲通籍上書」/中朝與本」朝之年譜下書各年使臣之姓名稱爲營主題名記繕寫」二部一置本營一置行營以便後考嗚呼宰相之職」代天理物使命之任承流布德時政之得失生民之」休戚係焉歷代治亂職此之由不可不謹也稽諸前轍」之是非施諸事業之懿美則吾今採撫以題名豈不有」補於後來之君子哉吾亦登名必居一於是非之中」毅然有愧敢爲之序」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年閏七月丙辰敬齋晉陽河淵亮題。

序文：(2) 嶺南古新羅國也土廣民殷務劇而繁其旬宣」之任比他道最重代有沿革而官秩各異人有賢」否而政治不同其蹟之不可沒而其人之不可泯如是」則題名傳後所不可已者也余觀河敬齋演搜得」公私籍作爲營主記上載年代中書方伯亞官下」至營吏靡不悉錄如於宋元豐之戊午(1078, 문종 32)成於」皇明永樂之甲辰(1424, 세종 06)自是之後世錄而不替及至萬曆壬辰(1592, 선조 25)」本道以賊路要衝酷被兵火舊書遺器蕩銷沈」無復存者況此錄帙豈能獨全賴有慶之吏崔洛」抽得一編于風雨中身護而力守之傳之至今三十」年矣天啓元年(1621, 광해군 13, 신유)冬余承」命守此邦越明年(1622, 광해군 14, 임술)春有營中老吏吳一變捧邑編俯伏」以進其意蓋欲廣其錄而壽其傳也遂鳩紙筆招」集能書吏一依舊錄而繕寫四帙並其舊而爲五古」以鷄林爲本營此舊編即本營之舊藏也今則達城」爲本營故藏其新舊各一分藏其三于三大邑鷄林」商山花山邑也脫或他日有變四處之藏未必盡失」庶幾傳及永世而不至淪滅也噫自高麗至我」朝首尾五百十五年所錄凡幾人其賢而能於職者幾人其不」賢而不能職者幾人其在賢不賢之間而無毀無譽者」/又幾人耶如余之驚劣亦當忝錄其中未知後人指」以爲賢耶不賢耶抑亦無毀譽之可稱耶余爲是懼」因以序之」天啓二年壬戌(1622, 광해군 14)六月日光山後人龍溪金正男書于宣化堂。

序文：(3) 列邑之有先生案例也至於觀風案之分藏茲」州槩有迥焉鷄林酒古巡營自移達城猶存舊」案按道以下幕僚胥屬靡不備載經閱幾番兵燹」而並與府案尚今流傳上下六百年前事左右開」殿瞭然如昨儘非偶然也抑余於是尤有所感愴」焉先祖領議政忠景公左議政忠簡公永樂正統」俱以都觀察使相繼莅按在」寧陵乙未(1655, 효종 06)先君子又自安東陞守觀察前後三世名聯一」帖拜手擊甃不覺潛然出涕自念不肖又踵六」兄知申公後忝尹茲州營府兩案作一家牒斯」/誠近古所罕觀者上感」國恩下誦世德恒慮才疎政廔無以趾美光前夙宵凜」凜未嘗不繼以愧慙也舊案歲久紙毛字多漫漶」仍令改整新案一倣前制且不棄舊藏諸兩」櫃俾信考評略叙顛末如左云爾」今」上之三十八[七]年辛卯(1711, 숙종 37)夏宜寧南至熏謹識。

列名：李齊元(高麗 文宗 33, 1078) ~ 李堦(朝鮮 肅宗 44, 1718) ~ 吳命恒(朝鮮 肅宗 45, 1719) ~ 李允用(朝鮮 高宗 光武 07, 1903)

載錄人：[文宗朝]李齊元·○○○·盧師像·金壽·金義仲·白居易·任延邵·王承命·康白之·金忠訥。[順宗朝]梁榮冲·趙蘭冲。[宣宗朝]朴收向·崔駟·李順元·南宮蘭·金禹廷·洪錫民·崔惟謹·柳莊·宋德先·金鼎雲·崔楊訓·文景臣·崔公翊·李繼應·宋公甫·權暢·柳莊·崔方俊。[憲宗朝]尹繼衡·○○○·朴尙夫·崔守臣·石崇現·李繼應。[肅宗朝]宋德先·崔公翊·楊儒問·高令臣·李堅守·文冠·楊顯·李載·許景·安子公·李善英·朴現元·金子廷·韓相·○○○·崔福儒·朴尙夫·李琦。[睿宗朝]韓俊·崔福儒·尹禹相·徐祐·智祿延·尹諧·李晉卿·高晉明·朴申現·李寵隣·李惟駟·許之奇·崔儒·尹諧·韓仲·崔資成·李惟駟·崔儒·閔世隣·李晉卿·劉楊現·梁永·金輔臣·宋琰·鄭應文·金輔臣·白易宗·李像·梁永·陳叔·白易宗·崔弘略·李偃陽·鄭俊候·安稷崇。[仁宗朝]林存·朴景麟·李頤·梁齊寶·徐南永·崔弘略·盧元崇·康英俊·皇南讓·鄭漸·任元順·李仲·安軾·崔弘元·尹彥頤·金擇·李之著·河器·皇甫許·鄭俊宜·鄭知常·皇甫讓·崔允叔·李仁實·文公允·安軾·金永錫·王廷燮·元俊·李元美·李仁實·金咸·金靖·尹誼·劉逢·金咸·崔述中·李仲齊·崔子英·郭東珣·李陽升·崔稱·金龜夫·高瑩夫·崔思永·安正脩·曹晉若·林仲。[毅宗朝]林敬·金諱·李元長·趙可仁·崔思永·申叔·李光升·申叔·高瑩夫·閔角·許純·金陽·崔守全·尹麟瞻·金仁兪·徐

公·李知深·崔婁伯·李陽仲·金黃文·金思孝·崔婁伯·徐恭·吳中正·金存夫·金光中·朴育和·吳中正·朴懷俊·金遇明·尹鱗瞻·李文著·李敦·金存夫·鄭仁壽·高陳俊·許勢脩·韓經·韓賴弼·○○○·趙華·金光紋·張思祐·朴庭堯·金必端·蘇良遇·李文著·李子先·**[明宗朝]**梁文瑩·徐誦·朴晉·李蕤·李景伯·金義鱗·金臣礪·崔光世·金柱·田臣永·玄利候·李璋·孫應時·李益·林正植·宋正厚·吳世功·李俊善·邵光賓·于英弼·趙閻卿·陳士龍·李成·皇甫卓·李章·崔信卿·崔文清·李世康·尹光甫·崔基厚·柳擇升·崔孝著·崔迪完·蔡甫文·吳敦信·李桂長·崔忠獻·朴仲·崔敦禮·蘇良美·李居正·李仲利·金平·周惟底·玄德秀·鄭得光·庾元義·金迪候·宋偉·金光齊·宋弘迪·徐英守·崔光宰·李克甫·播就正·金儒·金鳳毛·**[神宗朝]**崔光著·崔孝思·金晉·張允文·俠利弼·李侑·孫公禮·田乙均·康純義·崔輔淳·鄭良臣·池資深·盧軾·白汝舟·**[熙宗朝]**朴仁碩·金光麗·趙晉公·孔永弼·蔡靖·朴敦美·李侂·李積·李儀·全千存·白守貞·玄君悌·李延壽·金仲龜·**[康宗朝]**安現·林光柱·宋安國·宋安國·丁公壽·**[高宗朝]**李大明·李陽升·金公亮·安石貞·金周鼎·黃龍弼·金蘊珠·金叔龍·金叔龍·金君綏·李勣·李勣·崔宗蕃·金克脩·李公老·李公老·俞升旦·李○○·李邈·雜甫龜·庾誕玄·李○○·宋恂·金光叙·權應經·崔崇操·沈文濬·鮮大有·白敦賓·白敦賓·李希乂·崔林壽·韓令仁·趙○○·田○○·李方茂·康保·李世華·金就成·閔仁均·尹復珪·孫襲聊·孫襲聊·孫襲聊·孫襲聊·安永延·洪鈞·庾碩·金孝印·薛模·薛模·申宣·申宣·崔椿命·崔椿命·盧○○·王諧·朴○○·朴○○·朴○○·朴○○·朴○○·朴○○·朴○○·朴○○·朴○○·朴○○·李陽俊·李繼孝·李堯瞻·李堯瞻·金之岱·金之岱·金光宰·金光宰·權靛·李凝·李凝·李禧·崔允愷·孫蒼·田○○·韓竣·韓竣·任細·任細·朴隨·朴隨·洪熙·洪熙·金祇錫·宋彥岸·宋彥岸·李○○·李○○·金○○·**[元宗朝]**金○○·朴堅·王○○·洪啟·○○○·○○○·金祇錫·韓千顏·張○○·張○○·李○○·李○○·閔冕·郭○○·朱悅·朱悅·洪子潘·金○○·朴恒·朴恒·崔沼·金之卿·崔儒·李叔貞·金之卿·崔有候·盧○○·崔有浮·呂○○·嚴○○·**[忠烈朝]**朴誠·琴熏·潘阜·金○○·尹衡·權坦·崔堯·崔諺·金應立·李德孫·權宜·崔瑞·○○○·閔萱·閔萱·閔萱·閔萱·閔萱·宋惜·任澍·鄭崇·崔東吉·崔崇·崔崇·薛○○·薛○○·鞠成允·鞠成允·陳調·朴璘·朴璘·劉顥·○○○·○○○·○○○·○○○·劉顥·○○○·柳○○·黃瓊·朴洪秀·黃守卿·金台玆·趙簡·黃瓊·崔遠·吳藏·朴至公·朴至公·沈逢吉·鄭珩·宣宗桂·蔡希仲·宋克連·宋克連·朱印遠·曹英烈·金堅·李堅幹·李堅幹·李伯兼·李○○·尹宋弘·李元儒·奉君節·金教山·金瑞之·崔白倫·崔白倫·**[忠宣朝]**鄭肅文·鄭肅文·陸希瓊·陸希瓊·姜瓊·姜瓊·李訥·李訥·吳方祐·吳方祐·**[忠肅朝]**琴淑·蔡推吉·朴理·韓沖熙·韓沖熙·朴孝修·朴孝修·鄭安俊·李呢·李呢·李呢·朴叔貞·朴叔貞·崔咸一·崔咸一·許頻·許頻·安庇·安庇·安庇·安庇·薛文遇·薛文遇·薛文遇·薛文遇·尹堯瞻·尹堯瞻·李景安·李景安·李景安·趙邦珣·**[忠惠朝]**趙邦珣·趙邦珣·金永煦·李元幹·李元幹·金朱暉·**[肅復朝]**朴松生·金罔·金罔·金罔·金罔·金罔·金罔·○○○·趙忠佐·閔祥伯·閔祥伯·張耳·張耳·全啓·全啓·**[惠復朝]**朴良桂·尹登·林元儒·朴忠佐·沈文湜·沈文湜·趙岭晦·金子敦·李餘慶·**[忠穆朝]**○○○·辛引裾·白文寶·金玆·朴允文·宋構·李萬榮·安輯·李培中·趙文衡·**[忠定朝]**崔宰·崔宰·李蒙正·李偉·金有謙·宋光彥·**[恭愍朝]**河允源·洪仲亢·金漢龍·崔漢龍·崔漢龍·郭忠守·郭忠守·安宗源·鄭光道·鄭光道·朴珽·金達祥·金達祥·李由信·金成甲·尹閔璿·金承矩·郭忠實·安克仁·朴中美·尹蔭·李綱·成元揆·李寶林·李寶林·吳中陸·崔安穎·卓光茂·朴純·李資·禹玄寶·安承履·鄭寓·申系令·宋明誼·陳桴仲·金龜壽·李頤·郭儀·李傑生·郭狃龍·崔元濡·金湊·朴東貴·朴東貴·**[禑王朝]**柳珣·鄭夢周·尹邦彥·安翊·崔濂·姜隱·白君瑛·李吉祚·康得和·朴可興·河忠國·河忠國·李復始·全五倫·朴德祥·朴德祥·呂克湮·呂克湮·孫慶生·曹益修·李文和·鄭洪·○○○·○○○·○○○·○○○·李龜·**[恭讓朝]**安希德·崔兢·張夏·金湊·安翊·李居仁·**[太祖朝]**崔云嗣·沈孝生·閔開·崔有慶·沈孝生·韓尙質·李至·**[定宗朝]**林敬·趙璞·**[太宗朝]**全伯英·安魯生·許周·李文和·鄭符·南在·安瑗·朴子安·金希善·咸傳霖·安省·權軫·李原·安純·安騰·韓雍·李貴山·安騰·李股·李之剛·朴習·禹均·**[世宗朝]**申商·李潑·崔迤·徐選·崔士康·金謙·李叔畝·河演·申槩·崔府·李繩直·洪汝方·沈道源·曹

致·李孟畛·辛引孫·金孝貞·朴葵·閔義生·趙瑞康·李宣·南智·趙克寬·權孟孫·成念祖·李嘻·成奉祖·柳守剛·李季隣·金銚·閔恭.**[文宗朝]**李仁孫.**[端宗朝]**李崇之·金淳·黃孝身.**[世祖朝]**元孝然·曹孝門·李克培·金淳·金連枝·金淳·盧叔全·權愷·李孝長·李誠長·尹欽·鄭文炯·咸禹治·姜允範·金碩.**[睿宗朝]**金謙光.**[成宗朝]**金從舜·尹慈·李恕長·吳伯昌·尹弼商·鄭孝常·金永濡·尹壕·柳輕·尹孝孫·朴樾·安寬厚·尹繼謙·金自行·李鐵堅·金自貞·韓佃·李陸·李克基·孫舜孝·李世佐·成俶·金礪石·鄭恬·鄭崇祖·李克墩·李季男·李克均.**[燕山朝]**金悌臣·李誼·安處良·**金誥**·許琛·金壽童·金應箕·安潤德·**李垰**·權柱·洪自阿·任由謙.**[中宗朝]****金勣**·張順孫·尹珣·**姜渾**·尹金孫·宋千喜·安瑒·韓亨允·曹繼商·洪淑·孫仲噉·金安國·韓世桓·文瑾·金克成·申公濟·韓效元·金磁·方有寧·成世昌·金瑞·金希壽·申鎰·成雲·朴壕·李芑·崔世節·任樞·金麟孫·尹仁鏡·尹殷弼·南孝義·**李思鈞**·權輓·李賢輔·宋謙·權機·姜顯·金正國·沈連源·宋純·李清·林百齡·李彥迪.**[仁宗朝]**權應昌.**[明宗朝]**尚震·安玟·**任虎臣**·鄭萬種·**沈通源**·**趙士秀**·**李夢亮**·**丁應斗**·鄭彥怒·**權轍**·**曹光遠**·**俞絳**·金光軫·吳謙·李戡·洪曇·南宮忱·鄭宗榮·沈守慶·吳祥·李友閔·李澤·宋贊·姜士尙·柳昌門.**[宣祖朝]**朴啓賢·鄭惟吉·姜暹·李陽元·朴大立·宋贊·任說·盧禎·金繼輝·尹根壽·朴護元·朴素立·李遴·俞泓·崔顥·鄭芝衍·許曄·鄭彥智·洪聖民·尹卓然·柳埴·柳成龍·權克禮·李山甫·柳永立·權克智·金晬·洪聖民·金晬·韓孝純·金誠一·金功·洪履祥·徐渚·李用淳·尹承勳·鄭經世·柳永慶·韓浚謙·金信元·李時發·李時彥·柳永詢·鄭眼湖.**[光海朝]**李尙信·崔瓘·辛慶晉·姜籤·李廷臣·尹昉·宋英耆·尹暉·權盼·張晚·沈惇·成晉善·尹暄·朴慶新·鄭造·**金正男**.**[仁祖朝]**閔聖徵·李敏求·金緻·元鐸·鄭蘊·金時讓·洪霧·李溟·趙希逸·吳翻·鄭世矩·洪命耆·李基祚·俞伯曾·沈演·李敬與·李景曾·李命雄·具鳳瑞·鄭太和·林潭·元斗杓·林潭·俞徹·許積·睦性善·趙壽益.**[孝宗朝]****李昇**·閔應協·南銑·柳滄·趙啓遠·權堧·南翺·洪處厚·徐元履·任義伯.**[顯宗朝]**洪蕨·洪處厚·閔熙·鄭萬和·李尙眞·任義伯·金徽·閔點·李泰淵·南龍翼·沈梓·閔著重·李翻.**[肅宗朝]**李觀徵·鄭重徵·金德遠·鄭樸·李端錫·朴信圭·尹趾完·李翊·李秀彥·權是經·徐文重·尹趾完·李奎齡·朴泰遜·李世華·李玄錫·吳始大·李聘命·閔昌道·李玄紀·李瑞雨·李寅煥·李善淳·李彥紀·金世翊·李世載·崔錫恒·趙泰東·朴權·金演·李璧·洪萬朝·**李師尙**·俞命弘·李宜顯·李坦·洪禹寧·權僕·李堧.**[景宗朝]**吳命恒·趙泰憶·洪禹傳·俞命凝·李廷濟·李世瑾·金東弼.**[英祖朝]**權以鎮·趙榮福·俞拓基·黃璿·朴文秀·趙顯命·金始炯·金在魯·閔應洙·俞拓基·尹陽來·李箕鎮·趙明謙·鄭益河·沈聖希·金尙星·金尙魯·權懋·南泰良·閔百祥·趙載浩·尹東度·李彝章·李益輔·李成中·趙雲逵·趙曦·黃仁儉·金尙喆·鄭存謙·金應淳·趙噉·李激·金漢耆·李瀾·李命植·李潭·金華鎮·閔弘烈·尹養厚.**[正祖朝]**金載順·李衍祥·李性源·李在簡·洪樂彬·趙時俊·李文源·趙時俊·李秉模·鄭昌順·金尙集·金光默·洪楸·李祖源·鄭大容·趙鎮宅·李泰永·李亨元·李義鋼.**[純祖朝]**申耆·金履永·南公轍·金羲淳·尹光顏·鄭東觀·鄭晚錫·金會淵·金魯應·李存秀·金魯敬·金履載·李在秀·金相休·李止淵·趙寅永·李鶴秀·鄭基善·李勉昇·朴岐壽·金陽淳·徐熹淳.**[憲宗朝]**趙秉鉉·尹聲大·權敦仁·金道喜·洪在喆·李景在·洪鍾英·李啓朝·金公鉉.**[哲宗朝]**金大根·徐箕淳·李鼎臣·李紀淵·洪說謨·趙錫雨·金學性·申錫愚·趙秉駿·沈敬澤·洪祐吉·金世均·李教榮.**[高宗朝]**徐憲淳·李參鉉·吳取善·金世鎬·俞致善·洪坑·朴齊寅·李根弼·尹滋承·趙康夏·南一祐·**李鎬俊(無)**·金明鎮·閔正植·李憲永·李容直·趙秉鎬·李重夏·嚴世永·趙漢國·李聖烈·金稷鉉·李裕寅·趙夔夏·李憲永·李允用.

現 狀: 近代에 제작된 版本이라 비교적 良好함.

## ○ 『慶尙道營主題名記』의 內容과 版本의 傳來 및 價値

일반적으로 先生案은 당해 官府의 古今 首吏의 姓名과 그들의 四祖를 기록한



名案으로 특히 首吏로 부임한 연도와 印信을 맡은 날짜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官府의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慶尙道營主題名記』도 慶尙道の 歷代 首官의 名案과 그들에 관련된 記錄으로 歷代 慶尙道の 行政과 人事 및 人物史 등의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자료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와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및 경주시립도서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와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등 4종의 『慶尙道營主題名記』의 內容과 性格을 비교·종합하여 정리하면 <表 4>와 같다.

<表 4> 『慶尙道營主題名記』 4種의 內容과 性格

番號	名稱(書名)	所藏處	編者(製作年代)	載錄人物	版本系統	指定對象
①	慶尙道營主題名記 (棠下題名記)	國立慶州博物館	河 演 (世宗 07, 1425)	李齊元…李 堧 (640餘年 974人)	河演本(1425)의 慶州 累加追錄本	○
②	慶尙道營主題名記 (道先生案)	尙州鄉校	河 演 (世宗 07, 1425) 金止男 (光海君 14, 1622)	李齊元…李 堧 吳命恒…李鎬俊 (820餘年 1096人)	金止男(光海 14)의 尙州 累加追錄本	○
③	慶尙道營主題名記 (道先生案)	慶州市立圖書館	河 演 (世宗 07, 1425) 金止男 (光海君 14, 1622) 南至熏 (肅宗 37, 1711)	李齊元…李 堧 吳命恒…南一祐 金明鎭…李允用 (820餘年 1109人)	①의 近代 累加追錄本	×
④	慶尙道營主題名記 (道先生案)	서울大學校圖書館	③의 近代(1935年頃) 轉寫	李齊元…李 堧 吳命恒…南一祐 金明鎭…李允用 (820餘年 1109人)	③의 近代(1935年頃) 轉寫本	×

이상 4종의 『慶尙道營主題名記』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河演(1376-1453)이 고려 문종 32(1078)년부터의 慶尙道地域의 歷代 觀察使의 名案을 不分卷 1책의 筆寫本으로 成冊한 이래 몇 차례의 累加·追錄을 거치면서 改編된 先生案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의 題簽題인 『棠下題名記』의 ‘棠下’는 고대 중국 周朝의 召公이 팔배나무 아래에서 訟事를 처리하였다는 故事에서 유래된 것이다.

『慶尙道營主題名記』의 河演의 序文에 의하면, 세종 6(1424)년 12월에 慶尙道 都觀察黜陟使로 부임한 河演은 이듬해(1425) 역대 전임 慶尙道觀察使의 名案을 확인하고 前注簿 孫熙가 家藏하던 錄本을 底本으로 고려 문종 32(1078, 무오)년부터 河演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세종 5(1423, 계묘)년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慶尙道 觀察使의 名案을 새로이 작성하여 成冊하였다. [河演本] 그 體制는 韓紙 4장을 배접한 壯紙의 面紙를 3단으로 구성하여 제1단에는 중국의 역대 王朝의 年譜를, 제2단에는 高麗와 朝鮮의 歷代 王朝의 年譜를, 제3단에는 역대로 부임한 觀察使 및 方伯·亞官·鄉吏 등의 先生案을 수록하고 있다. 수록의 내용은 卷頭에 수록된 “戊午春夏等都部署使李濟源秋冬等” 등 고려 문종 32(1078)년에 慶尙道の 都部署使(관찰

사)로 부임한 李濟元을 비롯하여 세종 5(1424)년에 부임한 李叔畝에 이르기까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河演은 『慶尙道營主題名記』의 편찬과 동시에 2부 筆寫하여 1부는 慶州의 本營에 藏置하고 1부는 尙州의 行營에 藏置하여 훗날의 考覽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河演이 『慶尙道營主題名記』를 成冊한 뒤로도 慶尙道 歷代 觀察使의 名案은 逐年으로 累加·追錄되었다. 宣祖朝의 壬辰倭亂(1592)으로 온전한 典籍과 文化財가 남은 것이 없었으나, 慶州의 戶長 崔洛이 『慶尙道營主題名記』를 비롯하여 『慶尙道地理志』·『慶尙道續地理志』·『營主先生案』·『新羅始祖世系族譜』 등의 文獻을 秘藏시킴으로써 그 傳來가 가능하였다.

광해군 13(1621)년 겨울에 慶尙觀察使로 부임한 金止男이 이듬해(1622, 壬戌) 감영의 年老한 營吏 吳一燮이 慶州의 本營에 所藏되던 舊本을 進獻하자, 이에 紙筆을 모으고 글씨에 능한 書吏를 동원하여 舊本을 底本으로 하여 똑같이 4帙을 轉寫하여[金止男本] 新本 4帙과 舊本 1帙 등 도합 5帙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達城(大邱)이 本營이라 新·舊本の 각 1帙을 藏置하도록 하고 鷄林(慶州)과 商山(尙州) 및 花山(安東)에 新本 각 1帙씩 分藏토록 하여, 훗날에 變故가 있더라도 盡滅되지 않고 후세에 영원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肅宗 37(1711, 신묘)년에 慶州府尹 南至熏이 다시 新案을 작성하였는데[南至熏本], 이때 南至熏은 舊案인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를 木櫃에 넣어 보관하고 자신이 만든 新案을 중심으로 후임 觀察使의 名案을 累加·追錄하도록 하였다.

哲宗 10(1859)년에 孫永謨 등이 다시 舊案인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를 底本으로 새로 新案인 『道先生案』을 제작하고 이를 『府先生案』, 『戶長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 등 4본과 함께 祇林寺에 옮겨 소장하게 되었다.

이들 각 『慶尙道營主題名記』의 版本의 構成 및 傳來歷을 정리하여 종합하면 <表 5>와 같다.

<表 5>를 통하여 볼 때, 현존하는 『慶尙道營主題名記』는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①)과 상주향교 소장본(⑥) 및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⑧)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본(⑨) 등이 있다. 이들을 版本의 계통으로 보면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은 河演本의 逐年 累加追錄本이고 상주향교 소장본은 金止男本의 逐年 累加追錄本이며,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은 南至熏本의 逐年 累加追錄本이고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은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의 轉寫本이다.

<表 5> 『慶尙道營主題名記』의 版本 構成 및 傳來歷

番號	版本	底本 製作年代	製作帙數 入錄人物	分藏處	現所藏處	現存
①	河演本 (8行本)	底本: 孫熙本 河演 (世宗 07, 1425)	2帙 李齊元 ... 李堧 (累加追錄)	①: 慶州(慶州府置) ②: 尙州(尙州牧置)	①: 國立慶州博物館(慶州本)(有河演印文) -②③으로 連結 ②: 不明	①
②	金止男本 (8行本)	底本: ① 金止男 (光海 14, 1622)	舊1帙 新4帙 李齊元 ... 李堧 吳命恒 ... 李鎬俊 (累加追錄)	③: 達城(大邱, 舊 1) ④: 達城(大邱, 新 1) ⑤: 鷄林(慶州, 新 1) ⑥: 商山(尙州, 新 1) ⑦: 花山(安東, 新 1)	③: 不明(-③으로 連結) ④: 不明 ⑤: 不明 ⑥: 尙州鄉校(尙州本)(有金止男印文) ⑦: 不明	⑥
③	南至熏本 (10行本)	底本: ③ 南至熏 (肅宗 37, 1711)	(1帙) 李齊元 ... 李堧 吳命恒 ... 南一祐 金明鎭 ... 李允用 (累加追錄)	⑧: ⑤의 轉寫新本 (累加追錄本) ⑨는 별도보관	⑧: 慶州市立圖書館 -④로 連結 肅宗 37(1711)년에 ①의 保管木櫃製作	⑧
④	서울大本 (10行本)	底本: ⑧ 1935年頃 轉寫	(1帙) 李齊元 ... 李堧 吳命恒 ... 南一祐 金明鎭 ... 李允用	⑨: ⑧의 近代 轉寫本	⑨: 서울大學校圖書館所藏本 * ⑧·⑨본은 大同小異	⑨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과 상주향교 소장본은 연속적인 原資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경주시립도서관 소장본과 서울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은 後代에 轉寫된 版本인 만큼 原資料의 성격은 배제된 상태이다.

따라서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은 原本에 가까운 자료라는 점에서, 상주향교 소장본은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속되는 累加·追錄本이라는 점에서 2종 모두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 文獻資料

- 慶州府 編, 國立慶州博物館 譯, 『(慶州 戶長의 記錄) 府司先生案』. 慶州 : 國立慶州博物館, 2017.
- 慶州市·慶州文化院 編譯, 『國譯慶州先生案』. 慶州 :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 國立國會圖書館, 1970.
- 亞細亞文化社 編, 『慶州先生案 五種』.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2.
- 震檀學會 編, 『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서울 : 震檀學會, 1980. <震檀學報 所收本>.
- 河演 編, 多數人 累加追錄 編, 『慶尙道營主題名記』. 寫眞本. 國立慶州博物館 所藏本.
- 河演 編, 多數人 累加追錄 編, 『慶尙道營主題名記』. 寫眞本. 尙州鄉校 所藏本.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 其 他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는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의 국립경주박물관이 購入을 통하여 취득한 문화재로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관리되고 있으며,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는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84의 상주박물관에 기탁·관리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와 상주향교 소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는 長久한 세월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汚染과 毀損 등이 적지 않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 專門家の 보존처리가 요망되고 있다.

현재 『慶尙道營主題名記』와 동일 또는 유사한 版種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 向後 問題

향후 각종 『先生案』에 관한 전국적인 일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검토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 書誌事項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慶尙道營主題名記 / [河演(1376-1453)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世宗 7(1425) ~ 肅宗 46(1720)].

不分卷1冊 : 四周雙邊, 68.3(6.5+7.6+54.2)×31.2cm, 有界, 3段8行 字數不定, 無魚尾 ; 84.0×40.0cm. 韓紙. 鐵邊線裝(五針眼訂).

題簽題: 棠下題名記(題簽紙: 55.8×11.0cm)

面 紙: 每張 上段 8.4cm 連接

張 數: 本文(87張), 空紙(1張)

序 文: 慶尙道營主題名記序…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日於敬齋晉陽河演淵亮題. ‘敬齋’·‘晉陽世家’·‘河演’·‘淵亮’.

印 文: 敬齋, 晉陽世家, 河演, 淵亮.

裝訂記: 咸豐九年己未(1859, 철종 10)七月膾成」新案奉安于祇林寺.

序 文: 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敬齋晉陽河演淵亮題」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尙州博物館 所藏)

慶尙道營主題名記 / [河演(1376-1453) 編 ; 多數人 追錄編]. -- 筆寫本. -- [筆寫地不明] : [筆寫處不明], [世宗 7(1425) ~ 光海君 14(1622) ~ 高宗 23(1886)].

不分卷1冊：四周雙邊, 68.4(6.2+7.3+54.9)×28.0cm, 有界, 3段8行 字數不定, 無魚尾 ; 82.5×38.8cm. 韓紙. 線裝(五針眼訂).

表題: 道先生案.

裝訂記: 丙辰(1856?)仲秋改莊.

張數: 本文(117張), 空紙(2張)

序文: 皇明洪熙元(1425, 세종 07, 을사)年閏七月丙辰(19)敬齋晉陽河淵亮題「尙州」牧置.

序文: 天啓二年壬戌(1622, 광해군 14)六月日光山後人龍溪金止男書于宣化堂.

### ○ 현 상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는 녹색 명주 표지로 되어 있고 5개의 침안을 내어 변철을 앞뒤에 놓고 박을정으로 장식한 철장 형식이다. 일부 손상이 보이나 목곽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상주박물관 소장 및 상주박물관 소장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은 표지에 손상이 많은 상태로 5개의 침안을 둔 선장본 형태이다. 두 책 모두 전체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손상이 많이 보이는 상태이나 현재 소장처의 보존 관리를 통하여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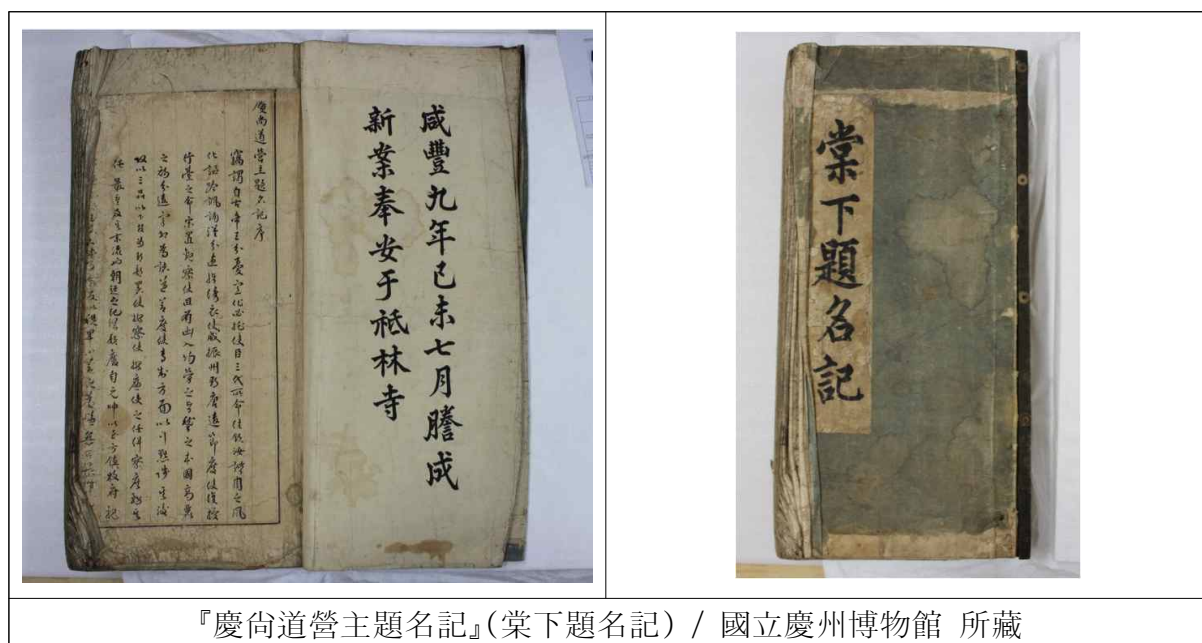
	
<p>『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尙州博物館 所藏)</p>	<p>『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 (國立慶州博物館 所藏)</p>

## ○ 내 용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는 慶尙道の 歷代 觀察使에 대한 기록으로 관직을 역임한 사람들의 姓名 및 赴任과 交替 등에 관한 각종 관련 기록을 담고 있다. 題簽題인 『棠下題名記』의 ‘棠下’는 고대 중국 周朝의 召公이 팔배나무 아래에서 訟事를 처리하였다는 故事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같은 자료는 해당 관부는 물론 정치사, 지역사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1차 사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 할 수 있다.

조사본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는 不分卷1冊으로 사방의 변란을 굽고 가는 두 개의 선을 그렸는데, 외선은 墨線으로 내선은 朱線으로 처리하였다. 본문 부분은 3단으로 구획을 나누어 8행 25자 내외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변란의 세로 길이는 전체 68.3cm로서 상단은 6.5cm, 중단은 7.6cm 그리고 하단은 54.2cm이며, 가로 폭은 31.2cm이다. 제1단에는 중국의 역대 王朝의 年譜를, 제2단에는 高麗와 朝鮮의 歷代 王朝의 年譜를, 제3단에는 역대로 부임한 觀察使 및 方伯·亞官·鄉吏 등의 先生案을 수록하고 있다. 본문은 표지를 제외한 전체 87張이며 空紙는 1張이다.

종이는 닥나무로 만든 저지를 사용하였는데, 특이하게도 每張 上段 8.4cm 가량을 連接한 상태이다. 제작 당시부터의 원상인 지, 후대의 변화인 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세하지 않으나, 지질과 색상의 차이를 통하여 후대 손상된 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과학분석을 통한 한지의 물성 분석을 통하여 상세한 추론이 가능하리라 본다.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 /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조사본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된다. 우선 면지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府司先生案』(舊案)에서 보이는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

가 적혀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사본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가 『府司先生案』(舊案)과 함께 1859년(咸豐9年, 己未, 철종10년)에 새롭게 謄寫되어 기림사에 봉안되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첫머리에 1425년(洪熙元年, 乙巳, 세종 7)에 敬齋 河演(1376~1453)에 의해 작성된 서문이 있어 그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관련된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예로부터 제왕이 政事를 분담하여 德化를 펴는 일은 반드시 使臣에게 맡겼으니, 三代의 명한 바는 가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라는 것이었고 周나라의 풍속과 교화는 백성들을 노래하고 찬양케 하였다. 漢나라 때는 直指繡衣使를 파견함으로써 위엄이 모든 州郡에 미쳤고, 唐나라 때는 節度使를 파견하여 行臺의 사명을 겸하게 하였으며, 宋나라 때는 觀察使를 두어 재정을 출납하고 부역을 공평하게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 초기에 재상들을 파견하여 각 도의 節度使로 삼아 그 지방을 전담케하고 수령들의 승진과 파면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 이를 고쳐서 3품 이하의 관리를 都部署使·按察使·按廉使 등으로 임명하여 제반 업무를 규찰하게 하니 그 임무가 막중하였다. 麗末에 이르러 조정의 기강이 무너져서 元帥로부터 지방의 鎭·牧·府에 이르기까지 按廉使 보기를 왕명을 시행하는 주체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 하여 사소한절차도 싫어하고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는 바가 없으며 직무의 봉행마저 삼가지 않았다. 按廉使는 한갓 구차하게 장부의 錢穀이나 점검하는 데 그치고 수령의 승진과 파면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기강이 무너지고 질서가 흐트러져서 거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朝鮮 태조가 무진년(138)에 擧義한 이후, 국정의 폐단을 혁신하고자 兩府 이상의 고관으로 都觀察黜陟使를 삼고, 조정의 관원 중에서 발탁하여 經歷과 都事로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軍과 民의 사무를 아울러 살피게 하였다. 업무성적의 우열에 따라 관리를 평가하는 법을 명확히 하고, 2품 이상이 죄를 범했을 때는 감옥에 가두고 상부에 품의하고 3품 이하는 법에 따라 직접 판단하게 하였으며, 또한 按廉使를 서로 바꾸어 파견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킴으로써 오늘날의 화락한 다스림을 이루었으니, 어찌 훌륭하지 않으리오.

나의 용열한 자질로 중임을 맡아 전임자의 어진 전통을 어지럽히게 되었으므로, 예로부터 전해오던 문서를 찾았으나 모두 왜구로 인하여 없어졌다 하였다. 慶州 본영에 영을 내려 공·사를 막론하고 문적을 뒤졌더니, 다만 아전 前注簿 孫熙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기록을 바치므로,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이 기록부를 만들 수 있었다. 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호를 쓰고 아래는 그 해 부임한 使臣의 성명을 써서 책이름을 營主題名記라 하였다.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本營에 두고 1부는 行營에 두어 후일 찾아보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아, 재상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리는 데 있고 使臣의 임무는 위의 명령을 받들어 德治를 펴는 데 있다. 그 시대 정치의 득실과 백성의 행불행이 이들에게 달려 있고, 역대의 안정과 혼란이 오로지 이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어찌 삼가지 않을 것인가? 여러 전임자들의 시비를 잘 헤아려서 추진하는 일이 떳떳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한다면 내가 지금 자료를 모아 題名錄을 작성하는 것이 어찌 뒷



날의 군자들에게 도움 됨이 없겠는가? 나 또한 이름이 올라 있어 반드시 한 가지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이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감히 이로써 序로 하노라.

1425년(세종 7) 윤7월 19일 晉陽人 敬齋 河演(字 淵亮)은 쓰다.

河演의 序文에 의하면, 1424년(세종 6)년 12월에 慶尙道 都觀察黜陟使로 부임한 이듬해에 역대 전임 慶尙道觀察使의 名案을 확인하고 前注簿 孫熙가 家藏하던 錄本을 底本으로 고려 문종 32년(1078, 무오)부터 河演 본인이 부임하기 전인 세종 5년(1423, 계묘)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慶尙道 觀察使의 名案을 새로이 작성하여 成冊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만들어진 책은 2부로서 1부는 慶州의 本營에 藏置하고 1부는 尙州의 行營에 藏置하여 훗날의 考覽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본은 河演의 序文 뒤에 있는 ‘本營慶州府治’라는 기록을 통하여 경주의 본영에 안치되었던 책임을 알 수 있다.



洪熙元年 敬齋 河演 序文 / 印文(敬齋, 晉陽世家, 河演, 淵亮)

조사본에 수록된 인물은 1078년(고려 문종 32, 戊午) 봄부터 여름동안 임명되었던 都部署使 李齊元으로부터 1718년(숙종 44)에 通政大夫 觀察使 兼兵馬水軍節都使 巡察使 大邱都護府使였던 李堞까지 974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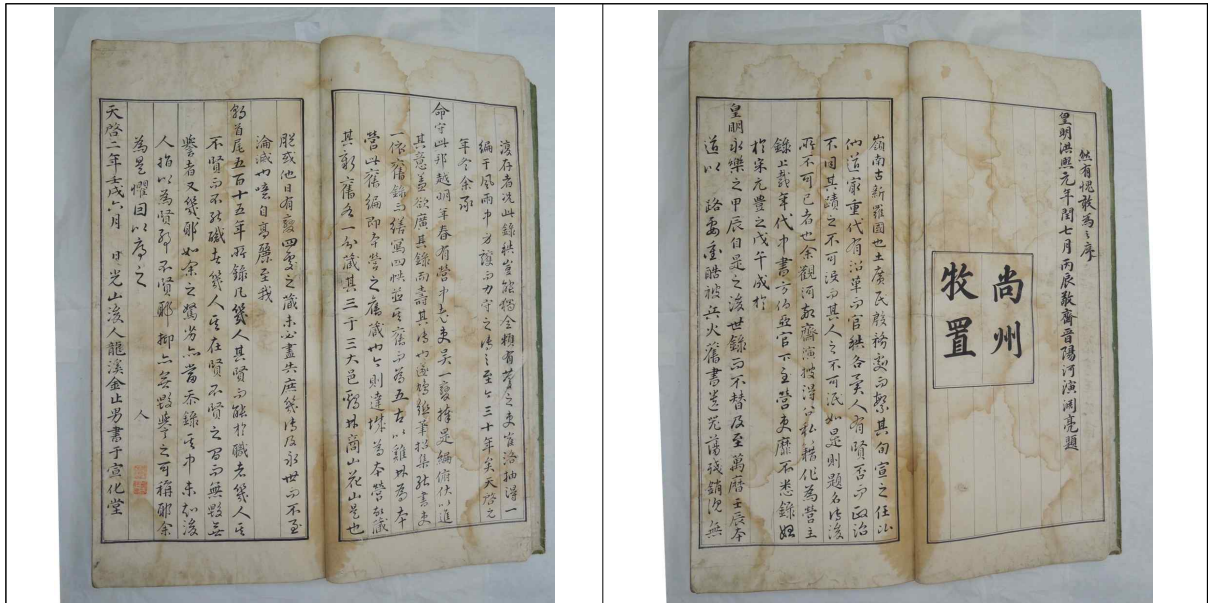
한편 상주박물관 소장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은 不分卷1冊으로 사방의 변란을 굽고 가는 두 개의 목선으로 그렸고, 본문 부분은 3단으로 구획을 나누어 8행 25자 내외로 적고 있다. 변란의 세로 길이는 전체 68.4cm로서 상단은 6.2cm, 중단은 7.3cm 그리고 하단은 54.9cm이며, 가로 폭은 28.0cm이다. 각각의 단에는 경주박물관 소장본과 같이 제1단에는 중국의 역대 王朝의 年譜를, 제2단에는 高麗



와 朝鮮의 歷代 王朝의 年譜를, 제3단에는 역대로 부임한 觀察使 및 方伯·亞官·鄉吏 등의 先生案을 수록하고 있다. 본문은 표지를 제외한 전체 117張이며 空紙는 2張이다.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 상주박물관 所藏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 / 尚州牧置

조사본인 상주박물관 소장 『慶尙道營主題名記』(道先生案)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에 보이는 '咸豐九年 己未' 奉安記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425년(洪熙元年, 乙巳, 세종 7)에 작성된 敬齋 河演의 서문

을 수록하고 그 뒤에 ‘天啓二年 壬戌’에 작성된 金止男의 서문이 있다. 우선 관련된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嶺南은 옛날 新羅國이 있었던 곳으로 지역이 넓고 백성은 많아서 사무가 바쁘고 번잡하며 왕명을 받드는 임무가 다른 도에 비해 가장 무거웠다.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고 관리의 직위도 각각 다르며 사람이 어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여 정치 또한 같지 않지만, 그 흔적을 숨길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없앨 수도 없으니 題名錄을 작성하여 후세에 전하는 일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살펴보니 敬齋 河演이 공·사를 막론하고 文籍을 뒤적여 營主錄을 작성하였는데, 위에는 연대를 기재하고 중간에는 方伯(營主)과 亞官(經歷·都事)을 썼으며, 아래로 營吏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高麗 문종 32년(1078)부터 시작하여 朝鮮 세종 6년(1424)까지 작성하였으며, 이후로는 세대마다 빠짐없이 기록하여 그치지 않았다. 선조 25년(1592)에 이르러 경상도가 왜구가 지나가는 요충지가 되어 참혹한 兵火를 입었다. 옛 서적과 물려받은 기물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 남은 것이 없었으니, 어찌 이 題名錄만이 온전할 수 있었겠는가? 다행히 慶州의 아전 崔洛이 비바람 속에서 이 책 한 권을 얻어서 온몸으로 수호한 끝에 지금까지 전해져 왔으니 30년이 되었다. 광해군 13년(1621) 겨울에 내가 왕명을 받들어 이 지방 관찰사가 되었다. 다음해 봄에 감영의 늙은 아전 吳一燮이 이 책을 가져와 옆드려 바치니, 그 뜻은 이 기록을 널리 알려서 영구히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종이와 붓을 구하고 글씨에 능한 아전들을 불러 모았고, 한결같이 舊錄에 의거하여 4질을 만들었으니 원본과 합쳐 5질이 되었다.

옛날에는 鷄林(慶州)이 本營이었고 이 원본은 本營에서 본래 보관해 왔던 것이지만, 지금은 達成(大邱)이 本營인 까닭에 신·구안 각 1질을 보관하고 나머지 3질은 3개의 대읍에 나누어 보관하였으니 鷄林(慶州)·尙山(尙州)·花山(安東)이 그것이다. 설혹 후일 변경이 있더라도 네 곳에 보관한 것이 모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영원히 전해져서 멸실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전부 515년간이니 수록된 사람이 모두 몇 사람이며, 그 가운데 어질면서 능히 직무를 다한 사람이 몇 사람이고 어질지도 않고 직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몇 사람이며, 어진 사람과 어질지 못한 사람의 중간에서 비난도 칭송도 받지 않은 사람은 또한 몇 사람이었던가?

나와 같이 노둔하고 용렬한 사람도 또한 그 가운데 기록될 것이니, 후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어질다고 할 것인지 어질지 못하다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난할 것도 칭송할 것도 없다고 할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를 두려워하면서 이로써 序하노라.

1622년(광해 14) 6월 光山人 龍溪 金止男은 宣化堂에서 쓰다.

이같은 기록과 함께 서문의 끝에 보이는 “光山後人 龍溪 金止男書于宣化堂”이라는 기록과 함께 찍힌 방형의 朱印인 ‘龍溪’ 및 ‘金止男印’의 두 도장은 이 자료의 작성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곧 1621년(광해군 13)년 겨울에 慶尙觀察使로

부임한 金止男이 이듬해(1622, 壬戌) 감영의 나이든 營吏 吳一燮으로부터 慶州의 本營에 소장되던 舊本을 進獻받은 이후 紙筆을 모으고 글씨에 능한 書吏를 동원하여 舊本을 底本으로 하여 똑같이 4帙을 轉寫하여 新本 4帙과 舊本 1帙 등 도합 5帙을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本營이었던 達城(大邱)에 新·舊本の 각 1帙을 藏置하도록 하고 鷄林(慶州)과 尙山(尙州) 및 花山(安東)에 新本 각 1帙씩 分藏토록 하였던 것이다.

조사본은 본래 상주향교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졌는데, 상주목사가 있는 관청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어느 때 상주향교로 옮겨진 것인 지에 대해서는 상세하지 않으나 아마도 향청의 폐지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인 상주박물관 소장본에 수록된 인물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된 『慶尙道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에서 확인되는 都部署使 李齊元으로부터 1718년(숙종 44)에 通政大夫 觀察使 兼兵馬水軍節都使 巡察使 大邱都護府使였던 李堞까지를 포함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1719년(숙종 45)에 通政大夫 觀察使 兼兵馬水軍節都使 巡察使 大邱都護府使였던 吳命恒으로부터 1886년(고종 23) 崇祿大夫 行觀察使 兼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大丘都護府使 親軍南營外使인 李鎬俊에 이르기까지 1096인을 수록하고 있다.

#### ○ 文獻資料

- 慶州市·慶州文化院 編譯, 『國譯慶州先生案』. 경주 : 慶州市·慶州文化院, 2002.
- 國會圖書館 編,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 國立國會圖書館, 1970.
- 亞細亞文化社 編, 『慶州先生案 五種』. 影印本.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82.
- 震檀學會 編, 『戶長先生案·上詔文先生案·講武堂先生案』. 서울 : 震檀學會, 1980. <震檀學報 所收本>.



#### ○ 현 상

본서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경상도 역대 관찰사의 관계, 관명, 성명, 임체년월일을 연월일순으로 기록한 관원명부이다. 최초 성책자는 세종 7(1425)년 부임한 관찰사 河演(1376-1453)이었다. 부임 후 보니 관찰영의 문서가 왜구로 산실된 상태였다. 상주는 물론 慶州本營에도 관련 문서가 없었는데, 경주본영의 前 主簿 孫熙의 가장본이 있어서 이를 저본으로 추록하여 완성할 수 있었다. 2부를 필사하여 1부는 경주본영에 소장하고, 1부는 行營에 소장하였었다. 행영은 尙州行營으로 추정된다. 河演이 당시 추록한 책이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이다. 임진왜란으로 또다시 문적이 산실되었다. 광해군 13(1621)년 金止男이 관찰사로 부임한 후 경주의 衙前 崔洛이 보관하던 河演 추록본 경주본영본을 저본으로 증보본을 4부를 필사하였다. 金止男 증보본은 경주, 상주, 안동, 대구에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상주향교본은 金止男 증보본으로서 숙종 44(1718)년 4월28일 도입하고 이듬해 2월 호조참의로 전임된 李堞까지 추록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당초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문화재는 『府司先生案(戶長先生案)』(舊本)이었다. 그러나 국가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과정에서 지정신청 문화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가조사를 실시한 바 조사한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慶尙道營主題名記의 傳來本						
異稱	表題	作成年	最終年	序文	收藏處	備考
河濱本	棠下題名記	1720	1425-1718	河濱	경주박물관	最古本
尙州本	道先生案	1886	1425-1886	河濱, 金止男	상주향교	金止男本
鷄林本	營先生案	1818	1425-1818	河濱, 金止男, 南至熏	규장각	金止男本
南至熏本	慶尙道營先生案	1859	1425-1818	河濱, 金止男, 南至熏	규장각	
祇林寺本	道先生案	1903	1425-1903	河濱, 金止男, 南至熏	경주도서관	祇林寺印
[慶州]府司先生案의 傳來本						
異稱	書名	作成年	收錄範圍	序文	收藏處	備考
舊本	府司先生案	1787	1281-1713	李弼, 金多慶, 金士龍	경주박물관	
新本	府司先生案	1907	1652-1907	李廷臣, 崔岐瑞	경주박물관	
祇林寺本	戶長先生案	1935	1281-1907	孫永謨 등	경주도서관	
奎章閣本	戶長先生案	1935	1281-1907	孫永謨 등	규장각	
上記 2種 除外한 慶州市立圖書館 收藏의 先生案						
書名	對象	作成年	序文	藏書印	備考	
府尹先生案	慶州府尹	1475	梁順石	祇林寺印	1935年頃 轉寫	
上詔文先生案	上詔文 作成 鄉吏	1859	李景祿-崔渭祥	祇林寺印	1935年頃 轉寫	
講武堂先生案	慶州 戍衛武官	1859	尹仁涵-朴炳翌		1981年頃 轉寫	

결과로 『慶尙道營主題名記』는 국립경주박물관 수장본과 상주향교 수장의 2종, 『府司先生案』은 국립경주박물관 수장본 2책만 문화재 지정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외 규장각 수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2종과 『戶長先生案』, 경주시립도서관 수장의 『道先生案』, 『府尹先生案』, 『府司先生案(戶長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의 5책은 조선말의 전사본으로 추정되어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본보고서에는 국립경주박물관 수장본과 상주향교 수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 2종만 다루기로 한다.

『慶尙道營主題名記』는 고려 문종 이래 역대 경상도 관찰사의 명록이다. 현전본은 河濱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던 세종 7(1425)년 윤7월에 편찬한 사본이고, 이후 추록해 역대의 경상도 관찰사의 官階, 官名, 姓名과 到任하고 遞任된 연월일이 연월순으로 수록된 명부이다. 관찰사 명단마다 관찰영의 經歷·都事·營吏의 명단도 부기되어 있다.

각도의 관찰사는 一道之主란 의미에서 道主, 감영의 주인이란 의미에서 營主로 불렸다. 따라서 그 선생안은 營主題名記·棠下題名記·道先生案 등의 이칭이 있

다. 경주박물관 소장본 표지에 ‘棠下題名記’라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고대 주나라의 쯔공이 남국을 순행할 때 팔배나무[棠] 아래에서 송사를 처리한 고사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이는 어진 방백의 선정을 의미한다. 題名記는 題名錄·先生案·案冊·座目 등과 유사한 성격의 서적이다. 작성 시기를 기준으로 등재 인물이 현임자의 전임자라는 데서 선생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편자 하연의 본관은 晉陽, 자는 淵亮, 호는 敬齋·新稀翁이다. 하연은 고려 節義派 사대부인 鄭夢周의 제자이며, 조선 개국을 반대한 고려의 유신 ‘杜門洞 72현’ 중 한 사람인 河自宗의 아들로서 절의파 사대부의 사상을 계승한 대표적인 성리학자이다. 편찬한 서적은 본서 외에도 『慶尙道地理志』와 『五禮儀』 등 국가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서적이 있다.

하연이 관찰사로 도임해보니 감영에 수장되어 있던 전임자의 명록이 왜구에 의해 소멸된 상태였다. 다행히 경주본영의 주부를 지낸 孫熙의 소장본을 구할 수 있었다. 하연은 이를 저본으로 고려로부터 통관해서 선생안을 작성해 2부를 필사하게 해, 1부는 本營에 수장하고 1부는 行營에 비치하게 하였다.

조선 전기의 경상감영은 경주·상주·팔거현·달성군 등지를 옮겨 다니는 행영 체제였다. 달성이 임진왜란을 통해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되었으므로, 선조 29(1596)년에 달성 토성에 감영을 두었다. 그러다 선조 32(1599)년 정유재란으로 달성이 불에 탔으므로 안동으로 옮겼다가, 선조 35(1601)년 최종적으로 대구에 정착하였다. 따라서 세종년간에는 감영이 행영 상태였기 때문에 1부는 본영에 비치하고, 1부는 감사와 같이 이동된 듯하다.

하연이 편찬한 선생안에는 고려 문종 32(1078)년 李齊元부터 조선 숙종 44(1718)년 李堉까지의 경상도 관찰사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상단에는 중국의 연기, 중단에는 고려와 조선의 연기가 수록되어 있다. 고려시대는 관찰사의 임기가 6개월이었으므로 하단에 수록된 내용은 간지연기에 이어 春夏等과 秋冬等에 이어 관찰사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고려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9월 이후 체제의 변화가 생겨 연월일·관찰사의 직명과 성명, 經歷·都事·營吏의 명단도 수록되었다. 세종 5(1423)년부터는 관찰사, 경력, 도사, 영리의 도입일자과 이임일자도 부기되어 있다. 세종 6(1424)년 하연이 추록하기 시작한 후에는 정확한 임체 연월을 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찰사로 다시 임명된 경우는 중단에 再任, 三任이라 주기되어 있다.

## 1) 서지사항(국립경주박물관본)

慶尙道營主題名記 / [慶尙監營(朝鮮) 撰]  
寫本. [肅宗 45(1719)]

1冊(88張). 四周雙邊. 半郭 68.3 × 31.2cm. 有界, 8行字數不同. 無魚尾; 84.0 × 40.0 × 9.0cm.

表紙書名：棠下題名記.  
序：皇明洪熙元(1425)年閏七月丙辰敬齋晉陽河濱淵亮題.  
面紙筆寫年紀：咸豐九年己未(1859)七月膾成新案奉安于祇林寺.  
收藏處表記：本營慶州府置.  
印：敬齋，晉陽世家，河濱，淵亮.  
裝訂：鐵裝.  
保管函：松木(91.0×49.0×16.4cm). 肅宗 37(1711)年 南至熏 製作.

국립경주박물관 수장의 『慶尙道營主題名記』의 표지는 녹색 명주 표지였는데, 손상을 입은 상태이지만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목곽(91.0 × 41.0 × 16.4cm)에 보관되어 있다. 서너에 邊鐵을 대고 5곳에 박을못으로 고정시킨 鐵裝으로 제작되어 있다. 변철의 폭은 1.9cm이다. 박을못은 남아있지만 앞표지 국화문동은 2만 남아있고, 뒤표지의 국화문동은 완전하다. 제첩의 크기는 55.8 × 11.0cm이며, 본문은 매우 두꺼운 장지에 필사되었고, 전체적으로 書眉는 배접된 상태이다. 권말의 空紙 1장을 포함해 전체 책지는 87장이다.

본문에는 이중의 광곽이 그려져 있는데, 밖은 烏絲欄, 안은 朱絲欄이다. 8행이지만 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전체 광곽의 크기는 68.3 × 31.2cm이며, 3분해서 상단 높이는 6.50cm · 중단은 7.60cm · 하단은 54.2cm이다. 상단에는 중국의 연기, 중단에는 고려 또는 조선의 연기, 가장 공간이 넓은 하단에는 본문인 관찰사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상단의 연기를 표기한 방식에 있어 ‘송철종원우원년(宋哲宗元祐元年)’ · ‘요도종수창원년(遼道宗壽昌元年)’ · ‘금세종대정원년(金世宗大定元年)’과 같이 중원의 나라별로 연호가 바뀐 것이 반영되어 있다. 중단의 고려는 ‘高麗文宗三十三年’이라 기록되는 형식이다. 본문은 고려의 경우 관찰사의 임기가 6개월이었으므로, 1년에 춘하와 추동으로 나누어 수록되어 있다. 이성계가 집권한 창왕 원(1388)년 9월부터는 형식이 바뀌어 1년 단위로 수록되는데, 조선의 경우 太祖康獻大王卽位라 표기되고 관찰사 아래에 經歷 · 都事 · 營吏의 명단이 있다. 고려 문종 33년 李齊元부터 기록되어, 조선 숙종 44(1718)년 4월28일 도입하고 이듬해 2월 호조참의로 전임된 李堧까지 수록되어 있다.

## 2) 서지사항(상주향교본)

慶尙道營主題名記 / [慶尙監營(朝鮮) 撰]  
寫本. [高宗 23(1886)]  
1冊(119張). 四周雙邊. 半郭 68.4 × 28.0cm. 有界, 8行字數不同. 無魚尾; 82.5 × 38.8 × 5.7cm.  
表紙書名：道先生案丙辰仲秋改註.  
序：皇明洪熙元(1425)年閏七月丙辰敬齋晉陽河濱淵亮題.  
序：天啓二年壬戌(1622)六月 日光山後人龍溪金止男書于宣化堂.

收藏處表記：尙州牧置.  
印：龍溪, 金氏止男.  
裝訂：線裝.

표지는 녹색 명주 표지였는데, 손상을 입은 상태이다. 空紙 2장을 포함하여 119장을 홍사로 묶은 5침안의 선장본이다. 매우 두꺼운 장지에 필사되었고, 이종의 광곽은 烏絲欄이다. 표지에는 ‘道先生案’이란 서명에 이어 소자로 기록된 ‘丙辰仲秋改莊’이란 수보기가 있다. 하연의 서문에 이어 ‘尙州牧置’란 수장처 목기가 있고, 이어 광해군 14(1622)년에 쓴 김지남의 서문과 그의 인장 龍溪와 金氏止男이 날인되어 있다. 인조 즉위(1623)년 김지남부터 필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후에는 그때 그때 추록되어 필체가 다양하게 변한다. 3단으로 나누어 기록된 체제는 국립경주박물관본과 동일하다.

본서는 광해군 13(1621)년 김지남이 관찰사로 부임한 후 慶州戶長 崔洛의 보관본을 저본으로 4부를 더 필사해 원본과 합쳐 5부를 제작한 가운데 하나이다. 다급한 임진왜란의 전쟁 중에 慶州戶長 崔洛은 『營主先生案』, 『府尹判官先生案』, 『慶尙道地理志』, 『慶尙道續纂地理志』, 『新羅始祖世系族譜』 등의 서책을 관아 뒤뜰에 과문었다가, 다급한 상황이 지나자 경주 암곡리 鑿藏寺 석실로 옮겨 숨겼다. 7년의 왜란이 끝난 후 보니 석실에 습기가 차서 부식된 책도 있어 道案과 府案은 새로 작성했다고 한다. 營吏 吳一燮의 건의에 따라 김지남은 5부 가운데 신안 1부와 구안은 본영인 달성(達城)에 보관하고, 나머지 신안 3부는 鷄林, 商山(尙州), 花山(安東)에 수장하게 하였다. 상주향교본은 김지남의 5부 가운데 상주에 보관했던 책이다. 상주향교본에는 이후 고종 23(1886)년 李鎬俊까지 추록되었다.

이후 숙종 37(1711)년 南至熏이 추록한 사본에는 광무 7(1903)년 李允用까지 수록되어 있다. 고종 31(1894)년 5월 23일 府觀察使制를 실시하였고, 건양 원(1896)년 13도로 개편하고 관찰사 임명하였으나 1910년 한일합병으로 단절되기에 이른다. 서문에 이은 ‘尙州牧置’란 수장처 표기를 통해 본서는 상주목에 수장되었다가 후에 상주향교로 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주향교에서 상주박물관에 기탁한 상태이다.

## ○ 문헌자료

- 姜周鎭, 慶尙道先生案의 解題 및 序. 道先生案. 影印本. (서울: 국회도서관, 1970) 1-19.  
李樹健, 增補 慶尙道先生案 解題. 增補 慶尙道先生案(上) (安東: 한국국학진흥원, 2005) 29-51.  
한기문, 상주본 慶尙道營主題名記의 고려 경상도 안찰사 명단 검토. 大丘史學 125

(2016.11) 31-60.

## ○ 기 타

『慶尙道營主題名記』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본은 201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구입하여 국립경주박물관에 이관한 것이다. 상주향교 소장본은 상주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다.

## ○ 지정사례

현재 『慶尙道營主題名記』와 동일 또는 유사한 版種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



## 6.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 가. 검토사항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12.14) 관계 전문가 조사(’18.12.18) 및 과학조사(’19.3.6)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再雕本 大乘法界無差別論)
- 소유자(관리자)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 1권 1첩
- 규 격 : 1張: 34.2×48.0cm, 欄高: 22.2cm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절첩장(折帖裝)
- 조성연대 : 판각: 1244년(고려 고종 31), 인출: 고려 말~조선 초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 신청 자료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은 인도의 학승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7세기 말 우전국 출신의 학승 제운반야(提雲般若)등이 번역한 재조본 대장경의 인본이다.

인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자료 전체적으로 충해가 있으며 특히 전후 표지는 감색 和紙를 사용하여 절첩하였다. 반면 제첩은 표지보다 짙은 감색 종이에 금니로 ‘大乘法界無差別論’을 필사하여 부착하였는데 표지를 제작한 종이의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 자료의 인쇄 상태는 매우 선명하여 판각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인출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기 지정된 재조본 대장경 인본의 기준에도 부합되므로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신청대상의 개인 소장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은 표지·제첩제의 개장·수리와 줌의 흔적이 있으나, 인출상태가 양호하다. 그리고 1244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조성된 해당 경판을 고려말기~조선초기(15세기) 찍은 절첩본으로,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 경판의 보존 상태와 당대 인출불사의 실제·역량, 그리고 인출 당시의 종이 종류와 인출본의 유통형태 및 표지·표제 형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청대상과 동일한 권의 경판으로 고려말기~조선초기(15세기) 찍어 절첩본과 같은 형태로 장정한 기록유산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등 희소적 가치도 가진다.

때문에 신청대상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은 광곽과 간기를 제외한 形態書誌學的 사항, 본문의 구성 체계 및 刻手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국보 제32호인 「陝川海印寺 大藏經板」에 포함된 두 종류 가운데 丹本 편입의 경판(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인출한 본이다.

또한 인출 시기는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으며, 제첩제의 개법장진언부호를 통하여 적어도 15세기 경에는 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거란장과 재조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서지목록기술 \* 고서목록작성 기준 : 한국목록규칙 제4판, 한국도서관협회, 2003

大乘法界無差別論 / 堅慧菩薩 造; 提雲般若(唐)...等譯. 木板本.

1帖 : 上下單邊 匡高 22.0cm, 無界, 6行14字 ; 34.0 × 48.0cm(1張)

10張, 1張 4折, 23行14字

折帖裝

原本刊記: 甲辰歲(1244)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 ○ 내용 및 특징

지정 신청 자료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은 대승의 법계 즉 여래장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으로 인도의 학승 견혜(堅慧)가 지은 것을 7세기 말 우전국 출신의 학승 제운반야(提雲般若)등이 번역하였다. 1권으로 된 이 논문은 불도를 깨달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인 보리심(菩提心)에 대해 과(果)인 경우, 인(因)인 경우, 자성(自性)인 경우, 다른 명칭인 경우(異名), 차별이 없는 경우(無差別), 분위(分位)인 경우, 물들지 않는 경우(無染), 항상하는 경우(常恒), 상응(相應)하는 경우, 뜻의 이로움을 짓지 않는 경우(不作義利), 뜻의 이로움을 짓는 경우(作義利), 하나의 성품인 경우(一性)등 12종(種)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약칭으로 법계무차별론(法界無差別論), 별칭으로는 여래장론(如來藏論)이라 부르기도 한다.

본 자료의 권수제는 ‘大乘法界無差別論’이며 권수제 다음 행에 ‘堅慧菩薩造 大唐于闐三藏提雲般若等 譯’의 한역 정보가 이어진다. 권말에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이 있어 원관이 고려 고종 31년(1244) 대장도감에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모두 10장이며 2장부터 ‘法界無差別論’의 판미제가 있고 2장은 ‘命’

3-10장까지는 ‘命丹本’으로 표기하고 있다.

인쇄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자료 전체적으로 충해가 있으며 특히 전후 표지는 감색 和紙를 사용하여 절첩장으로 장책하였다. 반면, 가로 4.2 cm, 세로 24.9 cm 크기의 제첩은 표지보다 짙은 감색 종이에 금니로 ‘大乘法界無差別論’을 필사하여 부착하였는데 지질은 표지와 상이하다.

특히 앞표지는 충해가 전혀 없는데 비해 내지는 충해가 있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대에 개장된 것으로 보인다. 지정신청서 상에 권자본이었던 것을 절첩장으로 개장하였다고 기술하였고 소장자가 제첩을 고려 감지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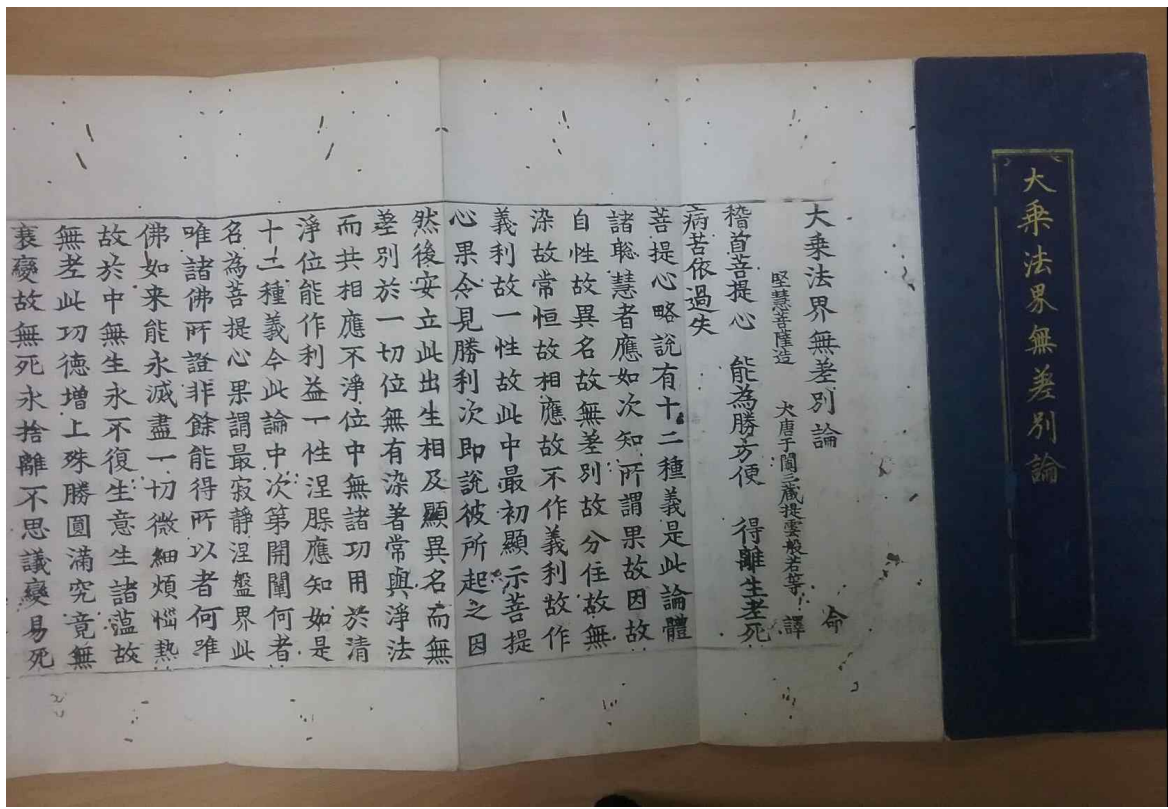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 자료의 인쇄 상태는 매우 선명하여 판각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기 지정된 재조본 대장경 인본의 기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 표지



그림 2 제첩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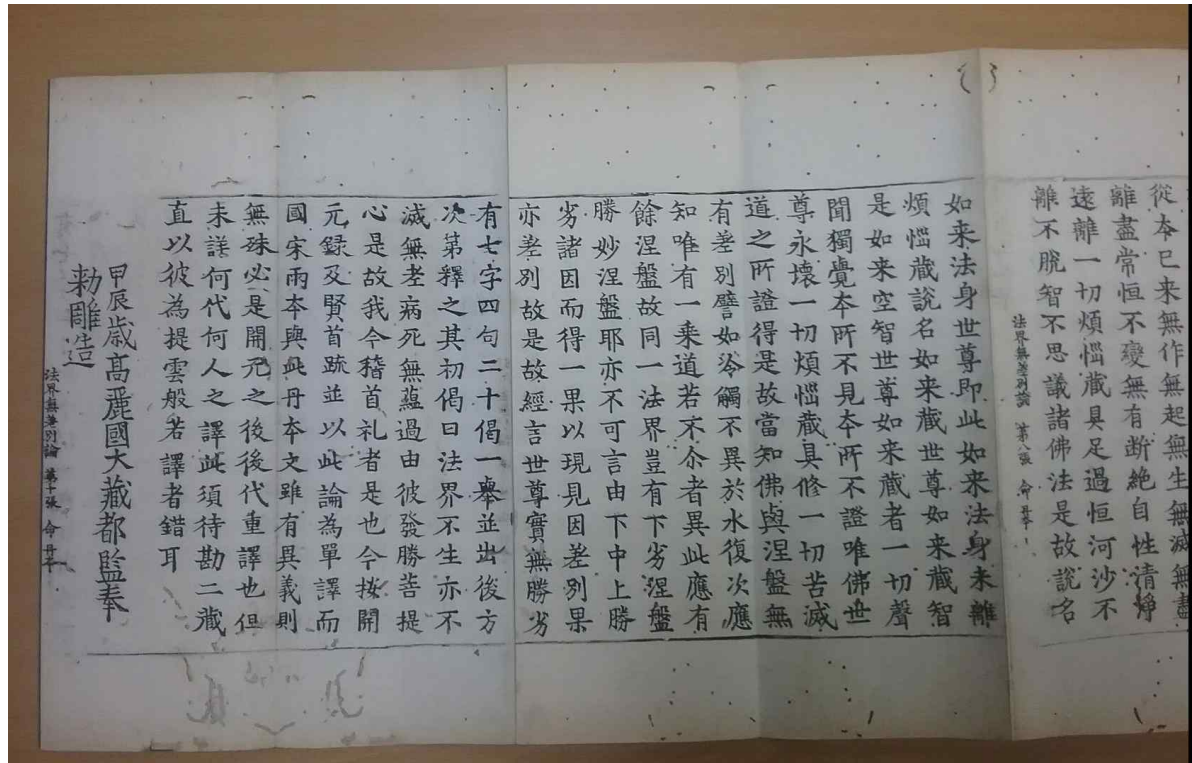
大乘法界無差別論

大乘法界無差別論

稽首菩提心 能為勝方便 得離生老死  
病苦依過失

菩提心略說有二種義是此論體  
諸般若者應如次知所謂果故因故  
自性故異名故無差別故分住故無  
染故常恒故相應故不作義利故作  
義利故一性故此中最初顯示菩提  
心果令見勝利次即說彼所起之因  
然後安立此出生相及顯異名而無  
差別於一切位無有染著常與淨法  
而共相應不淨位中無諸功用於清  
淨位能作利益一性涅槃應知如是  
十二種義今此論中次第開闡何者  
名為菩提心果謂最寂靜涅槃界此  
唯諸佛所證非餘能得所以者何唯  
佛如來能永滅盡一切微細煩惱熱  
故於中無生永不復生意生諸蘊故  
無差此功德增上殊勝圓滿究竟無  
衰變故無死永捨離不思議變易死

그림 3 권수



從本已來無作無起無生無滅無盡  
離盡常恒不變無有斷絕自性清淨  
遠離一切煩惱藏具足過恒河沙不  
離不脫智不思議諸佛法是故說名

如來法身世尊即此如來法身未離  
煩惱藏說名如來藏世尊如來藏智  
是如來空智世尊如來藏者一切聲  
聞獨覺本所不見本所不證唯佛世  
尊永壞一切煩惱藏具修一切苦滅  
道之所證得是故當知佛與涅槃無  
有差別譬如芥觸不異於水復次應  
知唯有一乘道若不尔者異此應有  
餘涅槃故同一法界豈有下劣涅槃  
勝妙涅槃耶亦不可言由下中上勝  
劣諸因而得一果以現見因差別果  
亦差別故是故經言世尊實無勝劣  
有七字四句二十偈一舉並出後方  
次第釋之其初偈曰法界不生亦不  
滅無老病死無蘊過由彼發勝菩提  
心是故我今稽首禮者是也今按開  
元錄及賢首疏並以此論為單譯而  
國宋兩本與此丹本文雖有異義則  
無殊必是開元之後後代重譯也但  
未詳何代何人之譯此須待勤二藏  
直以彼為提雲般若譯者錯耳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  
勅雕造

그림 4 권말



그림 5 인쇄 상태 확대

### ○ 기타사항

지정신청 자료는 조명기 舊藏本임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 제공 자료 화면



### ○ 지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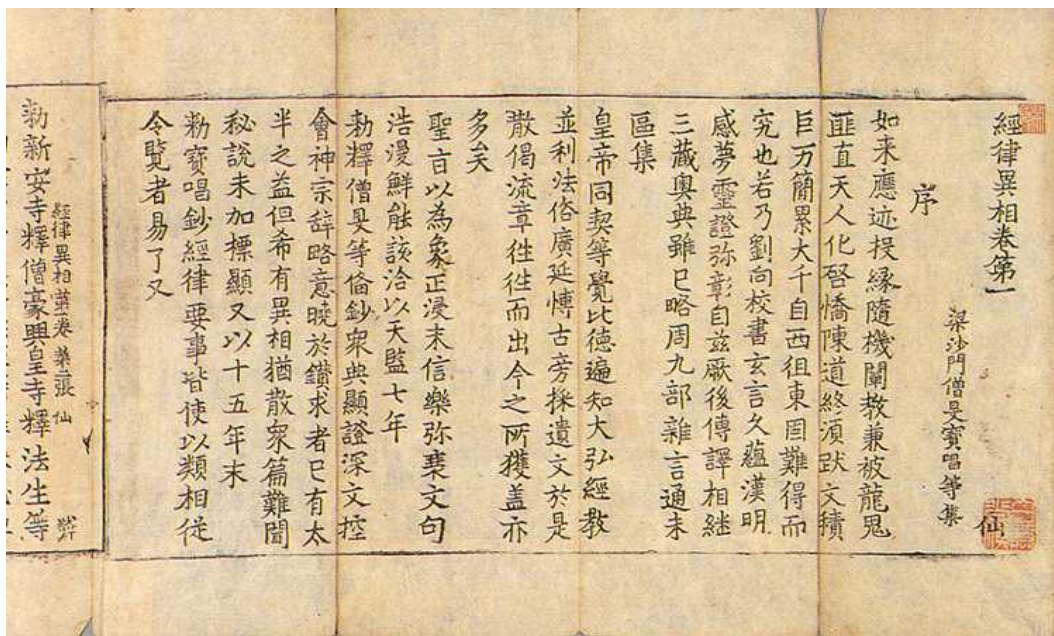
재조본 대장경 인본의 지정사례는 유가사지론 권20(보물 제1886호, 2016년 1월 7일 지정), 권42(보물 제1658호, 2010년 8월 25일 지정), 권55(보물 제972호, 1988년 12월 28일 지정), 권64(보물 제969호, 1988년 12월 28일 지정)이며 모두 권자본 형태이다. 또한 경륜이상 권1(보물 제1155호, 1993년 4월 27일 지정)과 권8 (보물 제1156호, 1993년 4월 27일 지정)이 있는데 두 자료 모두 절첩본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1) 보물 제1658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四十二)



2) 보물 제1155호 재조본 경률이상 권1 (再雕本 經律異相 卷一)



○ 참고자료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서비스시스템

고려대장경지식베이스

국가문화유산포털

□

## ○ 현 상

신청대상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 1권 2첩은 1244년(고종 31)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에서 각수 한립(漢立)·송혈세(宋頁世) 등이 조성한 경판 1권 5판 10면을 인출한 기록유산으로, 현재 고(故) 조명기 박사의 자부가 소장하고 있다.

신청대상본은 본문의 인출상태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면서 앞뒤 표지의 개장·수리 흔적이 발견되며, 내지(內紙)의 본문에는 좀과 배접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앞표지의 경우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니사란 부분의 제침만 별도로 오려 붙어 있고 제침에는 좀 흔적이 발견된다. 아울러 본문의 일부에서는 가필의 흔적 등도 발견(제2장 8행 禮 및 제8장 7행의 是·來 등)된다.

##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244년)

1卷1帖 : 上下單邊, 全郭 22.2×48.0cm, 無界, 23行14字, ; 34.2×12.0cm. 楮紙. 折帖本 (1張 4折)

권 수 제 : 大乘法界無差別論 命

저술·한역정보 : 堅慧菩薩造 大唐于闐三藏提雲般若等 譯

판 미 제 : 法界無差別論 第二張 命 / 法界無差別論 第三張 命 丹本

권 미 제 : 大乘法界無差別論

교감정보 : 此論丹藏與國宋二藏不同此則丹 / 本有五字四句二十四頌閒挾七言 / 一偈離爲十二段段段各釋吾祖賢首疏所釋者此本也按彼國宋兩本 / 有七字四句二十偈一舉並出後方 / 次第釋之其初偈曰法界不生亦不 / 滅無差別死無蘊過由彼發勝菩提 / 心是故我今稽首禮者是也今按開 / 元錄及賢首疏並以此論爲單譯而 / 國宋兩本與此丹本文雖有異義則 / 無殊必是開元之後後代重譯也但 / 未詳何代何人之譯此須待勘二藏 / 直以彼爲提雲般若譯者錯耳

## ○ 내용 및 특징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도출신의 승려지식인 견혜(堅慧)가 지은 이후, 우전국(于闐國) 출신의 승려지식인 제운반야(提雲般若)가 한문으로 번역한 단권의 불교경전으로, 보리심(菩提心)의 12가지 의의에 의거하여 법계의 무차별을 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44년(고종 31년 : 갑진세) 고려국대장도감에서는 권수제·권미제가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이라 표기된 단본(丹本 : 거란대장경) 편입의 경전 1종류와 함께 ‘대승법계무차별론권일(大乘法界無差別論卷一)’이라 새겨진 국본(國本 : 초조대장경본)·송본(宋本 : 송나라대장경본) 편입의 경전 1종류



등 2종류의 『대승법계무차별론』 경판이 조성되어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재조대장경판)의 명(命)함에 포함되어 있다.

신청대상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은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2종류 가운데 단본(丹本) 편입의 경판(대승법계무차별론)을 인출한 기록유산이다. 인출본의 전체는 앞뒤 표지 사이에 권수제-저술·한역정보-본문-권미제-교감정보-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앞뒤 표지는 후대 일본산의 검색종이로 개장·변형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표지에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니사란(金泥絲欄) 안에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부호와 함께 그 아래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이라는 내용을 금니로 필사된 제첨제가 붙어 있다. 해당 제첨제는 좀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앞표지의 개장 과정에서 원래 표지의 표제를 오려 붙였으며, 원래 표지도 검색계통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수제 이하 본문 등의 인출 종이종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통 종이로 두껍고 질기며 질이 좋은 장지(壯紙)이다. 권수제는 ‘대승법계무차별론(大乘法界無差別論) 명(命)’처럼 경전이름+천자문 함차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미제는 경전이름만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 다음의 제2행에는 ‘견혜보살조(堅慧菩薩造) 대당우전삼장제운반야등역(大唐于闐三藏提雲般若等譯)’이라는 저술정보 및 한역정보를 이어 제3행부터는 본문 내용이 1장 4절 형태로 절첩되어 있으며, 한 절이 4~6행(제1장 4·6·6·6행, 제2장 이하 6·6·6·5행) 14자로 접혀져 있다. 판미제는 작은 글자로 ‘법계무차별론 제이장 명(法界無差別論 第二張 命)’과 같이 줄인 경전이름+제(第)+장차+장+함차(천자문)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3장부터 제10장의 경우는 ‘법계무차별론 제삼장 명 단본(法界無差別論 第三張 命 丹本)’처럼 천자문 함차를 이어 거란대장경본(丹本)이라는 내용을 표기하여 거란대장경에 편입된 경전을 저본으로 삼은 사실을 알려준다.

권미제의 다음에는 ‘이 『대승법계무차별론』은 거란대장경이 국장(초조대장경) 및 송장(송나라대장경)과 서로 같지 않다(此論丹藏與國宋二藏不同)……국본·송본의 두 본은 이 단본과 문장이 비록 다르지만 의미는 차이가 없으므로, 틀림없이 당나라 개원 이후의 후대에 중역된 듯하다(國宋兩本與此丹本文雖有異 義則無殊 必是開元之後後代重譯也)……제운반야가 한역하였다는 것은 착오일 따름이다(以彼爲堤雲般若譯者錯耳)’라는 내용의 교감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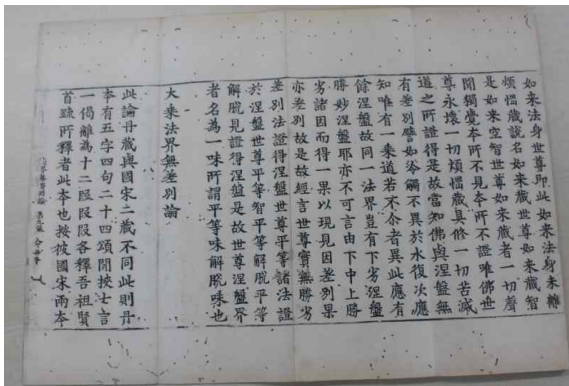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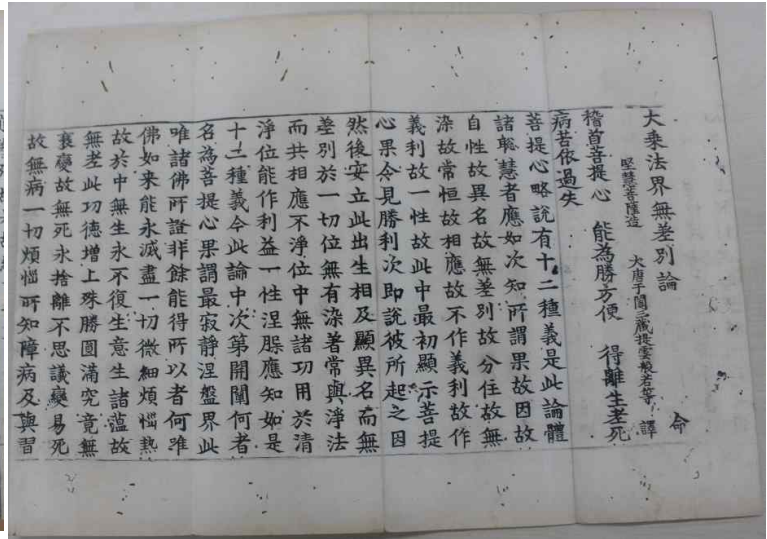
교감정보 다음에는 1244년(고종 31 : 갑진세) 고려국대장도감에서 고종 황제의 명령으로 『대승법계무차별론』의 경판을 새겨 만들었습니다(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내용의 간행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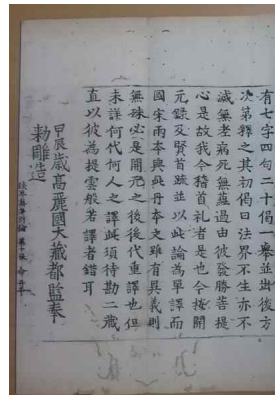
앞표지



뒤표지



제9장



제10장



제침의 좀 흔적

신청대상의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은 제10장의 교감정보 다음에 표기된 간행정보에서 인출 원판이 1244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조성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인출정보가 없어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인출시기는 인출상태와 장정형태(절첩본) 및 제침제의 개법장진언부호 등에서 고려말기~조선초기(15세기)로 짐작할 수 있다. 인출상태는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으며, 내지(內紙)와 마찬가지로 좀의 흔적이 남아있는 제침제는 원래 표지의 일부로 개법장진언부호 등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15세기 경 이전의 인출본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본은 충숙왕 복위 3년(1334) 해인사대장경판에 입장된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찍어 천화사(天和寺 : 개경직할시 장풍군으로 추정)에 봉안하였다가 현재 쓰시마 금강원(金剛院)에 소장된 인출본과 마찬가지로 표지가 감색 계통이며, 장정형태도 절

첩본이므로, 14세기 중엽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로써 신청대상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 경판의 보존 상태와 함께 고려말기~조선초기 인출불사의 실체와 역량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출당시의 종이 종류와 인출본의 유통형태 및 표지·표제 형태 등도 진단할 수 있는 가치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 문헌자료

『고려사』 권24, 고종 38년 9월 임오.

『고려사』 권129, 최충헌 부 최항전.

이규보(李奎報), 『대장각판군신기고문(大藏刻板君臣祈告文)』,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권25, 잡저(雜著).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해인사대장경판 편입)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 ○ 지정사례

신청대상본의 『제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과 동일한 권의 경판으로 고려말기~조선초기(15세기) 경에 찍어 절첩본과 같은 형태로 장정한 인출본은 현재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다. 아울러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경전종류를 15세기 이전에 찍은 인출본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된 사례도 제한되어 있다.

보물 제969호 유가사지론 권64(국립중앙박물관 1988년 12월 지정 : 권자본, 13~14세기경 인출)

보물 제972호 유가사지론 권55(국립중앙박물관 1988년 12월 지정 : 권자본, 13~14세기경 인출)

보물 제1155호 경률이상 권1(가천박물관 1993년 04지정 : 절첩본, 고려후기~조선전기 인출)

보물 제1156호 경률이상 권8(국립중앙박물관 1993년 04월 : 절첩본, 고려후기~조선전기 인출)

보물 제1658호 유가사지론 권42(원각사 2010년 08월 지정 : 권축본, 13세기 중후기 인출)

보물 제1886호 유가사지론 권20(국립한글박물관 2016년 01월 지정 : 권자본, 13~14세기경 인출)

보물 제1943호 사분울 권47~50(대성사 2017년 08월 지정 : 선장본, 15세기 중엽 경 인출)

해인사대장경관에 편입된 경판을 고려말기~조선초기 찍은 인출본은 현재까지 7종류 정도가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근거도 우수한 종이 종류와 양호한 인쇄상태 및 국문학적인 석독구결(釋讀口訣)의 표기 등의 역사·문화적인 희소가치이다.

□

### 書誌事項

大乘法界無差別論 / 堅慧 造 提雲般若等 譯(唐)

木板本(大藏都監), [高麗 高宗 31(1244) 刻, 印出].

1帖 : 上下單邊, 欄高 22.2cm, 無界, 23行14字, ; 34.2×48.0cm. 楮紙. 折帖本(1張 4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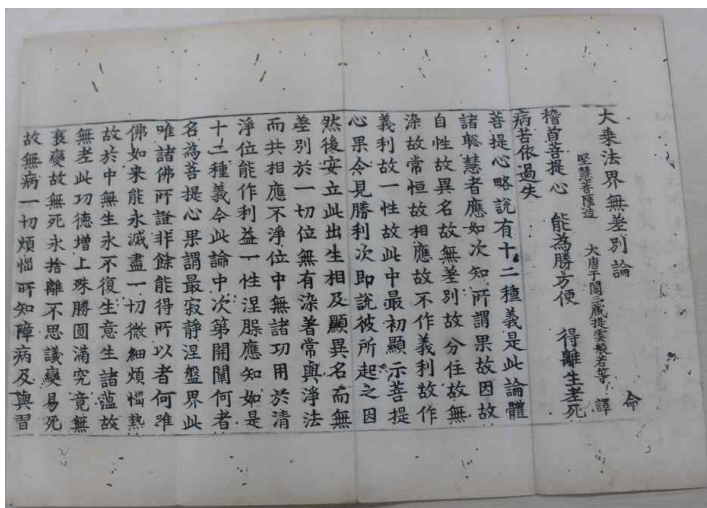
卷首題 : 大乘法界無差別論 命

版尾題 : 法界無差別論 第二張 命/ 法界無差別論 第三張 命 丹本

卷尾題 : 大乘法界無差別論

### ○ 현 상

앞뒤 표지의 개장·수리 흔적이 발견되며, 內紙는 충해로 인한 손상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본문의 인출상태는 양호하다.



### ○ 내용 및 특징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도의 승려인 堅慧가 지은 이후, 于闐國 출신의 승려지식인 提雲般若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으로서 줄여서 『법계무차별론』이라고도 하며, 별칭으로 『如來藏論』이라고 한다. 이 경전은 대승의 법계, 즉 여래

장에는 차별이 없음을 설한 논서이다.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의 命函에 1244년(고종 31년, 甲辰歲)에 해당하는 권수제·권미제가 ‘大乘法界無差別論’이라 표기된 丹本(거란대장경) 편입의 경전과 함께 ‘大乘法界無差別論卷一’이라 새겨진 國本(초조대장경본)·宋本(송나라 대장경본) 편입의 경전 등 두 종류의 『대승법계무차별론』 경판이 조성되어 포함되어 있다.

조사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은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에 포함된 2종류 가운데 丹本 편입의 경판(대승법계무차별론)을 인출한 본이다. 앞뒤 표지는 후대 일본산의 감색종이로 개장·변형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표지에는 사주쌍변 형태의 金泥絲欄 안에 開法藏眞言 부호와 함께 그 아래 ‘大乘法界無差別論’이라는 내용을 금니로 필사된 제첨제가 붙어 있다. 해당 제첨제는 좀의 흔적이 남아 있으므로, 앞표지의 개장 과정에서 원래 표지의 표제를 오려 붙였으며, 원래 표지도 감색계통이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권수제는 ‘大乘法界無差別論 命’처럼 경전이름+천자문 합차의 형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권미제는 경전이름만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 다음의 제2행에는 ‘堅慧菩薩造 大唐于闐三藏提雲般若等 譯’이라 하여 저술정보 및 한역정보를 담고 있다. 경의 본문은 1장 4절 형태로 절첩되어 있으며, 한 절이 4~6행 14자의 형식이다. 권미제는 작은 글자로 ‘法界無差別論 第二張 命’과 같이 縮約 經名+第+張次+場+函次(천자문)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3장부터 제10장의 경우는 ‘法界無差別論 第三張 命 丹本’처럼 천자문 합차를 이어 거란대장경본(丹本)이라는 내용을 표기하여 거란대장경에 편입된 경전을 저본으로 삼은 사실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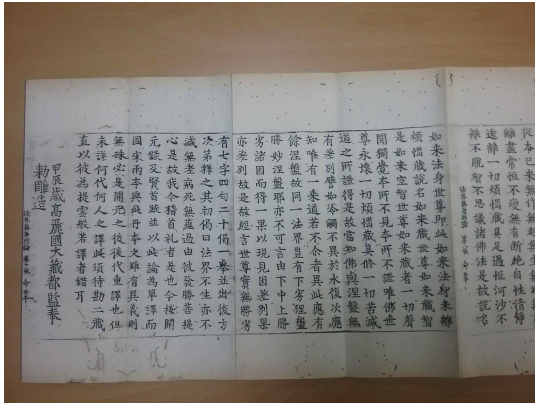
한편, 권미제의 다음에는 이 경전에 대한 교감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다. 우선 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此論丹藏與國宋二藏不同此則丹/ 本有五字四句二十四頌閒挾七言/ 一偈離爲十二段段段各釋吾祖賢首疏所釋者此本也按彼國宋兩本/ 有七字四句二十偈一舉並出後方/ 次第釋之其初偈曰法界不生亦不/ 滅無差病死無蘊過由彼發勝菩提/ 心是故我今稽首禮者是也今按開/ 元錄及賢首疏並以此論爲單譯而/ 國宋兩本與此丹本文雖有異義則/ 無殊必是開元之後後代重譯也但/ 未詳何代何人之譯此須待勘二藏/ 直以彼爲堤雲般若譯者錯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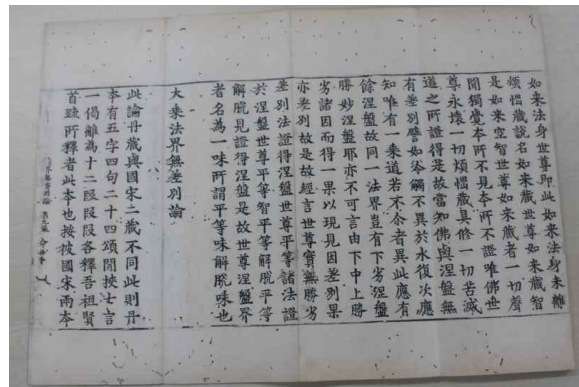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거란대장경이 국장(초조대장경) 및 송장(송나라대장경)과 서로 같지 않다(此論丹藏與國宋二藏不同)……국본·송본의 두 본은 이 단본과 문장이 비록 다르지만 의미는 차이가 없으므로, 틀림없이 당나라 개원 이후의 후대에 중역된 듯하다(國宋兩本與此丹本文雖有異 義則無殊 必是開元之後後代重譯也)……제운반야가 한역하였다는 것은 착오일 따름이다(以彼爲堤雲般若譯者錯耳)’라는 내용의 교감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교감정보 다음에는 ‘甲辰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고 하여 1244년(고종 31, 甲

辰歲) 고려국 대장도감에서 『대승법계무차별론』의 경판을 새겨 만들었다는 내용의 간행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제10장



제9장

조사본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1권 1첩은 본래 卷子本이었다고 전하고 있으나, 현재의 절첩본 이전의 원상을 보여주는 단서는 살필 수가 없다. 다만 동시기에 전하는 재조본들을 통하여 권자본 및 절첩본의 형식이 모두 확인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조사본에서 중요한 것은 인출된 시기의 문제이다. 그런데 인출시기는 인출상태와 장정형태(절첩본) 및 제첩제의 개법장진언부호 등에서 고려말기~조선초기(15세기)로 짐작할 수 있다. 인출상태는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으며, 제첩제의 개법장진언부호를 통하여 적어도 15세기 경에는 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해인사대장경판에 편입된 해당 경판에서 고려말기~조선초기에는 인출된 자료로서 거란장과 재조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 ○ 지정사례

조사본과 동일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지정된 사례가 없으나, 재조대장경 가운데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정번호	명칭	인출시기	장책형식	관리자
1	제969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64	13-14세기	권자본	국립중앙박물관
2	제972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55	13-14세기	권자본	상동
3	제1155호	재조본 경륜이상 권1	고려-조선전기	절첩장	가천박물관
4	제1156호	재조본 경륜이상 권8	고려-조선전기	절첩장	국립중앙박물관
5	제1658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42	13-14세기	권자본	원각사
6	제1886호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	13-14세기	권자본	국립한글박물관
7	제1943호	재조본 사분율 권47-50	15세기 중엽	선장본	대성사



## 7.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光州 德林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가. 검토사항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상 및 시왕상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상 및 시왕상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6.11.4) 관계 전문가 조사(’18.5.3) 및 과학조사(’19. 4.1~4.3), 보완조사(’19.7.25)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7호(2005.7.19. 지정)
- 명 칭 : 광주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光州 德林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十王像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덕림사
- 소재지 : 전남 광주시 남구 월산로 116번길 22, 덕림사
- 수 량 : 총 31점  
존상 26구(지장보살 1구, 도명 1구, 무독 1구, 십대왕 10구, 동자 7구, 판관 2구, 귀왕 2구, 사자 2구), 발원문 3점(지장, 도명, 무독), 후령통 2점
- 규 격 : 현황표 참조(표1)
- 재 질 : 목조
- 조성연대 : 1680년(숙종 6)
- 제작자 : 색난(色難), 도현(道軒), 충옥(沖玉) 모현(慕賢), 혜찰(惠察), 귀일(故一), 석종(釋宗), 득우(得牛), 초변(楚卞), 진기(進機), 성훈(性訓)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광주 덕림사의 지장시왕상은 비록 덕림사에 처음 봉안되었던 상은 아니지만, 명부전 존상 일괄을 거의 온전하게 갖추고 있고, 또한 조성한 작가 및 연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각을 이끈 ‘수공(首工)’은 색난으로서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인데, 그의 작품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모두 예술적 가치가 높고, 덕림사 명부전 존상 역시 조각 수준이 빼어나다.

특히 덕림사 명부전 존상은 1680년에 조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색난의 가장 이른 시기 작품으로 판단되고 있다. 고흥 능가사에서 이보다 1년 앞선 1679년작 “팔영산 석문암 아미타불좌상”이 발견되었으나, 이는 높이 40cm 가량의 경주불석제 불상으로 색난의 특징인 목조각상으로는 아직 덕림사상이 현존 최초의 작품으로서 의미가 깊다.

이후 남아있는 색난의 명부전 존상 일괄 작품으로는 고성 운흥사 명부전(1683년), 김해 은하사 명부전(1687년)의 두 사례가 이어진다. 당시 조각기교에서 있어 특별한 인정을 받았던 색난의 대규모 일괄조각군으로서 명부전 존상은 특히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덕림사 명부전 존상들은 1977년에 개채한 것인데, 그중에서도 시왕상의 채색의 형식이나 세부 문양이 운흥사 명부전 시왕상의 채색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77년에 개채될 때 원래의 채색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기 때문에 두 사찰의 시왕상 채색이 유사한 결과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혹 근래에 같은 작가에 의해 개채가 되었다면 이러한 유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두 사찰에서 개채를 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독자적으로 유지한 결과 이처럼 유사한 원래의 채색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덕림사 명부전 존상은 원래부터 덕림사에 봉안되기 위해 조성된 것은 아니었고, 또한 일부 상은 유실되어 근대기에 새로 보충되었지만, 조선시대 뛰어난 조각승 색난의 작품이자 제작연대가 밝혀졌으며, 또한 색난의 작품 중에서 현존하는 예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고, 또한 그의 명부전 일괄 존상 조성은 세 군데의 사례가 전하는 가운데 다양한 비교고찰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 나아가 무엇보다 예술적 조형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보물로 승격 지정하여 문화재의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추후 색난의 다른 명부전 도상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추후의 개체시에도 현재의 채색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류)

이 작품을 제작한 조각승 색난은 인균을 도와 1662년 전주 학소암 목조약사여래좌상을 제작한 이래 1680년에 제작된 광주 덕림사 지장시왕상(원 화순 영봉사)과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원 보성 개흥사) 1680년부터 1709년까지 팔영산 능가사를 본거지로 하여 수많은 작품을 남기며 이 시기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낸 조각승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 상상을 초월하는 전란을 겪으면서 사회 기반시설 대부분 소실되었고, 사찰도 마찬가지로였다. 17세기는 불교계의 입장에서 재건의 시대였다. 재건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승려들이 스스로 匠人의 길을 선택하였고, 이 시대 조성된 수많은 작품이 그 시대의 아픔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다. 17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걸쳐 진행된 불사는 전국의 중요 거점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불사의 규모도 대작불사였다. 17세 중반 이후 중요사찰의 복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자 2차적으로 중소 규모의 사찰들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졌다. 당시 조각승들은 집단을 이루며 활약을 하였고, 조각전통은 제자들에게 이어졌다. 이 덕림사 지장시왕상을 조성한 색난도 17세기 전반기에 활약한 응원-인균-삼인의 계보를 이어 받은 조각승으로 1662년 인균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전주 학소암 자음전 목조약사여래좌상(원 화순 유마사)’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광주 덕림사 지장시왕상은 순천 송광사 관음보살좌상(원 보성 개흥사)과 더불어 현재까지 색난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작품 중 가장 제작 시기가 올라가는 작품 중 하나이다. 색난은 이후로도 18세기 전반까지 후배 조각승을 이끌고 왕성한 활동을 펼친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이 작품은 색난의 작품의 형성과 전개, 발전 과정상 가장 초기작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색난의 작품이 전라, 경상 지역에 걸쳐 많은 작품이 유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검토에 앞서 색난의 모든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 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작품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보류)

광주 덕림사 명부전 지장보살삼존과 명부권속의 존상은 1945년 이후 지금의 자리에서 보존되었으며 1977년에 개금, 개채되었다. 2005년 이후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 무독귀왕, 진광대왕, 염라대왕 등 일부 상의 복장유물이 조사되어 발원문과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이 확인되었다.

발원문에 따르면 1680년에 조각승 색난(色難)을 수화승으로 도현(道軒), 충옥(沖玉) 모현(慕賢), 혜찰(惠察), 귀일(故一), 석종(釋宗), 득우(得牛), 초변(楚卞), 진기

(進機), 성훈(性訓) 등 11명이 만들었고 화순 영봉사에 봉안되었다. 조각승 색난(色難)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색난의 작품은 조선시대 화승 가운데 가장 많은 20여 건의 기년명 작품이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덕림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작품은 기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에 비해 동일 작가의 작품이 많지 않은 희소성, 제작기법의 예술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는 학술성 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은 색난의 작품이 깊이 있게 조사 연구되어 그 가운데 이 초기작품이 차지하는 특성과 의미가 명료해진 이후 다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동일작가 작품 비교검토 필요

### 조사보고서



#### ○ 현 상

월산동 언덕에서 무등산을 향해 동향한 덕림사는 <덕림사유적비>에 의하면 동호선사라는 분이 1936년 봄에 창건하였으며, 처음에는 송광사 말사였으나, 근래에 선운사 말사로 되었다. 원래 초창 때 세워진 대웅전과 1965년에 세워진 시왕전이 있었으나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다. 당시 대웅전에 봉안되었던 1766년작 석가삼존불은 소실되었고, 명부전의 지장보살상과 시왕상 등은 대피시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콘크리트조의 법당과 근래에 중건된 전통목조건축방식의 명부전이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중 명부전의 존상들은 지장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지장대성조성원문>과 도명존자 및 무독귀왕 복장에서 각각 발견된 원성문(願成文)을 통해 원래 전남 화순군 남면 영봉사(靈鳳寺)에 봉안되었던 상으로서 조각승 색난 등 11명의 승려들에 의해 강희19년(1680)에 조성된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영봉사가 폐사되면서 화순 유마사, 보성 대원사 등에 이운되어 봉안되다가 현재의 위치인 덕림사로 이운된 것은 1945년경이라고 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현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총 31구의 명부존상 중 후대에 조성된 2구의 금강역사상과 세 구의 동자상을 제외한 본존 목조지장보살삼

존상, 시왕상, 귀왕, 판관, 동자 등 모두 26구의 상으로서, 1977년에 개금·개채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명부전의 본존인 목조지장보살좌상은 삭발한 비구형 보살이다. 얼굴의 윤곽은 방형이면서도 양감이 풍부하며, 날카로운 눈매와 꼭 다문 입술, 콧등이 굽고 높게 표현된 점 등에서 조각승 색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통견 착의에 하품중생의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안에 입은 옷이 가슴 아래에서 매듭으로 주름진 부분을 마치 연화대좌의 양련좌 연잎처럼 굽게 묘사한 점이나 왼팔 어깨에서부터 마치 역U자, 혹은 역V자 형태로 내려오는 옷주름도 색난의 이른 시기 조각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판단된다. 무릎이 전체 비례에서 매우 높게 표현되었으며, 결과 부좌한 다리 위의 옷자락을 평행선의 형태로 조각하지 않고, 물결치듯이 자연스럽게 깎은 점도 주목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색난의 이른 시기 작품인 1680년대 불상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징들이다.

협시인 무독귀왕과 도명존자는 표현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도명존자의 얼굴은 지장보살의 모습과 유사하여 색난의 특징이 다분히 반영된 반면, 무독귀왕은 더 가름한 윤곽에 턱도 뾰족하게 되어 있으며, 신체로 날씬하면서 굴곡이 또렷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색난 및 함께 참여한 조각승들의 표현기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존상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마찬가지로 색난에 의해 조성된 운홍사 명부전 존상들의 경우도 시왕은 대체로 더 날렵하고 날카로운 이미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색난의 의도로 생각된다.

시왕은 전반적으로 경직된 자세로 앉아 유사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 현재 제3 송제대왕으로 봉안된 시왕만 백발의 노년의 모습에 웃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나머지 시왕들은 모두 젊으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단호한 인상을 준다. 시왕의 배치는 소목법에 의하면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측에서부터 1왕, 우측에 2왕의 순서로 번갈아 배치되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반대로 우측에서부터 1왕이 배치되어 있다. 시왕은 모두 등받이 상단 양쪽 끝에는 황룡과 청룡, 팔걸이 끝에는 봉황이 조각된 목조의자에 앉아있으며, 각각의 형상을 보면 제1 진광대왕은 정좌하고 두 손을 모아 홀을 들었으며, 제2 초강대왕은 반가좌와 유사한 자세에 오른손에 홀을 들었다. 백발의 제3 송제대왕은 정좌하여 책을 펼쳐들었으며 제4 오관대왕은 반가좌에 왼손으로 홀을 잡았다. 제5 염라대왕은 진광대왕과 같은 자세이지만 통천관 위에 금강경을 올리고 있어 염라대왕도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6 변성대왕은 정좌한 자세로 왼손에 책을 들

고 있으며, 오른손으로는 붓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천통관 꼭대기에 물고기 머리가 하늘방향을 바라보며 솟아나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제7 태산대왕은 반가한 자세로 오른손으로 수염을 쓰다듬고 있으며, 제8 평등대왕은 오른발로 흰코끼리를 밟고, 오른손으로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왼손에 홀을 쥐고 있다. 천통관 위에는 불꽃무늬가 올라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명부전의 정면을 향하고 있는 이들 시왕과 달리 측벽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제9 도시대왕과 제10 오도전륜대왕은 모두 왼발을 덮은 면복의 손으로 걸어올려 하의가 드러나 보이는 자세로 앉아있는데, 여기에 도시대왕은 오른손으로 홀을 쥐고 있고, 오도전륜대왕은 오른발 허벅지 아래로 손을 내리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귀왕, 판관, 사자는 명부전 좌우 끝에 각각 1구씩 봉안되어 있다. 귀왕은 지장삼존상의 무독귀왕과 같은 형식과 도상이며, 다만 크기가 더 작고, 함을 들고 있지 않는 점이 다르다. 판관은 책 형식의 서류를 들고 붓을 들어 무엇을 기록하는 자세로 표현되었고, 사자는 복두를 쓰고 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직인이 찍힌 명부를 들고 있는데 좌우 각각 창을 든 손과 명부를 든 손이 좌우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자상은 벼루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상, 붓을 들고 있는 상, 사자를 데리고 있는 상, 합장을 하고 있는 상 2구, 두루말이 문서를 들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상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통통한 동형(童形) 비례의 전형적인 동자상인데, 이에 반해 새로 조성된 세 구의 동자상은 역시 동형비례이기는 하지만, 원래의 상들에 비해서는 머리가 작고, 몸은 날렵한 조형감을 보여주고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지장보살과 도명존자상에서는 2005년 지방문화재 지정조사 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으며, 이어 2016년에는 무독귀왕, 진광 및 염라대왕상에서 추가로 복장유물이 발견되어 발원문, 경전, 다라니, 후령통 등이 수습되었다. 발원문에는 색난이 수공(首工)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수화사의 명칭 외에 수공이라는 명칭의 사용도 주목된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승장의 명단은 도헌(道軒), 충옥(沖玉) 모현(慕賢), 혜찰(惠察), 귀일(故一), 석종(釋宗), 득우(得牛), 초변(楚卞), 진기(進機), 성훈(性訓) 등 11명이다.



### ○조사내용

덕림사는 1936년 동호 각심스님이 창건한 사찰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이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원래 보성 대원사

명부전에 봉안되었던 상들인데, 1946년 지장시왕상과 지장시왕도가 함께 광주 덕림사로 이운 봉안된 것이다. 이안 당시 보성 대원사 명부전은 지붕이 내려앉고 비가 새는 등 붕괴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퇴락하였고, 이를 보수할 능력조차 없을 만큼 사세가 기울어져 있었다. 이에 광주 덕림사 龍岫스님이 대원사가 복원되면 환원하기로 하고 지장시왕상과 지장시왕도를 이운해 왔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지 2년 후 여순사건이 발발하였고, 보성 대원사 명부전도 이때 소실되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광주 덕림사로 이안된 지장시왕상과 지장시왕도는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2003년 양 사찰간의 합의로 화기에 봉안처가 뚜렷하게 기록한 지장시왕도는 원래의 봉안장소인 보성 대원사로 다시 이안하고, 원래의 봉안처가 영봉사로 되어 있는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은 덕림사에 존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지장보살상 및 시왕상은 덕림사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데, 본존인 지장보살과 좌우 협시인 도명존자, 무독귀왕, 십대왕, 귀왕 2구, 판관 2구, 사자 2구, 동자 10구, 장군 2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자상 10구 중 3구와 좌우 장군상 2구는 새롭게 조성된 것이다.

지장보살과 도명존자, 무독귀왕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조성시기와 봉안장소, 제작자, 시주자 등이 밝혀져 있는 작품이다. 조성 시기는 1680년이며 처음 봉안장소는 화순 靈鳳寺이며, 만든 사람은 色難을 비롯한 11명의 조각승들이다. 영봉사는 화순 구봉산에 있었던 절이며, 1900년대 초에 편찬된 「寺塔古蹟攷」에 따라 영봉사는 19세기 중엽에 폐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존상들은 영봉사가 폐사되자 화순 유마사를 거쳐 보성 대원사, 그리고 광주 덕림사로 이안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을 조성한 수조각승 색난은 1662년 인균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전주 학소암 자음전 목조약사여래좌상(원 화순 유마사)에서 보조조각승으로 처음 이름을 드러낸 후 1709년까지 약 47년간 작품 활동을 펼쳤다.(표1 작품목록 참조) 그의 작품중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한 도현은, 색난 조각뿐만 아니라 인균의 조각에도 보조조각승으로 참여한 점으로 보아 색난은 인균의 조각전통을 계승한 조각승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의 작품에는 인균의 조각전통뿐만 아니라 양감이 풍부한 강건한 이미지라든지 꽃잎모양으로 접은 균의자락의 표현, 속도감 있게 펼쳐진 무릎 주름의 처리 등에서는 무염의 조각전통도 간취된다. 그것은 색난은 화엄사 각황전 불상 발원에서 八影沙門으로 그의 소속사찰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碧川正玄이 크게 중창한 고흥 능가사와 밀접한 관련이 깊은 조각승이다. 正玄 역시 印均이나 三忍과 마찬가지로 벽암각성의 문도로서, 17세기 전반에서 중반까지 크게 활약한 무염과도 함께 조각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따라서 색난은 여러 자료에서 벽천정현이 주도한 고흥 능가사 중창 불사에 시주 또는 장인으로 참여할 만큼 正玄과는 매우 두터운 이연을 맺고 있었다. 당연 정현이나 무염으로부터도 많은 조각적 영향과 靈感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 지장보살상은 사각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사각대좌(81x76.4x28.8)는 상대-

중대-하대로 구성되었는데, 상대(81×76.4)는 청판과 하엽형의 寶座欄干으로 구성되어 있다. 난간대는 十 자형으로 교차하여 세련되게 마무리하였다. 4개의 난간 사이의 청판에는 구름문을 투각하였다. 중대는 2부분으로 구획하고 각각의 청판에는 상대 청판에 새겨진 것과 같은 구름문을 모각하였다. 중대(정면 64cm, 측면64.6cm) 아래쪽에는 중대 받침대가 삼단으로 마련되었고, 하대 받침대는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화 대좌는 연육부에 따로 만든 연판을 사중으로 겹쳐 화려하게 조성하였다.

지장보살상은 삭발 비구형으로 표현하였다. 이마는 넓고 반반하며 양미간에는 수정제의 백호를 박았다. 반개한 눈은 관자놀이에 닿을 듯 길고 그윽하며 시선은 사바세계를 향했다. 콧날은 크고 우뚝한 돌출코이다. 입술은 콧망울의 폭 보다 조금 넓게 자리 잡았고 입가는 눌러 열은 미소를 나타내었다. 귀는 크고 양감 있게 처리하였으며, 상·하각 연골 사이를 짧은 음각선으로 처리하였고, 귓구멍은 콩 꼬투리모양으로 조각하였다. 전반적으로 단정하고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갖추었지만, 유달리 크고 우뚝한 돌출코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상호의 특징은 색난의 스승으로 추정되는 印均의 조각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착의는 범의를 이중으로 걸쳤으며, 가슴에는 꽃모양으로 주름잡은 군의자락이 인상적이다. 불상은 상체는 짧고 왜소하며 무릎은 높고 둔중하여 전반적으로 하체가 강조된 느낌이 강하다. 상체는 윤곽선 중심으로 간결하게 처리하고, 하체는 넓은 띠 주름을 부채꼴로 펼쳐 상체의 단순함을 보완하였다. 주름은 강직한 주름과 부드럽고 울동성 있는 주름을 적절히 섞어 구사하였고, 더불어 완급의 조절도 적절하다. 오른손은 어깨 위로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다. 손금은 ‘키’형으로 음각하였다.

도명존자는 석장을 쥐고 담담히 서 있는 자세이고, 무독귀왕은 공수한 두 손 위에 寶篋을 올려놓았으며, 아래쪽에 최근에 개채를 하면서 시주자의 이름을 적어 놓았다.

시왕상은 현재 좌측(향우측)에 짝수대왕이, 우측(향좌측)에 홀수 대왕이 자리하고 있는데, 모두 등반이와 팔걸이에 龍鳳文이 조각된 의자에 의좌 또는 반가좌로 앉았다. 표정은 지옥중생을 심판하는 엄정한 심판자라기보다 오히려 부드러운 인상으로 망자를 맞이하는 분위기이다. 머리에는 양관을 썼고 몸에는 운룡홍배가 그려진 포복과 치마를 입고, 그 위에는 다시 요의를 걸치고, 혁대를 착용하였다. 혁대 아래로는 광다회를 길게 드리웠다.

우측에 배치된 홀수대왕 중 제1대왕은 홀을 잡았고, 제3 대왕은 책을 펼쳐 보고 있으며, 제5 대왕은 冠위에 금강경을 올려놓았다. 제7 대왕은 반가좌로 앉아 수염을 매만지고 있으며, 제9 대왕은 오른손으로 홀을 잡고 왼손으로 무릎 아래로 드리운 袍服을 끌어 잡았다. 좌측에 배치된 짝수대왕 중 제2 대왕은 홀을 잡고 유희좌로 앉았고, 제4 대왕은 홀을 잡고 반가좌로 앉았으며, 제6대왕은 책을 들었으며, 제8대왕은 雲龍冠을 쓰고 왼손은 홀을 잡고 오른손은 수염을 매만지고 있다. 특히 나란히 내린 오른발로 흰 코끼리를 밟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제10대왕은 鳳凰冠을 쓰고, 오른손으로 의자의 바닥을 짚었고 왼손으로

袍자락을 쓸어 올렸다.

동자상은 삼존상의 좌우측에 2구를 배치하고, 나머지는 8구는 시왕과 시왕사이에 배치하였다. 동자상은 머리는 쌍계로 묶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합장하거나 지물을 받쳐 든 모습인데, 지물은 대부분 소실되었다. 비례는 兒童의 신체 비례에 적합하게 4등신의 단구적인 조형감을 갖추고 있다. 귀왕은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홀을 잡았고(우 귀왕은 홀 소실), 판관은 사모관대를 착용하고 붓과 책을 들었다, 우 사자는 두건을 쓰고 부월을 잡았고, 좌 사자는 두건을 쓰고 삼지창을 잡고 명부를 들었다.

덕림사 지장시왕상은 코가 크게 부각된 얼굴과 상체에 비해 무릎이 높은 점, 단구적인 신체 비례, 특히 본존의 가슴에는 균의자락을 꽃모양으로 예쁘게 주름잡은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이러한 특징은 색난의 조각에서 공통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식의 변화상으로 보면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은 대체로 작은 얼굴에 허리가 길고 무릎은 낮고 넓어 상체가 크게 부각된 느낌이지만, 이 불상은 머리가 크고 상대적으로 무릎이 높아져 아담한 형태미를 구가하고 있다. 이는 시대에 따른 미감의 변화로 여겨진다.



도66 명부전 내부 전경



도67 지장보살 삼존상





도67 제1대왕



도68 제3대왕



도69 제5대왕



도70 제7대왕



도71 제9대왕



도72 귀왕



도73 판관



도74 사자



도75 장군(현대)



도76 등자



도77 등자



도78 등자



도79 등자



도80 등자(현대)



도81 제2대왕



도82 제4대왕



도83 제6대왕



도84 제8대왕



도85 제10대왕

<표1>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현황표

연번	명칭	재질	크기	조성연대	비고
1	지장보살상	나무	99.5cm	1680년	*사각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1-1	지장보살 발원문	종이	32.6x64.2cm	''	
2	도명존자상	나무	142cm	''	*석장을 쥐고 있음
2-1	도명존자 발원문	종이	33.0x62.7cm	''	
3	무독귀왕상	나무	156.5cm	''	*보협을 받쳐 들(최근에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추정)
3-1	무독귀왕 발원문	종이	33.2x51.1cm	''	
3-2	후령통	철	높이13.6 지름 3.3	''	*황초폭자에 쌓여 있음. 바깥쪽 정면에 朱書로 '南' 표기
4	제1진광대왕	나무	154.5cm	''	* 두손으로 홀을 잡음
5	제2초강대왕	''	158cm	''	*오른손으로 홀을 잡고, 유희좌로 앉음
6	제3송제대왕	''	147cm	''	*두손을 책을 펼쳐 들
7	제4오관대왕	''	151cm	''	*왼손으로 홀을 잡고, 반가좌로 앉음
8	제5염라대왕	''	144cm	''	*冠 위에 금강경을 올려놓았고, 두손으로 공손히 홀을 잡음
8-1	후령통	철	높이14.0cm, 지름3.2	''	*황초폭자에 쌓여 있음. 바깥쪽 정면에 朱書로 '南' 표기
9	제6변성대왕	''	149cm	''	*왼손으로 책을 잡음
10	제7태산대왕	''	162cm	''	*오른손으로 수염을 매만지고, 반가좌로 앉음
11	제8평등대왕	''	155.8cm	''	*왼손으로 홀을 잡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매만짐. 오른발로 흰코끼리를 밟고 있음
12	제9도시대왕	''	158cm	''	*오른손으로 홀을 잡음
13	제10전륜대왕	''	144.4cm	''	*머리에 봉황관을 씌
14	귀왕상(좌)	''	116.5cm	''	*공수자세로 홀을 잡음
15	귀왕상(우)	''	117cm	''	*공수자세로 손을 모았으나 지물은 소실
16	판관상(좌)	''	114.5cm	''	붓과 책을 들고 있음

연번	명칭	재질	크기	조성연대	비고
17	판관상(우)	〃	115cm	〃	책을 들고 있음
18	사자상(좌)	〃	117cm	〃	부월과 명부를 쥐고 있음
19	사자상(우)	〃	113.2cm	〃	삼지창과 명부를 쥐고 있음
20	동자상1	〃	60.2cm	〃	
21	동자상2	〃	64.9cm	〃	
22	동자상3	〃	52.2cm	〃	
23	동자상4	〃	56.1cm	〃	
24	동자상5	〃	52.5cm	〃	
25	동자상6	〃	52.4cm	〃	
26	동자상7	〃	56.2cm	〃	

<표2> 색난 작품 목록

no	지역	사찰명	제작 시기	명칭	화원(제작자)	비고
	광주	덕림사	1680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色難, 道軒, 沖玉, 慕賢, 惠察, 故一, 釋宗, 得牛, 楚卞, 進機, 性訓	원: 화순 영봉사
	순천	송광사	1680	목조관음보살좌상	色難, 故一	원: 보성 개흥사
	서울	지장암	1683	목조 아난가섭존자입상	色難, 得牛	원: 고흥 능가사
	강진	정수사	1684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色難, 道軒, 行坦, 慕賢, 楚卞, 雄遠, 哲玉, 道見, 文印	석가여래 강진 옥련사 봉안
	고흥	능가사	1685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色難, 道軒, 順瓊, 行坦, 楚祐, 慕賢, 楚卞, 得牛, 微玉, 雄遠, 文印	
	김해	은하사	1687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시왕상 일괄	色難, 道軒, 順瓊, 行坦, 慕賢, 楚雨, 雄遠, 文印, 載軒, 淨彥, 秋平	원: 김해 서림사 首畫員 通政大夫 色難
	서울	불교미술박물관	1689	지장삼존불감	色難, 得牛, 雄遠	
	교토	고려미술관	1689	삼존불	色難, 得雨, 雄遠	
	구례	천은사	1693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	色難, 幸坦, 得牛, 雄遠, 文印, 執森, 秋鵬, 秋平	
	화순	쌍봉사	1697	목조석가여래삼존상	色難,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	
	화순	쌍봉사	1697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色難,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	
	제주	관음사	1698	목조보살좌상	色難	해남 성도암 개금화공
		개인 소장	1699	목조불상	色難, 沖玉, 雄遠, 一幾	
	해남	성도암	1700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	色難, 一機, 慕賢, 秋鵬, 秋平	영암축성암(나반존자) 메트로폴리탄(가섭존자)
	해남	대흥사	1701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色難, 行坦, 慕賢, 雄源, 一機, 秋平, 致雄	
	구례	화엄사	1703	목조석가여래삼불상 사보살상	色難, 沖玉, 一幾, 雄遠, 秋鵬, 順瓊, 行坦, 勝梅, 楚卞, 覺初, 道還, 道堅, 德希, 法	

no	지역	사찰명	제작 시기	명칭	화원(제작자)	비고
					融,大裕,進聰,定惠,進一,善覺,澄海,瑞行,仁陟,夏天	
	서울	경국사	1703	목조보살좌상	色難	원: 영암 도갑사
	고흥	능가사	1707	소조불상	色難,行坦,雄遠,一機…夏天	
	고흥	금담사	1709	목조보살좌상	色難,雄元…夏天	고흥 송광암 봉안 광주 덕림사 소실

### [보조조각승의 활동사항]

#### ○ 도헌(道軒:1659~1685 활동)

- 1659년 전남 고흥 금담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三忍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석가불좌상(강진 옥련사 봉안)과 목조나한상 제작(최인선,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복장」) 수화승 色難
-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을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 충옥(忠玉, 冲玉:1668~1703 활동)

- 1668년 전남 고흥 금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개금시 조각승 앞 시주자로 언급됨(發願文)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발원문) 수화승 色難
-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 불상 제작(發願文) 畫員
-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畫員 수화승
- 1694년 경남 함양 용추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畫工 수화승
- 1699년 개인소장 목조불감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木造三佛·四菩薩像 중 석가와 관음보살상 제작

#### ○ 모현(慕賢:1680~1700 활동)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강진 옥련사 봉안)과 목조나한상 제작(최인선,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복장」) 수화승 色難

-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개금(제주 관음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700년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 제작 수화승 色蘭

○ 혜찰(惠察, 慧察: 1680~1728 활동)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726년 강원 삼척 삼화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제작(정영호, 「三和寺의 塔像」) 수화승 麗贊
- 1703년 경북 문경 김룡사 괘불도 제작(『韓國의 佛畫9-直指寺 本寺(下)』)
- 1718년 전남 장흥 보림사 고법당 후불도 등을 3월 9일 시작하여 5월 23일까지 마침(『譯註 寶林寺重創記』) 副
- 1728년 전북 무주 안국사 괘불도 제작(『韓國의 佛畫13-金山寺 本寺』)

○ 석종(釋宗:1680)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득우(得牛:1680~1694 활동)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9년 일본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목조삼존불감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93년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제작(오진희,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의 연구」) 수화승 色難
- 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초변(楚卞:1680~1706 활동)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강진 옥련사 봉안)과 목조나한상 제작(최인선,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복장」) 수화승 色難
-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진 불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沖玉
- 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6년 전남 장흥 보리사 上輦, 願佛輦 새로 제작, 中下輦 중수 시 별좌로 참여(『譯註 寶林寺重創記』)
-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冲玉
- 1694년 경남 함양 용추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冲玉
- 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木造三佛·四菩薩像 중 석가와 관음보살상 제작 수화승 色難
- 1706년 전남 영광 불갑사 팔상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십육나한상 제작(發願文) 畫員 수화승

○ 진기(進機:1680~1694 활동)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 불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冲玉
- 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冲玉
- 1694년 경남 함양 용추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冲玉

○ 성훈(性訓:1680~1694 활동)

-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광주 덕림사 봉안, 發願文) 수화승 色難
- 1694년 경남 함양 용추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發願文) 수화승 冲玉

[문헌자료]

○ 지장보살발원문 32.6x64.2

地藏大聖造成願文

康熙十九年庚申夏化主守閻和南謹封

伏爲弟子本以法界中一漚出沒四生會承微善受生人道青年

祝髮白業無補謹與檀越諸子同發無量願王以自今生至盡

未來除常依 地藏大聖親承印可頓悟無生引諸沈

溟登於覺岸之願謹倩良工造成

地藏大聖兩大補處十王等像而始役於今暮春之初訖工

於仲夏之晦奉安靈鳳寺勝因已就願無量海

堯風永扇佛日長明國界恒安法輪常轉抑亦造成主興各 "

結願隨喜施主緣化等現增五福當生九品者芳名皆列于后伏惟

地藏大聖證明功德

遺教弟子爍昏子智暹和南謹記

門弟宗信謹書

地藏造成主金莫山

金淡沙里

魯奉辰

大禪師智暹

山中大德秩

性靜

海敬

思運

天極

太祥

印寬

信寬

印準

信英

善一

性玄

性淨

三綱 一讚

記事 學敬

持殿 慧林

중단

緣化秩

證明 玉念

持殿 禪海

首工 色難

道軒

冲玉

慕賢

惠察

故一

釋宗



得牛  
楚卞  
進機  
性訓  
하단  
供養主秩  
宗保  
時允  
尙稔  
智岑  
來往僧  
懷特  
懶淳  
別座 碩熙  
化主 守闇

西紀一九七七年丁巳陰二月二十七日改金点眼  
腹藏까지 當時 證明九山會主東湖  
住持龍吟諸和尚을 모시고 佛事  
를 맞췄음 光州日山洞 德林寺

○ 도명존자발원문 33.0x62.7cm

左補處道明尊者願成文

康熙十九年庚申夏化主守闇和南謹封

伏以守闇本以法界中一漚出沒四生會承微善受生人道青年  
祝髮白業無補謹與諸子同發無量願王以自今生至盡未  
來除常蒙 道明尊者願力頓悟無引諸沈冥登於樂岑  
之願謹倩良工願成 地藏大聖兩大補處十王等像而始役  
於今暮春之初訖工於仲夏之晦奉安于靈鳳寺勝因已  
就願海無量

堯風永扇佛日長明國界恒安法輪常轉抑亦願成主與各 ”  
隨喜施主緣化等現增五補當生九品者芳名皆列于后伏惟  
道明尊者明鑑功德

庚申五月二十六日遺教弟子樂昏[爍昏]子智暹和南謹記

門弟宗信記書

左補處道明尊者願成主金七奉

韓淡沙里

상단

大禪師智暹

山中大德秩

性淨

印準

信英

三綱 一贊

性淨

性玄

記事 崇敬

持殿 慧林

중단

畫員秩

證明玉念

持殿禪海

首工色難

副工道軒

冲玉

慕賢

惠察

故一

釋宗

得牛

楚卞

進機

性訓

緣化秩

供養主守保

時允

智岑  
來往僧懷特  
懶淳  
別座碩臨  
化主守闇

○ 우보처 무독귀왕발원문 33.2x51.1cm

右補處無毒尊者願成文

康熙十九年庚申夏化主守闇和南謹封

白業無補謹與諸子同發無量願王以自今生至盡未來除常蒙

右補處無毒尊者願力頓悟無生引諸沈冥登於樂岸之願謹倩良

工願成 地藏大聖兩大補處十王等像而始役於今暮春

之初訖工於仲之晦奉安于靈鳳寺勝因已就願海無量

堯風永扇佛日長明國界恒安法輪常轉抑亦願成主與各 〃 結願隨

喜施主緣化等現增五福當生九品者芳名皆列于后伏惟

右補處無毒尊者證明功德

庚申五月二十六日遺教弟子爍昏子智暹和南謹記

門弟宗信謹書

右補處無毒尊者願成主 朴光?

鄭先奉

1단

大禪師 智暹

山中大德秩

性淨

學連

思運

印寬

海敬

太祥

2단

畫員秩

證明 玉念

持殿禪海

首工色難

副工道軒

冲玉

慕賢

惠察

3단

性訓

進機

楚卞

得牛

釋宗

故一

4단

緣化秩

供養主守保

時允

尙稔

智岑

來往僧懷特

懶淳

別座碩熙

化主守闇

## ○ 관련자료

덕림사유적비

본사는 1935년 병자 春에 東湖禪師께서 초창하여 석가모니를 주불로 대웅전을 건립하고 요사를 건축하니 佛理探究의 佛子들이 連絡不絶하여 國태민안의 기복도량으로 30여 星霜을 지내어 1965년에 十王殿을 건립하여 十王位를 띄시고 그후 1972년 秋에 禪師의 度弟인 龍唵和尚께서 요사를 擴大改築하고 이어 十王殿 三聖閣 등을 신축하였으며 1976년도에 대웅전을 대규모로 증창하고 1982년 陰10월 13일에 禪師 入寂하시나 舍利 50餘顆가 遺出되어 翌年 陰9월17일에 塔을 奉建하고 동시에 寺跡碑를 樹立하였으며 同塔上端에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하니 當寺 面目이 煥然 一新이라 法華經에 云하듯이 求佛道者窮劫不盡할것ियो 아울러 德林寺를 중흥하여 주신 佛子諸賢과 신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뜻을 永年記念 하는 동시에 以此功德으로 同亨人間百代之五福하고 共受未來一乘之佛果하시기를 기원하면서 茲以 立石記文 하노라

佛紀二千五百二十七年 癸亥九月十七日 信徒代表 會長 郭無等心

李大成覺 謹識

當時住持 鄭龍唵

### ○ 東湖堂大禪師行蹟記

穀倉으로 이름높은 호남 별의 한복판에 無等山이 우뚝 솟아 있고 그 靈山을 바라보는 달  
맞이 德林峯 아래 아담한 절이 있으니 이름이 德林寺요 이 절의 최초 창건주가 바로 東湖  
大禪師이다. 선사께서는 西紀 壹仟八百玖拾壹季 全羅南道 長城郡 北二面 毛玄里에서 父  
高靈人 申永休公과 母 義寧南氏 水月行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이름이 可童이다. 어릴적에  
信心이 돈독한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기를 좋아했던 그는 寺中 스님들의 총애를 받았으며  
자연스럽게 佛心이 싹트기 시작했다. 西紀 壹九〇四年 그의 나이 二十歲되던 해 마침내 潭陽  
龍興寺에서 松隱應悟老師에 의하여 得度受戒하니 法名을 覺信이라 하였다. 壹九壹六季  
(1916) 白羊寺 講院에서 부처님의 壹代教典을 修學해 마치고 壹九壹七季(1917) 金剛山 摩  
訶衍 講院에서 首先安居를 시작으로 祖師關을 打破하려는 話頭一念에 沒頭하면서 諸方의  
善知識을 參訪하고 禪定을 닦았다. 壹九貳伍季 應悟禪師를 찾아 入室問答하고 因緣이  
契合하여 그 法을 잇고 法號를 東湖라 하였으니 雪坡의 八世法孫이다. 壹九貳六年 貳月 參  
拾四歲되던 해 井邑 泰仁에 玉泉寺를 創建하고 教化하다가 壹九參六年에는 지금의 德林  
寺를 創建하고 住持로 취임하였다. 스님께서서는 그간 갈고 닦은 經綸과 明哲하신 禪智로  
大衆을 위하여 說法하시나 市中的 수많은 善男善女가 法會때마다 구름처럼 모여 들었다.  
壹玖伍四季에 韓國佛教曹溪宗 全南 總務院長의 重責을 맡아 湖南佛教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하였고 佛教紛糾가 統合宗團으로 和同하는 모습을 보고 스님께서서는 다시 德林寺에 錫杖을  
멈추시고 佛法弘布에만 盡力하시었다. 어느덧 세월은 無常하여 壹九八參年 拾月拾參日 스  
님께서서는 弟子들을 불러 모으고 龍唵에게 後事를 咐囑하신 뒤에 조용히 涅槃相을 보이시  
니 歲壽 九拾歲 法臘 七拾捌歲이다. 이 일들은 그의 제자 龍唵和尚께서 듣고 본 것과 그  
밖의 行狀을 모아 不德短文 함을 무릅쓰고 간추려 적은 것이다.

佛紀貳五四壹(西紀壹九玖漆年) 丁丑 六月 貳拾九日

白坡門孫 來蘇寺 會主 愚岩慧山 謹撰 昌寧后人 龍唵 曹基銅 謹書

大韓佛教曹溪宗 德林山 德林寺 祖室 龍唵 鍾煥 住持 昇空 法眞 謹豎

### ○龍唵大禪寺功績記

龍唵堂 鍾煥大禪師께서는 1922년 5월 4일 전북 완주군 우전면 산정리에서 父 東萊人 鄭銀  
模公과 母 河東鄭氏 淨土華 사이에서 出生하셨으니 이름이 鎮完이다. 나이 13세에 김제 文

殊寺에서 覺信和尚에 의하여 得度祝髮하고 同 1936년 2월 15일에 昇州 松廣寺에서 道山和尚을 戒師로 菩薩戒를 받았고 1942년 송광사에서 大敎課程을 卒業한 후 1942년 林石頭和尚을 戒師로 比丘戒를 받고 中德法階와 1945년에 는 大德法階를 稟受하였다. 1948년 東湖堂 覺信禪師에게 入室建幢하고 堂號를 龍唵이라하니 雪坡의 九世法孫이 된다. 同年 松廣寺 선원에서 首先安居를 시작으로 諸方에 雲水行脚하며 參선수행에 전념하였다. 1952년 泰仁 玉泉寺 住持를 맡아 중창하였고 1960년부터 조계종 전북 총무원 총무국장을 비롯하여 전남총무원 총무국장, 대한불교조계종 제24 교구 본사 선운사 감찰국장과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였고 1971년 덕림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또한 광주사암연합를 결성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호남불교발전에 공헌하였다. 1993년 6월 18일 不意의 漏電으로 인하여 사찰이 전소되자 禪師께서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아 신도들과 합심협력하여 현주지 昇空和尚과 더불어 새로 법당을 건립키로 佛前에 서원하고 중창불사를 시작하게 되니 1996년 4월 2일에 착공하여 1997년 4월 4일에 지상3층 지하 1층 연건평 320평의 대웅전 및 요사를 완공하고 불사를 회향하니 그간의 노고는 그 얼마였으며 또한 그 壯한 功력을 어찌 筆舌로 다 표현하리오. 화상께서는 불사를 마치시고 주지직에서 물러나시니 사부대중이 뜻을 하나로 모아 祖室 큰스님으로 받들어 모시게 되었다. 용금화상께서는 그간 종단의 행정과 입법, 포교와 수행 등 실로 눈부신 활약으로 보살도를 다했으니 명실공히 佛陀嫡孫의 행적이 躍如하지 않겠는가. 時住持 昇空和尚께서 선사의 비문을 청하기에 師의 그간 행적을 아는 대로 敬撰하는 바이다.

佛紀 2541년(1997) 7월 22일

白坡門孫 來蘇寺 會主 愚岩慧山 謹撰 松臯 朴鍾翊 謹書

光州光域市 南區 月山洞 德林山 德林寺 住持 昇空法眞 謹豎



## ○ 현 상

덕림사는 1936년 봄에 동호선사가 창건한 절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의 말사에서 제24교구 선운사의 말사로 변경되었다. 덕림사 명부전에는 목조 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 귀왕, 판관, 동자 등 모두 31구의 상이 있다. 후대에 갖춰진 2구의 인왕상과 3구의 동자상을 제외한 26구가 광주광역시유형문화재 제27호이다. 지장보살상의 복장에서 <地藏大聖造成願文>이 조사되어, 강희 19년(1680)년에 조각승 색난을 비롯한 11명의 화승이 만들고 전남 화순군 남면 영봉사(靈鳳寺)에 봉안된 상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영봉사가 폐사되면서 화순 유마사와 보성 대원사를 거쳐 1945년경 지금의 자리로 이운되어 1977년에 개금되고 개채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전각의 본존인 지장보살상은 민머리를 한 성문비구형이다. 방형의 얼굴에 수평으로 날카롭게 열리는 눈과 백호 아래에서 융기하는 뭉툭한 코, 짧은 인중, 큼직한 귀가 표현되었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을 무릎 위에, 오른손을 어깨 앞으로 들었다. 대의가 두꺼운 편이며 옷깃과 소매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정면이 연판형으로 장식된 편삼 위에 양쪽 어깨를 가린 변형 통견의를 착용하였다. 왼 무릎에 대의 끝자락이 덮여 장식되는 특색이 있다. 가부좌한 다리가 두꺼운 편이며 처음 봉안된 불단이 그리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좌측 협시인 도명존자는 초록색 승복에 붉은 가사를 걸쳤다. 우측 협시인 무독귀왕은 붉은 관복에 손을 모아 보함을 받들고 있다. 시왕상에는 홀이나 경전 등의 지물이 표현되고, 돌출되는 발과 좌대 등은 별도의 목재로 맞추어 끼웠다. 시왕상에는 여의주, 연꽃, 동물 문양 등이 채색되었다.

2005년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지정조사 시 지장보살상과 도명존자상의 복장유물이 조사되었다. 2016년에는 무독귀왕, 진광대왕, 염라대왕 상의 복장유물을 조사하여 현재까지 지장보살상을 비롯한 5존에서 발원문과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을 확인하였다. 발원문에 의하면 1680년(康熙十九年庚申夏) 여름에 조각승 색난(色難)을 수화승으로 도헌(道軒), 충옥(沖玉) 모현(慕賢), 혜찰(惠察), 귀일(故一), 석종(釋宗), 득우(得牛), 초변(楚卞), 진기(進機), 성훈(性訓) 등 11명이 만들어 영봉사에 봉안하였던 상이다.

색난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조각승이다. 그의 작품은 조선시대 화승 가운데 가장 많은 20여건이 조사되었으며, 덕림사 명부전 지장보살상 일괄은 색난의 이른 시기의 활동에 해당한다. 이운과정에서 큰 훼손은 없었으나 동자상 3구 등이 대체되고 1977년에 개금되고 개채되었다.

## 8.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좌상 및 권속 일괄 (龜尾 大菴寺 塑造十六羅漢坐像 및 眷屬 一括)

### 가. 검토사항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좌상 및 권속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좌상 및 권속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7.1.3) 관계 전문가 조사(’19.3.21) 및 과학조사(’19.5.13~5.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좌상 및 권속 일괄  
(龜尾 大菴寺 塑造十六羅漢坐像 및 眷屬 一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산촌옥관로 691-78(옥관리 1090), 대둔사
- 수 량 : 총 19구
- 규 격

제석(좌)	좌1	좌2	좌3	좌4	좌5	좌6	좌7	좌8
86.8	81.0	79.0	77.2	76.5	74.5	78.5	75.6	78.0
제석(우)	우1	우2	우3	우4	우5	우6	우7	우8
93.7	76.3	75.5	82.0	72.5	75.2	76.5	73.7	79.7
사자								
116.0								



- 재 질 : 소조
- 조성연대 : 1630년(인조 8), 중수 1703년(숙종 29)
- 제작자 : 중수화원 金文, 世均, 卓勝, 呂贊, 就習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소조16나한상을 비롯한 대둔사 응진전의 존상 19구는 좌측제석천상의 의자 밑면에 묵서된 내용을 통하여 1630년에 제작되고 1703년에 좌제석천상이 다시 만들어졌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번 지정신청에서 제외된 주존불인 석가여래삼존상은 후대에 나무와 청동으로 다시 만들어 봉안한 점에서 응진전 존상은 처음 제작되었을 1630년부터 조선을 거쳐 근,현대에 이르기 까지 여러 차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나한상은 큰 규모에 당당한 자세와 균형잡힌 비례에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작품이다. 여기에 다양한 지물과 개성있고 입체적인 얼굴 표정에서 조형적으로 우수한 나한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7세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16나한상은 1624년에 조성된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 일괄(보물 제1549호) 그리고 1625년 나주 다보사 영산전의 목조석가여래삼존상 및 소조16나한상(보물제1834호)이 지정되었을 뿐 사례가 드문 편이다.

그러나 모든 존상이 처음 제작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완전하지 않으며 1703년의 중수만 확인되는 점 등에서 응진전 존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문화재 지정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구미 대둔사 소조십육나한상은 젊은 승려, 중년의 승려, 노년의 승려들이 조합을 이룬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느낌에 부합하는 인체, 자세로 표현되어 생동감이 넘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얼굴의 세밀한 근육묘사와 생생한 표정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고려시대에 조성된 해인사 희랑대사상 및 승가사 승가대사상과 같은 고승진영 조각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조선후기의 나한상들은 창령사지 출토 오백나한상처럼 극도로 추상화되어 있거나, 은혜사 거조암 오백나한상처럼 해학적인 모습으로, 혹은 완주 송광사 나한전의 나한상처럼 머리가 다소 크고 둥근 그로테스크한 형태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둔사 응진전 나한상처럼 사실적이고 생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아마도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고려시대 나한상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드문 사

레라 하겠다. 나아가 나한상에 제작연대가 직접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명부전에 옮겨 봉안중인 제석천 존상 바닥의 묵서명을 통해 1630년에 응진전의 소조상들이 조성되었을 개연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시기의 기준작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적인 표현의 나한상은 중국의 경우 제남 영암사의 송대 소조나한상이나 영국 브리티쉬 박물관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요나라 때의 도자삼채나한상의 사실성을 연상케 한다. 더불어 동물을 안고 있는 모습은 비교적 나한상에서 두루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나한조각상으로서 염주를 들고 있거나, 금강령, 죽비, 연꽃 등을 들고 있는 다양한 도상이 한 자리에 일괄로 모여있는 사례는 조선시대 나한전·응진전에서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나한상이 이처럼 고려시대, 혹은 중국의 송·요대 나한상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응진전의 본존인 삼존불 중 본존불과 좌협시보살이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불·보살의 특징을 다분히 보여준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고려조각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조선시대 불상에서 나타나는 접목조 기법이 아니라 일목조 기법이 사용된 점, 복장공을 마련한 방식 등이 이 두 불·보살상을 조선 말기작으로 추정하게 하였으나, 이들 상들의 얼굴표현은 예를 들어 응진전에 함께 봉안된 소조나한상 중에서 현재 사찰에서 주다반탁가 존자로 소개하고 있는 나한상의 얼굴표현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현재는 명부전으로 옮겨 봉안한 두 구의 신중상 중, 묵서명문에 의해 1703년작 ‘좌제석’상으로 밝혀진 의좌상의 맞은편 추정 범천상의 얼굴표현과도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어서, 1630년에 응진전의 소조상들이 조성될 때 함께 조성되었거나 아니면 이후에 조성된 상일지라도 1630년 조각상들의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상들이 이처럼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전적인 불상양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선시대 불상조각사에서 특별한 사례로서 사료적, 학술적 가치 또한 매우 높다. 아마도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의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16나한상 같은 조선 16세기 불상들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고품스런 조각 양식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면, 구미 대둔사 삼존 및 나한상은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오면서 변화하는 고전주의 미술의 변화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불·보살 삼존불을 중심으로 나한상(제자상)이 에워싸고, 맨 끝에 범천·제석천이 배치되는 봉안방식의 기본틀은 석굴암의 경우와도 유사하여 통일신라시대의 불전내 존상배치 방식이 조선시대 영산·나한·응진전에 함축되어 전해지고 있었던 양상을 참고하는데 있어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의 응진전 등과 함께 새로운 사례로서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존상들 중에서는 비록 한 구에 불과하지만, 좌제석상을 조성한 작가가 조

각승 금문으로 밝혀진 것도 그의 조각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된다. 그는 조각승 혜희의 제자로서 1666년 안성 봉덕사 목조석가불좌상, 1686년 횡성 봉복사 반야암 관음보살상, 1706년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을 조성한 목조각장으로만 알려졌는데, 이번에 그의 소조불상이 발견됨으로서 새로운 이력을 더하게 된 것도 학술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록 명부전 도상으로서의 판관 1구만 남아있지만, 이를 통해 다수의 판관 및 시왕상의 양상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에 완벽을 기하고 더불어 학술적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경상북도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한 대상은 석가여래삼존을 제외한 16나한상과 제석 2구와 사자(신청서에는 판관) 1구 등 19구 점으로 한정하고 있다. 17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불상은 구성이 완전하고, 작품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조성발원문」을 통해 제작목적과 제작시기와 작가, 시주자 등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어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이 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검토대상도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둔사 나한상은 제석상 밑면에 적어놓은 묵서를 통해 1630년이라는 제작 시기와 1703년 중수시기, 중수 작가 등은 밝혀져 있지만, 초창 당시의 제작자를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는 확보되지 않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본존 석가여래좌상과 좌협시 미륵보살입상, 그리고 나한상 등은 17세기 전반기 불상에서 볼 수 없는 앞선 시기의 양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른 시기에 조성된 나한상이 드물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확보되기 전까지라도 불상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우선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조사보고서

□

○ 현상 및 명문

대둔사 응진전에는 석가삼존상과 16나한상, 제석천2구, 관관1구 등 모두 22구가 봉안되어 있다. 주존불인 석가여래삼존상(석가여래좌상, 제화갈라입상과 미륵보살입상)은 석가여래좌상과 좌협시보살입상은 나무, 우협시보살입상은 청동으로 각기 다른 재질을 보이며 특징도 다른 점에서 삼존상의 조성시기는 차이가 있다. 특히 청동제인 우협시보살입상은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20세기 이후인 근현대의 작품으로 판단된다. 주존불의 양 측면에 봉안된 십육나한상은 모두 소조이며 제석천상2구와 관관상도 같은 소조로 만들어졌다.

나한상을 비롯한 모든 존상들의 복장물은 모두 없어졌는데 다만 소조제석천상(좌)의 목제의자 밑판에서 목서 명문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승정연간 경오년인 1630년에 상이 만들어졌으며 좌제석천상은 1703년 영산회 중수시 조각승 金文에 의해 다시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다.(발원문 참조).

이와 같이 대둔사 응진전 존상들은 나무, 청동, 흙 등 서로 다른 재질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어 여러 차례 중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소조나한상은 채색층의 박리 및 박락, 찌는 등으로 인한 오염과 얼굴 부위를 비롯한 신체의 전면에 균열이 매우 심한 편으로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發願文(좌제석천 밑면 목서)

「羅漢

崇禎庚午年像造成之後 康熙四二年癸未初夏日

靈山會重修之時左片帝釋主新造成寫也

緣化秩

證明 三彦	畫員 嘉善金文	供養主 勝謙
持殿 淨心	世均	宗舍
	卓勝	負木 信淑
	呂燦	別座 雪雲
	就習	化主 淸日」

○ 내용 및 특징

대둔사 응진전의 석가여래삼존상과 16나한상, 좌·우제석천, 관관상 가운데 석가여래삼존상을 제외한 나머지 상 19구가 이번에 신청되었다.

십육나한상은 70-80cm 정도의 큰 규모에 얼굴이 길고 무릎이 넓어 안정적인 신체비례를 보인다. 나한상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세와 손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손에 죽비, 경책, 염주, 서수, 꽃가지, 금강령, 인장, 불자 등의 지물을 들었으며

합장을 하거나 주먹을 움켜 쥔 모습, 한 손으로 머리를 매만지는 등 다채로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얼굴 표정과 신체 표현이 돋보이며 가사를 머리 위부터 두른 복두나한상을 제외하면 모두 민머리에 다양한 모습을 취하였다. 나한상들은 민머리의 정수리 부분을 채색하였고 얼굴이 길고 올라간 눈꼬리에 입을 작게 표현하였으며 광대뼈가 돌출된 얼굴에는 이마나 볼에 주름을 표현하여 나이가 든 나한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착의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목깃을 여민 장삼 위에 가사를 두르고 가사장식으로 고정하였다. 나한상들은 당당한 자세에 개성있는 얼굴 표현과 다양한 자세들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의 모습을 보는 듯 실재적이다. 십육나한상의 바닥면에는 좌우 위치와 번호를 각각 묵서로 적어 구분하였다.

제석천상 두 구는 현재 명부전에 있다. 우측 제석천상은 좁고 길쭉한 얼굴에 무릎에서 두 손을 잡은 자세로 의자에 앉아 있다. 머리에는 높고 큰 보관을 썼으며 신체에는 장삼을 입고 그 위에 천의를 입은 다음 정면에서 신체 윤곽을 따라 길게 늘어뜨려 장식하였다. 좌측 제석천상은 우측의 제석천상과는 크기는 물론 비례, 얼굴, 옷 표현 그리고 장식 등에서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특히 미소가 있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목이 짧고 상반신이 긴 비례, 운전위에 천의를 입은 모습 등에서 차별화를 보여 두 제석천상은 각기 다른 조각승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측제석천상은 판관상과 더불어 얼굴 모습만을 본다면 나한상의 얼굴과 매우 비슷한 점에서 함께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십육나한상은 70cm 이상의 큰 규모에 각각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지물과 자세를 하고 있어 조선후기에 유행한 나한의 모습을 탁월하게 연출하였다. 즉 나한이 가진 생동감있는 표정이나 젊거나 나이든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우수한 조형성을 보인다. 소조나한상의 조성시기는 좌우제석천상의 목제의자 밑판에서 1630년(승정연간 경오년)에 조성되고 1703년(강희42) 초여름 영산회를 중수하면서 제석천상을 새로 중수했다는 내용의 묵서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만든 조각승은 가선대부 金文과 世均, 卓勝, 呂燦, 就翊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소임을 맡은 승려의 이름이 묵서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십육나한상은 1630년에 제작되었고 좌측제석천상은 1703년에 다시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금문은 17세기에 활동한 유명한 조각승인 혜희의 제자로서 1706년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을 비롯한 작품들이 알려져 있다.

□

## ○ 현 상

동향(東向)한 대둔사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그 바로 북쪽 옆으로 대웅전을 바라보는 남향으로 명부전이 있고, 여기서 더 북쪽으로 사역 끝에 역시 남향한 응진

전이 배치되어 있다. 응진전에는 석가삼존불을 비롯하여 십육나한상이 봉안되어 있고, 명부전에는 새로 시왕상 등이 조성된 가운데, 판관 1구와 제석·신중상 1구는 원래 응진전에 함께 봉안되어 오던 상이다. 이중에 판관은 원래 명부전에 속한 존상이지만 명부전이 소실되면서 1구만 남아 응진전에 전해지던 것이라 생각되며, 제석·신중은 제석천 바닥의 묵서명을 통해 응진전에 원래부터 함께 봉안되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명부전에 새로 조성되면서 판관과 제석·신중상은 현재 명부전으로 옮겨 봉안되었다. 제석·신중은 다시 응진전에 봉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응진전의 삼존불은 향마촉지인을 결한 석가모니불을 본존으로 좌(미륵보살)·우(제화갈라) 협시보살을 조성한 것인데, 이중에서 본존 및 좌협시보살상은 목조로 원래부터 일괄로 조성된 것이고, 우협시보살상은 청동으로 별도로 조성된 것이어서 양식상 차이가 있다.

## ○ 내용 및 특징

응진전에 봉안되는 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석가모니 수기삼존(석가모니불·제화갈라보살·미륵보살) 및 십육나한상이 알려져 있으나, 구미 대둔사 응진전을 포함하여 순천 송광사, 해남 대흥사 등 몇몇 사찰의 응진전을 통해 범·제석천상도 함께 모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조로 조성된 제석천상은 목재 받침 묵서명에 의하면 1703년에 ‘영산회 중수’ 때 조각승 금문(金文)이 ‘좌제석천상’으로서 새로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응진전이 이전에는 영산전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으며, 새롭게 조성했다는 뜻은 이전에 이미 제석천상이 있었는데 이를 대신해 새롭게 조성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좌제석’이라고 한 것은 맞은편에 ‘우범천’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명부전에 또다른 신중상이 있는데 바로 이 상이 ‘우범천’에 해당하는 상으로 추정된다. 다만 범천이 제석천보다 위계가 높기 때문에 범천이 좌, 제석이 우에 봉안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여기서는 좌측에 제석천이 봉안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좌’가 바라볼 때 좌측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본존을 중심으로 좌측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마 좌협시로서 응진전 좌측(향우측)에 봉안되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송광사 응진당의 경우도 제석탱이 향우측에 걸려 있어 제석이 좌협시의 개념으로 봉안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석굴암 역시 제석천이 좌협시, 범천이 우협시로서 봉안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맞은편 의좌상 형식의 신중상은 ‘우범천’이고, 1703년 새로 조성된 좌제석에 비해 1630년 십육나한상이 조성될 당시 제작된 상으로 추정된다. 범천상은 제석상과 동일하게 소조로 만든 의좌상 형태이지만, 얼굴의 표현양식이나 착의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제석에 비해 가름하고 날카로운 인상의 표현은 응진전 십육나한상의 조형양식과 서로 닮았다. 명부전의 판관 역

시 범천상과 양식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1630년에 영산전과 함께 명부전도 조성되어 시왕상 일괄이 같은 양식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진전의 본존인 삼존불상 중 본존 석가모니와 좌협시보살(추정 미륵보살)은 목조인데, 기존 제출된 조사보고서에서 조선말기의 불상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 근거는 접목조가 아닌 하나의 나무로 조성된 일목조로 조성되었고, 보살상은 복장공이 불상 아래에 뚫리는 일반적인 조선시대 불상과 달리 보살상의 뒷면 등에 작은 복장공이 뚫린 형식으로 미루어 판단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상의 얼굴 묘사 등에서는 앞서의 범천상과 유사성이 발견된다. 만약 범천상이 1630년 당시의 작품이라면 본존불 및 좌협시보살 역시 양식상으로는 같은 시기로 올려볼 수 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특히 본존불의 수인인 일반적인 항마촉지인과 달리 왼손이 선정인을 결한 자세가 아니라 전법륜인이나 아미타구품인과 같은 아미타불의 수인처럼 가슴 높이로 치켜든 모습은 특이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려말~조선초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과도 연관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존불 및 좌협시보살은 1630년대에 응진전의 다른 소조상들과 함께 조성되었거나, 혹은 조선말기에 조성되었더라도 원래 응진전에 봉안되어있었던 1630년 조성의 삼존불상의 모습을 반영하려고 한 흔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지정조사의 중심은 소조16나한상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후기 나한상은 해학적이거나 혹은 도식적인, 혹은 산신의 형태로 변형된 나한상의 사례가 많은 반면, 대둔사 나한상은 중국 송대, 요대의 초상조각과 같은 사실적인 표현을 보이는 나한상들과 궤를 같이 하는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나이 많은 승려의 주름살의 표현이나, 독특한 자세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고 있어 현존 조선시대 나한상을 대표하는 조형성을 지닌 작례로서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 조사내용

대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로 등록되어 있는 사찰이다. 446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고려 충렬왕 때 왕자 왕소군이 중창하였다고 전한다. 사찰에는 고려 말에 조성된 건칠아미타여래좌상과 1614년에 건립된 대웅전, 1741년에 제작된 삼장보살도와 1761년에 제작된 영산회상도가 전한다.

대둔사 응진전은 대웅전의 좌측 언덕 위에 터를 마련하여 자리하였으며, 좌향은 서향이다. 응진전에는 나무로 제작된 석가여래삼존상(우협시 제화갈라보살은 청동)을 비롯하여 흙으로 만든 16나한상 등이 봉안되어 있다. 권속인 좌우 제석상과 사자상은 원래는 응진전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다. 응진전의 주불은 석가여래(높이 80cm)를 본존으로 좌우에 미륵(높이 96,3cm)과

제화갈라보살이 봉안되어 授記三尊 형식을 이루고 있다. 본존과 좌협시 미륵보살 입상은 일목조로 제작되었는데, 일목조의 조성 기법과 복장공의 형태, 본존불의 수인과 무릎의 표현 등에서 보이는 다소 낮은 조형감에서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본존상에서 보이는 초승달모양의 큼직한 중앙계주, 타원형의 길쭉한 얼굴과 세장하게 늘어진 코와 작은 입술, 헛바닥처럼 늘어진 내의 주름과 띠자락, 왼쪽 어깨의 약화된 ‘Ω’형 주름, 대의 속 왼발의 뚜렷한 윤곽 등은 17세기 이전에 볼 수 있는 양식적 특징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식분석 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협시 제화갈라보살상은 최근에 銅으로 새롭게 제작된 상이다.

16나한상은 석가여래삼존상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마련된 불단위에 각각 8구씩 배치되었는데, 통상 홀수 나한은 본존의 좌측에, 짝수 나한이 우측에 배치된다. 16나한상의 도상적 전거(典據)가 되는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大正新脩大藏經』卷49, 史傳部 1)에는 16나한의 존명(尊名)과 권속(眷屬), 주처(住處) 등만 밝히고, 자세나 지물 등 존상에 따른 정확한 도상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한상은 다른 불교의 존상들과는 달리 일정하게 정해진 도상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각가의 개성이 심분 발휘될 수 있는 장르이다.

십육나한상은 70cm 이상 되는 비교적 큰 규모이며 무릎이 널찍하게 자리하여 조형적으로 안정감을 갖추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한 소조 조각의 특성상 현재 균열, 안료의 박리박락 등이 진행되어 보존 상태는 좋지 못하다. 이곳에 배치된 나한상은 형상만으로 구분하면 늙은 나한과 청년 나한으로 구분되며, 표정은 대체로 엄숙하다. 늙은 나한은 살이 빠져 야위었고 깊게 패인 주름과 광대뼈 등 노쇠한 骨筋이 현실감 있게 표현되었다. 젊은 나한은 호남형의 단정한 이미지로 연출되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나한상의 복식은 복두를 쓴 나한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삼 위에 가사를 걸쳤고, 자세는 모두 결가부좌하고 앉은 좌상이다. 지물은 죽비, 경책, 염주, 서수, 꽃가지, 금강령, 인장, 불자 등을 들었으며, 지물이 없는 나한은 머리카락을 매만지거나 주먹을 움켜쥐거나 또는 합장을 하는 등 다채로운 손짓을 짓고 있다. 바닥에는 배치 순서와 관련된 묵서를 적어놓았다. 다만 좌3 나한상의 밑바닥에는 묵서로 ‘右三’이라고 써 놓았고, 우3 나한상의 밑바닥에도 ‘右三’이라 적어 놓아 둘 중 하나는 誤記로 보인다.





도68 석가여래삼존상



도69 석가여래좌상



도70 미륵보살(좌)



도71 좌1



도72 좌2



도73 좌3



도74 좌4



도75 좌5



도76 좌6



도77 좌7



도78 좌8



도79 우1



도80 우2



도81 우3



도82 우4



도83 우5



도84 우6



도85 우7



도86 우8



도87 우 제석



도88 좌 제석



도89 좌제석 목서명



도90 사자상

우편 제석은 두 손을 단전에 가지런히 모으고 의자에 앉았으며, 나한상과 마찬가지로 계란형의 길쭉한 얼굴에 세장한 콧날과 작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 좌편 제석은 우편 제석과 달리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의좌세로 앉았다. 방형의 얼굴과 각진 콧날 등에서 양식적으로 차이가 난다. 전통적으로 제석과 마주하는 존상은 범천이지만, 이 시기 나한상과 일괄로 제작된 제석상 중 완주 송광사 응전전 16나한상에서는 左右帝釋이라 기록하였고, 고흥 능가사 16나한상은 二帝釋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쌍의 제석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좌편 제석의 밑면에는 나한상과 제석상의 조성과 중수와 관련된 목서명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은 나한상을 崇禎 庚午인 1630년에 조성한 이래 강희42년인 1703년 초여름 영산회를 중수하면서 좌편 제석을 새롭게 조성하였고, 조각승은 金文, 世均, 卓勝, 呂贊, 就翊 등 다섯 명의 화원이 참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좌편 제석상을 제외한 나머지 존상들은 1630년에 제작한 것이다. 다만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불상과 나한상에서는 앞선 시기의 양식이 보이므로, 제작 당시 작성된 조성발원문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조성시기에 대해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 중수 조각승 金文은 17세기 중엽경 惠熙流派의 대

표적인 조각승으로 분류되며, 혜고는 혜회를 도와 보은 법주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55)과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상(1662) 등을 조성하였다. 1668년에는 勝日을 도와 김천 직지사 목조비로자나불상을 제작하였고, 1706년에는 기장 장안사 석조 석가여래삼불좌상을 수조각승으로 중수하였다. 1706년에는 안성 칠장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을 제작하였다.

사자상은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두 손은 공손히 모으고 있고 도상적으로 명부전의 판관과 유사하여 판관으로 명명하기도 하지만, 羅漢請 등 의례집에는 석가삼존, 16羅漢과 함께 監齋·直符使者가 奉請되고 있으므로, 使者像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자상은 현재 1구만 남아 있다.

### ○ 좌편 제석상 바닥 목서명

羅漢

崇禎庚午季?造成之後康熙四十二年癸未初夏日

靈山會重修之時左片帝釋主新造成寫也

緣化秩

證明 三彦

持殿 淨心

중단

畫員嘉善 金文

世均

卓勝

呂贊

就習

하단

供養主 勝謙

宗念

負木 信淑

別座 雪雲

化主 清日

## 9.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말머리 가리개 (釜山 福泉洞 十號墳 出土 鐵製馬冑)

### 가. 검토사항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말머리 가리개’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말머리 가리개’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8.8.31) 관계 전문가 조사(’19.5.3)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말머리 가리개(釜山 福泉洞 十號墳 出土 鐵製馬冑)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전체 길이 52.0cm. 전체 높이 39.0cm. 철판 두께 1.1~3.0mm.  
얼굴덮개 : 길이 46.4cm, 상단 폭 24.4cm, 하단 폭 13.0cm.  
볼가리개 : 길이 31.5cm, 높이 14.5cm. 눈 구멍 : 길이 9cm, 높이 6cm.  
차양 길이 28.0cm, 높이 16.8cm
- 재 질 : 철
- 형 식 : 전투에서 말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우는 철제 투구 형식
- 조성연대 : 5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부산 북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이 철제 말머리가리개는 출토지가 명확한 가야 시대의 철제 말갖춤의 일종으로서, 삼국시대 전투 문화와 철기 단조 문화를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야에서는 수준 높은 기마문화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 말머리가리개는 삼국시대 고구려 안악3호분 등 고분 벽화에 그려진 개마(介馬)의 모습을 증명하는 출토유물로서 실제 말에 씌워 사용되었던 실전용 실물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 이 평가된다.

특히 1980년 북천동 10호분 출토 말머리가리개는 같은 동종의 출토유물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출토되어 고고학계의 관련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확장시키고 일본과 비교 연구하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조형적으로 1980년에 출토된 이 유물은 말머리가리개 중 출토로서 높이 평가된다. 어 의 높은 수준과 최신 무기 기술의 산물로 평가된다.

제작기술 면에서 볼 때 이 유물은 말머리가리개의 구조에 따라 얇은 철판을 두드리고 몇 개의 판으로 오리고 리벳으로 고정시켜 실제로 말 머리에 씌워 실제 사용했던 실전용으로 여겨져 삼국시대 철제 가공이나 금속공예기술의 수준을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철제로 제작된 유물의 특성을 반영하듯 출토 당시부터 부식상태가 심각하였고, 쟁부의 귀가리개 한쪽판과 얼굴덧개부의 일부 등이 유실되어 원형이 훼손되었 으며, 1981년 보존처리 이후 40년이 지나는 동안 표면 철제의 부식이 진행되어 이격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근래 가야지역에서 말머리가리개가 다수 출 토되고 있어 1980년대에 유일 출토품으로서의 희귀성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 말머리가리개는 기록으로만 보이던 가야의 기마 문화와 철제 단조기술에 대해 출토지가 분명한 곳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되어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으나, 철제유물의 재질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심하게 부식되었으며 복원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원형의 유지가 어려운 점, 근래 가야고분군에서 동종 유물이 다수 출토되어 희소성이 낮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1. 이 유물은 부산 북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 출토지가 확실하고 발굴과정을 통하여 부장양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2. 말머리가리개의 본체는 긴 사다리꼴 철판 2장을 접어 가운데에서 원두정으로 박아 고정하고, 양 가장자리도 접어 날카롭지 않게 만들었다. 아래쪽 주둥이 부분을 구부려 좁게 하고 눈 부분을 반원형으로 올려내어 눈이 가리지 않게 하였다.

3. 양볼 가리개는 반달형 철판으로 만들되 눈 부분은 본체처럼 반원형으로 오려내어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머리끝에는 반원형의 둥근 철판을 세운 차양을 달았다. 이 차양은 본체에서 보면 수직으로 세웠으며 상단 양쪽에 말귀 모양의 뾰족한 철판을 달아 장식하였다.
4. 복원된 전체길이는 52cm, 높이 39cm, 얼굴덮개 길이 46.4cm, 위쪽너비 24.4cm, 볼 가리개 길이 9cm, 높이 6cm, 차양 길이 28cm, 높이 16.8cm 규모이다.
5. 삼국시대 전투용 말 무장구의 하나인 이 말머리가리개(마주)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좋은 자료이나 많은 부분이 결실되어 복원된 것이므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부산 북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이 철제 말머리가리개는 출토지가 확실한 가야시대의 철제 말갓춤의 일종으로서, 가야시대 전투 문화와 철기 단조 문화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두께 1.1-3.0mm의 얇은 철판을 자르고 단조하여, 말의 머리 형태에 맞도록 제작한 솜씨는 당시 부산 북천동 일대의 가야 문화권 사람들이 상당히 발전된 철기 단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말의 머리나 몸에 철제 투구나 갑옷에 해당하는 무장구(武裝具)를 씌우고 전쟁에 나갔던 것은 고구려시대의 고분벽화나 문헌 기록 등에서 알려져 있지만, 가야 지역에서 이러한 실제 철제 말갑옷의 일부가 정식으로 출토된 것은 북천동 10호분 출토품이 가장 이른 예에 속한다. 북천동 10호분 출토 철제 말머리가리개는 가야시대의 수준높은 기마문화 및 전투 문화, 단조철기 제작 기술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북천동의 발굴 이후 지금까지 여러 지역의 가야고분군에서 이러한 말머리가리개를 비롯한 말의 무장구가 종종 출토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철제라는 재질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미 심하게 부식되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 부분을 현대의 기술로 복원해 놓았다. 이와 같이 원형의 훼손이 심하고 유물로서의 희소성이 낮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말머리가리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말머리가리개가 출토한 고분은 부산 북천동 10-11호분으로 이루어진 이혈주부곽식의 대형 무덤이다. 말머리가리개는 부곽인 10호분에서 출토되었다. 10호분은 매장주체시설이 목곽이다. 목곽 내부는 북쪽의 주유물군과 중앙부, 남쪽에 집중되어 유물이 부장되었고, 말머리가리개는 중앙부에서 재갈·청동방울·안장·말띠드리개 등의 마구류와 함께 출토되었다.

말머리가리개는 긴 사다리꼴 철판을 접어 원두정으로 박아 얼굴덮개부를 만들고, 뽕쪽에서 주둥이쪽으로 가면서 너비가 점차 줄어들고, 끝 부분에 코를 덮도록

약간 튀어나도록 만들었다. 양 측면은 2매의 철판을 원두정을 박아 연결하여 불가리개를 만들었다. 눈 부위는 직경 8.3cm 정도의 반원형으로 오려내어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머리끝에는 반원형의 둥근 철판을 세운 차양을 달았다. 말머리가리개는 심하게 녹이 쓸었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었다.

부산 복천동 10호분 출토 말머리가리개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처음으로 출토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삼국시대 기마문화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자료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영남 각지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말머리가리개의 출토 사례가 많아져 그 중요성과 가치는 반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이후 유사한 사례가 영남 각지의 고분에서 출토되어 희소성이 낮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불가로 판단한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 조사보고서

### □

### ○ 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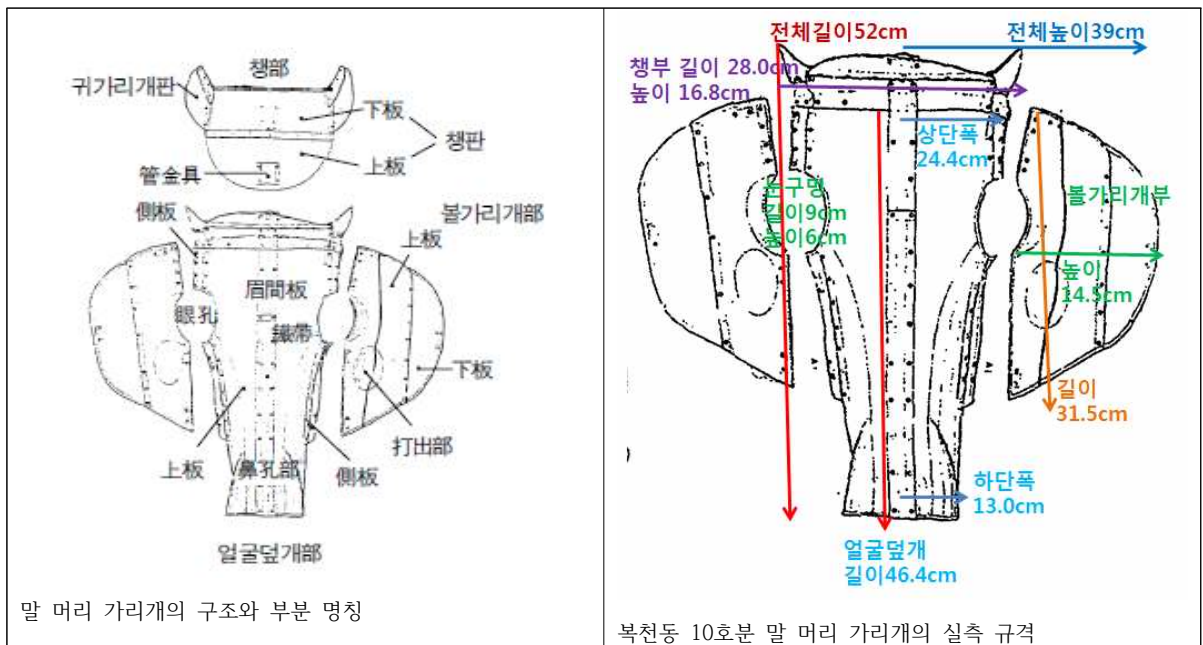
크고 작은 여러 모양으로 재단한 철판을 두드려 말의 머리 모양과 크기에 맞게 리벳으로 접합하여 전쟁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말의 머리를 보호하게 만든 철제 투구[馬冑]이다. 이 말 머리 가리개는 구조적인 면에서 말의 미간부터 코까지 덮는 얼굴덮개부, 말의 눈 좌우 볼을 덮는 불가리개부, 말의 정수리와 귀를 가리는 챙부로 구성되어 있다. 얼굴덮개부는 미간부터 코까지 상하로 긴 말의 얼굴에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긴 판 2매를 주둥이 부분까지 구부리고 측면 2매를 접합하여 좁게 만들었다. 말의 눈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원형으로 오려 눈 부분을 뚫었으며, 양 볼의 가리개는 상하판 2매씩을 접합하여 반달형으로 만들었다. 말 머리의 위쪽 챙부에는 수직으로 반원형의 둥근 철판 2매를 접하여 차양을 달았고, 상단 양쪽으로는 말의 귀처럼 뽕족한 철판을 달아 장식하였다.





### ○ 현 상

이 말 머리 가리개 유물은 얇은 철판을 두드려서 말 개별 부위별로 만든 후 리벳[圓頭釘]을 이용하여 접합하여 만든 것이다. 말 머리 가리개는 구조상 크게 얼굴 덮개부와 볼가리개부 및 챙부로 구분된다. 얼굴 덮개부는 이마쪽의 미간부와 코쪽의 비공부를 상판과 측판으로 나누어 만든다. 볼 가리개부는 눈 부분을 뚫어 놓고 상판과 하판으로 나누어 제작한다. 챙부는 챙판과 귀 가리개 판으로 구분하여 챙판은 상하판으로, 귀가리개판은 좌우로 구분하여 만든다. 이렇게 각각의 판을 만들어 이것들을 리벳을 박아 고정시키는 것이다. 이 말 머리 가리개 유물은 구조적인 면에서 제작된 것인데, 철제 출토 유물의 특성대로 심하게 부식이 되어 있다. 현재 수지로 만든 말 머리 모양의 모형 위에 보존처리를 통해 복원복원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 말 모형의 크기는 전체 높이 73cm, 목까지의 높이 23.7cm, 전체 최대 길이 74.5cm이다.



○ 내용 및 특징

부산 동래구 복천동 10호분은 1980년 10월부터 1981년 2월까지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복천동 고분군 제1차 발굴 조사하였다. 발굴 조사 결과 복천동 10호분과 11호분은 주곽인 11호분과 부곽인 10호분이 한데 연결된 대형 무덤이었다. 이중 주곽(主槨)인 복천동 11호분은 수혈식 석실분이었고, 복천동 10호분은 11호분의 부곽(副槨)에 해당되었으며 토광 목곽분이었다.

<p>복천동 10호분의 유물 배치도</p>	<p>말머리가리개의 출토 상태</p>	<p>보존처리를 위해 옮기기 전 강화 처리한 상태</p>
<p>정정원, 신경철, 1983년 발굴보고서</p>	<p>보존처리 전 해체 상태</p>	<p>보존처리 후 말머리가리개</p>
	<p>이오희, 보존처리보고서, 198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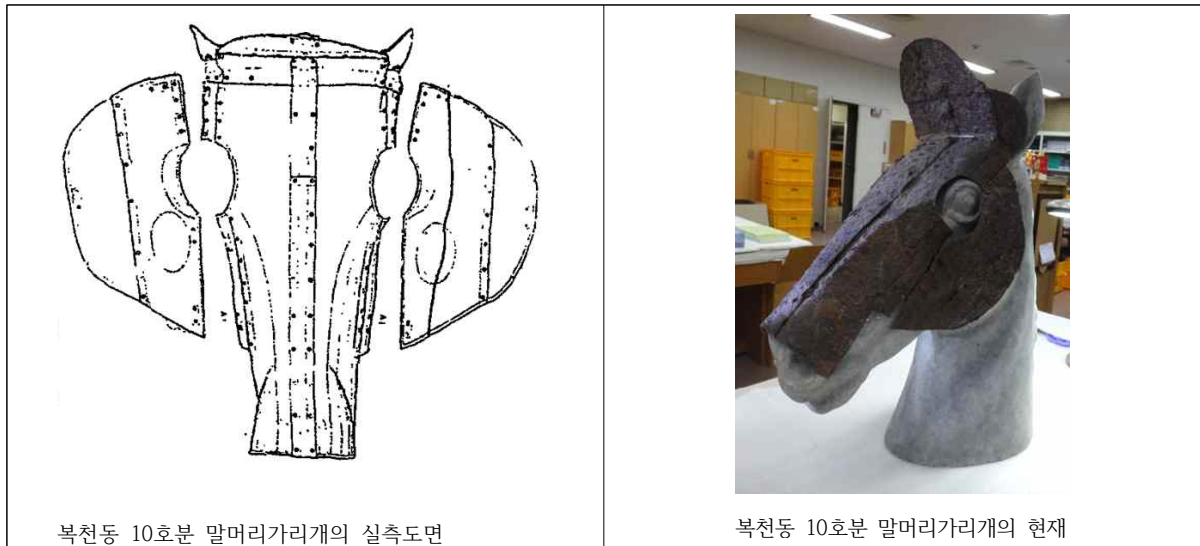
복천동 10호분 내부에는 각종 토기를 비롯한 각종 부장품들이 매장되어 있었다. 이 말 머리 가리개는 고분 중앙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던 재갈·청동방울·안장·말띠드리개 등의 마구류와 함께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말 머리 가리개는 양옆의 귀 중 왼쪽 귀는 결손되어 있었고, 수직 창은 발굴 후 급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절손되었다. 오른쪽 얼굴 가리개의 형태는 잘 유지되었으나 좌측은 부식이 심하여 형태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다. 볼 가리개는 이후 발굴에서 찾아내었다. 복원시 길이 51cm, 폭 24cm로 제작하기 위해 각 부위 별로 크고 작은 철판을 재단하여 15장의 철판과 약 99개의 철제 리벳을 사용하고 철못으로 고정시켜 복원하였다.

이 말 머리 가리개는 두께 1.1-3.0mm 정도의 얇은 철판을 두드리고 잘라서 말 머리 가리개의 구조에 따라 얼굴덧개부, 볼가리개부, 창부를 말머리의 형태대로 상하

판이나 좌우판처럼 부분을 만들고 이것에 원두정을 박아 접합하여 만든 것이다.

우선, 얼굴덧개부는 말의 얼굴을 덮기 위해 윗판은 긴 사다리꼴 철판을 미간부터 코까지 중앙에서 좌우로 갈라 상하로 길게 2매의 철판으로 만들었고, 측판은 그 옆으로 각각 1매씩 2매를 만들어 코 옆에서 볼쪽에서 주둥이로 내려가면서 너비가 점차 좁아 들게 두드려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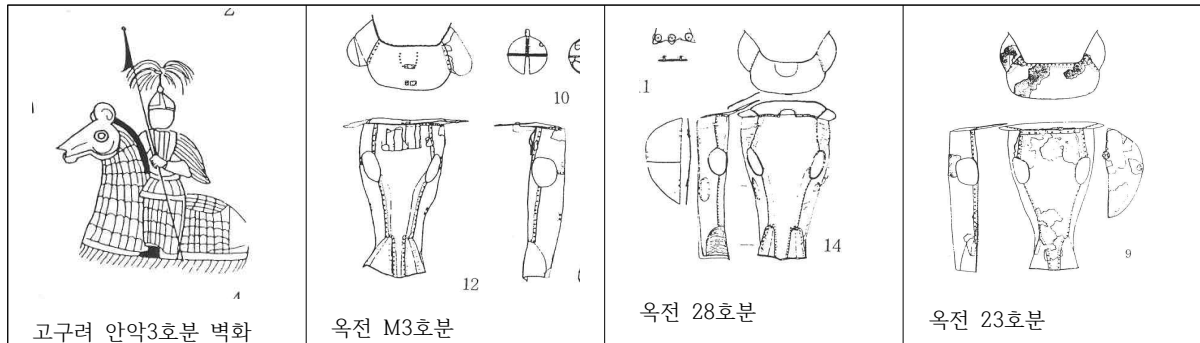


다음, 볼가리개부는 말의 눈 부분은 둥글게 파고 머리의 양쪽 측면은 상판과 하판의 각각 2매씩 총4매의 철판을 반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 원두정을 박아 연결하여 만들었다. 말의 눈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름 8.3cm 정도의 반원형으로 오려 눈을 가리지 않게 만들었다.

한편, 챙부는 머리 끝에 반원형의 둥근 철판을 상판 1매와 하판 1매를 접합하여 세운 것이며, 귀 가리개부의 모습도 만들었다.

이 말머리가리개는 철제 출토 유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하게 녹이 쓸어 있는 상태이다. 부식으로 인해 파손이 된 부분은 발굴 이후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는 모두 수지로 복원된 상태이다.

이처럼 부산 북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말 머리 가리개는 1980년에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분에서 최초로 출토된 마주(馬冑)로 매우 유명하였다. 그동안 고구려 고분벽화의 안약 3호분이나 삼실총 등의 고분벽화로만 인지되던 말 머리 투구를 고고학적으로 발굴한 최초의 실물자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천동 10호분에서 최초로 말 머리 가리개가 발견된 이후 1990년대에는 북천동 고분군 이외에도 가야의 것으로 영남지방에서 김해 대성동 1호군을 비롯하여 합천 옥전 고분군 등에서 14점의 말 머리 가리개가 출토되는 등 그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

### ○ 내용 및 특징

이 말머리가리개는 부산 복천동 10호분에서 출토된 유물로 출토지가 확실하고 발굴과정을 통하여 부장양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이다. 긴 사다리꼴 철판을 접어 원두정으로 박아 얼굴가리개를 하고 아래쪽 주둥이 부분을 구부려 좁게 하였다. 눈 부분을 반원형으로 오려내어 눈이 가리지 않게 만들고, 양볼 가리개는 반달형 철판으로 만들되 눈 부분은 반원형으로 오려내어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머리끝에는 반원형의 둥근 철판을 세운 차양을 달았다.

### ○ 문헌자료

정징원 · 신경철,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 I』釜山大學校博物館.

□

### ○ 현 상

얇은 철판을 두드려서 개별 부위별로 만든 후 원두정(圓頭釘, 리벳)을 이용하여 접합한 것으로, 상당히 심하게 부식된 것을 보존처리하여 복원하였다. 현재는 말 머리 모양의 모형 위에 복원 고정시켜놓았다(도 1). 말 모형의 크기는 전체 높이 73cm. 목까지의 높이 23.7cm, 전체 최대 길이 74.5cm이다.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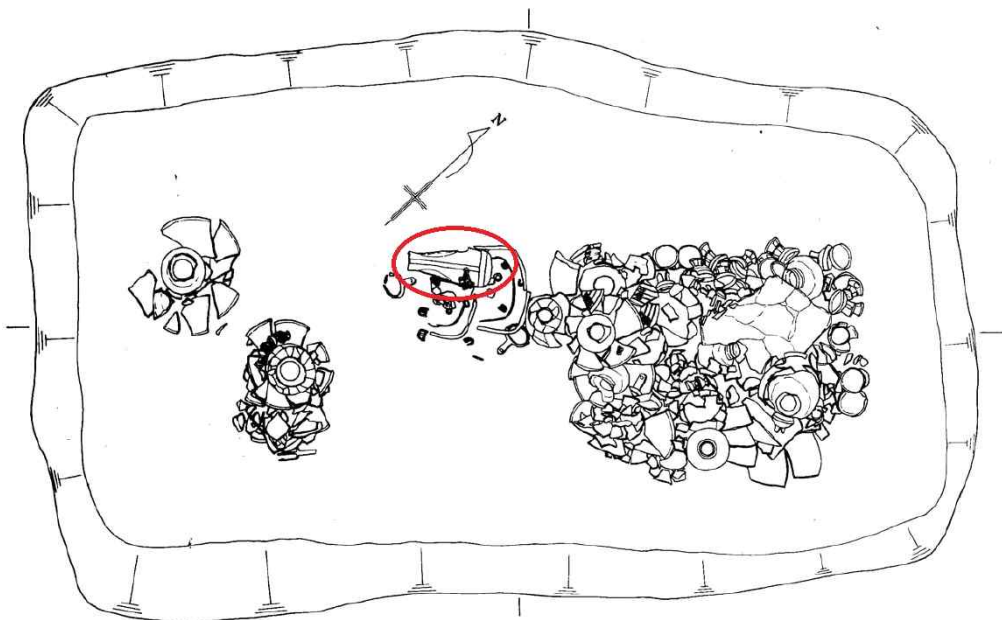
이 말머리가리개는 부산 복천동 10호분 중앙부에서 다른 마구들과 함께 출토되었다(도 2). 복천동 10호분은 복천동 11호분의 부곽(副槨)으로서, 내부에서 각종 토기 및 부장품들과 마구가 매납되어 있었다. 복천동 10호분 출토 말머리가리개는 철판을 두드려서 만든 것으로, 크기로 보아 실제 말에 씌워서 실전용(實戰用)으로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기록에만 보이던 가야의 전투 문화에 대해 알려주는 보기 드문 실물자료이자, 출토지가 확실한 예로서 중요하다. 긴 사다리꼴의 철판 2장을 접고 두드려서 가운데에 다시 가느다란 철판을 덧대어 원두정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아 연결하여 얼굴덧개를 만들었으며, 그 양쪽 옆에는 눈 부분을 남기고 양쪽 볼 부분에 철판을 두드려서 만든 반달형의 볼가리개를 연결하였다. 머리 위에는 반원형의 둥근 철판을 접고 연결해서 별도로 차양을 만들어 세워 장식하였다. 철제품이라 부식으로 인한 파손이 심하여, 현재는 모두 수지로 복원된 상태이다.



도 1. 복천동 10호분 출토 말머리가리개.



도 2. 복천동 10호분의 유물 배치도 (붉은색 타원이 말머리가리개 출토 위치임)

○ 문헌자료

鄭澄元·申敬澈,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 I』, 釜山大學校博物館.

## ○ 기 타

복천동 10호분은 1980년 10월부터 1981년 2월에 걸쳐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되었으며, 발굴보고서는 1983년에 발간되었다. 복천동 10호분은 토광목곽의 구조로, 주곽(主槨)인 수혈식석실분인 복천동 11호분의 부곽(副槨)에 해당한다.



## ○ 내용 및 특징

말 머리 윗면을 씌웠던 얼굴 덮개부와 그 뒤쪽에 수직으로 붙인 챙, 얼굴 덮개부의 양측에 붙인 반원형의 불가리개로 이루어졌다. 얼굴덮개부의 측면과 불가리개의 상단에는 직경 약 8.3cm 정도의 반원형으로 오려내어 눈이 가리지 않도록 하였다. 앞쪽 끝 부분의 양쪽 철판을 반원형으로 튀어 나오게 하여 코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파손된 부분은 수지로 복원되었다.

## ○ 문헌자료

정징원·신경철, 1983, 『東萊福泉洞古墳群 I』釜山大學校博物館.

## ○ 기 타

이 말머리가리개는 1980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복천동고분군 제 1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고, 현재 국가귀속매장문화재로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음.

## 10. 부산 북천동 86호분 출토 철제갑옷 (釜山 福泉洞 八十六號墳 出土 鐵製縱長板甲)

### 가. 검토사항

‘부산 북천동 86호분 출토 철제갑옷’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 매장문화재 국가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18.9.28)에서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된 ‘부산 북천동 86호분 출토 철제갑옷’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19.4.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부산 북천동 86호분 출토 철제갑옷(釜山 福泉洞 八十六號墳 出土 鐵製縱長板甲)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로 63, 북천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갑옷: 전체 높이 65.0cm, 허리둘레 98.5cm, 바닥부터 겨드랑이 높이 28.5cm  
앞쪽 쇄판 : 길이 29.0cm, 폭 4.3cm. 앞길판 : 길이 19.5cm, 높이 9.5cm.  
목가리개(높이 19.8cm, 폭 23cm)  
옆 목가리개(길이 31.2~29.3cm. 폭 12.3~12.0cm. 새 머리 길이 8.0~7.5cm)
- 재 질 : 철
- 형 식 : 장방형의 철판을 세로로 이어 만든 종장판갑과 목 뒤를 가리는 경갑 및 측경갑 등으로 구성된 철제갑옷
- 조성연대 : 4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부산 동래구 복천동 86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은 갑옷[종장판갑]과 목가리개[경갑] 및 옆 목가리개[측경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물은 출토지가 분명하고, 함께 출토된 여러 공반 유물을 통해 4세기 가야 철제 갑옷으로서 제작시기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다.

조형적인 면에서 볼 때 복천동 86호분에서는 모두 4점의 철제 종장판갑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은 그중 옆 목 가리개가 새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점에서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갑옷이나 종장판갑 중에서도 독특하다. 특히 뒷 부분과 측면 부분에 새 깃털로 장식했던 흔적도 흔히 발견할 수 없는 특징이다.

공예 기술적인 면에서는 두 철판의 가장자리를 ‘정류(釘留)’로 결합하는 방식, 별도의 가죽이나 철판을 사용하지 않고 철판 자체의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접어 복륜(覆輪)효과를 낸 절판(折判)으로 감싼 것, 하나의 긴 가죽을 댄 혁紐로 혁대경첩류 개폐장치 등이 확인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유물은 출토 철제 유물에서 발견되는 재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철제 갑옷이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철제가 부식되었는지 발굴 당시부터 판갑의 오른쪽 앞판 부분이 상당수 유실된 상태였다. 이후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와 같은 상태로 복원되어 원래의 원형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와 더불어 철제의 특성상 부식이 계속 진행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복천동 86호분을 발굴할 당시 본 유물을 포함하여 4점의 종장판갑이 한꺼번에 출토되었으나, 출토 당시 갑옷의 상황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발굴보고서가 없다는 흠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야시대 고분에서 4벌의 철제 갑옷이 동시에 출토되어 역사적 가치가 있고, 갑옷의 옆 목가리개 부분에 새 모양을 장식하여 조형적으로 희귀하며, 접합기술이나 개폐장치 등 공예기술적으로도 의미있다고 판단되나, 출토 당시의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고 갑옷의 앞 부분이 결실되어 복원되었다는 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1. 이 종장판갑옷일습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에 위치한 사적 제273호인 복천동고분군에 위치하는 장방형 목곽묘인 86호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다. 이 유구는 주부곽 목곽묘의 부곽으로 생각된다.

2.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이어 만든 종장판갑옷과 목뒤를 가리는 경갑, 옆목을 가



리는 측경갑 일습으로 이루어진 이 갑옷은 동래북천 86호분에서 출토되었으나 파손이 너무 심하고 대부분 복원된 것으로 원형을 찾기 어렵다.

3. 이 갑옷의 특징은 옆목을 가리는 측경갑인데, 이는 방형철판위로 반원형철판을 연접하고 소형철판 2매를 반원형으로 고정하였다. 이 소형철판 안쪽에 깃털같은 유기질이 수착되어 있으나 남아있는 것은 없다. 이 판의 뒤 끝에 새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원형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4. 갑옷의 규모는(전체높이 65cm, 허리둘레 98.5cm), 경갑(높이 19.8cm, 폭 23cm), 옆목가리개(길이 31.2cm, 새 주둥이 길이 8.0cm)이다. (대부분이 추정치임)
5. 이 종장관갑은 목가리개의 측판에 깃털 같은 유기물을 장식했던 것과 뒤쪽 끝에 새를 장식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의미 있는 것이나 대부분이 결실된 것을 추정 복원한 것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매우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부산 북천동 86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종장관갑은 새 모양 장식이 된 측경판과 새 깃털을 장식했던 점이 일반적인 삼국시대의 철제 갑옷과는 상당히 다른 조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철제라는 재질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견 당시부터 부식으로 인한 파손이 심하게 된 상태였다. 이후 정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시를 위해서 현대의 보존과학 기술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복원하여 전시되고 있으나, 유물의 원형이 상당히 훼손되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가야시대 고분 중에서 북천동 86호분과 같이 4벌의 철제 갑옷이 한꺼번에 출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측경판에 새 모양의 장식판이 달린 경우도 그다지 없어서 주목되는 유물이긴 하지만, 복원 부위가 넓고 크며 원형의 상당 부분이 이미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으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 종장관갑 일습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북천동에 위치한 사적 제273호인 북천동 고분군에 위치하는 86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종장관갑이 출토된 86호분은 현재 정비복원된 유적공원의 남쪽 끝자락 가까이의 구릉 경사면에 위치한다. 86호분은 이전의 주택 건설로 인해 남쪽 절반이 잘려나갔으나 많은 유물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쪽에 위치한 60호 고분의 부곽으로 추정된다. 오리모양토기 1점과 함께 4벌의 종장관갑과 3벌의 투구, 재갈 등이 출토되었다.

부산 북천동86호분에서 출토된 갑옷은 흉갑, 경갑, 옆 목가리개 등의 일습을 갖

추었으며, 특히 옆 목가리개가 새 모양이고, 위쪽 가장자리에 새 깃털이 꽂혀 있는 특이한 형태이나 파손이 심한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불가로 판단한다.

## 마. 의결사항

○ 부결

### 조사보고서

□

#### ○ 형 식

부산 동래구 복천동 86호분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갑옷이다. 이 갑옷은 철제 판을 장방형으로 두드려 엮어 만들었는데, 몸체를 가리는 판갑옷[板甲], 목덜미를 가리는 경갑(脛甲), 좌우 목을 가리는 측경갑(側脛甲)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을 총칭하여 종장판갑(終長板甲)으로 명명하는 이유는 갑주를 이루는 철판들이 세로로 [從} 긴[長] 철판[板] 형태를 이어 만든 갑옷이기 때문이다. 종장판갑은 갑주의 한 종류이며 신체 중 머리와 팔을 제외한 상반신을 보호하는 무구이다. 무엇보다도 이 유물은 좌우 목가리개에 새 모양이 배치되어 있고, 양쪽 철판에는 새깃털 흔적이 보이는 것이 함께 출토된 다른 종장판갑과 다른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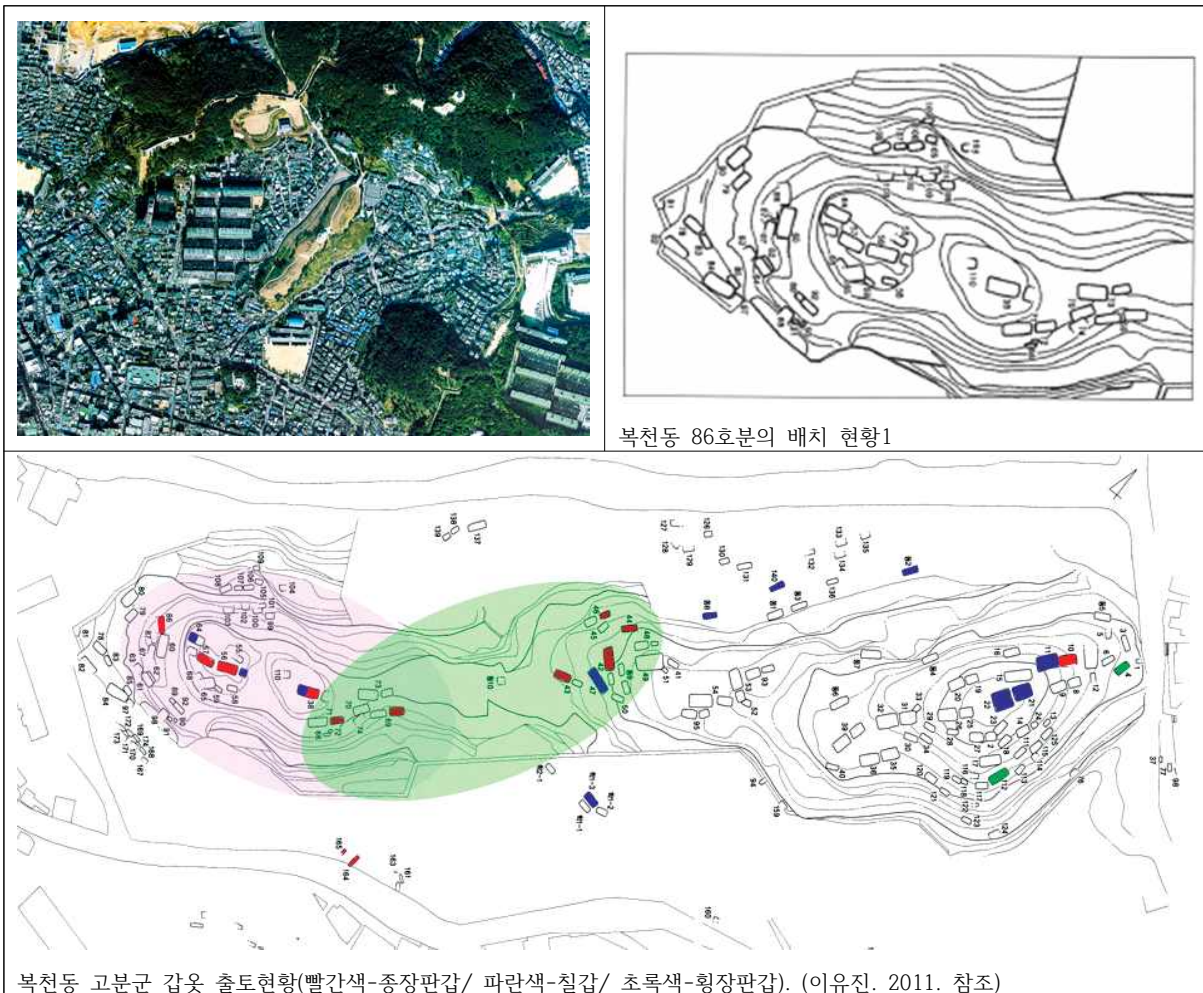
#### ○ 현 상

발굴 당시부터 갑옷의 오른쪽 앞 부분은 결실되어 상당부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

은 상태로 출토되었고, 보존처리를 거쳐 수지로 복원해 놓아 형태가 불안정한 편이며 표면의 철판이 계속 부식이 진행되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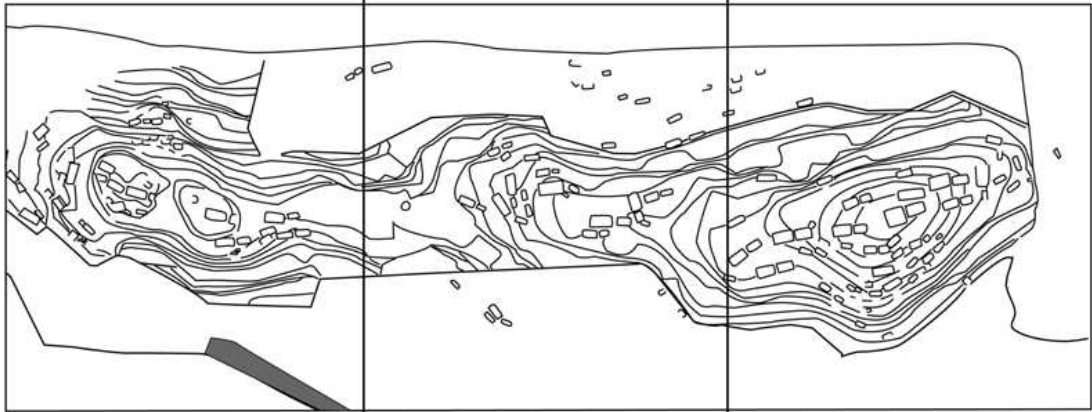
### ○ 내용 및 특징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에는 다수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어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그중 복천동 86호분은 1994년 3월부터 1995년 1월까지 복천박물관에서 실시한 제5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1995년 개보가 발표되었을 뿐 정식 발굴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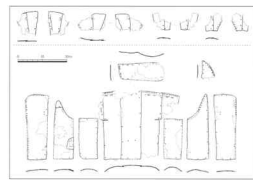


복천동 86호분은 기존에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고분의 반 정도가 이미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장방형의 목곽묘인데, 유물의 부장 상태로 볼 때, 기존에 발견된 60호분의 주곽이 아니라 부곽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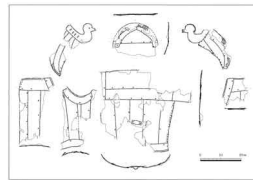
A군				B군				C군			
호분	종장판갑	투구	찰갑	호분	종장판갑	투구	찰갑	호분	종장판갑	투구	찰갑
38	○	○	○	42	○	○		2			○
56	○	○	○	43	○			8		○	○
57	○			44	○	○		10	○	○	○
64	○	○	○	46	○	○		15			○
69	○	○		47		○	○	16			○
71	○			93		○		21'22		○	○
86	○	○						34		○	○
								39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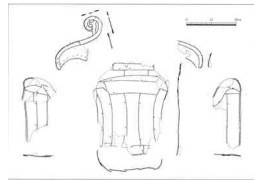
북천동 고분군 내 갑주의 출토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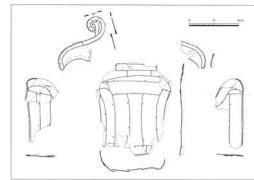
86호분㉓ 종장판갑



86호분㉔ 종장판갑



86호분㉕ 종장판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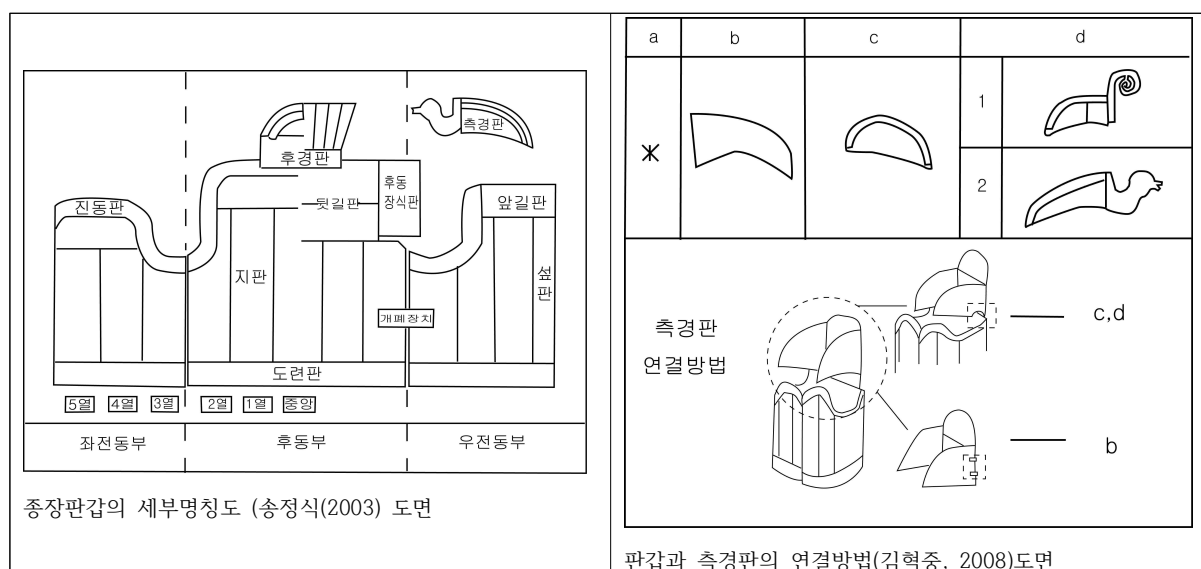
86호분㉖ 종장판갑

북천동 86호분에서는 목곽 내 2/3 정도의 유물이 부장되어 있었으며, 대호 2점과 통형기대 1점, 압형토기 1점 그리고 노형토기 6점이 3열로 놓이고 다수의 노형토기와 단경호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토기류 이외에 총4령의 철제 종장판갑이 발견되어 ㉓㉔㉕㉖로 구분되고 있다.

북천동 86호분에서 함께 출토된 4점의 종장판갑 중 본 유물은 북천동 86호분㉔에 해당되는 종장판갑 1령의 일괄품이다. 두께 2-3mm의 장방형 철판을 두드려서 여러 장으로 형태를 만든 후 세로로 연결하여 갑옷 형태를 만든 것이다. 이 갑옷은 지판은 좌측 섭판 1매, 좌전동부 2매, 좌협부 소형철판 3매, 후동부 5매가 잔존하여 총14매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가슴과 배를 가리는 갑옷과 목 뒤를 보호하는 경갑, 그리고 목 양쪽을 가리는 측경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발굴 당시부터 우협부 무판과 우전동부 2매 지판 등 오른쪽 앞 부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채 출토되었다. 현재는 보존처리를 거쳐 결실된 부분을 복원해 놓은 상태이다. 얇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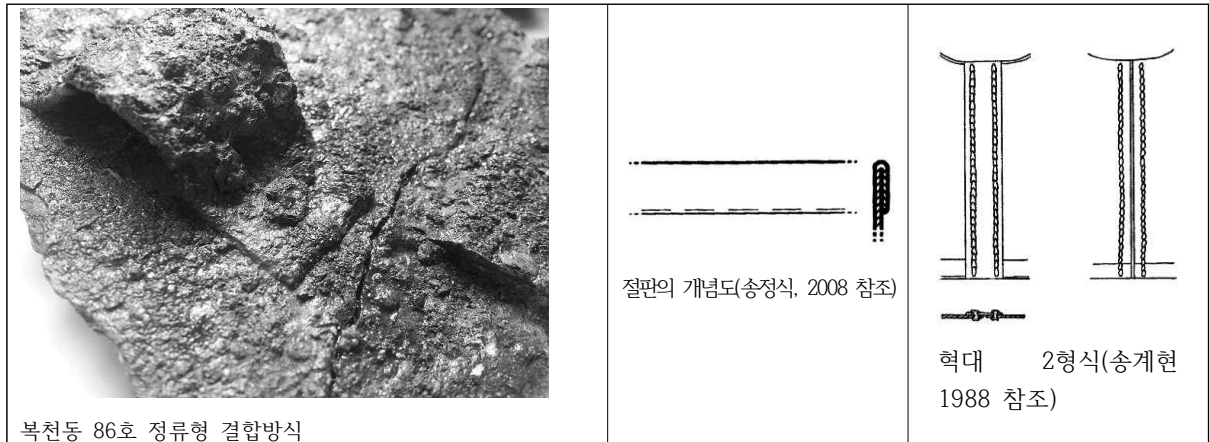
철판을 두드리고 원두정으로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당히 뛰어난 단조철기 제작 기술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부식이 매우 심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 점은 아쉽다.

본 갑옷은 함께 출토된 3점의 종장판갑과 달리 측경부 양쪽에 새 모양의 장식을 연결해 놓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그 양쪽 부분에 철판 2장을 덧대어 그 사이에 새 깃털을 꽂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지금은 깃털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종장판갑은 세부 구조가 복잡하여 여러 학자들이 한복의 구성에 따른 명칭을 도입하여 <종장판갑의 세부명칭>을 정하여 부르고 있다. 곧 목가리개에 해당되는 경갑과 좌우 목가리개에 해당되는 측경판과 갑옷에 해당되는 판갑으로 나뉜다. 종장판갑 4점이 출토된 복천동 86호 갑옷에서는 진동판이 없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재는 4점 갑옷의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복원하여 전시가 가능하게 복원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가 다소 바뀐 부분이 많다.

하지만 복천동 86호 종장판갑에서는 여러 가지 공예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복천동 86㉔ 종장판갑의 결합방식은 ‘정류(釘留)’이다. 이것은 못을 사용하여 두 철판의 가장자리를 겹쳐 대응하는 구멍을 통해 영구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후동부 중앙 지판의 1/2 지점에 폭 1.7cm의 소형 철판을 ‘Ω’자 형태로 겹쳐 구성하였다. 갑옷을 입고 벗기 편하게 개폐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갑옷에서는 철판의 복원 가장자리에 촘촘하게 구멍을 뚫고 가죽끈을 끼워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복천동 86호분의 4개 중 나머지 것에서도 확인되며, 복천동 10호분, 47호분의 복부 도련판, 57호분 등 다수에서 확인된다.



복천동 86㉔ 종장갑판의 복륜(覆輪)은 절판(折判)이다. 복륜이란 착장자가 철편의 가장자리에 닿아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다른 소재 혹은 철편 등으로 감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죽을 이용하여 철편의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고 감싸는 혁뉴(革紐)나 혁포(革包) 복륜이 있으나, 복천동 86호 갑옷은 별도의 가죽이나 철편을 사용하지 않고 철편 자체의 가장자리를 바깥쪽으로 접어 복륜효과를 낸 절판이라 할 수 있다.

복천동 86㉔ 종장갑판의 개폐장치는 혁대경첩류 2형식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개폐장치는 갑주를 쉽게 착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판갑에 주로 사용된다. 개폐장치는 금구의 소재에 따라 혁대를 사용한 것과 철제 금구를 사용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복천동 86호 갑옷은 철편을 맞대고 각각의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은 후 이를 덮는 하나의 긴 가죽을 대고 혁뉴를 연결한 혁대경첩류 2형식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법은 종장판갑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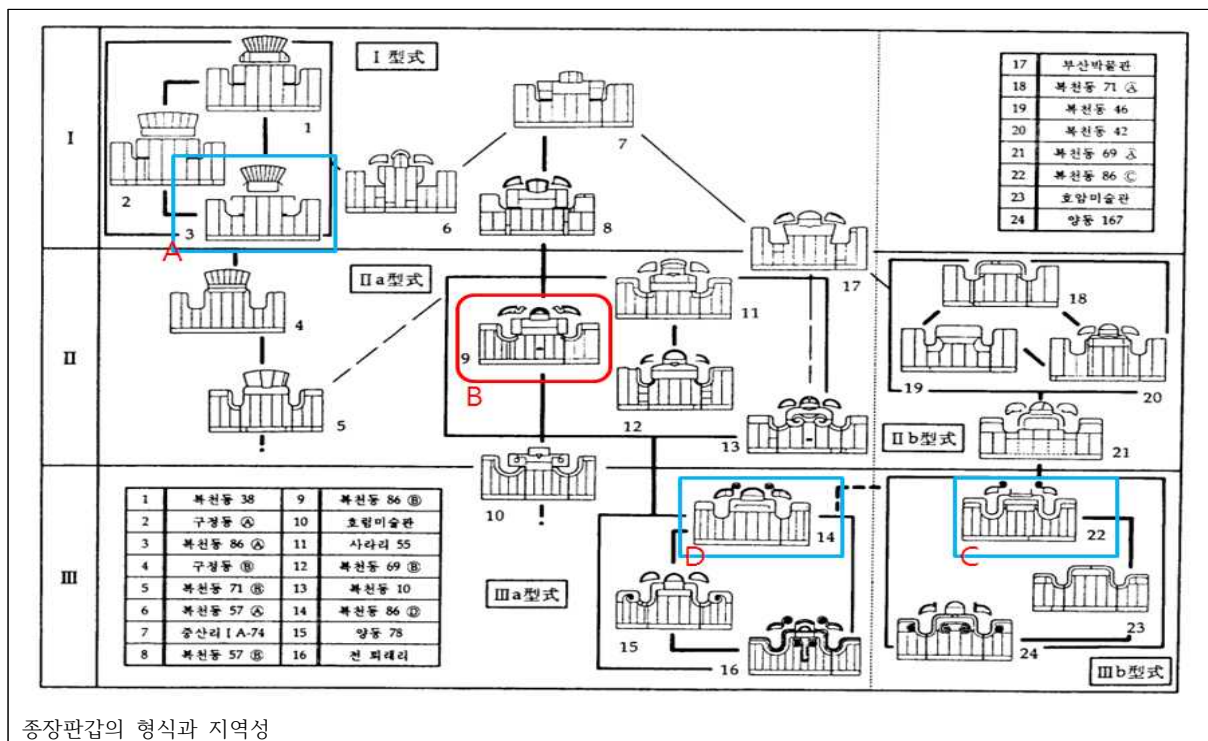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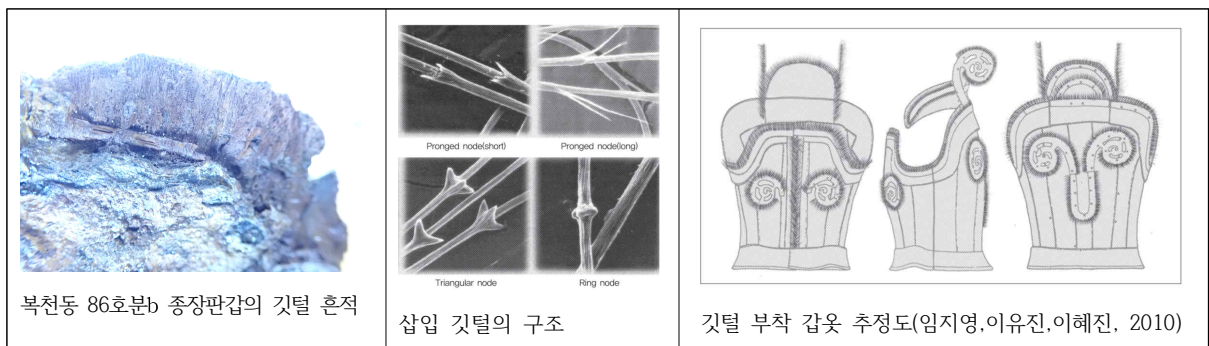
한편 복천동 86호b 갑옷의 경우 측경판에 새모양이 있고, 대성동 2호는 전동부에 꺾수문이 복천동 10호는 후동부에 꺾수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유물은 새를 표현하고 있으며 착장하였을 때 새의 부리가 등 뒤쪽의 정면을 응시하는 형태로서 매우 특이하다. 그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장식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처럼 복천동 86호분 종장판갑에서 특이한 것은 새깃털이 부착되었던 것이 확인되는 점이다. 측경판을 따라 새깃털을 꽂은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송정식, 이유진 2008) 그러면서 후경판이 후동부에 연접되어 있지만 철판을 가로로 붙여 제작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뒷길판이 있고 후동부 상연 형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둥근 형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진동판이 존재한다. 후동장식판을 갖춘 점이 특징이며, 측경판에 새모양 장식을 한 것도 있다.

한편 고대판은 총2매의 지판으로 구성되며 후동부 외면에 연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형 철판 위로 반원형 철판을 연접하고 그 위에 소형 철판을 반원형으로 고정하였다. 최근 이 유기질 흔적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결과 이곳에 깃털 등으로 장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종장판갑에 털을 부착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용도이거나 주술적이거나 미적인 장식 혹은 신분이나 집단의 구별 등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이처럼 복천동 86호분 출토 종장판갑 4점은 그동안 발견된 종장판갑의 형식 중 IIb 형식을 제외한 모든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본 대상유물인 86호분 b 갑옷유물은 IIa형식으로 새 모양의 깃판이 다른 갑옷과 다른 특징이다. 그러면서 뒷길판의 후동 지판의 상단 범위를 넘어 횡으로 연결시켜 소매판의 효과를 낸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영민, 1995, 「영남지방 판갑에 대한 일고찰」, 『古文化』 46輯,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김혁중, 2008, 「嶺南地方 4~5世紀 縱長板甲의 地域性 研究」, 慶北大學校 碩師學位 論文.  
박준현, 2013, 「갑주의 지판결합에 적용된 리벳 기법연구」, 『고고광장』12.  
송계현, 1988, 「三國時代 鐵製甲冑의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宋桂鉉·洪潛植·李海蓮, 1995, 「東萊 福泉洞 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 概報」, 『박물관연구논집』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송정식, 2003, 「伽倻·新羅의 縱長板甲 研究」, 釜山大學校 碩師學位論文.  
송정식·이유진, 2008, 「복천동 86호분 종장판갑의 구조와 특징」, 『박물관연구논집』 14, 부산시립박물관.  
송정식, 2009, 「삼국시대 판갑(板甲)의 특징과 성격」, 『학예지』 제16집.  
이성훈, 2012, 「三國時代 縱長板冑의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유진, 2011.9, 「종장판갑 부조의 다양성과 의미」, 『문화재』 Vol.44, No.3,  
장경숙, 1999, 「영남지방 출토 縱長板冑에 관한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 내용 및 특징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이어 만든 종장판갑옷과 목뒤를 가리는 경갑, 옆목을 가리는 측경갑 일습으로 이루어진 이 갑옷은 동래복천 86호분에서 출토되었으나 파손이 너무 심하고 대부분 복원된 것으로 원형을 찾기 어렵다. 이 갑옷의 특징은 옆목을 가리는 측경갑인데, 이는 방형철판위로 반원형철판을 연결하고 소형철판 2매를 반원형으로 고정하였다. 이 소형철판 안쪽에 깃털같은 유기질이 수착되어 있으나 남아있는 것은 없다. 이 판의 뒤 끝에 새를 장식하였다.

### ○ 문헌자료

- 송계현, 홍보식, 이해련, 1995, 「동래복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개보」 『박물관연구논집』 3, 부산박물관.



□

### ○ 현 상

철판의 부식으로 인하여 파손이 심하여 현재는 수지로 상당 부분이 복원되어 있는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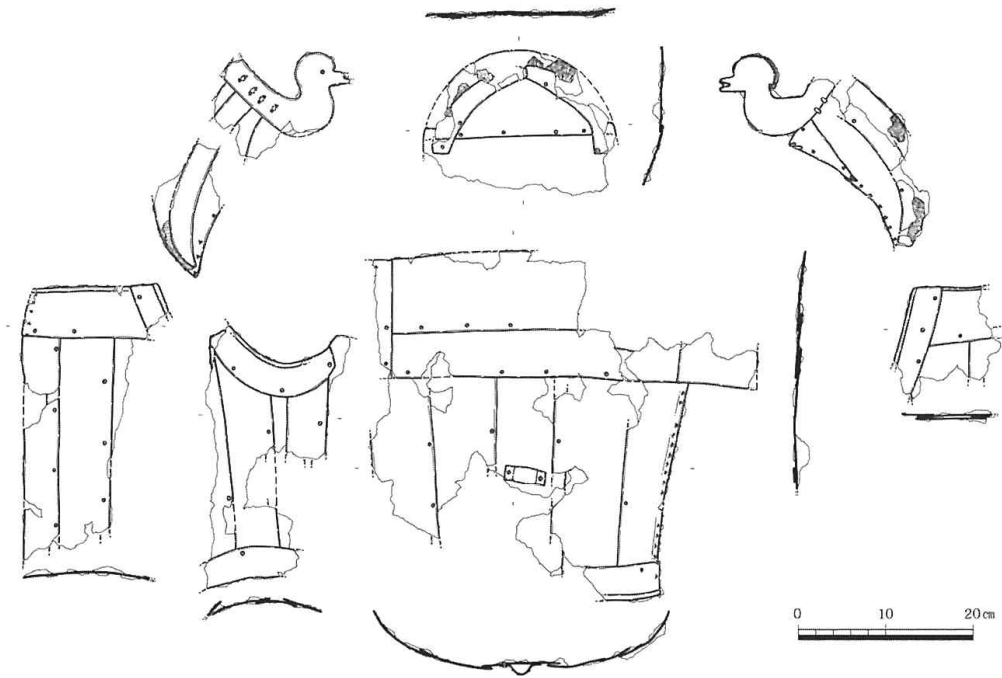
### ○ 내용 및 특징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고분군의 복천동 86호분에서 출토된 4개체분의 철제 종장판갑 중 1세트 일괄품이다. 두께 2-3mm의 장방형 철판 여러 장을 두드리서 형태를 만든 후 세로로 연결하여 갑옷 형태를 만든 것으로, 가슴과 배를 가리는 갑옷과 목 뒤를 보호하는 경갑, 그리고 목 양쪽을 가리는 측경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 당시에 이미 오른쪽 앞부분이 상당부분 결실된 상태였으나(도 2),<sup>17)</sup> 지금은 결실된 부분을 모두 복원해 놓았다. 함께 출토된 다른 3세트의 종장판갑과는 달리 측경부 양쪽에 새 모양의 장식을 연결해 놓았으며(도 3), 그 양쪽 부분에 철판 2장을 덧대어 그 사이에 새 깃털을 꽂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깃털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얇은 철판을 두드리고 원두정으로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상당히 뛰어난 단조철기 제작기술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으로 부식이 매우 심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은 점은 아쉽다. 현재는 파손된 부분을 모두 복원하여 전시가 가능하게 복원해 놓았기 때문에, 원래의 상태가 다소 바뀐 부분이 많다.



도 1. 복천동 86호 출토 철제 종장판갑.

17) 송정식 · 이유진, 2008, 「복천동 86호분 종장판갑의 구조와 특징 - 부산지역 정치체의 독자성에 대한 변론」, 『박물관연구논집』 14, 부산시립박물관, pp. 33-34.



도 2. 복천동 86호분 출토 종장판갑의 전개도. (송정식 · 이유진, 2008의 논문, p. 34, 도면 3에서 전재)



도 3. 측경판의 새 조형과 복원 상태.

## ○ 기 타

이 유물이 출토된 복천동 86호분은 1994년 3월부터 1995년 1월까지 복천박물관에서 실시한 복천동 제 5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고분으로, 아직까지 정식 발굴조사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 다만 1995년에 발굴개보가 발표되어, 개략적인 유구의 특징과 주요 유물이 소개되어 있는 상태이다.<sup>18)</sup> 이 고분은 기존에 있던 주곽으로 인하여 고분의 반 정도가 유실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목곽묘로 알려져 있다. 다만 유물 부장 상태로 볼 때, 주곽이 아니라 부곽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철제 종장관갑이 모두 네 점이 출토되었으며, 그 중에서 새 모양의 장식을 가진 것은 이 유물뿐이다.<sup>19)</sup>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었지만, 부산의 복천박물관에서 상설전시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이 종장관갑은 장방형 철판을 세로로 겹쳐 리벳으로 고정하여 만들었는데, 흉부와 배부를 보호하는 갑과 목뒤를 가리는 목가리개, 옆 목가리개[측경판] 일습으로 이루어졌다. 전동부 좌우는 각각 세로로 긴 철판 2매를 리벳으로 고정하여 만들었고, 좌·우 전동부 중앙부에 쇠판을 대어 마무리하였다. 옆구리[협부]는 2매의 철판으로 되었다. 갑의 하단부에는 도련판을 붙였다. 목가리개는 옆으로 긴 철판 위에 반원형 철판을 리벳으로 고정하였다. 옆 목가리개는 철판을 새 모양으로 재단하고, 2매의 철판을 붙이고, 위쪽 가장자리에 틈을 만들고 그곳에 새 깃털을 꽂은 흔적이 있다. 파손이 심하여, 수지로 복원된 부분이 많다.

## ○ 문헌자료

송계현, 홍보식, 이해련, 1995, 「동래복천동고분군 제5차 발굴조사개보」 『박물관연구논집』 3, 부산박물관.

## ○ 기 타

1994~1995년에 부산광역시립박물관에서 실시한 복천동고분군 제5차 조사의 86호분 출토되었고,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보관관리되고 있는 국가귀속매장문화재임

18) 宋桂鉉 · 洪潛植 · 李海蓮, 1995, 「東萊 福泉洞 古墳群 第5次 發掘調査 概報」, 『박물관연구논집』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pp. 27-30.

19) 복천동 86호분 출토 종장관갑들과 유구에 대해서는 송정식 · 이유진, 2008, 위의 글 참조.

## 11. 산청 하촌리 출토 도기 ‘이득지’명 양손잡이 완 (山淸 下村里 出土 陶器 ‘二得知’銘 把手附盥)

### 가. 검토사항

‘산청 하촌리 출토 도기 이득지명 양손잡이 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중요 매장문화재 국가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8차 소위원회(‘18.9.28)에서 지정조사 대상으로 추천된 ‘산청 하촌리 출토 도기 이득지명 양손잡이 완’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조사(‘19.6.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30일간 지정예고 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산청 하촌리 도기 ‘이득지명 양손잡이 완(山淸 下村里 出土 陶器 ‘二得知’銘 把手附盥)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 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점
- 규 격 : 높이 8.7cm. 입지름 15.1cm. 바닥지름 11.5cm. 구연 두께 3.8mm.  
손잡이 포함 최대폭 20.2cm. 손잡이 높이 3.67cm.  
‘이득지(二得知)’ 글자 크기 : 전체 길이 4.38cm. 폭 2.8cm.
- 재 질 : 도기
- 형 식 : 바닥이 평평하고 동체 양쪽에 두 개의 손잡이를 가진 회백색 도기
- 조성연대 : 6세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산청 하촌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 토기는 작고 낮은 완 형식에 손잡이가 달린 회백색 도기로서 내부에 ‘이득지’라는 음각의 명문이 새겨져 주목 받은 토기이다.

이 유물은 대가야 지역에서 출토되었으며 명문이 있다는 점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으나, 낮고 넓적한 그릇의 형식이나 3단 파상문의 양식 등은 대가야 계통의 일반적인 토기 형식에 속하여 조형적 가치는 높지 않다. 토기를 제작할 때 모래질이 섞인 점토에 회전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하고 도기질로 번조한 제작기술 또한 시대의 보편적인 기술로 기술적 가치도 일반적이다.

이처럼 이 토기는 토기의 형태나 문양의 조형성이 평범한 데다가 발굴 당시부터 구연부가 훼손되어 온전하지 못하다는 점, 명문의 글씨체나 필획의 양식이 그다지 우수하지 않고 그 내용이 가야시대를 새롭게 이해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1. 이 이득지(二得知)명 파수부완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에 위치한 산청하촌리 유적 I 지구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토기이다.
2. 토기는 도질소성의 회색 파수부완으로 평저이며 구연부 일부가 훼손되었다. 동체부 외면에 3줄의 침선으로 3구분하였고, 구간안에 9줄의 파상문을 새겼다.
3. 토기 양쪽에 아래위로 약간 긴 반원형의 손잡이를 붙였다.
4. 글자는 동체 안쪽에 나무송곳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위에서 아래로 ‘二得知’라고 새겼는데, 균형은 약간 흐트러졌다.
4. 유물의 규모는 높이 8.7cm, 구경 15.1cm, 저경 11.5cm, 이득지 글자의 길이 4.38cm, 폭 2.8cm이다.
5. 이 이득지명 파수부완은 출토지 명확하고 명문이 있는 토기로 시대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파수부완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아주 평범한 토기이며, 이득지 명문이 매우 중요하나 그 의미가 인명인지 직명인지 등에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산청 하촌리 유적에서 출토된 이득지명 파수부완은 가야 토기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음각의 한자 명문을 가진 것으로 주목되는 작품이다. 거친 모래질 태토로 만들어 번조한 도질토기로서, 토기의 형태나 양식은 대가야계 토기의 일반적 형식에

속하며 그다지 뛰어나거나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두 개의 손잡이를 가진 파수부완으로 명문이 있다는 점은 주목되지만, 명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글자의 판독도 사람에 따라 “得”, 혹은 “得” 등으로 이견이 있다. 또한 글씨의 서체나 필획의 양식이 그다지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동체 안쪽에 거꾸로 쓰인 상태로 보아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인명, 혹은 직명(職名) 등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한편, 글자가 쓰여진 부분 위쪽의 구연부가 대부분 파손이 되어 그다지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제작 수준이나 양식 등이 평범하고 현존 상태도 온전하지 못하며, 명문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이 토기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이득지(二得知)명 파수부완은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에 위치한 산청 하촌리 유적 I 지구 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6세기 중엽의 대가야 양식 토기이다. 하촌리유적은 경호강이 곡류하는 지역에 형성된 충적지에 조성되었다.

이득지 명이 매우 중요하나 그 의미가 인명인지 직명인지 등에 논란이 있지만, 합천 저포리 E지구 4호분에서 출토한 “下部私利”명 호 및 충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대왕”명 유개장경호와 더불어 가야 당대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야의 서체와 한자 보급 양상 등 가야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수부완은 가야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아주 평범한 토기이며, 아가리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 완전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불가로 판단한다.

## 마. 의결사항

### ○ 부결

조사보고서



### ○ 형 식

물레를 회전시켜 구연부가 넓고 바닥은 편평하며 밋밋한 몸체로 성형한 크기가

작은 완 형식의 도기 그릇으로 몸체 양쪽에 두 개의 손잡이를 붙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몸체의 내부에는 ‘이득지(二得知)’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 몸체의 외부에는 9줄의 파상문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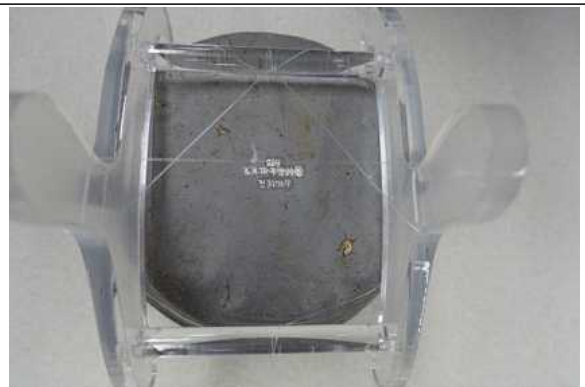
산청 출토 파수부완의 평면



파수부완의 측면



파수부완을 위에서 본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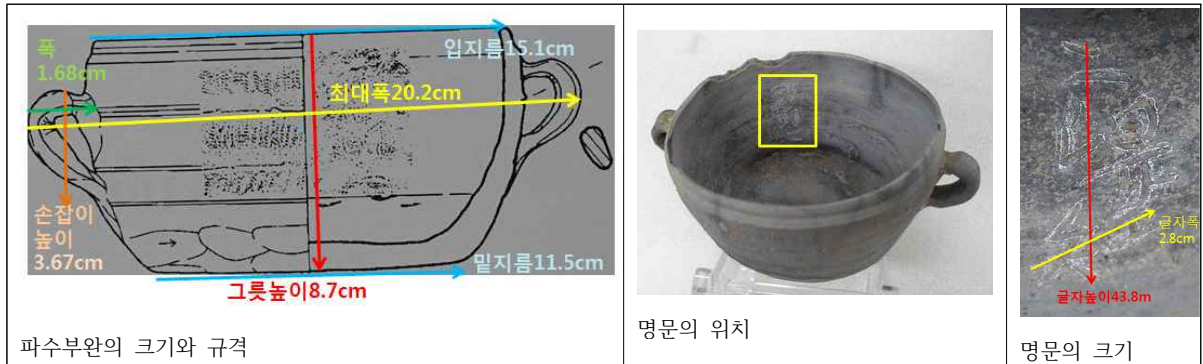


파수부완의 바닥 부분

## ○ 현 상

회백색의 정선된 점토 안에 가는 모래 알갱이[細沙粒]가 들어있는 태토를 사용하였고, 성형은 물레 위에 올려 놓고 회전을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물의 안팎으로 물레자국의 흔적이 잘 보인다. 이 그릇은 몸체의 좌우 양쪽에 손잡이를 단 것이 특징이다. 그릇은 전체적으로 높이 8.7cm로 낮은 편이다. 너비는 밑지름 11.5cm이고 입지름 15.1cm로 구연부가 조금 넓은 편이고, 손잡이까지 합친 그릇의 최대폭은 20.2cm이다. 전체적으로 낮고 넓으면서 양쪽으로는 높이 3.67cm에 폭 1.68cm의 손잡이를 붙인 작은 완(盥) 형식의 그릇이다. 구연부는 두께 3.8mm로 얇으며 끝 부분의 9.9mm 정도가 안쪽으로 약간 오무라들게 처리되었으며, 구연부의 일부는 출토 당시부터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릇의 외곽은 3단의 문양대와 문양이 없는 바닥까지 총 4단으로 구분되어 있다. 3단의 문양대의 경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차 높이가 낮아져 1단은 높이 19.8mm, 2단은 19.2mm, 3단은 13.1mm로 제작되어 있다. 여기에는 9줄의 뾰족한 도구를 한꺼번에 연결하여 물레를 돌리면서 위아래로 움직여 새긴 파상문(波狀文)이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다.

그릇의 내부에는 ‘이득지(二得知)’라는 글씨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글씨의 크기는 전체 높이 43.8cm, ‘知’자의 좌우 글자폭 2.8cm이며, 바닥쪽에서부터 구연부를 향해 종방향으로 거꾸로 써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자는 쓴 솜씨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편이다.

### ○ 내용 및 특징

이 토기는 2008-2009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경남 산청군 하촌유적 IB지구의 삼국시대 7호 주거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발굴 당시부터 가야시대 유물 중에서는 드물게 명문이 새겨진 토기로 주목 받았다. 명문은 동체 안쪽에 나무로 만든 송곳과 같이 뾰족한 도구로 ‘二得知’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때문에 이 토기는 명문이 새겨진 가야토기로 이름이 높다. 그러나 이 ‘이득지’라는 명문으로 가야시대에 의미 있는 직명이나 행사 등의 특별한 내용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다만 토기를 제작한 장인의 인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아직 가야시대에 정확히 어떤 의미로 새겼는지를 파악하거나 그 내용을 밝히기도 쉽지 않아 논란이 있다.

명문이 새겨졌다는 것 이외에 낮고 넓적한 완 형식의 몸통의 바깥면에 좌우 양쪽에 반원형의 손잡이를 붙였고, 몸통의 바깥쪽을 3단으로 구획하고 뾰족한 침선으로 9줄 파상문을 새겨 넣었으며, 바닥 가까운 면은 예세 깎기로 다듬었다. 구연부가 일부 훼손된 것 이외에는 회전 물레로 형태를 만들고 회백색 도기로 번조한 대가야 토기의 한 종류이다.



### ○ 참고문헌

- 박은지, 2012, 『5-6세기 산청 함양지역의 토기 양식 변화』.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山淸 下村里遺蹟 - I지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박종익, 2011, 「4. 하촌리유적 출토 대가야토기속의 인명 ‘이득지(二得知)’에 대한 고찰,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山淸 下村里遺蹟 - III지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 내용 및 특징

이 토기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I 지구 7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유물로서 정식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명문토기로서 의미가 큰 유물이다. 밑이 평평한 저경 11.5cm 높이 8.7cm의 동체부 안쪽에 뾰족한 도구로 이득지(二得知)라고 쓴 토기이다. 그러나 구연부 일부가 훼손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없는 평평한 토기이며, 이득지 또한 인명인지 직명인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는 토기이다.

### ○ 문헌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 하촌리유적 - I 지구-』.



### ○ 현 상

회백색의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로 만들고 번조한 토기로, 구연부가 다소 파손된 상태이다(도 1, 2). 동체 양 측면에 각각 귀가 하나씩 달려 있으며, 동체 부분은 3줄의 음각선을 돌려서 4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 파상문을 새겼다. 그다지 크지 않은 자그마한 토기이다. 명문은 동체 안쪽 부분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데(도 2, 3), 바닥부분부터 구연부 방향으로 종방향으로 써서 그냥 보면 거꾸로 쓴 것 처럼 보인다. 글자의 형태는 그다지 뛰어난 솜씨가 아니며, 획도 다소 불분명하다.



도 1. 이득지명 파수부완 측면.



도 2. 이득지명 파수부완의 등체 내부 명문 및 파손된 구연부.

### ○ 내용 및 특징

이 토기는 2008-2009년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IB지구 삼국시대 7호 주거지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sup>20)</sup> 가야시대 유물 중에서는 드물게 명문이 새겨진 토기로 주목된다. 명문은 몸통 안쪽에 뾰족한 도구로 새겼으며, “득”자의 경우에는 “得”, 혹은 “溥”으로 판독된다.<sup>21)</sup> 명문의 내용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토기를 제작한 인명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 ○ 문헌자료

명문 자료 이외의 별도의 문헌자료 없음. 발굴보고서 및 명문에 대한 논의는 각주 1과 2를 참조.

### ○ 기 타

이 토기는 2008-2009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산청-수동 간 국도확장공사에 따라 발굴조사된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유적에서 발굴된 것이다. 이후 국가귀속이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루어져서 국립진주박물관의 소장품이 되었다. 현재는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

### ○ 내용 및 특징

이 토기는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 I 지구 7호주거지에서 출토된 6세기 중엽의 대가야 양식 토기로 밑이 평평한 저경 11.5cm 높이 8.7cm의 몸통 안쪽 면에 뾰족한 도구로 “二得知”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몸통 바깥면에 대칭되게 반원형의 손잡이가 부착되었다. 몸통 바깥면은 3단에 걸쳐 물결무늬가 배풀어져 있고, 바닥 가까

2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山淸 下村里遺蹟 - I지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p. 212.

21) 박종익, 2011, 「4. 하촌리유적 출토 대가야토기속의 인명 ‘이득지(二得知)’에 대한 고찰」, 『산청~수동 국도건설공사 구간 내 山淸 下村里遺蹟 - III지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pp. 186-190.

이 표면에는 예새깍기가 되었다. 구연부가 일부 훼손되어 있고 일반적인 대가야 양식 토기의 한 종류이고, 이득지 또한 인명인지 직명인지 불분명하여 논란이 있다.

○ 문헌자료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산청 하촌리유적 - I 지구-』.

○ 기 타

이 이득지(二得知)명 파수부완은 2009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실시한 산청 생초면 하촌리유적 I 지구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었고, 현재 국가귀속매장문화재로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음.

# 보고 사항



## 12. ‘근대동산’ 국가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자문회의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근대동산’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근대 동산’ 국가등록문화재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 탁월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재평가하여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범주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공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 드리는 것임.

※ 제4차 동산분과위원회에 관련 추진계획 보고완료(‘19.6.13.)

### 다. 자문회의 개요

- 목 적 : 사업 추진 타당성 및 방향, 범위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일시/장소 : 2019. 7. 15.(월), 14:00/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동산·근대분과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재청 직원 등 총 17명

### 라. 주요결과

#### (공통의견)

- 2001년 처음 시행된 근대 등록문화재 제도의 운영시기와 등록된 동산문화재의 수량(‘19.7월 현재 278건) 등에 비추어 보물 지정은 문화재의 가치 재발견, 선제적 지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단, 보물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봄.

- 시기를 초월해 보물지정의 명확하고 탁월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이의가 없는 작품이어야 함
- 근대 등록문화재의 취지와 등록현황 등을 감안할 때, 국보, 보물 지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조형적, 예술적 가치’보다는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부각되어야 함
- 한국사 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사건 등과 관련된 측면 역시 고려 필요
- 인물의 경우 친일행적 등 향후 확인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분야별 의견)

- 등록문화재 중 불교회화 및 조각, 공예 분야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보물로 지정할 대상은 희소하며, 예술적 측면에서도 탁월성이 미흡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보물 지정이 시급하지 않음
- 역사성과 학술성 또한 중요하지만 '근대성'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우리나라 근대성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작품 등은 조사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지정조사 대상은 몇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전적류가 해당
  - **임시정부 관련자료**(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등), **한글**(말모이 원고 등), **독립운동**(독립운동가들의 선서문, 일기자료 등), **태극기**(‘不遠復’ 태극기 등)

### (종합의견)

- 대한민국의 역사에 비추어 위상이 크고 희소성이 있는 대상으로 범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금번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회의에서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 선정 필요
  - ☞ 2차 자문회의에서 검토

### 마. 향후 계획(안)

- 2차 자문회의 실시('19.9월)
- 관계기관 등 신청 요청('19.9월)
- 동산분과 및 근대분과 합동소위원회 지정조사 대상 선정('19.12월)
  - \* 제6차 동산분과위원회에서 2차 자문회의 결과 및 소위원회 구성(안) 사전 보고('19.10월 예정)

###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13.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보고

#### 가. 보고사항

일반국민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사전예측성 및 정책 신뢰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현행 문화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범위」의 개선 대책으로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50년 이상 물건에 대하여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일반동산문화재 감정지표>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추진경과

- 국무총리실 법규 Negative 규제화 과제 선정('18.07.25.)

##### <문화재 시행규칙 별표 2> 개선 요구

- 법령 상 일반동산문화재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그 이외의 모든 물건을 일반동산문화재로 규정, 국외반출 제한 대상으로 하여(Positive 형식),
- 이에 발생하는 과도한 국외반출 제한규제를 해소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법령 상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의 명확화 필요성 제기

- 일반동산문화재 적용 기준 마련 내·외부 전문가 검토회의 실시(5회, '18. 8 ~ '19. 7)
- 「문화재 국외전시 및 홍보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19.4.~'19.10.)
-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 실시('19.6.26.)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에 대한 관계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라. 주요내용

### ○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방안

#### ① Positive 규제 방식의 Negative화

- (현행) 일반동산문화재의 분야별 제외기준이 단순 나열식으로 표기되어,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동산문화재 대상 구분의 모호성 문제 발생 <붙임 2>
- (개선) 일반동산문화재를 미술, 전적, 생활과학, 자연사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세부 감정기준표를 정립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 <붙임 1>

#### ② 각 분야별 세부 감정기준 정립

- (현행) 일반동산문화재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을 단순 열거식으로 표현
- (개선) 각 분야별 감정을 위한 공통지표, 세부지표, 별도지표를 마련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될 수 있는 충족조건을 마련

### ○ 법령개정 기대효과

-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명확화로 문화재 감정 편차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사전예측성 및 문화재 정책의 신뢰성 제고
- 일반동산문화재와 보통 예술품·골동품과의 명확한 구분으로 건전한 문화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예술품·골동품 매매업의 활성화 유도
- 그 간 제작된 지 5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국외 반출이 어려웠던 보통 예술품·골동품(비문화재)의 자유로운 국외 반출을 통해, 우리 문화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마. 향후계획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19. 8월)
- 관계부처 의견조회, 법제처 법안심사, 입법 예고 등('19. 8~11월)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9. 12월 예정)

## 바. 의결사항

### ○ 원안접수

- 붙임 1.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 범위>  
2. (개정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일반동산문화재 구체적 범위>

<붙임 1 :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안>

##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b>미술 분야</b>			
<b>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b>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형태·기법·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역사적 인물·사건과의 관련성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구성, 의장,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성이 반영된 것
<b>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b>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b>&lt;적용예시&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화류 :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민화 등), 종교회화(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화 등), 근대회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등</li> <li>▪ 조각류 : 전통조각(암벽조각, 토우, 능묘조각, 동물조각, 장승 등), 종교조각(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무속조각 등), 근대조각 등</li> <li>▪ 공예류 : 금속공예, 목·칠공예, 도·토공예(청자, 백자, 분청, 토기 등), 옥석공예, 유리공예, 섬유공예, 짚풀공예 등 예술공예품 및 생활공예품 등</li> <li>▪ 서예류 : 왕실 및 일반 개인 서예작품 등</li> <li>▪ 석조류 : 석탑, 석등, 당간지주, 석비 등</li> </ul>			

## 전적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장본이 희소하여 가치가 큰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작자, 제작시기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장황, 서체 등 제작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 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 <적용예시>

- 전적류 :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등
- 문서류 : 왕실문서, 관부문서, 일반 개인문서, 그 외 사찰, 향교·서원 문서 등
- 서각류 : 현판류, 금석각류(신도비, 선정비, 묘비, 장생표 등),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판목류, 활자류 등

## 생활과학 분야

1. 공통지표 ①, ②, ③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④, ⑤, ⑥, ⑦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3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다만 분리가 가능한 유물은 분리된 형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③	제 작 연 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것
세부 지표	④	희소성	형태·기술·재료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⑤	명확성	관련 기록 등에 의하여 제작목적, 출토지(또는 제작지), 쓰임새 등이 분명한 것
	⑥	특이성	제작 당시의 신기술(신기법) 또는 신소재로 만들어지는 등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⑦	시대성	제작 당시의 대표적인 시대성이 반영된 것

2. 공통지표 및 세부지표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음 별도지표 ⑧, ⑨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별도 지표	⑧	외 국 유 물	국내에서 출토되었거나 상당기간 전해져온 외국 제작 유물 중 우리나라 역사·예술·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 것
	⑨	기 타	유물의 형태가 일부분에 불과하더라도 해당 부분의 명문, 문양, 제작 양식 등에 의해 문화재적 가치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것

### <적용예시>

- 고고자료 :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청동기, 철기 등
- 민속자료 : 생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공예기술 자료(직조용구, 도자 공예용구 등), 놀이·유희 자료(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놀이기구 등) 등
- 과학기술자료 : 산업기술 자료(수렵, 어업, 농업, 공업 등), 천문지리 자료, 계측교역기술 자료, 인쇄 기술 자료 및 방송통신 자료, 의료용구, 운송용구, 무기류, 스포츠 자료 등

## 자연사 분야

공통지표 ①, ② 항목 모두를 충족하고, 세부지표 ③, ④, ⑤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일반동산문화재로 확인한다.

구분	연번	기준	적용 대상
공통 지표	①	문화재 가 치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 · 4가지 가치항목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문화재 상 태	유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하나의 개체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해당 종의 특징적인 정보를 다수 지닌 부위(예 : 두개골)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경우, 전체(예 : 전신) 대비 보존비율에 관계없이 개체로 확인한다.
세부 지표	③	희소성	종류 · 서식지 · 형태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가치를 지닌 유물이 희소한 것
	④	특이성	표본 제작, 지질 형성 등 구성방식에 특이성이 있어 가치가 큰 것
	⑤	시대성 · 지역성	특정 시대 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

### <적용예시>

- 동물류 :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해양동물 등)의 박제(가박제 포함), 골격(인골류는 선사유적지나 무덤에서 출토된 인류의 뼈, 손톱 등 인체 구성물에 한함), 건조 · 액침표본 등
- 식물류 : 식물(조류, 이끼류, 양치식물, 겉씨식물, 속씨식물 등)의 꽃(화분), 열매, 종자, 잎, 건조 · 액침표본 등
- 지질류 : 화석, 동굴생성물(종유석, 석순, 석주 등), 퇴적구조(연흔, 우흔, 건열 등), 광물, 암석, 운석 등

<붙임 2 : 시행규칙 (별표 2) 개정전>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제42조 관련)

보존 대상			제외 대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세분류)	
전통 회화	산수화	산수화 등	○ 파손 및 훼손이 심하고 보존 상태가 나쁘거나 과도하게 보수되어(먹이나 채색을 넓게 덧칠한 경우 등) 작품의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 ○ 다작(多作)으로 인해 동일한 성격과 가치를 가진 작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 ○ 작가 또는 제작연대가 불분명하고 제작기법이 졸렬하며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인물화	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풍속화 등	
	기록화	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조화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등	
	사군자	매도, 난도, 국도, 죽도 등	
	민화	민화, 문자도 등	
근대 회화	서양화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	사진·삽도 등	
불교 회화	괘불화	석가불도(영산회도),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	여래도(석가불도, 영산회도, 아미타불회도, 아미타래영도, 관경변상도, 염불왕생첩경도, 미륵하생경변상도, 약사불회도, 비로자나불회도, 삼세불회도, 삼신불회도, 53불도, 천불도 등), 보살도(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삼장보살도 등), 나한·조사도(16·500나한도, 조사도, 국사도, 영정 등), 신중도(제석·천룡도, 사천왕도, 금강도, 산신도 등), 기타(감로도, 시왕도, 현왕도, 칠성도, 조왕도 등)	
	경전화	사경화, 판경화 등	
	벽화	석벽화, 토벽화, 판벽화 등	

종교 회화	유교회화	유교회화	
	무속화	무속화	
일반 조각	암벽조각	암각화, 각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얼굴, 손, 다리 등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파손·결실되었거나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li> <li>○다량 제작으로 동일한 것의 수량이 많이 남아 있어서 대체될 수 있는 것</li> <li>○조형성(造形性)이나 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형태, 양식, 재료 등의 특징 또는 지역적인 특색 등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li> <li>○조각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li> <li>○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조형, 조각기법 등에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중요 작가나 유파(流波)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은 제외]</li> <li>○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li> </ul>
	토우	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	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상	
	능묘조각	석인(문인상, 무인상), 석수(사자, 호랑이, 양, 말, 기린, 코끼리, 해태 등)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돌하르방 등	
불교 조각	여래	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	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गरुड인가 등	
	나한	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	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	성문, 선재동자, 동자상 등	
근대 조각	인물조각	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	불교조각, 신상(산신상, 성모상), 성인상 등	
석조물	탑	석탑, 전탑, 모전석탑, 다보탑, 보협인탑, 사리탑, 4사자석탑, 청석탑, 오륜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보수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명문이나 출토지가 분명한 것은 제외)</li> <li>○다량 제작으로 수량이 많이 남아 있는 것(시대양식을 반영하는 것은 제외)</li> <li>○제작기법이 졸렬하고 특이성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li> </ul>
	부도	팔각원당형부도, 석종형부도 등	
	석등	방형석등, 육각석등, 팔각석등 등	
	당간지주	당간, 지주 등	
	석비	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장방형석조, 원형석조 등	



	기타	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 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선돌),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돌기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조의 단편(명문이 있는 것 제외)</li> <li>○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li> </ul>
일반 공예	목공예	가구류(장, 농, 반닫이, 서안, 탁자, 문갑, 경대, 고비, 찬장, 반, 돈궤, 가계수리, 경상, 관대함, 반질고리, 벼루집, 앞닫이, 붓통, 문서함, 평상, 뒤주, 교의, 주독, 제탁, 향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식·조각의 손상, 문양의 마모, 색감의 변질, 표면의 부식·박락 등 훼손·파손이 심하거나 중요 부분이 절반 이상 결실 또는 대용재(代用財)로 교체되어 원형을 거의 잃어버린 것(제작기법 등이 특이한 것은 제외)</li> <li>○다수가 현전하는 것이거나 명문 또는 특이한 문양·기법이 없어 역사적, 학술적, 미술공예적 가치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것[중요 인물의 묘장 출토품, 전세품(傳世品) 및 복장유물(腹藏遺物)은 제외]</li> <li>○근대에 대량 생산된 것(조선미술전람회 당선작, 중요무형문화재의 초기작은 제외)</li> <li>○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li> </ul>
	칠공예	칠공예품(상, 상자, 궤, 함, 그릇, 붓통 등), 가구류, 기명류(함지박, 발우, 쟁반, 그릇, 완, 수저 등)	
	화각공예	가구류(장, 함, 궤 등), 침선도구류(자, 실패), 기타(선추, 붓 등)	
	죽공예	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	화문석 등	
	금속공예	청동용구(시저, 병, 대접, 접시, 완, 반, 합 등)	
		장신구(관모, 요대, 대구,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뒤꽂이, 비녀, 향갑, 떨잠, 동곳, 노리개 등)	
		생활용구(촛대, 거울, 향로, 화로 등)	
		무속구(거울, 방울 등)	
		마구(말안장, 방울, 행엽, 등자 등)	
		무구(검, 창, 방패, 총통, 완구 등)	
	옥석공예	옥공예(패식, 옥로, 장신구, 향로, 인장 등)	
		석공예(화로, 연초함, 촛대 등)	
복식공예	의복, 제화, 안경 등		
	관모 등		
근대공예	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 공예	의식법구	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	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	불단, 단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	사리호(병), 사리함 등		
	복장품	후령통 등		
	기타	석장, 업경대, 패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 공예	제례용구	제기, 향로, 명기 등		
도자 공예	토·도기	도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와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문이나 독특한 문양이 없고, 심하게 파손되어 복원이 어렵거나 대용재를 절반 이상 사용하여 복원한 것</li> <li>○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명문이나 문양은 없지만 출토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제외)</li> <li>○ 도자기편(독특한 문양이나 명문이 있는 것 또는 출토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다량 수집한 것은 제외)</li> <li>○ 원형을 상실한 재번조품(再燔造品)(산화가 심하지 않아 원형을 복원한 것은 제외)</li> <li>○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li> </ul>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자기	청자(완,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베개, 의자, 연적, 필가, 장구, 타일, 상형, 향로, 불상, 승상, 변기 등)		
		백자(완, 발, 대접, 접시, 호, 병, 주자, 합, 잔탁, 반, 목호, 연적, 필가, 필세, 필통, 담뱃대, 떡살, 명기, 묘지, 장군, 숟가락, 양념단지, 촛대, 베갯모, 인장, 타구, 장기, 해시계, 추, 고드랫돌, 애자, 문진 등)		
		분청자기(발, 대접, 접시, 호, 병, 장군, 반, 합, 벼루, 묘지 등)		
		석간주(호, 병 등)		
		흑유자(호, 병, 주자, 훈주 등)		
		잡유자(호, 병, 주자 등)		
		고본(친필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훼손 또는 낙질도(洛帙度)가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유일고본(唯一稿本) 및 일기, 등록류와 명인의 지기(識記)나 장서인(藏書印)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li> </ul>
		사경(묵서, 금니, 은니 등)		
일기류(일기 등)				
등록류(등록 등)				
사본류				
목판본	대장경(초조, 재조 등), 교장			
	간경도감본(한문본, 언해본 등)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사본의 원본이 현존하는 전적의 복사본 중 그 복사자가 역사상 명인이 아닌 것</li> <li>○ 국내 소장의 완본이 공공기관 등에 있어 재확보가 가능하고 현존본이 많이 전래되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다만, 명인의 지기나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제외)</li> <li>○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복사본) 또는 현대작</li> </ul>
	활자본	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류	국왕문서	책류(옥책, 죽책, 시책, 애책 등)	
		교령류(교서, 유서, 유지, 왕지, 교지, 교첩, 녹패, 녹권, 공신회맹문, 비답, 봉서, 은사장, 율음 등)	
		조칙류(조, 칙, 고명 등)	
		표전류(전문, 표문 등)	
	왕실문서	궁방류(내지, 자지, 영지, 영서, 수본, 하답, 도서 패자, 도장허급문 등)	
	관부문서	소차장계류(소초, 차자, 상소, 계본, 계목, 장계, 서계, 초고 등)	
		첩관통보류(차첩, 관문, 첩보, 첩정, 해유문서, 서목, 수본, 고목, 감결, 전령, 망기 등)	
		증빙류[표문, 노문(路文), 입안, 입지, 제음, 완문, 완의, 입의, 자문, 조홀첩, 절목 등]	
		단자류(사은단자, 진상단자, 표편단자, 서경단자, 시호망단자, 문안물종단자 등)	
		호적류(준호구, 호구단자, 호적, 민적부 등)	
	사인문서	소지류(소지, 상서, 의송, 등장, 상언, 발괄, 단자, 청원서 등)	
		시권류(시권, 방목 등)	
		문기류(입후성문, 노비, 토지, 가옥, 어장, 염분, 공인, 기인, 경주인, 도장, 전당문기, 패지, 수표, 수기 등)	
분재기류(분금문기, 허여문기, 별급문기, 화회문기, 유서 등)			

		서간·통고류(혼서, 통문, 회문, 간찰 등)	
		치부·기록류(추수기, 도조기, 불망기 등)	
		시문류(제문, 만사, 축문 등)	
	사찰문서	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향교문서	좌목(선생안, 청금안, 재임안, 접사안 등)	
		소지류(소지, 등장 등)	
		증빙류(절목, 입의 등)	
		기문류(의례, 흘기, 제문, 축문, 상량문 등)	
		통보류(통문, 회문 등)	
		치부·기록류(전답안, 노비안 등)	
서간류	서예	서예(왕실, 일반 등)	○ 훼손이 심하여 원형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없는 것
	간독류	간독(간찰, 필첩, 유묵 등)	○ 발신자나 수신자 및 내용 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적은 일반인의 서간
	시고류	시고(별시, 하시 등)	○ 다시 고쳐 써서 서적의 자양(字樣)에 오손이 심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것
	탁본류	탁본 등	○ 친필로 쓰이지 않고 모서된 것 ○ 필자 또는 유래를 알 수 없고 서예사적 가치가 없는 현판류 또는 주련류 ○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단자류 또는 수록류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고문서류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본(영인본·복사본) 또는 현대작
서각류	목판각류	판목류(책판, 경판 등)	○ 제작자나 소유자 등의 유래가 불분명하고 자료나 각자 기술이 졸렬하여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현판류(편액, 현판, 주련 등)	
	금석각류	비(기념비, 신도비, 선정비, 충효비, 묘비, 사적비, 탑비, 부도비, 비갈, 장생표 등)	○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

		지석(묘지석 등)	품 또는 현대작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	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 매체	시청각류	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손·부식·훼손이 심하여 관독할 수 없는 것</li> <li>○ 수록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멸실되어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것</li> <li>○ 같은 종류의 매체가 현존하는 것이 많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li> </ul>
고고 자료	선사유물	석기(타제석기, 마제석기 등) 골각기 등	○ 심하게 부식·훼손되어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자연사 자료	자연과학 유물	인골류 생물자료(동물자료, 식물자료 등) 무생물자료(지질자료, 광물자료 등)	○ 심하게 부식·훼손되어 역사적·학술적·과학적·심미적·관상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
과학 기술 용구 및 민속 자료	생업기술 용구	농경(농기구류, 경작기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량 제작되고 양식상·기술상 특색이 없는 일반화된 일회용 잡기로서 학술적 보존가치가 없는 것</li> <li>○ 파손·부식·훼손되어 원형을 잃었으며 수리·복원이 불가능하여 민속문화재로서 학술적 가치가 없는 것</li> <li>○ 근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흔하거나 일본화 또는 서구화된 것(중요무형문화재가 제작, 사용하던 근대기의 유물은 제외)</li> <li>○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 용구</li> </ul>
		수렵(수렵 등)	
		어로(어로 등)	
	천문지리 기구	천문(천문, 시간 등)	
		기상(기상 등)	
		지리(지리, 풍수 등)	
	계 측 교 역 기술용구	계산용구 등	
		도량형(계량용구, 계측용구, 화폐·우표 등)	
	이 동 운 송 기술용구	교역용구 등	
		이동용구 등	
	공예기술 용구	운송용구 등	
		직조용구 등	
		초고공예용구 등	
		도자공예용구 등	
목공용구 등			
칠공용구 등			
금속공예용구 등			
음식제조 용구	의료(의약, 의료기 등)		
	음식류		
인쇄기술 용구	주류		
	인쇄기기(활자, 활판 등)		
놀이·유	인쇄용구 등		
	악기(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희용구	놀이도구 등	
	무기 병기류	무기무구류(도검류, 창류, 궁시류, 방어용구, 의전용구 등) 병장기류(병기, 총포류, 화기류 등)	○유래가 분명하지 않으며 명문·문양·장식이 없거나 심한 파손으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제작된 지 50년이 안 된 복제품
외국문 화재	도자	청자, 백자 흑유자 등	○우리나라 미술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았거나 우리나라 문화재와 관련성이 없는 것
	공예	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예술상, 학술상, 역사상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없는 것
	조각	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제작된 지 100년이 안 된 것으로서 모방·재현된 것 또는 현대작
	회화	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탱화, 벽화 등)	
	전적	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문서류 등	